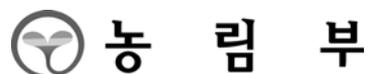


2006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2007. 4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위원회



목 차

제 I 장 총괄편

제1절 점검·평가 개요

- 1. 추진배경 3
- 2. 점검·평가체계 4

제2절 2006년도 시행계획 평가결과

- 1. 평가등급 8
- 2. 평가의견 9

제3절 '07년도 점검·평가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1. 점검·평가의 문제점 16
- 2. 향후과제 17

< 참고자료 >

- 1. 사업별 추진실적 19
- 2. 사업별 평가결과 27
- 3. 지방이양예산사업 현황 31

제Ⅱ장 분야별 평가편

제1절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1. 총 평	37
2. 평가결과	39
3. 평가소감	44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46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50
1-1-3-0. 농작업 재해보상지원	55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59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62
1-2-1-1.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67
1-2-1-2. 농산어촌 공공기관 기반확충	72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78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83

1-2-3-1.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87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91
1-2-3-3.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95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99
1-3-1-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103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지원	108
1-3-2-0.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114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확대	119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123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126
1-3-5-2.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129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132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135
1-4-2-3.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개발	139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144
1-4-3-0.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148

제2절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1. 총 평	155
2. 평가결과	157
3. 평가소감	161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2-1-1-1.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163
2-1-1-3.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169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운영	174
2-1-2-1. 학교군 구성·운영	179
2-1-2-6.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184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189
2-1-3-2.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193
2-1-3-3.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197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201
2-1-3-5. 도시문화 체험학습(방학캠프) 운영 지원	207

2-1-4-1.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213
2-1-4-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219
2-2-1-0.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227
2-2-2-1.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233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239
2-2-3-1.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245
2-2-3-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사업	249
2-2-3-2.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252
2-2-4-2.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256
2-3-1-1. 교육감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확대	262
2-3-1-2. 교원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267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273
2-3-2-2. 교원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277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282
2-3-4-0.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287
2-3-6-0.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 운영	291

제3절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1. 총 평	295
2. 평가결과	298
3. 평가소감	304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3-1-1-0. 농촌 지역개발 전문인재 육성 및 저변확대	306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11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317
3-2-1-3. 산촌종합개발사업	321
3-2-2-1. 소도읍 육성사업	326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332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338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344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349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353
3-3-2-3. 면단위 하수도사업	358
3-3-2-4. 소하천 정비사업	361
3-3-2-5.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367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370
3-3-3-2. 교통서비스 강화	374
3-3-3-3. 국고여객선 건조	378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382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386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390
3-3-5-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94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건립	398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401
3-3-5-5.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405
3-3-5-6.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	410
3-3-5-7. 산림박물관 건립	413
3-3-6-1. 정보화마을 조성	416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421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424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428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	432
3-3-7-2.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436
3-3-7-3. 농어업 관련정보 제공 확대	440

제4절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1. 총 평	447
2. 평가결과	449
3. 평가소감	452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454
4-1-1-2.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458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462
4-1-3-0.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	468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473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478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483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489
4-2-1-5.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494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500
4-2-1-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508
4-2-2-1.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513
4-2-2-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516

4-2-3-0. 중앙지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 관리체계 구축	519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523
4-3-1-0. 경관보전 직불제	528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533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538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543
4-3-5-0.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기반 구축	548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552
4-4-1-0. 1사1촌운동	557
4-4-2-0. 전원마을 조성사업	563
4-4-3-1.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확대	567
4-4-3-2. 도농교류센터 운영	571
4-4-4-0.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576

< 참고자료 >

1. 복지분과 사업별 평가결과	583
2. 교육분과 사업별 평가결과	608
3. 지역개발분과 사업별 평가결과	634
4. 복합산업분과 사업별 평가결과	666



총괄편

제1절 점검 · 평가 개요

1. 추진배경

- 인구감소 · 고령화로 인한 농산어촌 활력 저하, 복지 · 교육 여건의 상대적 취약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주요 국정과제로 제기되는 한편,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하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한 통합적 조정 · 점검 필요성이 대두
- 정부는 '04.3월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05.4)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추진
 - “삶의질향상특별법”은 농산어촌 문제를 범정부적으로 기획 · 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 · 운영
- 정기적인 점검 · 평가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삶의질향상 정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제시
 -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별사업의 효율화 및 사업간의 통합 · 연계를 추진
 - 정부의 단기 및 중장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국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도모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점검·평가를 통해 스스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

2. 점검·평가체계

가. 평가근거

□ 기본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는 「삶의질향상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삶의질향상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때에 전문 연구기관에 평가 의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9조 : 위원회는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는 「삶의질향상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삶의질향상 실무위원회에 점검·평가단을 설치하여 매년 평가 실시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실무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평가하는 기능을 수행

※ 삶의질향상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 위원장은 기본계획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점검·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점검평가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나. 평가기관

□ 농어업인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민간 전문가를 관련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점검·평가단 구성

□ 점검·평가단은 총괄,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의 5개 분과팀 21명으로 구성 (임기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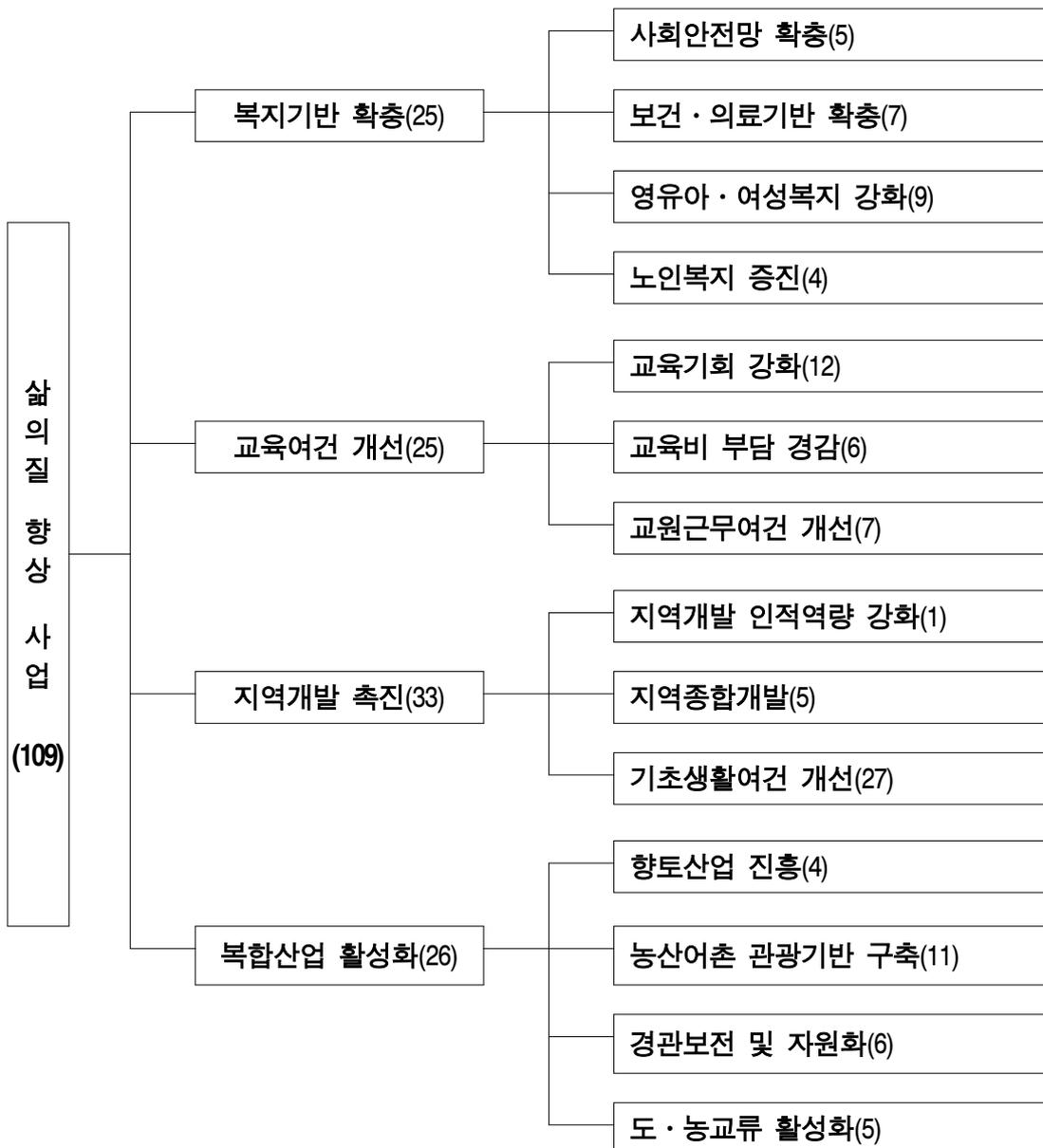
※ 평가단 명단 : 별첨

다. 평가대상

- '07년 평가에서는 1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한 '06년도 삶의질향상 시행계획의 108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 실시 (1개 사업은 자체평가보고서 미제출로 미평가)

※ 미평가 사업 : 농어촌 도로정비 (지방이양사업, 행정자치부 총괄)

< 평가대상사업 체계도 >



※ () 내서는 사업개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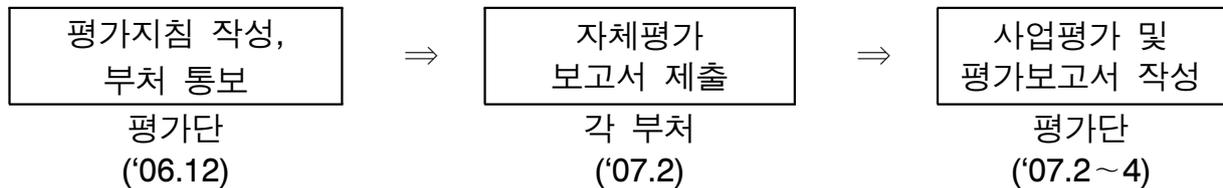
라. 평가방법

- 매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는 점검평가단 운영규정 및 평가지침에 의거 시행
- 사업평가는 사업부처의 자체평가보고서, 사업담당관 면담 등을 통하여 평가항목 및 착안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평가위원은 1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지침상 평가항목 및 착안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주고, 평가보고서를 작성
 - 평가위원이 제시한 점수와 평가의견은 4개 팀별 회의와 점검·평가단 전체회의에서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 사업추진의 단계별 특성을 감안하고 투융자·비투융자 사업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
 - 계획단계 :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절차적 합리성 여부 등
 - 집행단계 : 사업추진 체계의 적절성, 자원조달·배분의 합리성 등
 - 성과단계 : 삶의질향상 기여도, 성과목표 달성도 등
- 평가대상사업을 각 분야별로 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우수(상위 20%), 보통(20~80%), 부진(하위 20%)의 등급 부여
 - 개별사업별로 중요도에 따라 주요사업(사업비 300억원 이상, 영향력이 큰 사업 등)과 기타사업으로 구분
 -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에 가산점(5%) 부여
 - ※ '06년도 삶의질향상 시행계획의 주요/기타사업 분류
 - ⇒ 주요사업 : 34개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등)
 - ⇒ 기타사업 : 75개 (농작업 재해보상지원 등)

마. 평가결과의 환류

- 목표의 달성도 등 정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집행상황·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정책개선방안 제시
 - 정책개선방안은 보고후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사업의 익년도 예산액 조정을 제안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액 편성이 조정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실무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보고서를 각 기관, 기획예산처에 통보
 - 각 기관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 기획예산처는 평가결과 반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

바. 평가 추진일정



- 점검·평가지침을 작성, 평가단에서 심의·확정
 - 각 부처에 '07년도 점검·평가지침 통보 ('06.12.29)
- 각 부처에서 소관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사무국(농림부 농촌정책국)에 제출 ('07. 2월)
- 사업평가 및 점검·평가보고서 작성
 - 팀별로 사업별 평가 및 분야별 평가보고서 작성 (2~3월)
 - 총괄팀에서 총괄 평가보고서 작성 (4월)
 - 점검·평가단 전체회의를 거쳐 평가보고서(안) 확정 (4.12)

제2절 2006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결과(요약)

□ 전체 평가등급

○ 우수 : 20개 사업 (18.5%), 보통 : 75개 (69.5%), 부진 : 13개 (12%)

- 동점 사업으로 인하여 지침상 비율과 약간 상이함.

※ 평가지침상 비율 : 우수 20%, 보통 60%, 부진 20%

□ 사업별 평가등급

평가등급	분야별	사 업 명
우수 (20)	복지기반확충 (5)	국민연금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영유아 양육지원,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교육여건개선 (5)	우수고교 집중육성, 한국농업전문학교개편,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초중고학생 급식비지원, 학교군 구성운영
	지역개발촉진 (5)	농촌지역개발 우수인력육성, 소하천정비사업, 소도읍육성 사업, 환경친화형농촌주거모델보급,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복합산업활성화 (5)	경관보전직불제, 향토문화관광축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1사1촌운동
보통 (75)	전체 (75)	농작업 재해보상지원, 복식수업교재 프로그램 개발 등
부진 (13)	복지기반확충 (4)	안전영농구역 조성지원,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여성농업인센터, 취약농가 인력지원
	교육여건개선 (3)	농산어촌커뮤니티센터, 교육정보화인프라 구축,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지역개발촉진 (3)	도서종합개발사업,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조성사업, 농촌폐비닐 수거비지원
	복합산업활성화 (3)	자생식물식재 및 생태숲조성, 향토자원 소득화,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2. 평가의견

가. 총 평

□ 108개 평가대상 대부분의 사업이 성과지표 달성도를 일정수준 이상 충족하는 등 목표를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었음

○ 성과지표가 제시된 99개 사업 중 94개 사업(95%)이 성과목표를 90%이상 달성하여 '05년도의 79개 사업(86.8%)을 상회

※ 성과지표 미제시 사업은 비예산사업(5), 예산사업(5)으로 계량화 불가

□ 투융자 사업 102개 사업중 88개 사업(86%)이 예산계획대비 집행 실적 90% 이상 달성

○ 총 사업비 4조 2,746억원중 4조 1,145억원 집행 (96.2%)

- 복지 : 예산 5,959억원중 5,639억원 집행 (96.6%)

- 교육 : 예산 8,290억원중 7,914억원 집행 (95.5%)

- 지역개발 : 예산 2조 2,738억원중 2조 2,139억원 집행 (97.4%)

- 복합산업 : 예산 5,759억원중 5,453억원 집행 (94.7%)

□ 대부분 사업이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수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일정 수준 기여하였으나,

○ 농산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점검·개선을 통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 새롭게 발생하는 농산어촌의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발굴 및 기존 사업의 리모델링 필요

□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 여전히 부처별 유사·중복사업 추진에 따른 복잡다기성 및 통합·조정 메카니즘 미약, 정책 집행의 현장인 지자체에서 종합화되지 못하여 사업 추진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음
- 삶의질향상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사무국을 상설화하여 실질적인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간 연계·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06년도 5개 사업의 부처 이관을 통해 사업체계화, 효율화가 이루어짐

- 지자체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통합 추진 역량 강화

□ 자체평가보고서의 충실한 작성, 삶의 질 향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점검·평가단의 평가 방법·일정 등의 합리화와 평가의 환류 기능 강화 등 점검·평가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나. 분야별 평가

① 복지분야

- ◇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 ◇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일부 사업들은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계획한 대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 신규 사업 발굴과 함께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사업의 제도 개선 추진도 필요함

- 상위 20%의 우수사업 5개 중 4개의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농어업인 국민연금제도개선이 새로 우수사업으로 평가됨
 - 농어업인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지원수준을 상향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여 형평성을 제고함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경감률을 상향하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은 지원대상을 늘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함
 -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확충은 추진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은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여(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00% 수준) 수혜범위를 넓힘
- 하위 20%의 부진사업 4개는 '06년도에 신규로 추가된 사업과 지방이양된 사업이 주로 분포하였음
-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연구사업으로 규모가 작아 성과측면에서 평가를 낮게 받음
 - 여성농업인 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목표가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채용확보가 어려운 실정
 - 취약농가 인력지원은 2006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범위를 질병까지 확대하고, 지원일수를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

2 교육분야 평가

- ◇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함.
- ◇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도 폐지나 축소보다는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필요.

- 상위 20%의 우수사업 5개 중 3개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용자지원과 학교군 구성운영이 추가
 - 우수고교 집중 육성은 농촌지역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정책만족도가 매우 높음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은 교육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소득대체 효과로 정책만족도가 매우 높음.
 - 급식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 학교군 사업은 학생수가 적어 교육활동이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간 협력을 통해 교육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
- 하위 20%의 부진사업중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은 성격상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어려운 정책임.
 -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 사업은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결과만 받은 상태라 평가할 수 없어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3 지역개발 평가

- ◇ 정책개선을 위한 연구 수행, 다양한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 거버넌스체제 구축 등 다양한 개선 노력
- ◇ 여전히 부처별 유사·중복사업 추진에 따른 복잡다기성과 통합조정 매카니즘의 부재,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 추진, 하향식 추진구조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음

- 상위 20%인 우수사업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새롭게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이 추가되었음.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 등은 주민·전문가·행정기관간의 파트너십 운영, 마을사무장제·협약제도 도입 등 새로운 방식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은 리더십 육성, 동기화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며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수립
- 하위 20%의 부진사업중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폐비닐의 상당량이 수거되지 못하여 토양오염, 경관훼손 등을 야기하고 있음
 -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어촌과 도서지역 정주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 후에 차후의 사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조성은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중앙주도로 추진되어 지자체나 지방 문화원은 소극적으로 참여

4] 복합산업 평가

◇ 전반적으로 26개 사업은 목표와 성과 측면에서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농산어촌의 복합산업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들의 시책별 분류와 체계화가 필요함.

- 사업의 중복성이 심하거나 혹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장기적으로 기능 조정 및 통합 등이 필요함.

○ 우수사업은 5개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은 4개 사업임

- 1사1촌 운동은 국민 전체적으로 홍보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자매결연 실적도 매우 높음.

- 경관보전 직불제나 조건불리 직불제는 기존의 농정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며 추진 실적도 양호함.

-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은 지자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만족도도 높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적은 사업비로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조장하여 성과를 가시화한 것으로 판단함.

○ 부진사업으로 평가된 3개사업중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 추진 목표와 절차, 성과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 도농교류법 제정은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법 제정이 지연됨

제3절 '07년 점검·평가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1. 점검·평가의 문제점

- 대부분 사업의 전년도 실적은 2월 이후에 확정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당기는데 한계
 - 점검·평가 결과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일정을 전년도보다 앞당겨 추진하였으나, 사업 집행실적이 금년 2월에나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1월말까지 실적 제출이 어려움
 - ※ 점검·평가를 위한 1차 전체회의를 '07. 2. 22일에 개최
- 자체평가보고서에 바탕한 서면평가 위주로 심층평가 한계
 - 매년 4월 위원회 보고를 위해서는 점검·평가 기간이 촉박함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자체평가보고서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심층평가가 어려움
- 전년도 평가에서의 개선 요구사항 반영여부를 알 수 있는 평가항목 부재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알 수 있도록 조치사항 및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하위 20%에 위치하는 사업을 일률적으로 부진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실제 사업의 성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하위 20%를 부진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2. 향후 과제

□ 삶의질향상위원회 및 사무국의 기능 강화

-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별 사업을 종합화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조치
- 삶의질향상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설적인 업무추진 필요

□ 삶의질향상 대책 보완

- 현재의 예산으로는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 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함
-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 외국인 부인 및 자녀교육 문제, 한·미 FTA 등 새롭게 부각되는 농산어촌의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되, 오래되어 농산어촌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정책들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음

□ 점검·평가시스템 보완

- 평가결과에 따른 상벌체계를 명확히 하여 평가의 환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점검·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삶의질향상특별법」에 근거 조항 신설
- 점검·평가 및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각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담당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점검·평가단에게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지자체의 『삶의질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도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중요성,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사업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현재는 사업예산 또는 삶의 질 효과에 따라 주요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의 난이도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본 사업 이전의 준비단계에 있는 사업, 소규모 연구를 위한 사업, 시범사업, 제도·법령 제정을 위한 사업 등 사업 특성에 적합하게 평가지침 수정이 필요함.

< 참고 1 >

사업별 추진실적(성과지표 기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
1.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	1,358	1,340	99
	경감률	경감률	%	28	28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개선	표준소득월액등급	지원된 표준소득월액등급기준	등급	13	13	100
1-1-30 농작업 재해보상지원	보상수준 재해공제가입률	(사망시)보상금액 (재해공제가입인원수/가입대상수)×100	백만원 %	25 46	25 37	90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보험가입률	(당해연도말 보험가입 신고척수 /전년도말 보험가입 대상척수)×100	%	74	76	103
1-2-11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인프라확충 지원개소	개소	28	28	100
1-2-12 농산어촌 공공보건 기관 기반확충						
○ 보건기관 신증축	시설개선율	시설개선율	%	35	40	114
○ 장비 개선	장비개선율	장비개선율	%	50	45	90
○ 차량 지원	지원차량수	총 지원차량수	개수	25	20	80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이용자 및 직원 만족도	만족도	점수	60	64.3	107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연간 활용일수	총 활용일수	일	250	260	104
1-2-31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농부중 저감방안건	결과활용심의회 채택건수	건	5	8	160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농작업재해예방건	결과활용심의회 채택건수	건	4	8	200
1-2-33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인식 증가율	설문조사	%	20	20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신축시설수	총 신축시설수	개소	27	45	167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지원 이동수	총 지원이동수	명	34,029	36,037	106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양육비 지원율	(양육비지원 이동수/ 농어가 총영유아수)×100	%	57	61	107
1-3-2-0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운영개소수	총 운영개소수	개소	73	38	52
1-3-3-1 농가도우미 지원확대	도우미 지원원수	총 지원인원수	명	3,505	3,811	106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도우미 지원원수	총 지원인원수	명	16,000	14,180	89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창업지원 추진율	창업지원추진율	건	9	9	100
1-3-5-2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매출 증가율	(금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	50	68.4	136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구축건수	전자상거래메인시스템 및 재구축건수	개소	30	30	100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센터설치수	총 센터설치수	개소	16	16	100
1-4-2-3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개발	개발건수	프로그램 개발 후 반영 건수	건	2	2	100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활력도 및 삶의질향상 증가율	연간 개인과 마을의 활력도 및 삶의 질 향상 증가 비율	%	57	57.6	101
1-4-3-0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경영이양률	(경영이양자/전체경영이양대상자)×100	%	22	22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우수고교지정수	총 우수고교지정수	개교	30	30	100
2-1-1-3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특성화·내실화 지정 고교수	특성화고 지정(신설)학교수+ 통합형고로 개편한 학교수	개교	10	10	100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졸업생 영농종사율	(영농에 종사하는 졸업생수/ 전체 졸업생수)×100	%	95	95	100
2-1-2-1 학교군 구성·운영	지원학교수	총 지원학교수	개교	20	20	100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개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수	종	8종 2과제	8종 2과제	100
2-1-3-2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콘텐츠개발	콘텐츠개발 및 프로그램개발수	종	10종 2과제	10종 2과제	100
2-1-3-3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학생 만족도	목표 만족도	점	60	67	112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학부모 만족도	목표 만족도	%	65	69	106
2-1-3-5 방학캠프 운영 지원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만족도 설문조사	%	85	90	106
2-1-4-1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신증설학급수	신증설학급수	학급	150	121	81
2-1-4-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수혜율(만5세아)	(지원인원/만5세아수)×100	%	95	100	105
	수혜율(만3,4세아)	(지원인원/만3,4세아수)×100	%	95	100	105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874	864	99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98	100	102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700	677	97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26	25	96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명	6,000	5,706	95
2-2-3-1 초·중·고학생 급식비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626	737	118
2-2-3-2 자영농·수산계급 급식비						
○ 자영농과생 급식비	농과계급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18	18	100
	농과계급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2.4	2.4	100
○ 자영농수산계급 급식비	수산계급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명	432	432	100
2-2-4-2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순회강사 확보수	총 순회강사확보수	명	120	120	100
2-3-1-1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확대	임용시험총원율	당해연도 임용시험총원율	%	100	100	100
231-2 교원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초빙교장제 실시율	(초빙교장제 실시 학교수/ 전체 학교수)×100	%	6	4.2	70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원교원수	총 지원교원수	천명	55	55	100
232-2 교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사택신축,개보수	총 사택신축,개보수	개소	182	255	140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학교도서관리모델링수	개교	252	277	110
		학생 1인당 장서수	권	9.5	9.5	100
2-3-4-0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PC 1대당 학생수	PC 1대당 학생수	명	5	5.6	110
	인터넷 통신속도	인터넷 통신속도 2Mbps이상	%	100	96	96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
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31-10 농촌지역개발전문인력육성 및 저변 확대	전문교육인원수	총 수료인원수	명	2,000	2,258	113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업착수율	(누계 착수권역수 /1,000(목표권역수))×100	%	5.6	5.6	100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권역수	누계 사업권역수	권역	152	152	100
32-13 산촌종합개발사업	산촌주민 만족도	(\sum 취득점수/(100×설문대상자수))× 100	%	76	81	107
32-21 소도읍육성사업	사업소도읍수	총 사업 소도읍수(누계)	개소	66	66	100
33-1-1 농산어촌주거환경개선						
○ 농어촌 주택개량 (농특세 10%)	주택개량수	총 주택개량수	천동	4.5	4.5	100
○ 농어촌 마을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정비마을수	총 정비마을수	마을	127	127	100
○ 농어촌 빈집정비	빈집정비수	총 빈집정비수	천동	6.6	6.6	100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보급마을수	{(사업 후 민박사업 /사업전민박사업)×100}-100	%	500	669	134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상수도 보급률	(당해연도 누계 수혜인원 /면 인구)×100	%	38	38	100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사업수혜인원수	(사업추진마을수 /사업대상마을)×100	%	69	69	100
33-2-3 면단위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당해 누계 수혜인원 /면단위 인구수)×100	%	34.5	35.8	104
33-2-4 소하천정비	정비량	총 정비연장	km	198	311	157
33-2-5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시설사업수	총 시설사업수(누계)	개소	112	112	100
33-2-6 농촌폐비닐수거비 지원	폐비닐수거율	(폐비닐수거량/폐비닐발생량)×100	%	63	66	105
33-3-2 교통서비스 강화						
○ 농산어촌버스운행노선 운영비 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30	30	100
○ 농산어촌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19	19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
3333 국고여객선 건조	건조척수	당해연도 국고여객선 건조척수	척수	1	1	100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사업시행수	총 사업시행 면수	면	300	300	100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사업건수	총 사업건수	건	486	486	100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사업건수	총 사업건수	건	299	299	100
3351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지원	지원관 개소수	총 지원관개소수(누계)	개소	14	13	93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건립	체육시설 지원수	(당해연도 체육시설 지원수/최종목표연도 체육시설 지원수)×100	%	72	72	100
3354 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	공간 개관수	총 공간개관수	개소	10	12	120
3356 테마과학관, 사이언스샵건설	건립수	건립지원	개소	5	5	100
3357 산림박물관 건립	건립 개소수	총 건립개소수	개소	6	6	100
3361 정보화마을 조성	주민 정보화 교육실적	1년동안 전체교육시간/전체 PC보급 가구수	시간	6	6.5	108
	홈페이지 국민 참여도	정보화마을 전체 게시글수/전체마을수	건수	2,000	2,123	106
3362 초고속인터넷이용환경 조성	초고속 인터넷 보급율	초고속인터넷이용가구/전국농어촌지역가구	%	98	99	101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구축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점	65	77	118
3364 디지털어촌구축사업	구축 개소수	총 구축개소수	개소	50	50	100
3371 농업인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인원	총 교육인원	천명	55	56.8	103
	만족도	리커트 5점척도 설문조사	점	4.00	4.06	103
3372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정보화선도자 선정	선정인원	명	261	265	101
3373 농어업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일평균 순이용자수	이용자수	명/일	8,800	11,364	129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	
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 구축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DB 구축수	농촌 어메니티 자원정보시스템 등록된 DB수	건	175	245	140
41-1-2	향토자원 소득화사업	향토상품개발 및 연구	개발연구된 총 향토상품수	개	19	19	100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사업조성수	총 사업조성수	개소	10	8	80
41-30	농어어업인고용촉진훈련	취업률	$\frac{(\text{조기 취업자수} + \text{수료후 취업자수})}{(\text{조기 취업자수} + \text{수료인원})} \times 100$	%	35.7	40.6	114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방문객수	총 방문객수	천명	1,266	1,343	106
		매출액	총 매출액	억원	140	183	131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추가농가소득 증가율	$\frac{(\sum \text{당해년도 연간추가농가소득} / \text{당해말 테마마을총수})}{(\sum \text{전년도 연간추가농가소득} / \text{전년도 테마마을총수})} \times 100$	%	300	387	129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주민만족도	리커트 5점척도 설문조사	%	50	60	120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방문객수	방문객 총수/체험마을수	천명	97	150	155
42-1-5	어촌관광활성화사업	사업건수	총 사업건수	개소	7	7	100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 산림휴양공간 조성	휴양만족도	· 취득점수10-5.0 · $\frac{\{\sum \text{취득점수} / (70 \times \text{설문대상자수})\}}{\times 100}$	점	79	88	111
	○ 수목원 조성	조성수	총 조성수	개소	20	20	100
42-1-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개발건수	총 개발건수	건수	157	154	98
42-2-2	농산어촌체험관광 개최	방문객수	녹색농촌체험마을 총 방문객수	만명	60	134	224
42-30	중앙·지방·민간네트워크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구축	민간전문가 컨설팅 횟수	1인1촌 전문가지원시스템에 참여하는 전문가컨설팅 횟수	회	520	540	104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4240 향토문화관광축제 육성	관람객수	1개축제당 관람객수×45개축제 (문화관광축제)	백만명	35	35.2	101
4310 경관보전직불제	농업인 및 도시민 만족도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	80	91	114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어메니티지원 활용모델 개발실적	활용 성과물로 채택된 건수	%	3	3	100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조성개소	총 조성개소수	개소	23	23	100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농가당 평균지원액	농업인보조금지급실적/실지원농가수	천원	236	236	100
	마을공동기금 평균조성비율	평균조성비율	%	30	30	100
4410 1사 1촌 운동	자매결연체결 실적수	총 자매결연체결수	건	11,000	14,498	132
4420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시민 입주비율	총 도시민 입주비율	%	50	84	168
4431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	총 방문객수	천명	1,266	1,343	106
4432 도농교류센터운영	자매결연 매출액	1사1촌자매결연매출액	억원	545	1,395	156

※ 성과지표상 제외사업(10) :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1-1-5-0),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2-1-2-6),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운영(2-3-6-0), 면소재지 활력증진
사업(3-2-2-2), 농어촌도로 정비(3-3-3-1),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3-3-5-5), 농산
어촌 관광박람회 개최(4-2-2-1),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4-3-3-0),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4-3-5-0), 도농교류촉진법 제정(4-4-4-0)

사업별 평가 결과

(복지분야)

과제 번호	사업명	중요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주요	90.60	95.13	2/2	우수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주요	91.60	96.18	1/1	우수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기타	89.60	89.60	6/9	보통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기타	88.40	88.40	10/12	보통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기타	90.20	90.20	5/8	보통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기타	88.20	88.20	11/13	보통
1-2-1-2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주요	89.20	93.66	7/4	우수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주요	88.20	92.61	11/6	보통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기타	87.00	87.00	16/17	보통
1-2-3-1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환경개선	기타	86.40	86.40	18/19	보통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타	86.40	86.40	18/19	보통
1-2-3-3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기타	84.80	84.80	25/25	부진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주요	85.00	89.25	24/10	보통
1-3-1-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주요	88.60	93.03	8/5	우수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 지원	주요	90.40	94.92	3/3	우수
1-3-2-0	여성농업인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	기타	85.60	85.60	22/23	부진
1-3-3-1	농기도우미 지원 확대	기타	87.00	87.00	16/17	보통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사고고령농가 지원)	기타	85.80	85.80	21/22	부진
1-3-5-1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기타	86.40	86.40	18/19	보통
1-3-5-2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기타	88.60	88.60	8/11	보통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기타	85.20	85.20	23/24	부진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기타	88.20	88.20	11/13	보통
1-4-2-3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개발	기타	87.60	87.60	14/15	보통
1-4-2-4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기타	90.40	90.40	3/7	보통
1-4-3-0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기타	87.20	87.20	15/16	보통
평균	25개 사업		87.86	89.11		

* 순위는 '평가점수 순위/환산점수 순위'임

(교육분야)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주요	96.0	100	1/1	우수
2-1-1-3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기타	84.0	84.0	19/19	보통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주요	95.0	99.8	3/2	우수
2-1-2-1	학교군 구성 운영	기타	96.0	96.0	1/4	우수
2-1-2-6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기타	80.0	80.0	23/24	부진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기타	88.0	88.0	14/15	보통
2-1-3-2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기타	91.0	91.0	9/11	보통
2-1-3-3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주요	90.5	95.0	11/6	보통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기타	92.0	92.0	7/10	보통
2-1-3-5	도시문화체험학습(방학캠프)운영지원	기타	89.0	89.0	13/14	보통
2-1-4-1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증설	기타	93.0	93.0	6/9	보통
2-1-4-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주요	85.0	89.3	17/13	보통
2-2-1-0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주요	79.0	83.0	24/21	보통
2-2-2-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주요	91.0	95.6	9/5	우수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기타	84.0	84.0	19/19	보통
2-2-3-1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주요	92.0	96.6	7/3	우수
2-2-3-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기타	90.0	90.0	12/12	보통
2-2-3-2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기타	87.0	87.0	15/16	보통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지원	기타	94.0	94.0	5/8	보통
2-3-1-1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확대	기타	95.0	95.0	3/6	보통
2-3-1-2	교원 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기타	86.0	86.0	16/17	보통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기타	83.0	83.0	21/21	보통
2-3-2-2	교원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기타	83.0	83.0	21/21	보통
2-3-3-2	학교 도서관 및 장서 확충	기타	85.0	85.0	17/18	보통
2-3-4-0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기타	74.0	74.0	25/25	부진
2-3-6-0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	기타	50.0	50.0	26/26	부진
평 균	26개 사업		86.63	87.82		

* 순위는 '평가점수 순위/환산점수 순위'임

(지역개발)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3-1-1-0	농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주요	93.0	97.6	2/1	우수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요	90.0	94.5	7/5	우수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주요	80.0	84.0	26/19	보통
3-2-1-3	산촌종합개발사업	기타	82.0	82.0	21/23	보통
3-2-2-1	수도읍육성사업	주요	92.0	96.6	3/2	우수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주요	86.0	90.3	13/9	보통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주요	83.0	87.2	20/15	보통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기타	95.0	95.0	1/4	우수
3-3-2-1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주요	86.0	90.3	13/9	보통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주요	86.0	90.3	13/9	보통
3-3-2-3	면단위 하수도사업	주요	84.0	88.2	16/14	보통
3-3-2-4	소하천 정비사업	주요	92.0	96.6	3/2	우수
3-3-2-5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주요	81.0	85.0	24/18	보통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기타	79.0	79.0	28/30	부진
3-3-3-2	교통서비스 강화	기타	82.0	82.0	21/23	보통
3-3-3-3	국고여객선 건조	기타	82.0	82.0	21/23	보통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주요	76.0	79.8	31/29	보통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주요	77.0	80.8	30/27	보통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주요	71.0	74.5	32/32	부진
3-3-5-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기타	92.0	92.0	3/6	보통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건립	기타	91.0	91.0	6/8	보통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기타	79.0	79.0	28/30	부진
3-3-5-5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타	87.0	87.0	10/16	보통
3-3-5-6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	기타	81.0	81.0	24/26	보통
3-3-5-7	산림박물관 건립	기타	90.0	90.0	7/12	보통
3-3-6-1	정보화마을 조성	기타	84.0	84.0	16/19	보통
3-3-6-2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주요	87.0	91.4	10/7	보통
3-3-6-3	정보화인프라 구축	기타	84.0	84.0	18/19	보통
3-3-6-4	디지털 어촌 구축사업	기타	80.0	80.0	26/28	보통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	기타	87.0	87.0	10/16	보통
3-3-7-2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선정	기타	84.0	84.0	16/19	보통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기타	89.0	89.0	9/13	보통
평 균	32개 사업		84.75	86.72		

* 순위는 '평가점수 순위/환산점수 순위'임

(복합산업)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기타	79.0	79.0	18/20	보통
4-1-1-2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기타	75.0	75.0	25/25	부진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기타	84.0	84.0	13/13	보통
4-1-3-0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	기타	80.0	80.0	17/19	보통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기타	91.0	91.0	3/3	우수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기타	91.0	91.0	3/3	우수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기타	89.0	89.0	7/8	보통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기타	84.0	84.0	13/13	보통
4-2-1-5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기타	83.0	83.0	15/15	보통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주요	78.0	81.9	22/16	보통
4-2-1-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주요	77.0	80.9	23/18	보통
4-2-2-1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개최	기타	87.0	87.0	9/10	보통
4-2-2-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기타	85.0	85.0	10/11	보통
4-2-3-0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기타	88.0	88.0	8/9	보통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기타	92.0	92.0	1/1	우수
4-3-1-0	경관보전 직불제	기타	92.0	92.0	1/1	우수
4-3-2-2	농촌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기타	85.0	85.0	10/11	보통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기타	79.0	79.0	18/20	보통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기타	69.0	69.0	26/26	부진
4-3-5-0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기타	79.0	79.0	18/20	보통
4-3-6-1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타	90.0	90.0	6/6	보통
4-4-1-0	1서촌 운동	기타	91.0	91.0	3/3	우수
4-4-2-0	전원마을 조성	주요	85.0	89.3	10/7	보통
4-4-3-1	도농교류 참여 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기타	81.0	81.0	16/17	보통
4-4-3-2	도농교류센터 운영	기타	79.0	79.0	18/20	보통
4-4-4-0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기타	77.0	77.0	23/24	부진
평 균	26개 사업		83.46	83.92		

* 순위는 '평가점수 순위/환산점수 순위'임

지방이양 예산사업 현황

(단위 : 억원)

분 야	사 업 명	사업비 (’06년)	총괄부처
복 지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32	농림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51	농림부
교 육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125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6	교육부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675	교육부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466	교육부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874	농림부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20	농림/해수부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183	교육부
지역개발	교통서비스 강화	231	건교부
	농어촌 도로정비	3,961	행자부



분야별 평가편

제1절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I. 총 평

- 복지확충분야는 2005년도에 비해 8개 과제가 증가한 25개 사업을 점검·평가하였음.
- 계속과제 18개, 신규과제 7개, 주요사업 7개
-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중앙부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일부 사업들은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계획한 대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그동안 지방이양된 사업중에는 복지확충분야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이 대체로 지자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자체의 재원 미확보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경향
-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몇 개의 사업은 유사한 사업들이 나누어 추진 되므로써 사업의 중복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사업 들을 통합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단, 사업의 체계화에 따른 소요 예산의 적정 확보가 보장되어야 함.

-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농어업인의 소극적인 호응으로 성과 목표를 하향 설정하는 경우가 있음.

- 연구 성격의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예 : 1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점검·평가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재의 평가기준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움.

- 일정 기한을 설정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련 계획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II. 평가결과

1. 분야별 평가결과표(과제번호순)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주요	90.60	95.13	2/2	우수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주요	91.60	96.18	1/1	우수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기타	89.60	89.60	6/9	보통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기타	88.40	88.40	10/12	보통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기타	90.20	90.20	5/8	보통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기타	88.20	88.20	11/13	보통
1-2-1-2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주요	89.20	93.66	7/4	우수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주요	88.20	92.61	11/6	보통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기타	87.00	87.00	16/17	보통
1-2-3-1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환경개선	기타	86.40	86.40	18/19	보통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타	86.40	86.40	18/19	보통
1-2-3-3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기타	84.80	84.80	25/25	부진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주요	85.00	89.25	24/10	보통
1-3-1-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주요	88.60	93.03	8/5	우수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 지원	주요	90.40	94.92	3/3	우수
1-3-2-0	여성농업인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	기타	85.60	85.60	22/23	부진
1-3-3-1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기타	87.00	87.00	16/17	보통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사고,고령농가 지원)	기타	85.80	85.80	21/22	부진
1-3-5-1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기타	86.40	86.40	18/19	보통
1-3-5-2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기타	88.60	88.60	8/11	보통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기타	85.20	85.20	23/24	부진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기타	88.20	88.20	11/13	보통
1-4-2-3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개발	기타	87.60	87.60	14/15	보통
1-4-2-4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기타	90.40	90.40	3/7	보통
1-4-3-0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기타	87.20	87.20	15/16	보통
평균	25개 사업		87.86	89.11		

※ 순위는 ‘평가점수 순위/환산점수 순위’임.

1-1. 분야별 평가결과표(환산점수 순)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주요	91.60	96.18	1/1	우수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주요	90.60	95.13	2/2	우수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 지원	주요	90.40	94.92	3/3	우수
1-2-1-2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주요	89.20	93.66	7/4	우수
1-3-1-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주요	88.60	93.03	8/5	우수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주요	88.20	92.61	11/6	보통
1-4-2-4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기타	90.40	90.40	3/7	보통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기타	90.20	90.20	5/8	보통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기타	89.60	89.60	6/9	보통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주요	85.00	89.25	24/10	보통
1-3-5-2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기타	88.60	88.60	8/11	보통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기타	88.40	88.40	10/12	보통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기타	88.20	88.20	11/13	보통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기타	88.20	88.20	11/13	보통
1-4-2-3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개발	기타	87.60	87.60	14/15	보통
1-4-3-0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기타	87.20	87.20	15/16	보통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기타	87.00	87.00	16/17	보통
1-3-3-1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기타	87.00	87.00	16/17	보통
1-2-3-1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환경개선	기타	86.40	86.40	18/19	보통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기타	86.40	86.40	18/19	보통
1-3-5-1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기타	86.40	86.40	18/19	보통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사고, 고령농가 지원)	기타	85.80	85.80	21/22	부진
1-3-2-0	여성농업인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	기타	85.60	85.60	22/23	부진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기타	85.20	85.20	23/24	부진
1-2-3-3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기타	84.80	84.80	25/25	부진
평균	25개 사업		87.86	89.11		

※ 순위는 '평가점수 순위/환산점수 순위'임.

2. 우수사업

○ 농어업인 국민연금제도 개선

-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되었음.
- 전체적으로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1등급)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형평성을 제고함.
-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경감률을 당초 계획대로 2005년도에 비해 상향된 28%를 적용하여 보건복지부의 경감분 22%와 합쳐 총 50%를 경감함.
- 경감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농어업인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07계획에 반영함.

○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 지원

- 농어촌 인구의 과소화, 고령화 하에서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유지함.
- 지원대상을 늘려 수혜대상을 확대
- 지원대상 농가를 농지소유규모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함.

○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확충

-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함.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 저소득층의 만 5세아 아동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 농어촌 지역의 지원대상범위를 확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수준)하여 수혜범위를 넓힘.

3. 부진사업

○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 사업계획시 농작업 안전 관련 타 사업들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사업목표의 하나로 설정한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성과지표나 성과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음.
- 2014년까지 330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른 마을들에 대한 계획 또는 대책은 명확하지 않음.

○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 기존의 농촌정보화사업이나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과의 연계 또는 통합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규모(1억원)가 작은 사업들을 주요 사업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함.

○ 여성농업인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

-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어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목표가 현저히 미달함.
- 지역마다 예산과 시설운영방법이 다르고 기준이 강화되어 운영여건이 악화됨.
- 안정적 재원확보를 강구하고 전국적인 센터 운영개수를 확대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수취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취약농가 인력지원

- 2006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는 하나 영농도우미 분야는 목표의 50%를 약간 웃도는 성과를 얻는데 그침.
- 사업범위를 질병까지 확대하고 지원일수를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사업결과의 자료 구축은 물론 지역내에서 동원 가능한 인력 D/B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Ⅲ. 평가소감

- 일부 자체평가보고서의 경우 평가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점검·평가에 애로가 있음.
 -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복잡한 그림과 도표는 가급적 지양하고 본 평가체계에 맞게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성과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성격의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예: 연간 사업비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점검·평가보고서 작성을 평가체계에 맞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들과 함께 평가 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동일 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여러 사업들은 세부사업별로 점검·평가하기보다는 대주제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농촌진흥청의 '농작업 재해안전' 관련 사업들이나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관련 사업들이 대표적임.
- 신규 사업 발굴시 가능한 소규모 과제를 지양하고, 관련 사업들을 연계·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사업 발굴 이외에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도 필요함.
 - 신규 사업 선정 시 기존 사업의 내실화 또는 성과 배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사업의 분산·소규모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행 부처의 설명 기회를 점검·평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갖는 것이 바람직함.
- 적절한 성과지표의 설정이 필요한바 '사업대상자들의 만족도' 하나만이 성과지표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음. 지표 자체가 주관적인데다 조사방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따라서 계량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1-1-1-0(계속)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	-------------------------

(농림부 / 농촌사회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거주 농어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비 : 6,594억원('05~'09 1차 계획기간중), 국고 100%
- 사업규모 : 521천명 지원('06년)
- 시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업추진
- 추진내용
 - 농어촌거주 농어민을 대상으로 28%의 보험료를 경감지원
 - 경감율 : ('04) 8% → ('05) 18% → ('06 이후) 28% (총 50%)

3. 연차별 추진계획

- 향후 5개년 계획

(단위 : 천명, 억원, %)

연 도		'06	'07	'08	'09	'10	합계 ('06~'10)	비고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지원 대상	521	532	524	516	508	2,601	
	사업비 (국비)	1,340	1,272	1,352	1,437	1,623	7,024	
경감율 (%, 농림부 소관)		28	28	28	28	28	-	

○ 산출근거

연 도	산 출 근 거
2006년	521,060세대×19,363원×12월(28% 추가지원)
2007년	532,423세대×19,905원×12월(28% 추가지원)
2008년	524,020세대×21,497원×12월(28% 추가지원)
2009년	515,740세대×23,217원×12월(28% 추가지원)
2010년	507,591세대×25,080원×12월(28% 추가지원)

* 2006년은 실적치, 2007년 이후는 '07 중기재정운용계획상 계획치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06년 경감율 목표달성도 :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1,358	1,340	99
	경감률	경감률	%	28	28	100

II. 총 평

- 예정대로 경감율 상향 조정을 추진하여 농어업인(521천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였음.
- 경감대상 농어업인 일제조사 등 사업의 적정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전체 50%를 지원하는 것은 소득이 높은 농업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농업인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의 발생은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이를 고려하여 계획 수립시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2007년에는 소득 등을 기준으로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 본 사업은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유사한 사업인 국민연금보험 제도 개선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시와 농어촌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은 필요하고 명확하며, 또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상위목표에도 부합함.
-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집행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령 개정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동 법령 개정 이전에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주민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 수렴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도 차질 없이 완료하였음.
- 2004년부터 본 사업이 집행되면서 경감율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농어촌 주민간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였음.
- 경감지원 대상자确定为 위해 필요한 농어업인 확인은 시·군을 통해 일선 읍·면·리가 행정 협조를 제공하여 관련 기관간의 협조 및 연계가 잘 되었음.
-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50% 지원하여 소득 등이 많은 농업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농업인간 소득역진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약 52만 세대에 대해 월평균 35천원의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도농간의 형평성 확보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음.
- 삶의 질 계획에 따른 경감을 상향 조정은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도 큰 문제없음.

Ⅲ. 주요 결정사항

-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50% 지원하여 소득 등이 많은 농업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농업인간 소득역진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경감율을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2007년 내에 반드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 / 연금정책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농어가 소득의 감소 및 농어촌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따른 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한 고령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하기 위함

○ 사업추진방향

-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계속 지원
-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 ~ 2014년

○ 사업비 (국비 100%)

- '06년도 예산 : 67,300백만원

○ 사업규모 : 농어민가입자 272천명 ('06년)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역(당연적용·임의계속·특례)가입자

○ 시행방법

- 국고보조금 대상자 선정(지원대상농어민 본인보험료 납부시 1/2 지원) ⇒ 공단의 국고보조금 배정 요청 ⇒ 복지부가 공단에 배정
- 지원방법 : 농어민 개인별 지원

○ 사업추진내용

- 표준소득월액 13등급을 기준으로 동 등급 이하인 농어민에게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률지원하며, 13등급을 초과한 농어민에 대해서는 13등급 연금보험료의 50%를 정액(21,600원)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민연금가입자 지원기준 변경

-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2009년까지 지원기준 등급을 농어민가입자 중위수까지 점진적으로 향상

○ 향후 5개년 지원(안)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이후
예산액	60,540	67,300	69,300	76,800	81,900	
기준 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6등급	18등급	19등급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 '06년도(표준소득월액의 13등급), '10년도(표준소득월액의 19등급)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100% 달성) → “정상적 추진”

- 농어민 연금보험료 연차별 확대지원 방침에 의거 '06년도 지원기준인 “표준소득월액 13등급” 적용은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적용되었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어업인 국민 연금보험제도개선	표준소득월액등급	지원된 표준소득월액등급기준	등급	13	13	100

II. 총 평

- 법적 근거가 불비한 “농어민에 대해 연금보험료 계속 지원 방안” 결정 및 시행으로 농어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고, 또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속에서도 지원을 계속할 수 있어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음.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사업지연으로 기존 수혜 농어업인의 집단적 반발 및 농어업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가중이 예상되어 농어업인 보호차원에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05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원키로 하였음.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은 개정이 완료되어 지원기간이 2004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되었음.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특세법 및 관특별법,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근거로 원활한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2006년 정기국회에서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근거가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2007년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중에 있어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근거가 미비한 것임.
- 2007년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 연장을 포함한 제도개선 사항을 별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설득이 필요함.
- 2007년부터 본 사업이 농림부로 이관되며, 현재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사업이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두 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있어서 사업대상자 선정 등의 연계가 필요함.
- 또한 향후 5개년 지원(안)과 같이 기준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농어업인의 노후소득을 확대 보장하여야 할 것임.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어민의 보험료 납부 경감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또한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라는 국정목표와 합치됨.
-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확대는 단계적인 확대 (지원표준소득 월액 등급: 12등급(2004년) → 19등급(2010년 이후)를 통하여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2006년 사업집행도 2005년도의 계속지원 방식과 같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국민연금기금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책방향과 기금집행 지침을 마련하고 직접적인 업무수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이 2005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국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등)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 입법적인 불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 농림부의 삶의 질 향상 기본법에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포함 되도록 하여 범정부간 공동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업인 확인여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질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소득 보장 등을 담보로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체 홍보 및 사후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해본 결과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의 지표로 ‘표준소득월액 등급’은 농어업인의 소득비례 지원금을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명확히 알 수 있어 지표로서 적절하다고 보여 지며, 연금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하여 동 성과지표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함.

Ⅲ. 주요 결정사항

- 현행 표준소득월액 등급을 12등급에서 19등급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하는 계획은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 2007년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되 원활 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기간 연장을 포함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별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설득이 필요함.
- 2007년부터 본 사업의 주무부처가 농림부가 되므로, 현재 농림부가 주관하고 있는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두 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있어서 사업대상자 선정 등의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1-3-0(계속)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	-------------

(농림부 / 농촌사회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는 경우 신체나 농기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여건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6년 ~ 계속
- 사업비 : 1,379억원 ('05~'09 1차 계획기간중)
- 사업규모 : 75만건 지원 ('06년)
- 시행방법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사업추진
- 추진내용 : 농업인안전공제와 농기계공제로 구분
 - 농업인안전공제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15세~84세)의 농업 관련활동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등 손해를 보상
 - 농기계종합공제 : 농기계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 세부목표 (농업인안전공제의 경우)
 - * 사망보장(공통) : ('06) 25 → ('07) 35 → ('09) 60백만원
 - * 가입율 : ('06) 37 → ('07) 51 → ('09) 66%
 - * 1인당 공제료 : ('06) 46,140 → ('07) 53,930 → ('09) 86,000원/년
 -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 50%

3. 연차별 추진계획

○ 향후 5개년 계획

(단위 : 천명, 억원)

연도		'06	'07	'08	'09	'10	합계 (‘06~’10)	비고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대상	653	818	907	972	1044	4,394	
	사업비 (국비)	165	221	286	358	449	1,479	
농기계공제	지원 대상	10	12.5	15.0	17.5	20.0	75.0	
	사업비 (국비)	6	6	7	9	11	39	
보장수준 (사망시 보장,백만원)		25	35	45	60	65	230	
사업비총계		171	227	293	367	460	1,518	

○ 산출근거

연 도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2006년	653천건×46,140원×1/2	10천건×92,400원×1/2
2007년	818천건×53,930원×1/2	12.5천건×97,000원×1/2
2008년	907천건×63,000원×1/2	15.0천건×101,800원×1/2
2009년	972천건×73,600원×1/2	17.5천건×106,800원×1/2
2010년	1044천건×86,000원×1/2	20.2천건×112,100원×1/2

* 2006년은 실적치, 2007년 이후는 '07 중기재정운용계획상 계획치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사망보장(공통) 등 보상수준 : 100% 달성 (25백만원)
- 가입율 : 80% 달성 (37%)
- 공제료 지원 : 100% 달성 (23,070원/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작업 재해 보상지원	보상수준 재해공제가입률	(사망시)보상금액 (재해공제가입인원수/가 입대상수)×100	백만원	25	25	90
			%	46	37	

II. 총 평

- 사망 및 장해시 등의 보상수준을 상향조정하고, 16,000건에 201억원의 공제금을 지원한 것은 농가경제의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보상수준임.
- 보다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 가입을 및 보상수준을 상향 조정 지속적 추진
- 연구용역(06.11~07.4) 결과를 차년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함.
- 연차별 상향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함.
- 사업목표를 당초(05보고서)보다 하향조정하였음 (46%→37%)
- 사망보장수준이 낮으며, 임업인에 대한 확대적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협중앙회가 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가입을 권장한 것은 농업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함.

- 보장수준이 미흡하며, 언론홍보만 실시하여 확보예산의 일부를 미 집행함.
- 이 사업의 내용을 농업인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켜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자체가 농업인들에게 보조 지원을 하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망 및 장해시 등의 보상수준을 상향조정하고, 16,000건에 201억원의 공제금을 지원한 것은 농가경제의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만족도 조사결과가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성과지표는 적절하나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가입율 목표는 80% 달성에 그침.
- 성과지표로 가입율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Ⅲ. 주요 결정사항

- 임업인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07년도 하반기에 반영
- 휴업급여(3만원/일, 30일 한도)를 추진

1-1-4-0(계속)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	---------------

(해양수산부 / 수산경영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낮고 조업여건이 열악하여 어업이탈 현상이 심화되어가는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
- 사업추진 근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04.1.1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78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근해 어선원(137천명)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어선 규모에 따라 국가에서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100톤미만의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
 - 지원조건 : 10톤미만 60%, 30톤미만 50%, 50톤미만 20%, 100톤미만 10% 보험료 지원(운영사업비는 부가보험료의 70% 보조)
- 시행방법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비영리 정책보험으로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하고 회원조합이 업무를 대행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결산	'06실적	'07계획	'08	'09	'10
가 입 률(%)	70	74	76	78	80	82
사업비(억원)	150	180	201	302	336	400

4. 성과목표 달성도

-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홍보강화, 신속·공정한 보험금 지급체제 구축, 현지실태조사 결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험가입률 목표를 달성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보험가입률	(당해연도말 보험가입 신고척수 / 전년도말 보험가입 대상척수)×100	%	74	76	103%

II. 총 평

- 대다수 영세 어업인들이 미가입한 상황에서 가입율 76% 달성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국고지원을 확대, 보험료를 인하, 휴어기 보험금 환불제 도입 등은 어업인들의 가입을 제고에 기여함.
- 영세 어업인들(5톤 미만)의 가입이 미미하여 소형 어선 어선원들의 가입을 제고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기존의 선원 보험이 톤급에 따라 다원화되어 어업인의 불편을 초래 하던 것을 통합하여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임의가입 대상인 영세 어업인(5톤 미만)의 가입율이 저조함.
- 영세 어업인들의 가입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영세 어업인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음. 이들이 어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더 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보험료율 인하 및 국고지원 확대 등은 어업인들의 가입율 제고에 기여함.
- 수협을 통한 사업 추진은 적절하며 홍보를 다양하게 한 편임.
- 보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 제시가 미흡함.
- 보험료 연체율 경감을 위한 보다 다양한 대책 필요함.
-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입율을 제고하고(특히 영세 어업인), 보험료 체납 상황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평균적으로 76%의 가입율은 여타 사회보험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임.
- 당연가입 어업인의 가입율은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임의가입 어업인의 가입율은 매우 저조함.
- 당연가입 대상과 임의가입 대상의 목표치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성과목표년도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위탁운영사업비 국고지원을 확대 (70% → 100%)
- 휴어기 환불금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등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농어민 가구의 선정기준 특례 운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1 ~ 12
- 사업비 : 별도예산 없음 (기초생활급여 예산으로 운영)
- 사업규모 : 전체수급자 중 농어민가구 특례수급자
- 시행방법 : 해당구구 신청 → 조사 → 결정 → 급여실시
- 추진내용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기준 완화 ('06.7)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기준은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130%미만'으로 완화
 -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인정 ('04.6)
 -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1ha미만 소유자(임차한자 포함)가 지급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및 논농업소득보조금
 -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이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중 직접 생산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

- 2006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기준 완화('06.7), 농어민 가구 선정기준 특례 적용('06.1~12), 농어민 가구 선정기준 특례 적용현황 파악
- 2007~2010년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07.1), 농어민가구의 선정 기준 특례 확대 적용여부 검토

4. 성과목표 달성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목표치를 달성함

- '06.7월 완화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되었고, 농어민가구의 선정기준 특례는 변동사항 없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제도개선 사항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정기준 특례운영 등		-	-	계량 불가

II. 총 평

- 농어촌지역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120%에서 130%로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농어업인가구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이 수급자로 보호되거나 급여가 증가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가 축소되었음.
-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완화할 필요가 있고, 농어민가구의 선정기준 특례 확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하나 여타 복지제도 개선사업과 같이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 운영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 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소득평가액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2006년 7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검토시 일선 공무원의 의견 수렴, 전문가·법률가 등의 자문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일선 현장 공무원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바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개정시 이를 반영하였고, 시행 전에 일선 공무원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방식이 적절하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협조가 잘 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요원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그 시기가 2006년 12월이어서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반영하기 어려웠음.
- 2006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기준완화에 따라 신규수급자로 116천명 증가, 소요 예산 2200억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으며, 농어업인가구의 기준 특례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농어업인가구의 선정기준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 수급자의 경우 생계·주거·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받게 되고, 기존 수급자의 경우 현금급여 수준이 증가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나 여타 복지제도 개선사업과 같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필요하다고 판단됨.

Ⅲ. 주요 결정사항

-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완화할 필요가 있고, 농어업인가구의 선정 기준 특례 확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하나 여타 복지제도 개선사업과 같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제 해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연도 중간에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도 내에 해결방안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어촌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보장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군지역 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진료를 위한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 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지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시설·장비 개선 용자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응급의료제공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재정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 사업규모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 27개 군지역 의료기관

- 지원내용 : 응급실 시설·장비 및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보조, 국고보조 100%
- 사업비('06년) : 3,667백만원
- 지원기준 및 지원형태

지원내용	지원내역	금 액
응급 의료인력 인건비(경상보조)	67백만원×28개기관	1,890백만원
응급의료 시설·장비 보강비(자본보조)	63백만원×28개기관	1,777백만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내용	2005	2006	2007	2008	2009
○ 농어촌 군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47억원	45억원	58억원	64억원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40개군)		28개군	40개군	40개군	40개군
응급실 의사 인건비 지원		28개소	40개소	40개소	40개소
응급실 시설장비 지원		28개소	12개소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0개소	30개소	60개소	60개소

4. 성과목표 달성도

-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율 100%를 목표로 응급의료 취약 28개 군지역 중 28개 군지역 응급실 시설장비 개선 및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하여 목표 대비(계획 28개소/지원 28개소)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인프라확충 지원개소	개소	28	28	100

II. 총 평

- 농어촌의 열악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전담의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 24시간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기반을 마련함.
- 응급의료의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사업 참여 기피 및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반 미흡으로 사업신청을 포기 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응급의료체계 모형을 개발·적용하여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 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의료제공을 위한 적정보상 및 유인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기 지원한 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한 바 지원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수행이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응급의료 인프라가 특히 취약하므로 국가에서 지원하여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24시간 응급실 전담의사에 의한 진료체계를 구축하려는 본 사업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며, 본 사업의 목표도 명확하고, 농어촌 주민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도농간 보건복지 격차 해소라는 상위목표와도 부합하고 있음.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28개 군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군 지역당 1개소에 대한 응급의료인프라 구축비를 지원(37억원) 하려는 연차별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해당 응급의료 취약 군 지역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자체의 사업 검토 및 현지실사를 거쳐 적정 지원기관을 선정된 이후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및 시설장비 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음으로 사업 추진체계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대상기관 선정과정에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기관간 협조 및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발생 가능한 문제점, 계획변경 등에 대한 상시 보고·환류 체계도 유지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해 전남 고흥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향후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모형을 개발하려고 함.
- 본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추진 일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응급의료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군 지역의 24시간 진료가능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 대도시나 중소도시와 비교하여 읍면거주자의 응급의료 이용과 관련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성과지표로서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 감소율을 설정하였는 바 지표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목표치를 100%로 설정하여(28개 군 지역을 대상) 28개 군 지역을 지원을 하였으므로 목표를 달성하였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응급의료기관들은 운영에 있어서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받은 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기술 지원 등 사후 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최근 경남 의령군과 같이 군 지역에서 기존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 도산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현재는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연간 인건비(24시간 전담의사 1인) 지원액이 67백만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전담의사 1인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적절한 인력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증원이 필요할 시 이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이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과 연계되므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임.

1-2-1-2(계속)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	-------------------

(보건복지부 / 보건정책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농가소득 정체 등의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을 통해 도서벽지 의료취약지역의 농어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추진근거 :
 - 지역보건법 제19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2항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2항
 -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4조~15조

2.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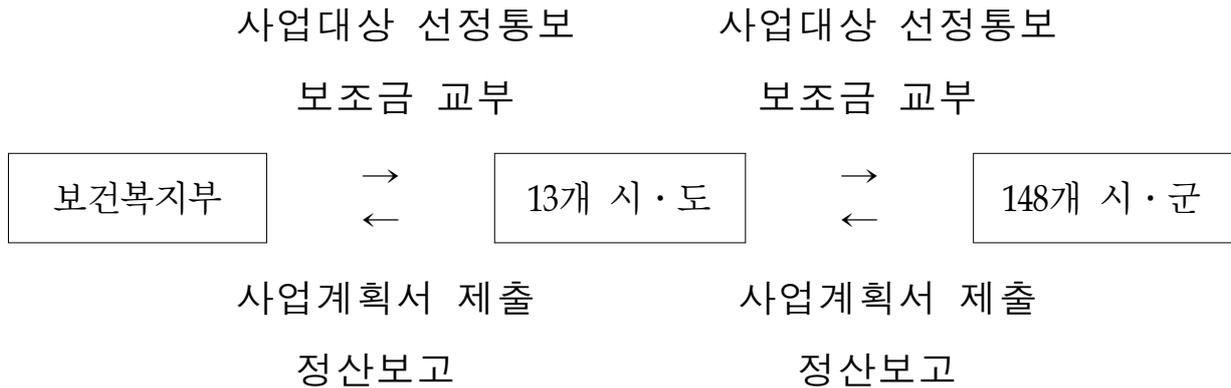
- 사업기간 : 1994-2014년 (국고 2/3, 지방비 1/3)
- 사업비 : 569억원
- 추진 현황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능개선 지원현황('94~'06) >

(단위 : 개소)

기관유형	대상 기관수	시설개선	의료장비	방문보건 세트	전산장비	방문보건 차량	진료소 PC
합 계	3,327	1,103	497	734	153	166	137
보건소	144	138	134	93	144	146	-
보건지소	1,273	588	359	246	-	20	-
보건진료소	1,901	376	-	395	-	-	137
기타(시도)	9	1	4	-	9	-	-

- 사업추진주체 : 시·도, 시·군·구
- 사업절차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계획 제출
→ 중앙평가위원회에서 대상기관 선정(현지실사) →
농특자금 지원 → 각 지자체에서 기능보강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지역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도모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기관유형	'07	'08	'09	'10	'11	'12	'13
보건소(신·증축)	16	17	17	25	25	25	25
보건지소	100	135	135	140	140	140	140
보건진료소	125	100	100	100	100	100	100
의료장비(개소수)	83	203	203	115	115	115	115

○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억원)

구분	'07	'08	'09	'10	'11	'12	'13
금액	621	695	695	710	710	710	71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기반확충						
○ 보건기관 신증축	시설개선율	시설개선율	%	35	40	114
○ 장비 개선	장비개선율	장비개선율	%	50	45	90
○ 차량 지원	지원차량수	총 지원차량수	개수	25	20	80

II. 총 평

- 농어촌보건기관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낙후된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
-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보건기관 이용률 증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지역 관공서와의 인접성,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의 편의성 등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음.
- 매년 사업예산의 불확정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고정적인 확정예산이 필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늦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의 경우 도시화 및 교통 통신의 발달로 민간 의료기관 유입 증가 등 전통적인 농어촌 특징이 사라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이 미흡하다고 보여짐.
-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기능 전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기능 전환을 통한 통합 운영을 원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
- 기존 보건진료소의 시설 지원기준을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상향 조정(건강증진실 등)하는 방안을 검토함.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고의 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농어촌 보건기관을 유형별(지역별 등)로 구분하여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설 및 장비는 물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까지도 검토해야 하며, 또한 방문보건사업 등 각종 사업도 개발하여야 할 것임.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 지역의 지역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본 사업의 목표는 명확함.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 마련 및 개선사업 계획서 평가시 각 권역별 예방의학, 보건학, 건축학 관련 전문가 및 평가위원의 의견 수렴 및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음.

- 그러나 최근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에 있어서는 도시화 등 여건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연차별 지원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각 시·군·구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서 1차 평가하고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2차 평가 후 사업대상기관을 선정하므로 사업추진체계가 적절하다고 보여짐.
- 지침에 대한 각 시·군·구 담당자 설명회를 등을 개최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건물의 준공과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다각도로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을 홍보하고 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의 일정을 공표하고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에서 사업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의 인력이 다소 부족하여 실질적인 기술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담당 인력도 부족하므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개선사업 후 농어촌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
- 시설개선율, 전산장비 개선율, 방문보건차량의 지원대수 등의 성과 지표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연차별 계획에 의거할 경우 2006년도의 계획은 시설개선을 35%, 전산장비 개선을 50%, 방문보건차량 지원대수 25대 등이며, 달성 정도는 시설개선을 40%로서 초과 달성하였고, 전산장비 개선을 (45%)과 방문보건차량 지원대수(20대)의 경우 다소 미달하였음.

Ⅲ. 주요 결정사항

- 단기적으로는 우선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기능 전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기능 전환을 통한 통합 운영을 원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연차별 지원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존 보건진료소의 시설 지원기준을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상향 조정(건강증진실 등)하는 방안을 검토함.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고의 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농어촌 보건기관을 유형별(지역별 등)로 구분하여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설 및 장비는 물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까지도 검토해야 하며, 또한 방문보건사업 등 각종 사업도 개발하여야 할 것임.
-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의 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기술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담당 인력도 부족하므로 본 사업 담당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노후시설·장비의 현대화와 기능개편을 통해 동 병원 경쟁력 확보 및 포괄적·지속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계속사업
- 사업비 : '06년 319억원 ('05년까지 기 투자액 : 454억원)
- 사업내용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 병상 확충, 리모델링 및 시설·장비 보강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시설·장비 보강
 - 지역거점병원 직원 혁신 및 서비스 교육 및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 의료서비스, 재정상태 등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
- 지원대상 : 지역거점병원 40개소 (지방의료원 34, 적십자병원 6)

○ 지원형태

구 분	지원형태	지원조건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자치단체 자본보조	기금:지방비=50:50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기금 100%
- 혁신 및 서비스 교육 지원	민간경상보조	기금 100%
-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기금 100%
- 운영평가	직접수행	기금 100%

○ 사업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거점병원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 '09년까지 5개 의료원의 이전·신축비 지원 포함한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매년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혁신 및 서비스 교육 지원 : 직원의 혁신 및 서비스 마인드 고취

○ '06~'1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이후
454	319	238	230	230	226	-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 : 지방의료원 등의 이용자 및 직원 만족도 (60)

○ 실적 : 64.3 (목표달성비율 : 107.2)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이용자 및 직원 만족도	만족도	점수	60	64.3	107

II. 총 평

-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05~'10년, 1,667억원), 각 세부사업 추진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종래의 수익성 위주의 평가체계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체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음.
- 기능보강, 세부설계(기본·실시설계) 및 장비변경 시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중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성과지표로서 지방의료원 등 이용자 및 직원 만족도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방법 등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로서는 다소 미흡하며 다른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시 도시지역을 포함한 전체 병원(40개)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작성하기 보다는 농산어촌에 소재한 병원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지방공사의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명칭이 변경된 34개의 지방의료원과 6개의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및 점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달성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본 사업은 민간의료기관의 증설에 따라 지역사회 2차병원으로의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전국 40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의 개선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국가 상위목표와 부합함.
- 본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시 농어업인의 이용이 많은 병원들만을 대상으로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으면 좋았을 것임.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타 부처·부서 지원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예: 노인요양운영팀의 노인요양전문병원 지원 등) 부처·부서별 협의, 운영평가체계 지표 개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참여 및 의견수렴 등 협조체계 구축, 시·도 및 지방의료원연합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등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체계와 추진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기능보강, 세부설계(기본·실시설계) 및 장비변경 시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중간 모니터링이 필요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및 농림어업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2차병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지속적·포괄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성과지표로서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및 직원의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60) 대비 실적(64.3)을 고려하면 달성비율을 107.2라고 기술하고 있음. 그러나 만족도 조사 방법의 일관성 유지, 성과목표치의 적절성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만족도는 성과지표로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른 성과지표의 개발(예를 들면 시설 및 장비의 개선율, 직원에 대한 교육의 회수)이 필요함.

Ⅲ. 주요 결정사항

- 본 사업은 전국적인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40개) 병원의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나 특히 농어촌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의 예산 확대 및 확보가 필요하며, 이들 병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보다 차별적인 구체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성과지표를 만족도보다는 그 외 다른 성과지표의 개발(예를 들면 시설 및 장비의 개선율, 직원에 대한 교육의 회수)이 필요함.
- 본 자체 평가보고서는 농어업인의 이용이 많은 병원(20개)들 위주로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1-2-2-0(계속)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 확충
-------------	----------------------

(농촌진흥청 / 농촌생활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 회복 및 건강 증진
- 농촌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
- 추진 근거 : 농촌진흥법 제42조1항(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 제14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6 ~ 2007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1,342개소 647억원 (국비·지방비 각 50%)
- 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보조율 100%)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96~'06) : 1,150개소 551억원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96~'02	2003	2004	2005	2006
사업량		1,150	604	140	140	108	158
사업비	계	551	278	70	70	54	79
	국 비	276	139	35	35	27	40
	지방비	275	139	35	35	27	39

* 개소당 사업비 : ('96~'97) 35백만원, ('98~'06) 5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농작업 피로해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건강기구실, 찜질방 등) 설치
-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벨트 마사지, 헬스자전거 등) 설치
- 농업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지역인프라 구축
 - 외부 체육지도자 등을 초빙 피로회복 마사지, 단전호흡 등 실시
 - 보건소, 한의원, 병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무료 의료지원 확대
- 사업 지원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 건강관리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 지방비 운영예산 확보 지원 : 275개소 평균 1,778천원 ('06. 9. 1. 현재)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7년까지 1,342개소 설치

- 2006년 현재 1,150개소 완료, 2007년도까지 국비사업은 설치후 종료하고 이후는 지방 자율적으로 사업 권장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2005까지	2006	2007예산
사업량		1,425	992	158	192
사업비	계	688	472	79	96
	국 비	345	236	40	48
	지방비	343	236	39	48

4. 성과목표 달성도

- 연간활용일수는 평균 260일로 성과목표치 250일을 100%이상 초과 달성함
- 만족도는 매우 좋아짐이 55%로 성과목표치 50%를 100% 초과 달성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연간 활용일수	총 활용일수	일	250	260	104

II. 총 평

-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농작업의 피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건강관리에 농촌의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시설의 운영관리, 비용 확보 등의 효율적 운영이 동반되어야 건강관리실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더불어 건강관리실을 통해 고령농의 정기검진, 처방 등을 병행해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인력의 활력·생산성 증대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농어촌의 보건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와 부합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건강관리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확충 시 청·장년층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의 복지공간으로 활용여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매월 1회 이상 시설관리 정기점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에 따른 시설확충 예산 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시설이용 주민의 94%가 만족한다는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임.

Ⅲ. 건의사항

- 시설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비롯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설 및 장비 개선과 병행해 인력을 확보하여 무료 정기검진 확대, 상담을 통한 사전예방 확보의 장으로서 활용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건강관리실과 의료시설의 연계를 통해 취약한 기초공공보건 시설을 농어촌의 의료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또한 시설 점검, 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

1-2-3-1(신규)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	--------------------------

(농촌진흥청 / 농업인복지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업활동 건강유해요인 증가에 따라 농부중 등 농업인 직업성 질환 발생이 증가하므로 장기 추적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구명하고 적합한 예방관리 기술 개발 지원
- 향후 농업인 안전공제 등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성 질환, 사고에 대한 재해통계 및 재해판정 기준 등을 마련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4조, 1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1 ~ 2006. 12
- 사 업 비 : 4억 (국비 100%)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농업인 건강 장기(長期)평가를 위한 연구마을 조성(9개소) 및 농작업 보조장비 개발 등 5개 과제
- 사업 시행방법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 (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 편성 →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연구개발국)

○ 추진내용

- 농업인 건강·안전 장기추적연구를 위한 코호트 구축 ('06~'09)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재해 진단기준 개발 ('06~'09)
- 유해 작업환경 평가 및 농작업 안전기준 확립 ('06~'09)
- 인간공학적 작업시스템 및 보조도구 개발 지원 60종 (~'09)
- ※ 의학(산업의학, 예방의학, 재활의학), 환경보건, 산업공학 등 관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공동연구 수행 중
- ※ 농작업안전보건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단 구성 중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06	'07	'08	'09	'10 ~
사업량(과제수)	75	5	5	10	15	40
사업비(억원)	118	4	4	20	20	70

※ '06~'07 : 연구과제비만 일반회계로 지원했으나 '08년 이후에는 코호트 운영(10천명)을 위한 농특세 편성 필요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작업재해 경감방안 개발 건수 : 5건
- '06 영농활용 제안이 총 8건으로 당해연도 목표달성 가능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농부증 저감방안건	결과활용심의회 채택건수	건	5	8	160

II. 총 평

- 농업분야의 기계화와 고령화가 점차 가속되고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작업재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이를 토대로 한 예방책과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의 노력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농업인 건강·안전 추적연구를 위한 시범 마을을 조성하여 자료를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거에 농작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의 직접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생산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농작업재해의 예방 관리 기술 지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학술지 게재, 산업재산권 출원, 논문 발표 등은 농작업재해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이라는 성과를 거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
- 사업 전체 추진과정에서의 사업의 대상인 농업인의 참여가 극히 일부분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현실성이 결여된 사업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 목표 및 하위 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있음.
- 또한 사업 계획 시에 농업인,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및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점은 정책 과제로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현장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에서 농업인의 역할을 단순히 의견수렴 대상이라는 점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계획 추진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대상인 농업인의 요구를 보다 충족시켜줄 필요 있음.
-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의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의 경우 다양한 매체 및 수단을 이용한 점은 높이 평가되나 이제는 홍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초기년도 사업성과는 국민 및 농업인의 의식 전환,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경감방안의 개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미비했다고 판단됨.
- 농작업재해 경감방안을 개발하여 제공한 점은 매우 높은 사업성과라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가 현장에서 즉각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함.

Ⅲ. 건의사항

- 일반회계에서의 예산 확보가 더 확충되어야 하며, 농작업재해 현황 및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농업인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참여도를 높여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1-2-3-2(신규)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

(농촌진흥청 / 농업인복지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업인 업무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개인의료비 및 손해를 최소화함
 -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액 : 근로자 1,000만명, 약 10조
 - 농작업재해로 인한 손실액 추정 : 농업취업인구 200만명, 약 2조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통계 마련 및 농업인 재해예방 및 보상 정책·제도 마련 등에 기여함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4조, 1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1 ~ 2006. 12
- 사업비 : 3억(국비 100%)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농작업사고 감시체계 구축·운영 등 4개 과제
- 사업 시행방법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편성 →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연구개발국)

- 추진내용 · T/F 팀 : 농기계, 농약, 농작업 건강 연구 · 지도 부서로 구성
 - 자문단 : 의학(산업의학, 예방의학, 재활의학), 산업공학 등
 - 농작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연구
 - 농작업 안전모델 농가 인증, 전문 조직화 방안 등
 - 인터넷을 통한 농작업사고 감시체계 및 원격 상담코너 구축
 - 건강 · 안전부문 전문가 원격 상담 실시 ('07~'09)
 - 농작업사고 감시체계 구축 · 운영 : ('06) 9개소 → ('09) 165개소
 - 농작업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자 육성 체계 개발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06	'07	'08	'09	'10 ~
사업량(과제수)	75	4	3	5 27개소 (중앙·지역센터)	15 50	40 165개소
사업비(억원)	118	3	2	31	40	100

※ '06~'07 :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07년까지 감시체계 및 전문가 상담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지만, '08년 이후에는 농특세를 활용하여 중앙안전보건 센터 및 지역 감시체계 운영,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 등의 사업확대 및 실용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도 성과목표 달성현황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작업 재해예방건	결과활용심의회 채택건수	건	4	8	200

II. 총 평

-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재해통계를 통한 보상 정책·제도 마련은 그 동안 농업인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여러 차례 요구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전체 산업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 보상 및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만큼 보다 질 높은 정책 마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 함.
- 앞으로 발생하는 농작업재해에 대한 예방 및 보상 정책도 중요하지만 과거 농작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역시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 있음.
- 사업 목적이나 추진 내용이 비슷할 경우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성과나 예산 확보 등에서 보다 높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농촌사회안전망 확보는 반드시 정부가 추진해야할 과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농업인 및 국민의 인식 제고에도 높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농업인의 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무엇인지에 연구와 함께 현장 조사가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재원 확보에서 비록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나 추진 내용이 비슷한 사업과의 통합으로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이나 사업 홍보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각이 이루어져야 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작업재해에 대한 예방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해 현장 농업인의 인식 정도와 활용 방안에 대한 결과 및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농작업재해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경우 운영할 수 있는 기구 및 참여 주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Ⅲ. 건의사항

- 사업 목적이나 추진 내용의 성격이 같은 사업의 경우 통합되었을 때 예산 확보나 추진에 있어서의 효과를 고려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농작업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서의 확정과 시스템 운영에 참여할 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현장 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과거 발생한 농작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역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매우 필요한 요소임 .

(농촌진흥청 / 농촌생활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작목 및 마을별 특성에 따른 농작업 및 건강상의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활동을 실행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함
- 마을단위 농작업 안전관리의 모델을 정립하여 확산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치료 등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14 (9년간)
- 사업량 및 사업비 : 330마을, 660억원 (국비·지방비 각 50%)
- 시행방법 : 민간자본(경상)보조 (보조율 100%)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6) : 9마을 10.8억원 (국비·지방비 각 50%)
 - 사업대상 마을 : 시설원예, 노지채소, 과수, 축산 등 주산단지 마을 (리)로서 농작업 여건, 사업참여도, 사업기반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마을

- 종합 지원할 전문가로 구성된 농작업 안전사업 추진단 구성 운영
- 농작업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찬회, 워크숍, 현장교육 등 개최
- 농작업 환경 개선, 농작업보호장구 보급, 농기계 안전 장치 보완,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 운영, 농약 및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등 개선방안 실행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4년까지 총 330개 마을 대상 (3년 지원/1마을)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이후
사업량	1년차	330	9	8	40	40	233
	2, 3년차	660	-	9	17	48	586
사업비		660	10.8	13.2	54.8	67.2	514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작업 안전에 대한 농업인인식 증가율 20% 이상 : 사업초반에 농작업 안전 관련 지식 15개 문항에 대한 인지도를 평가하고 그 이후 교육, 워크숍, 회의 등을 통해 인지도 향상 기회를 제공한 후 재평가하여 향상된 정도를 평가한 결과 20%가 향상되어 목표를 달성함
-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대책 실천 증가율 20% 이상 : 초반에 농약 안전보관, 농약방제보호구 착용 등 실천율을 조사하였고, 개선과제를 실행한 후 46%가 향상되어 목표를 초과달성함
- '06년도 성과목표 달성현황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안전영농구역 조정 지원사업	인식 증가율	설문조사	%	20	20	100

II. 총 평

-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타 사업과의 연계 문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농작업 안전 관련 사업과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하여 이에 따른 적정 예산 확보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향상코자 하는 목표 설정은 적절함.
- 농업인 스스로 안전문제에 대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함. 즉, 실제로 안전을 생활화하는 계획은 추상적인 수준임.
- 농업 안전 관련사업과의 연계(통합) 검토가 미흡하고, 2014년까지 330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마을에 대한 계획 또는 대책은 명확하지 않음.
- 농작업 안전 관련 사업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은 일정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됨
-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관별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사업추진체계가 복잡함.
- 사업 대상 마을수가 증가할 경우에도 현장순회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마을별 사업비 배분방법이 복잡함.
- 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농번기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는 농작업 재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킴.
- 사업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초년도의 성과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전문인력 양성도 사업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성과지표(농업인 인식 증가율, 예방대책 실천증가율)의 목표치 (20%)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함.
-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치의 재검토가 필요함.
 - 성과지표의 구체화

Ⅲ. 주요 결정사항

- 농작업 관련 사업과의 연계·통합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른 적정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

1-3-1-1(계속)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	--------------

(여성가족부 / 보육지원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 농산어촌 지역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농림어업인에 대해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 ~ '10년 (총5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국고 5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내용 : 농산어촌 지역에 보육시설 확충 (27개소)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06년 ~ '10년 (총5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보육시설 확충	27	37	50	50	50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산어촌지역 보육시설 신축시설 수 목표 : 27개소
- '06년도 보육시설 확충 수 : 45개소 (달성율 : 167%)
 - 국공립시설 신축 42개소,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3개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신축시설수	총 신축시설수	개소	27	45	167

II. 총 평

- 도시지역에 비해 소규모로 건립하고 영유아 보육법상 규제를 완화하여 건물 2층에도 건립가능토록 조치함.
- 운용이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을 매입 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장애아전담시설을 신축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도시에 비해 관련 보육 수요가 적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보육시설 확충에 매우 소극적임.
-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수단을 강구하여 지방자치 단체 관계자들의 보육 시설 확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산어촌의 지역 경제 발전 및 복지기반 확충에 기여함.

- 보육시설 신축 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함.
- 지자체의 소극적 입장으로 중앙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려움.
- 지자체 관계자들에 대한 보육서비스에 인식을 제고키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차원의 보육시설 신축 및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국고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여 재원 배분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임.
- 유형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함.
- 농산어촌의 보육 수요가 적고 산재되어 있어 지자체가 사업에 매우 소극적이며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이 취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지자체의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었음.
- 국고에서 지원하는 건축비를 현행 50%에서 상향 조정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홍보의 강화와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통한 사업 진행을 촉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국공립 시설의 신축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보육시설을 보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 수혜자들의 객관적 만족도 조사 분석이 부족함.
- 목표대비 무난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여겨지나 성과목표를 과소 책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제3 외부 기관의 만족도 양케이트 조사 및 분석 실시
- 신축된 시설수를 고려하여 성과를 분석

Ⅲ. 주요 결정사항

- '06년도에 국고(40%) 지방비(60%)의 지원 비율을 50:50으로 재조정 하여 합리성 제고
- 신축시설 수 목표 27개소
- 시설 총 확충 수 45개소 (달성율 167%)

(여성가족부 / 보육재정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영유아보육법 제35조 규정의 의거 취학전 만5세아에 대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학업준비를 돕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내용 :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동에게 1년간 무상보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무상지원 확대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 100% 수준(도시지역은 90%)이하인 가구(농어촌지역 우선 확대)
 -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353만원 (도시지역은 318만원) 이하인 가구
- 지원단가 : 158천원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5조
- 추진형태 : 지자체 보조
- 사업추진절차 :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보육시설(아동)
- 사 업 비 및 지원인원 : 3억원(보조율 50%), 34,029명

3. 연차별 추진계획

- '06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 이하(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53만원)까지 농어촌 지역 지원 우선 확대
- 정부지원단가의 지속적 인상
 - '05년 158천원 → '06년 158천원 → '07년 162천원 → '08년 167천원 → '09년 172천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도말 집행실적 추정은 36,037명으로 당초 설정한 목표치 34,029명보다 5.9% 초과 달성
- ※ '06년도 집행실적 보고기한은 지침상 2월말까지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지원 아동수	총 지원아동수	명	34,029	36,037	106

II. 총 평

- 보다 많은 농산어촌 지역 아동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함.
- 예산의 확보와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의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체계화된 일선 행정조직을 유효 적절히 활용함.
- 영유아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등 동일 업무에 관련된 부처가 많아 의견 수렴과정이 불명확함.

- 유아보육 지원의 경제적 효용을 가계 생활 향상 등 미시적 부분에 치중하고 저 출산대책과 연계한 경제 성장 동력의 확보 등 거시적 부분의 영향에 대한 고려는 미흡함.
- 관계 부처의 미팅의 정례화를 통하여 민간부분의 사회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계생활의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질적 향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 판단이 가능한 미시적 지표를 개발하고 출산율 증가와의 상관성 파악과 같은 거시 경제에의 영향력 이해 분석 판단 지표를 개발·활용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산어촌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농산어촌 생활의 사회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함.
-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정책의 현실성을 높임.
-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경향으로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거시적 고찰이 부족함.
- 관계 공무원과 공적 조직관계자 중심으로 계획이 협의되고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 보다 적극적인 현장 주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함.
- 농산어촌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시 경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지표를 설정하고 보다 많은 일선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성격상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 조직망을 추진 체계로 사용함.
- 국고 보조금 교부를 통해 적시에 차질 없이 자금 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됨.
- 관련 사업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개선 방안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됨.
- 또한, 동일 사업이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실질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점검 및 문제점 해결 방안이 부족함.
- UCC등 IT 신기술을 활용한 홍보 방안 및 신세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의 개발 등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홍보 활동이 부족함.
- 지원 대상 및 지원단가의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이익단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관련자들의 미팅을 정례화하고 이를 매체를 통해 공개함.
-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의 정기적 미팅을 실시함.
- 상투적인 홈페이지의 운용에서 벗어나 신세대 취향에 맞는 적극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이해당사자에 찾아가는 홍보 방안을 강구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까지 상향 확대 조정함.

- 성과 목표치를 전년도 집행실적의 117%로 설정하는 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계량화 한 것은 바람직함.
- 지원금의 보조만으로 농산어촌 경제활동 인구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단순 평가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큼.
- 사업 목표치를 계량화하여 단순 명확화 한 것은 가시적 평가 기준으로는 바람직하나 사업의 질적 성과 분석 및 평가로는 부족함.
- 보육지원금 수혜 가구 부모와의 대화 채널을 개발하여 정기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건의사항을 정책집행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지원금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계량적 사업 목표치 설정 및 분석과 더불어 비계량적 사업성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조사원의 활용 혹은 민간 연구단체의 외부 용역으로 현황 파악 시스템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4인 가구 기준 353만원) 수준 이하 가구까지 지원확대하고 매월 158천원을 지원
 - * '05년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4인 가구 기준 272만원)수준 이하까지 매월 153 천원 지원
- 지원단가의 지속적 인상 : 05년 153천원 → 06년 158천원 → 07년 162천원 → 08년 167천원 → 09년 172천원
- 06년도 말 집행 실적 추정치는 36,037명으로서 당초 설정 목표치 (34,029명)를 상당수 상회할 것으로 예상

(농림부 / 여성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및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목표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2. 사업내용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비('06) : 444억원 (국비 222, 지방비 222)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 영유아(0~5세)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 타부처(여성부, 교육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

○ 사업규모 : 농어업인의 만 0-5세 자녀 33천명/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금액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지급액 : 0세 175천원, 1세 154, 2세 127, 3~4세 79, 5세 158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 (5세아는 100%)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취원아
 - 월지급액 : (국공립) 3-4세 28천원, 5세 56 (사립) 3-4세 79, 5세 158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사업비('06) : 192억원(국비 96, 지방비 96)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으로서 영유아(0~5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규모 : 농어업인의 만 0-5세 자녀 28천명/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금액
 - 월지급액 : 0세 87.5천원, 1세 77.0, 2세 63.5, 3~4세 39.5, 5세 79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25% 수준 (5세아는 50%)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원대상 확대 : ('07) 5ha 미만 → ('08이후) 전농가
- 지원단가 인상 : ('07)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 ('08이후) 75%이상 단계적 확대 추진

○ 사업비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사업규모	32	29	27	25	23	136
사업비	536	520	492	466	440	2,454
· 국비	268	260	246	233	220	1,227
· 지방비	268	260	246	233	220	1,227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원대상 확대 : ('07) 5ha 미만 → ('08이후) 전농가
- 지원단가 인상 : ('07)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 → ('08이후) 50%이상 단계적 확대 추진

○ 사업비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사업규모	46	25	23	21	19	134
사업비	480	460	436	412	390	2,178
· 국비	240	230	218	206	195	1,089
· 지방비	240	230	218	206	195	1,089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 : 농어가 총영유아수 대비 지원비율 57%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32%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25%

- 달성정도 : 농어가 총영유아수 대비 지원비율 61%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36%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25%
- 산출근거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월평균 지원인원 33천명/농어가 총영유아수 92천명 × 100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월평균 지원인원 23천명/농어가 총영유아수 92천명 × 100
- * 농어가 총영유아수 : 2000년 농업총조사 자료에서 연도별 감소율(6.1%)적용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양육비 지원율	(양육비지원 아동수/농어가 총영유아수)×100	%	57	61	107

II. 총 평

- 타 부처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농업인의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
-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이용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사업의 홍보로 지원대상자를 최대화하여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함.
- 농지 소유 규모로 지원 대상 농가를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농업인이 제외되어 지원대상의 확대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지원단가를 저소득층 법정 지원금에 비율로 제한하여 연동하고 있음.
- 연차적으로 농지 소유 규모에 따른 지원 대상 제한 사항을 폐지 추진
- 지원 단가의 연차적 증대로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도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영유아의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 및 생산성 제고와 나아가 도시 젊은이의 귀농을 유도함.
- 관련 행정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킴.
- 지원단가의 지급 기준이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수준의 일정 비율로 한정
-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대비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07년 70%, 08년 75% 이상) 하고 특히 여성농업인의 지원 단가를 조정 (07년 35%, 08년 50%)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읍·면·동 보육시설, 시·군·구 및 지역 교육청간의 유기적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함.
- 지원 단가 적용시기를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학제와 일치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 예산액 대비 집행에 따른 불용액에 대한 추가 설명이 부족함.
- 사업 실행에 따른 피드백에 대한 조사 분석이 부족함.
- 관계기관의 익년도 예산 집행 계획에 불용액을 반영
- 일방적으로 알리는 홍보에서 주민 의견을 주위 담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 유지와 탈농방지에 기여하였으며, 고객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애초에 설정이 낮은 수준이며, 제 3기관의 도움으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강구함.
- 목표 초과 달성이 적극적인 사업대상 누락자 방지 활동의 결과이므로 초기에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함.

Ⅲ. 주요 결정사항

- 06년도 사업비 192억원 (국비:지방비/ 50:50)
- 농업인
 - 지원대상 확대 : 07년 5ha 미만, 08년 이후 전 농가
 - 지원 단가 인상 : 07년 법정저소득층 보육료의 70%, 08년 이후 75% 이상
- 여성농업인
 - 지원대상 확대 : 07년 5ha 미만, 08년이후 전 농가
 - 지원 단가 인상 : 07년 법정저소득층 보육료의 35%, 08년이후 50% 이상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월33천명(연396천명)/444억원
-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월23천명(연336천명)/192억원

(농림부 / 여성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정착 유도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비('06) : 42억원 (지방비 36, 자부담 6)
- 지원대상 : 각 도별로 지원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규모 : 전국 38개소
- 지원형태 : 민간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85%(분권교부세 포함), 자부담 15%
- 지원내용 : 센터 운영자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 센터의 주요사업 내용
 - 필수사업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 임의사업 :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
-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사업량(개소)	99	163	163	163	163	사업량은 연도별 누계 기준
사업비	114	187	181	181	181	
· 지방비	97	159	154	154	154	분권교부세 포함
· 자부담	17	28	27	27	27	

* 지방이양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상의 연차별 계획으로 자치단체별 분권 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정도에 따라 사업목표 수정 불가피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 : 전국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개소수 73개소
- 달성정도 : 전국 38개소 운영으로 목표대비 52% 성과 달성
- 달성을 산출근거 : 각 도별 센터 운영개소수를 합산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운영개소수	총 운영개소수	개소	73	38	52

II. 총 평

- 전국여성농업인센터 협의회를 통하여 전국 단위의 공동논의의 장으로 활용함.
- 센터별 자체 소식지 발간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함.
-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어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목표가 현저히 미달함.
- 지역마다 예산과 시설운영방법이 다르고 기준이 강화되어 운영여건이 악화됨.
- 안정적 재원확보를 강구하고 전국적인 센터 운영개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재원확보의 안정적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수취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 목표를 견지하고 실행함.
- 사업대상자의 필수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지역현실 문제를 해결함.
-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08년까지의 운영목표인 시군당 1개소 설치 어려울 전망이다.
- 사업대상자 선정 관련 규정 개정 및 실질 대상자 선정 시 보다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하고도 구체적인 운용 제도와 시스템이 부족함.

- 국고보조금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 강구
- 보다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를 통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음부즈맨 제도를 도입 실시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를 분리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업자간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함.
- 사업 추진 시 관련된 시군 및 도간의 관계 부처간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구축됨.
-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어 분권 교부세 미 확정등 2007년 예산 확보 불확실함.
- 보다 현장 중심적인 주민 여론 수집과 사업집행 성과 분석이 필요함.
- 지방 사업으로 이양된 점을 고려하여 농림부 차원의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을 강화
- 신세대 주부를 위한 신 IT 기술을 활용한 홍보매체 및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신세대의 센터운영 참여를 적극 유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으로서 여성 농업경영인의 위상 제고와 경영효율을 제고함.
- 아동보육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생활의 여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목표대비 낮은 달성율 (52%) 고려 시 목표치 과다설정 혹은 실행 저조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
- 영유아 양육 지원 사업은 동일지역 동일 대상자를 위한 사업으로 타 부처의 사업과 중복될시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전국적인 센터 설치 개소를 목표로 선정하는 동시에 지방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추진 기간을 장기 세분화
- 사업 집행의 행정적 충돌 및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관계자 미팅의 정례화와 운영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실시

Ⅲ. 주요 결정사항

- 06년 농업농촌종합대책 투융자 계획: 73개소 설치 국고지원 35억원
 - 06년 실적 : 38개소 설치, 분권교부세 26억 지원
- 사업비(06년) 42억원 (지방비 36, 자부담 6)
 - 지방비 85%(분권교부세 포함) 자부담 15%
- 07년 계획 : 사업량(99개소), 사업비(114억) : 지방비(97)/자부담(17)
- 농업, 농촌 종합대책상의 연차별 계획은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자치단체별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정도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함.

(농림부 / 여성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 ~ 계속
- 사업비 : '06년 3,540백만원 (지방비 80%(분권교부세 포함), 자부담20%)
- 사업규모 : 3,505명
- 시행방법 : 매년 지자체 계획에 의거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20%는 자부담
 - 지원인원 : 4,276명
 - 지원예산 : 총 5,675백만원 (지방비, 분권교부세, 자부담)
 - 사업내용
 - 지원단가 인상 : 30천원 → 대구 35천원, 울산38, 충북 35, 충남 35, 경북(영양 35), 경남 35
 - 지원일수 확대 : 30일 → 인천 45일, 경기 60, 충북 45, 충남 45, 전북 50, 경북(안동 90, 영주 60)경남 60, 제주 45
 - 자부담 비율 경감 : 20% → 대전 10%, 전북 10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5개년 계획						비고
	소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 사업량(백명)	170	34	34	34	34	34	
- 사업비(억원)	405.5	30.6	71.4	89.3	107.1	107.1	

* 5개년 계획의 사업량과 내용은 농업·농촌종합대책 투융자 계획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지원인원은 109%, 지원액은 106%로 목표대비 초과 달성
 - 인 원 : 109% (계획 3,505명 대비 실적 3,811명)
 - 지원액 : 106% (계획 3,540백만원 대비 실적 3,741백만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 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가도우미 지원확대	도우미 지원원수	총 지원인원수	명	3,505	3,811	106

II. 총 평

- 일부 지자체의 사업운영이 중앙행정기관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되어 사업내용의 확대 실시를 통하여 여성농업인 복지 여건이 대폭 개선
- 지자체에 따라 복지 분야 사업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으로 지방이양 사업 확대 부진
- 사업 확대 시 지자체의 추가 예산 부담 증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분권 교부세가 지원되도록 방안 강구

- 지역 여성농업인 단체의 지자체 정책관련 위원회 적극 참여로 사업 확대를 추진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여성화 속에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그에 따른 생산성을 제고함.
-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사업의 확대와 축소가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지자체장의 지원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
- 사업 목표량이 지방이양 전 보다 크게 축소됨.
- 사업 확대 지자체와 사업 축소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 교환 및 지자체사업으로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간 정례적 미팅을 정부차원에서 기획 실시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1999년 이후 시작된 이후 여성농업인 복지관련 대표 사업으로 성장 발전함.
-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사무소의 출생신고에서부터 지역보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시행 대상자의 누락이 최소화됨.
- 시도별 재원 조달 금액이 차이가 크며 07년 예산이 미확정됨.
- 지방 이양사업으로 인하여 주민 의견에 대한 정례적, 체계적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운용 활동이 부진함.

- 동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배분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작성시 활용토록 적극적인 창구 지도 실시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여성농업인중 출산한 농업인만 대상으로 하므로 성과 관리가 용이함.
-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은 목표대비 초과 달성함.
-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인원 및 지원금액의 단순 계량적 총액 비교는 실질 효과 분석에 한계를 노출함.
- 출산 여성 사전 예상 불가능으로 지원 인원 및 지원 규모 예측 어려움.
- 지역 여성단체, 여성 의료 기관 및 사회 단체와의 대주민 민원 업무 행정망을 공동 운용하여 사업대상자 누락을 최소화
- 지역별 사업대상자 인원 대비 지원단가의 차등 지원 방안 강구

Ⅲ. 주요 결정사항

- 06년 지원계획 : 지원인원 (3,505명), 총예산 (3,540백만)
 - 07년 지원계획 : 지원인원 (4,276명), 총예산 (5,675백만)
- 지원단가 인상 : 30천원 → 35천원
 - 지원일수 확대 : 30일 → 45일 ~ 90
 - 자부담 경감 : 20% → 10%
- 06년 달성도
 - 지원인원 : 109% (계획 3,505 명 대비 실적 3,811명)
 - 지원금액 : 106% (계획 3,540백만 대비 실적 3,741 백만)

1-3-3-2(계속)	취약농가 인력지원
-------------	-----------

(농림부 / 여성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고농가 영농지원,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 지원으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촌 고령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사업비 : 2,934백만원 (국고 70%, 기타 30%)
- 사업규모 : 영농도우미 4천명, 가사도우미 12천명
- 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사고농가 영농지원 : 농지소유면적 3ha미만 농가의 65세 미만 농업인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 : 65세이상 농촌 고령단독농가,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1개월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 지원액
 - 사고농가 영농지원 : 사고농가당 농촌평균임금의 70% 지원, 남 39,900원/일, 여 26,000원/일 지원, 10일 이내, 민간보조
 -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 : 자원봉사자 10천원/일, 민간보조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5개년 계획						비고
	소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 사업량							
· 사고농가 영농지원(천명)	47		4	8	15	20	
· 고령가구 가사지원(천명)	72		12	15	20	25	
- 사업비(억원)	318		21	39	110	148	

4. 성과목표 달성도

- 사업예산 : 2,054백만원 중 1,470백만원 집행, 71.4% 예산집행
 - 영농도우미 : 예산 1,344백만원, 집행 760백만원 (56.5%)
 - 가사도우미 : 예산 710백만원, 집행 710백만원 (100%)
- 지원인원 : 계획 16,000명 중 88.6% 달성
 - 영농도우미 : 계획 4,000명, 실적 2,180명 (54.5%)
 - 가사도우미 : 계획 12,000명, 실적 12,000명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 위	'06목표 (A)	실적 (B)	B/A
취약농가 인력지원	도우미 지원원수	총 지원인원수	명	16,000	14,180	89

II. 총 평

- 사고 및 고령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영농활동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
- 영농도우미 예산 일부가 미 집행됨.
- 사업목표에 질병이 미 포함되어 농업인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함.
- 영농도우미는 질병까지 확대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가사도우미는 실시로 인상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고농가 및 고령농가 지원을 목표로 설정과 농업인과 가장 밀접한 농협 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함.
- 목표 설정시 질병까지 포함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지자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를 질병까지 확대하고 지원일수를 확대하되 사정에 따라 신축성있게 적용하는 방법 검토 필요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협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추진과 사업이용기간에 대한 제도 개선은 적절함.
- 영농도우미 예산 집행이 저조하고 사고자에 대한 정확한 data의 구축이 필요하고 필요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지원받은 사고 농업인과 고령농가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줬고,
- 성과지표를 농업인 1인당 지원액으로 한정된 것은 불충분함.
- 총 수혜인원을 성과지표로 추가

Ⅲ. 주요 결정사항

- 영농도우미는 질병까지 확대하고 지원일수를 확대하며, 가사도우미는 실비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1-3-5-1(신규)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	-------------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국내 생산원료 및 자원을 활용한 여성농업인 대상 소규모 농산물 가공 사업 활성화로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복지 향상
- 농산물 생산에만 의존한 농가소득증대의 한계 극복으로 농가경제 활력화 도모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2014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180개소 80억원 (국·지방비 각 50%)
- 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 (보조율 50%)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대상
 - 여성의 보유기술 발굴 및 지역 부존자원의 가공, 상품화
 - 지역여건을 고려한 품목선정, 작업장 확보 및 가공장비 설치, 원료 확보
 - 포장용기 및 디자인 개발, 기술력 향상 교육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4년까지 시군당 1~2개소씩 총 180개소 육성, 신규사업 투입
3차년도부터는 사후관리에 중점

구 분	5개년('05~'09) 계획						'10~'14
	'05	'06	'07	'08	'09	소계(B)	
사업량	-	9	9	20	22	60	120
단 가	-	45	45	45	45	-	50
사업비	-	405	405	900	990	2,700	6,000
- 국비							
· 보조	-	202.5	202.5	450	495	1,350	3,000
- 지방비	-	202.5	202.5	450	495	1,350	3,000
- 자부담	-	-	-	-	-	-	-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도 성과목표 달성현황
 - 계획물량(9개소) 모두 여성농업인들의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 기반 조성 완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창업지원 추진율	창업지원추진율	건	9	9	100

II. 총 평

-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 요구를 감안해, 설문·전화 조사 등을 먼저 실시하여 다양한 수요를 파악해야 할 것임.
- 농가의 특성 상 전업주부의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농가를 경영하는 비율이 높은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미혼의 창업농의 경우 경영위험을 내포한 고부가가치 위주의 창업 보다는 소득불안정에 따른 농촌정착률 저하를 막기 위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의지를 고취시키고 농촌에 신활력 공급을 유도한다는 목표는 적절함.
- 또한 여성농업인을 주체로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 설정도 적절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관련 기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창업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 지역단위의 창업센터 운영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및 홍보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없음

Ⅲ. 건의사항

- 수요자 파악을 면밀히 실시하고, 교육을 통해 창업에 따른 경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여성농업인들의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 외에 다양한 종류의 창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생산과 판매의 일관성 있는 포장개선기술 시범지원, 브랜드화 추진으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 농촌진흥법 제2조2항(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농촌진흥법 제13조1항(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2014
- 사업량 및 사업비 : 210개소, 1,046천만원
- 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상 보조사업 추진
 - 기술지도 및 현장교육 병행 추진
- 추진내용
 -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지원
 - 사업장 시설 및 기구보완, 브랜드 개발, 홍보지원 등
 - 상품성 유지와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포장재질개선, 포장방법개선 등 포장/디자인 개선 (소형화·고급화·다양화)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4년까지 총 210개소 지원 계획
- 총사업비('07~'14) : 797천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재 원 : 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 천만원)

재원	'02~'06 (A)	5개년('07~'11) 계획						'12~'14
		'07	'08	'09	'10	'11	소계(B)	
사업량	83	15	16	16	16	16	79	48
단 가	3	3	5	5	5	5	-	-
사업비	249	45	128	128	128	128	557	240
국비	124.5	22.5	64	64	64	64	278.5	120
지방비	124.5	22.5	64	64	64	64	278.5	12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매출 증가율	(금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	50	68.4	136

II. 총 평

-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에게 상품성 제고 및 경영마인드 구비의 필요성을 고취한 것은 성과임.
- 사업의 목표와 사업내용이 부합되지 않음.
- 사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과 농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과 연계 필요
-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 구축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사업목표는 명확하나, 사업내용이 품질향상에 어떻게 기여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불명확함.
-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제품의 품질 향상인지 제품의 상품성 제고인지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주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
-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함.
- 지역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수치상으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농업인에게 제품의 상품성 제고와 경영마인드 구비에 대한 관심을 고취한 것이 부수적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농가소득증대율이 성과지표로서의 적절성에 의문으로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
- 경제적 성과에서 지역간 차이가 심한데, 이에 대한 파악이 미흡함.
 - 경북 의성 116%, 전남 구례 20%

Ⅲ. 주요 결정사항

- 경영주의 경영마인드 제고 대책과 연계 필요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안정적 운영체제와 고객 접근성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장 대표자의 전자 마케팅 능력 향상시키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경영 마인드를 제고 시켜 농촌여성의 농가 소득 증대하여 지역 경제 활력화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2014
- 사업량·사업비 : 1억원 (국비 100%)
 - 우먼팜 메인 시스템 개선 및 30개소 홈페이지 재구축 등,
- 시행방법 : 자체집행
- '06 추진내용
 -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장 홈페이지 보완 개발 : 30개소
 - 사업장 홈페이지 기반시스템의 전반적 기능개선
 - 우먼팜 사이트 개편(www.womanfarm.com) : 상품 진열기능 개발 및 농가 소개코너 개선, 디자인 개선
 - 지속 참여 농가 홈페이지의 기능개선 적용 : 64개소

- 주문/결제, 게시판 등의 기능개선 적용
- 농가별 부여되는 관리자 시스템의 일괄적 기능개선
- 1년간 시스템 위탁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4년까지 전체 시스템 안정적 구축과 연도별 수요조사를 통한 기존 홈페이지 보완 및 신규 홈페이지 구축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2006까지	2007 예산	2008	2009
사업량	-	1	1	1	1
사업비	6	1	1	2	2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 위	'06목표 (A)	실적 (B)	B/A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구축건수	전자상거래메인시스템 및 재구축건수	개소	30	30	100

II. 총 평

-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기 구축된 농가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중요함.
- 관련 유관기관, 관련 사업들과의 협조·연계 체계가 미흡함.
- 기존의 농촌(농업·정보화 사업 또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사업등과의 연계·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 활성화는 중요하며, 이의 유지·관리는 중요하므로 사업목표는 적절함.
- 농촌정보화 관련 기관(부처)와의 충분한 협조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연차별 계획의 내용이 불명확함.
-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방법 강구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기존에 농초지도기관에서 추진해온 사업으로 추진과정은 무난함.
- 연간 1억원의 재원이 사업량에 적절한지와 농가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부문(재원의 55%)까지 추진해야 하는지의문임.
- 사업내용을 사업목표에 맞게 설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이 연말에 마무리되어 정확한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 사업의 수혜 농업인들에게는 정보화 능력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 객관적 성과 평가를 위한 대책(조사) 미흡
- 컨설팅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Ⅲ. 주요 결정사항

-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향상 필요하며 타 포털사이트와의 연계방안

(보건복지부 / 노인요양운영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노인가구 문제 및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해소하고자 가정중심으로 노인을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혜택의 지역편재 해소
- 농산어촌 거주 등으로 인해 보건소,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09년
- 사 업 비 : '06년 55억 (국비 27.5억, 지방비 27.5억)
- 사업내용
 - '06년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16개소 신설
 - '09년까지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센터 (주간, 단기, 가파시설이 복합된 다기능시설) 128개소 확충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시·군·구) → 사업대상 선정(복지부) → 예산신청(시·군·구) → 예산지원(복지부) → 사업시행(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억원)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신축 개소수	56	16	14	27	42
신축 예산	30	55	51	100	162

※ 예산액 중 국고 비율은 '05년 40%, '06년 이후 50%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도 16개소 설치 완료(목표 달성도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센터설치수	총 센터설치수	개소	16	16	100

II. 총 평

-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수발과 간병 등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및 의견을 수렴함.
- 사업내용과 연차별 계획간의 목표치가 불일치함.
- 타 부처의 유사사업과 중복 충돌되는 점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지자체의 예산 확보 지연으로 일정에 차질이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이양시 운영비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계획 절차에 있어서 주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이 대체로 수렴됨.
-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사업내용과 연차별 계획간의 목표치가 불일치함.
- 상위 국정 목표와 부합되나 타 부처의 유사사업과 중복 충돌되는 점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노인인구 비율 및 재가서비스 수요추계가 불분명함.
-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이양시 운영비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조정하여 실행하고 있음.
-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마련
- 연찬회 및 사업설명회 의견 등 평가 및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
- 문제점 및 해결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 함.
- 일부 지자체의 예산확보 지연으로 일정에 일부 차질 발생
- 홍보에 있어서 매체의 다변화가 되지 않고 언론보도에 국한함.

- 예산의 확보는 물론 집행이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약요건을 조기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 검토 되어야 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수발과 간병 등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05년도에 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함.
-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미 실시되었음.
- 비 가시적인 성과의 추가 지표 설정 및 분석이 필요함.

Ⅲ. 주요 결정사항

- 지방비 확보가 늦어져 사업추진의 지연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센터설치 후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함.
- 복지수요자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점 도출 시 해결 및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농업인복지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지역의 다양한 노인보호자원을 발굴하고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인수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촌노인 인력활용 및 복지욕구 충족
- 지리적 조건, 인구밀도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효율성 등의 문제로 재가서비스가 발달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사회중심의 자생적인 노인보호체계 구축 기반 조성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9조(농산어촌 노인복지 증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2008년
- 사업비 : 3억원 (국비 100%)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6~'08) : 4종, 3억원
 - 마을내 이용가능한 노인보호자원의 발굴·양성 및 자발적 참여, 노인보호체계의 자생적 운영 등 다차원적 접근방식의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

- 마을중심의 자생적인 노인보호활동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마을주민들과 사업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하도록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설명회 병행
-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검증 작업을 통하여 완성도 향상
-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지도사업으로 연계하여 농촌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사업비 및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종	-	-	100	-	100	-	100
2007	2종	-	-	100	-	100	-	100
2008	2마을(현장적용)	-	-	100	-	100	-	100
계	4종, 2마을	-	-	300	-	300	-	300

○ 연차별 추진내용

- 지역사회중심 자생적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단위 老老 돌봄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수립 ('06~'08)
 - 老老돌봄 운영체계에 대한 한·일 사례를 비교분석, 우리나라 농촌마을 노인돌봄 적용을 위한 문제점 및 운영방안 도출
 - 노인보호활동 사례분석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1종
- 노인보호자원 역할 수행을 위한 노인봉사원 프로그램 개발 ('06~'08)
 - 노인수발을 위한 농촌 마을단위 노인/주민별 활동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여 대상자별 전문화된 노인수발 기술 프로그램 개발 : 2종
- 농촌지역 노인복지수준 진단지표 개발 지원 ('06~'08)
 -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균형을 위하여 노인복지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 및 관리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건수	프로그램 개발 후 사업에 반영된 건수	건	2	2	100

II. 총 평

- 농어촌 재가복지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에 자생적인 노인보호체계 구축기반을 조성함.
- 농촌 노인의 노인보호 자원으로 적합한 활동범위 설정 및 활동 지침서 발간 등 老-老 케어의 기반을 구축함.
-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의 연계가 미흡하고, 사업내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됨.
- 지역 농협과의 협의가 미흡함.
-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지역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 재가복지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에 자생적인 노인보호체계 구축기반을 조성함.

- 주민의 여론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함.
- 사업규모 3억원에 비해 사업내용이 과다하게 계획됨.
- 사업목표가 다소 추상적으로 사업내용과 연계가 미흡함.
- 유관기관(지역농협 등)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데 충분한 협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보다 심도있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자생적 노인보호활동, 노인수발 봉사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를 계획 및 실행하고 있는 부처간의 서비스 조정이 필요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대체로 홍보 등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 다양한 전문가 집단 및 관련기관의 활용이 이루어 짐.
- 일정관리 등이 기간별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 실수요자의 만족도와 건의 사항의 분석 검토가 필요함.
- 사업추진 시 문제점 파악이 보다 철저하게 요구됨.
- 사업금액이 소규모(3억) 이므로 지역적 배분 성격이 아님.
- 실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예산 증대가 필요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자생적 노인보호체계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농촌 노인의 노인보호 자원으로서 적합한 활동범위 설정 및 활동 지침서 발간 등 老-老 케어의 기반을 구축함.
- 목표치의 적절성 판단이 어려우므로 적용지역수 또는 적용대상인원 등을 지표로 추가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함.
- 실질적인 수요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추가 자료 보완이 필요함.
- 프로그램 개발 건수를 늘리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Ⅲ. 주요 결정사항

- 노인수발 및 가사지원 서비스 등 관련 지원 서비스 사업과 연계 및 차별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프로그램의 개발은 실제 활용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할 때 현장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봉사원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증 제도 마련 등 이와 관련된 기관간 연계협조가 필요함.

(농촌진흥청 / 농촌생활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노인에게 농업·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는 일거리를 발굴하고 생활환경 정비,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등 지원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새로운 노년기 생활문화 정립하고 농촌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
- 사업추진 근거
 - 농촌진흥법(제13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4, 제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2011
- 사업량 및 사업비 : 총 1,160억, 800개소
 - 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3년간, 총 137~150백만원
- 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5 ~ '06) : 300개소 237.6억원
 - 사업내용 : 소득활동, 건강생활, 평생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등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물량 (누계)		800 (2,400)	100 (100)	200 (300)	50 (350)	200 (450)	250 (500)	- (600)
사업비	국 비	583.2	22.3	76	80	113.9	126.5	164.5
	지방비	577	21	75	80	112.5	125.0	163.5
	합 계	1,160.2	43.3	151	160	226.4	251.5	328

* 2011년까지 800개소(개소당 42 ~ 50백만원), 3년간 지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 57% 대비 57.6%로 다소 향상 ('05년 55.6%)
 - 객관적 지표의 생활만족도 : 58.2 (남 59.97, 여 57.17)
 - 주관적 지표의 생활만족도 : 56.2 (남 58.57, 여 55.69)
 - 평 균 : 57.64 (남 59.70, 여 56.44)

* 지대별 평균 : 도시근교(58.1), 산간지역(52.1), 평야지역 : (62.1)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간 개인과 마을의 활력도 및 삶의 질 향상 증가 비율	%	57	57.6	101

II. 총 평

- 고령화시대에 활력있는 노년생활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목표는 적절함.
- 지역의 의견 수렴, 협조체계는 비교적 잘 갖추어 추진함.
- 예산, 물량 등 연차별 계획이 불명확함.
- 사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임.

- 현재 시도하고 있기는 하나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 (3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고령화시대에 활력있는 노년생활 여건 조성은 적절함.
- 지역별, 수요자별 요구와 지원행정단위 조직과의 연계가 이루어 짐.
- 예산이나 물량 등 연차별 추진계획이 불확실 함.
- 경제, 건강, 학습, 사회활동, 환경 분야 등을 접목하여 장수마을 육성이 필요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일선 마을 주민의 실제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됨.
- 일선 현장과 행정조직내 관련 기관의 연계가 이루어 짐.
- 강원 지역에 물량이 과대 배분되어 있음.
- 홍보 등에 있어서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이 필요함.
- 프로그램 운영이 획일적,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되도록 하여 획일성을 탈피하는 노력이 필요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건강 장수마을 설립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목표치 설정이 소극적이며(2005년 55%→2011년 60%) 성과를 달성 하였으나 목표치가 주관적임.
- 생활 만족도만 지표로 설정되기는 미흡하며 소득창출 사업개발 등 지표 개발이 필요함.
- 비가시적 성과의 측정을 위한 지표의 연구 검토가 필요함.
- 3년 지원 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Ⅲ. 주요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에서 수행중인 사업과 중복의 가능성이 높 으므로 노인관련 사업을 연계 또는 통합 추진이 필요함.
- 각 시행 마을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가 필요함.
- 실질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판로 개척이 필요함.

1-4-3-0(계속)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	------------

(농림부 / 농산경영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 및 영농규모화 촉진
 -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48.2천ha를 집중적으로 경영이양 추진
- 사업추진 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2. 사업내용

-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쌀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1997년 ~ 2013년
- 총사업비 : 3,451억원 ('06년까지 기투자액 : 1,412억원)
- 사업규모 : 81,558ha ('06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49,076ha)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지원조건
 - 10년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63~69세의 고령농이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ha당 일정금액을 지급

- 지원 단가

- 매도하는 경우 : 연령에 따라 최단 2년, 최장 8년간 ha당 241천원(연 2,896천원)을 매월 분할지급
- 임대하는 경우 :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지급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시행 : 한국농촌공사)

○ 추진절차

- 대상자 선정신청(농업인→농촌공사) → 현지조사(농촌공사) → 대상자선정·심의(농촌공사) → 대상자 통보(농촌공사→신청 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농촌공사↔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농촌공사→농업인) → 사후관리(농촌공사)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ha, 억원)

구분	합계 (A+B+C)	'04 (A)	5개년('05~'09) 계획						'10~'13 (C)
			'05	'06	'07	'08	'09	소계(B)	
사업량	48,247	4,789	7,267	3,709	2,000	4,000	4,000	20,976	22,482
사업비	2,545	141	221	144	113	193	211	882	1,522

* 예산반영 : 농업·농촌종합대책 ('04.12, '06.12)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목표 : 경영이양율 22%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성과지표(%) (57천명)	18%	21 (68)	22 (71)	23 (73)	24 (76)	25 (80)	26 (83)	27 (87)	28 (91)	30 (97)
경영이양자 (천명)	57천명	68	72	-	-	-	-	-	-	-

- '06년 성과 : 고령농업인 5,214명에게 14,391백만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원하여 3,709ha의 농지를 경영이양
 - 경영이양율 22% (경영이양자 72천명/전체 경영이양대상자 322천호)
 - * 2013년 사업목표 48.2천ha 중 15.7천ha ('04년 4,789ha, '05년 7,267ha, '06년 3,709ha)이양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경영이양률	(경영이양자/전체경영이양대상자) ×100	%	22	22	100

II. 총 평

- 농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점에서 사업목표 설정은 적절함.
- 사업 추진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목표가 하향 조정됨 (05평가보고서 대비)
- 2013년까지의 이양률 목표 30%는 높은 수준은 아님.
- 고령농업인의 보다 많은 경영이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단가의 사향조정이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업경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시대상의 정책 목표와 부합 됨.
- 사업목표가 05년 평가보고서 대비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3년까지의 이양률 30%는 낮게 책정되었음.
- 은퇴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확대가 필요함.

- 현행 제도의 추가 검토와 보완으로 정책 실행의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관련 행정단위와 연계하여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 짐.
- 방문 및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하여 일선 의견을 비교적 잘 반영함.
- 사업 추진시 도출된 문제점 해결에 미흡했으며, 지역별 안배가 어려운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함.
- 실질적인 은퇴농가의 소득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단가와 총액 조정이 필요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고령농업인들의 소득 확보에 기여하였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목표치 (22%)가 낮은 수준임.
- 재원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Ⅲ. 주요 결정사항

- 현재 60세이상 농업경영주가 상당수임을 계획수립 시 고려하여야 함.
- 고령농업인의 이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함.
-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
-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정책이나 단가의 조정과 총액 지불 제도에 대한 효율성 제고의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함.

제2절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I. 총 평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5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중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지원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기 추진하였기 때문에 분리하여 평가하였음. 따라서 실제로는 26개 사업이 평가되었으며 추진된 사업은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음.
- 특히 우수고교 집중 육성 사업이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학교군 구성 운영 등은 농산어촌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됨.
- 우수고교 집중 육성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고 독자적으로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농촌의 특징을 살리고 교육을 발전시키는 좋은 사업으로 여겨짐.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비 부담경감 차원에서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대체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정책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급식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학교군 사업은 학생수가 적어 교육활동이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간 협력을 통해 교육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여겨짐.
- 추진된 사업이 가치가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었으나 시행하는 기관이 적절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음.

-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나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은 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짐.
-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이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은 농산어촌 학생을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농산어촌의 삶의 질 사업에 포함되어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내용상으로는 당연히 농산어촌 학생들도 해당이 되지만 농산어촌의 교육발전에 독자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을 중심으로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평가가 2년째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의 반영정도나 개선 내용이 자체 평가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평가가 단순히 평가에 그치지 않고 차기 계획과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의 조치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차기 자체평가서에 포함되었으면 함.
- 조치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차기 평가에서 평가 한다면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II. 평가결과

1. 분야별 평가결과표(과제번호순)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 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주요	96.0	100	1/1	우수
2-1-1-3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기타	84.0	84.0	19/19	보통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주요	95.0	99.8	3/2	우수
2-1-2-1	학교군 구성 운영	기타	96.0	96.0	1/4	우수
2-1-2-6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기타	80.0	80.0	23/24	부진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기타	88.0	88.0	14/15	보통
2-1-3-2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기타	91.0	91.0	9/11	보통
2-1-3-3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주요	90.5	95.0	11/6	보통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기타	92.0	92.0	7/10	보통
2-1-3-5	도시문화체험학습(방학캠프)운영지원	기타	89.0	89.0	13/14	보통
2-1-4-1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증설	기타	93.0	93.0	6/9	보통
2-1-4-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주요	85.0	89.3	17/13	보통
2-2-1-0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주요	79.0	83.0	24/21	보통
2-2-2-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주요	91.0	95.6	9/5	우수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기타	84.0	84.0	19/19	보통
2-2-3-1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주요	92.0	96.6	7/3	우수
2-2-3-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기타	90.0	90.0	12/12	보통
2-2-3-2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기타	87.0	87.0	15/16	보통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지원	기타	94.0	94.0	5/8	보통
2-3-1-1	교육감 추천 교대 산편입학제 확대	기타	95.0	95.0	3/6	보통
2-3-1-2	교원 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기타	86.0	86.0	16/17	보통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기타	83.0	83.0	21/21	보통
2-3-2-2	교원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기타	83.0	83.0	21/21	보통
2-3-3-2	학교 도서관 및 장서 확충	기타	85.0	85.0	17/18	보통
2-3-4-0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기타	74.0	74.0	25/25	부진
2-3-6-0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	기타	50.0	50.0	26/26	부진
평 균	26개 사업		86.63	87.82		

* 순위는 '평가점수 순위/환산점수 순위'임.

1-1. 분야별 평가결과표(환산점수 순)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 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주요	96.0	100	1/1	우수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주요	95.0	99.8	3/2	우수
2-2-3-1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주요	92.0	96.6	7/3	우수
2-1-2-1	학교군 구성 운영	기타	96.0	96.0	1/4	우수
2-2-2-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주요	91.0	95.6	9/5	우수
2-1-3-3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주요	90.5	95.0	11/6	보통
2-3-1-1	교육감 추천 교대 산편입학제 확대	기타	95.0	95.0	3/6	보통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지원	기타	94.0	94.0	5/8	보통
2-1-4-1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증설	기타	93.0	93.0	6/9	보통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기타	92.0	92.0	7/10	보통
2-1-3-2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기타	91.0	91.0	9/11	보통
2-2-3-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기타	90.0	90.0	12/12	보통
2-1-4-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주요	85.0	89.3	17/13	보통
2-1-3-5	도시문화체험학습(방학캠프)운영지원	기타	89.0	89.0	13/14	보통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기타	88.0	88.0	14/15	보통
2-2-3-2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기타	87.0	87.0	15/16	보통
2-3-1-2	교원 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기타	86.0	86.0	16/17	보통
2-3-3-2	학교 도서관 및 장서 확충	기타	85.0	85.0	17/18	보통
2-1-1-3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기타	84.0	84.0	19/19	보통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기타	84.0	84.0	19/19	보통
2-2-1-0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주요	79.0	83.0	24/21	보통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기타	83.0	83.0	21/21	보통
2-3-2-2	교원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기타	83.0	83.0	21/21	보통
2-1-2-6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기타	80.0	80.0	23/24	부진
2-3-4-0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기타	74.0	74.0	25/25	부진
2-3-6-0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	기타	50.0	50.0	26/26	부진
평균	26개 사업		86.63	87.82		

* 순위는 '평가점수 순위/환산점수 순위'임.

2. 우수사업

-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한국 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농촌출신대 학생 학자금융자지원,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학교군 구성 운영이 교육 여건 개선의 우수 사업으로 평가됨
- 선정된 우수 사업은 농산어촌에서 가정 형편이나 지역적 여건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기 어려웠는데 정부의 정책과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음.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은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비 부담경감 차원에서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대체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정책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군 구성 운영은 농산어촌의 작은 몇 개의 학교가 학교군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한 사업임. 규모가 적어 수행할 수 없는 집단활동, 공동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시설과 인력활용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업임.
-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지도하며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함.
 - 일부 사업의 경우는 재정지원 만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지도가 되지 않아 방만하게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음. 지원되는 재정 사업이 지역의 교육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부진사업

○ 부진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 등임. 이들 사업이 부진하게 평가된 배경에는 타 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적은 사업이나, 사업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은 사업,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임.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어려운 정책임.
-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훌륭하고 농산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데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결과만 받은 상태라 평가할 수 없어 낮은 평가를 받음.

○ 부진사업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음

-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의 교육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나 재정지원이 국가지원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음.
- 농어촌 순회교원수당과 복식수업 수당 지원은 사업의 성격은 바람직하나 수당이 적어 현실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움.
- 교원사택 확충 및 노후 시설 현대화는 농산어촌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데 자금이 늦게 배분되어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음.

Ⅲ. 평가소감

-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문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였음. 25개의 사업에 26개가 평가되었는데 급식지원, 학비 지원, 교육활동 강화 등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교육개선 사업임.
- 많은 사업이 농산어촌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떠나지 않은 농촌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짐. 2005년도에 비해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많이 증가하였음.
 - 농산어촌의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원격교육콘텐츠 개발,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등이 이런 사업에 해당되는데 농산어촌 교육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산어촌형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사업은 농산어촌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음.
 - 급식비 지원이나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등이 이런 사례에 해당됨. 이런 사업이 농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야 함.
- 농산어촌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농산어촌에서 개발하기 보다 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학술정보원 등에서 개발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지역으로 배정되어 추진되었음. 개발의 전문성이나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업을 배정할 필요가 있음.

- 2차년도 이후부터는 전년도 평가의 활용도, 반영도, 개선도 등이 평가에 포함되었으면 함. 이렇게 될 때 평가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됨.
- 많은 사업들이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음. 대응 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여력을 전제로 하는데 자치단체가 경제적 여력이 없어 프로그램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군이 대응투자를 하지 못해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더 어려운 교육환경이 되고 있음. 지역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응투자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빈곤의 악순환이 될 수 있음.
- 이번 평가에서 목표달성이나 준비 중이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은 폐지나 축소보다 다음 기회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 농산어촌 순회교원 수당 및 복식수업 수당, 교원사택 확충 및 노후 시설 현대화 사업과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 사업이 이에 해당됨. 노력이 부족하거나 준비 중이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사업자체는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 가, 재원의 적절한 수준인가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농업인 고교 학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였고, 농산어촌 순회교원 수당 및 복식수업 수당은 수당의 현실성이 적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음. 사업의 성격이 바람직하고 농산어촌의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재원부담이나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아 성공할 수 없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농산어촌에 우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유출을 막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업 방향

- 농어촌 1군에 1고등학교를 선정하여 농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색화된 우수고등학교 모델 육성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교육 살리기 대책」 대통령 보고 ('04.2.23.)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04.3)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05.4.)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비 : 239.2억원 ('06년, 농특 168억원, 특교 71.2억원)

- 재원 : 국고(농특회계, 특교) 50%, 지자체 대응투자 50%

○ 사업규모

- 농어촌 군소재지 30개 고등학교

○ 시행방법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 단위학교

- 사업집행절차 : 사업지원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 →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학교 선정(시·도교육청) →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단위학교)

○ 주요내용

-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권 부여 및 교장 초빙·공모제 우선 적용
- 기숙사, 다목적 설치, 특별교실 리모델링 등 학습력 제고를 위한 교육시설 현대화 지원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교육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 성적우수자 등을 위한 장학금 수혜 확대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억원)					비고	
	'04	'05	'06	'07	소계		
사업량	7	7	30	44	88		
사업비	국비	23.68	60.65	239.2	240	563.53	국비:지방비 (50%:50%)
	지방비	23.68	60.65	239.2	240	563.53	
	계	47.36	121.30	478.4	480	1,127.06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도 우수교 30개를 선정 지정하여 계획 대비 100% 성과목표 달성
- * '04년 7교 → '05년 7교(14교) → '06년 30교(44교) → '07년 44교(88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산어촌 우수교교 집중육성	우수교교지정수	총 우수교교지정수	개교	30	30	100

II. 총 평

- 농촌에 소재한 학교교육의 문제는 '교육만족도 저하→학생 유출→학교 소규모화→교육여건 악화→교육력 미약'이라는 악순환 구조 위에 놓여 있음. 여기서 학생 유출은 농촌학생들의 도시학교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수요자들의 농촌학교 기피를 현상을 나타내며, 도농간 교육격차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임.
-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학생의 도시 유출을 방지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자녀 교육을 안심하고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농산어촌 교육 진흥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2004년에 7개교의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 시범학교를 운영하였고, 2005년에는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7개교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30개교를 선정 지원하였음. 매년 대상 지역을 확산시켜 2007년에는 모든 군 단위에서 1 우수고 육성 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됨. 비교적 단기간 동안 전국 운영체제를 정비시키고 있음
- 사업의 추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업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도교육청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하며, 단위학교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업시행주체는 시·도교육청이지만 실제로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교 발전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단위학교 수준에서 우수고 육성 방향과 과제 설정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체제 정비, 우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시도하고 있음

- 2006년 사업예산은 농어촌특별회계에서 168억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71.2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였음. 국고 6,065백만원, 지방비 6,065백만원으로 총 121억원임.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됨. 지원 예산이 학교 수준에서 기숙사, 강당, 정보실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균형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 사례 발굴 및 연찬회 실시,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유도, 학교운영 매뉴얼 개발 등 학교운영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아직 해당 학교 교원들이 우수고 육성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의 중요성과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 관리가 미약한 수준임. 성과 관리 지표 개발과 함께 성과가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 잠재적 기대효과는 크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일년 단위 사업지원 방식에서 다년간 사업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사업 촉진을 위해 정기적인 사업평가를 시도하고 선도적인 학교,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추진은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착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도 사업목표 30개교 선정,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음. 사업목표가 구체화, 계량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향후 우수고의 성격 정립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의 국정지표와 부합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시범운영계획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음. 사업추진 근거가 명확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산 어촌 교육발전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음. 사업계획이 현실적이지만, 특히 우수고의 의욕적인 교사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절차의 합리성 차원에서 볼 때, 계획 수립 시 주민 여론 수렴, 사전 조사 등을 충분히 이행하였음.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였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중앙기관 계획 수립, 시·도교육청 세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공모, 선정 등의 추진체계는 합리적임. 학교 선정 기준과 절차의 개선 및 선정된 학교에 대한 전문적 지도와 모니터링이 필요함
- 우수 고등학교에 선정된 학교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물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는 없음.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나 유관기관, 주민들의 사업 참여와 협력체제 구축이 활성화되어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행 지역이 적어 사업성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사업 추진 시 나타나 2006년도에 대상 학교를 30개교로 확대하고, 2007년도에 전국 모든 군단위에 우수고를 선정 지원할 계획임

- 학교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예산을 배분하였음. 경쟁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선도적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고는 전액 집행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해당 학교수준에서의 예산집행실적이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설명회, 간담회 등 국민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실적이 있음.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만족도 실시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음.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부 해결한 실적이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2005년 평균 53%에서 2006년 59.7%로 6.7% 상승하였음. 최소 60%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시범학교 운영 7개교, 2005년 7개교, 2006년 30개교로 성과목표 크게 향상되었고, 목표치 30개교 운영 목표는 100% 달성되었음
- 실질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함. 우수학교 운영성과 지표가 재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30개 학교 선정은 성과목표라기 보다 추진실적에 해당함

Ⅲ. 주요 결정사항

-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 육성 사업은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됨
- 2006년에 전국에서 30개교를 우수고교로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07년도에 1군 1우수고 육성 체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됨
- 우수고 육성 사업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음.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BK사업이나 NURI사업 수준으로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실업교육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지역의 실업계고교를 지역특성에 맞게 특성화하여 지역 사회 및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농산어촌 실업계고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로 농산어촌 교육복지에 기여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05.5.12, 교육혁신위원회)
 -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05.12.6, 부총리 결재)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 교육감 및 교장
 - 사업추진절차
 - 교육인적자원부 : 실업계고 혁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원 연수 등
 -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 :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 전환 승인요청 (학교장) → 검토 후 승인(시·도 교육감) → 행·재정적 지원 (시·도 교육감) → 사업수행(학교장)
 - 사업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의 실업계고교

- 사업규모
 -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 지원 : 10개학과(학교)
 - 통합형고 개편·운영 : 5개교

○ 예산 : 지방비 100%

○ 추진 내용

- 학과개편, 특성화고 및 통합형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구비
- 변경된 학과에 맞게 교원들에 대한 연수 실시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05년 ~ '06년 (2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 계			
2005						18,925		18,925
2006						12,500		12,500
(증△감)						△6,425		△6,425

4. 성과목표 달성도

- 특성화고 지정 (목표 10개교/실적 10개교 100% 달성)
 - 동래원예고, 대구자연과학고, 광주자연과학고, 춘천농공고, 강릉농공고, 한국경마축산고, 함평골프고, 호남원예고, 김해생명과학고, 제주관광산업고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실업계고특성화·내실화	특성화·내실화지정 고교수	특성화고 지정(신설)학교수+통합형고로 개편한 학교수	개교	10	10	100

II. 총 평

-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 및 내실화 사업은 농산어촌 실업계고 진학수요 급감에 대비하여 농산어촌 실업계고 경쟁력 강화 및 농산어촌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2006년도 특성화고 학과개편 및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은 10개학과(학교) 임. 특성화고 지정, 학과개편 등의 사업목표는 명확하다 볼 수 있으나, 이 사업들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과 발전 전략은 불명확함
- 특성화고 지정 10개학과(학교)라는 사업목표는 매우 명확함. 그러나 특성화고 지정을 통한 성과는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음
- 2006년도 사업은 농산어촌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내실화 사업이라기보다는 순수 농업고 특성화고 전환 사업으로 보아야 함. 예산은 지방비로 1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2005년 대비 64억원 이상 감소된 규모임
- 사업의 성과지표를 실업계고 특성화고 지정학교수로 설정하고 있는 데, 이는 실적 중심의 성과지표에 불과함. 실질적으로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농산어촌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과 내실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이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 및 내실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 특성화 10개교 육성·전환 사업은 농산어촌 실업계고 경쟁력 강화 및 농산어촌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상위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추진근거 등이 명확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음. 세부 추진계획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도시형 농업고와 농촌형 농업고를 분화 발전시키는 목표 설정 필요가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특성화고 지정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과 발전 전략은 불명확함
- 예산 확보 곤란에 따라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사업의 추진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망됨
- 농림부의 산학협력 농업고 육성사업과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불분명함
-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이 협의회 중심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리고 사업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산어촌 농업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특성화 지원만으로 농촌지역의 농업고 경쟁력이 향상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농촌형 즉, 농산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고 특성화 성과지표가 개발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 및 내실화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중장기적 비전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명확한 목표의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 농촌지역 농업고의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구상과 지원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농촌형 농업고 발전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현재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투자 개입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다시 중앙사업으로 환원하거나 지방재정 교부 시 우선 투자 사업으로 권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농촌진흥청 / 한국농업전문학교)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와 DDA/FTA 체결 등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력 양성
 - 고령화 및 젊은층의 탈농으로 피폐한 농촌에 농촌정착형 차세대 우수 농업CEO 양성교육을 통하여 농업소득 증대와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주도할 농촌사회 리더 육성
 - 농업여건 변화와 농산물 자유무역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기술 농업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차세대 정예농업인력 육성
- 추진 근거
 - 한국농업전문학교 ·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17910호)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2009
- 사업량 · 사업비 : 720명(240명×3학년) + a(직업훈련과정), 683억원
- 시행방법 : 자체집행
- 추진내용
 -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 및 교명변경

- 국내외 장기현장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순회지도·교내 소집 중간 점검·실습비 지원강화 및 학점부여 방법 개선, 실습 농장주에 대한 교육 실시
-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해외현장실습지역 확대
- 현장실습교육 지원비 인상 및 성적 장학금 지원
- 신규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창업농 직업훈련과정 시범 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학제 개편 및 교명변경 추진('06년~'07년) : 학제를 3(학교교육)+3(영농)+1년(추가교육)제로 개편하고 학교명칭을 한국농업대학으로 변경
- 학과 계열화 및 농산업계열학과 신설('07년~'08년) : 농촌관광 및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달 등 농업·농촌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학과 개편
- 현장실습교육 지원비 인상('05년~'09년) : 영농종사 의무이행조건으로 재학기간 중 수업료, 입학금 및 숙식비 등 교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2학년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실습교육비는 숙식에 필요한 기본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업인턴십제 수준으로 증액 지원
- 직업훈련과정 신설('05년~'09년) : 3개월~1년 과정의 창업농 및 귀농자 직업훈련과정 활성화
 - 장기현장실습교육생 현장실습교육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지원인원	240명	240명	240명	240명	240명	1,200명
소요예산	600	600	600	600	600	3,000

- 성적장학금('06년~'09년) : 우수학생 유치 및 면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성적 차등에 따른 장학금 지원 신설
- 졸업생 상사업비 지원('05년~'09년) : 영농종사 의무를 이행중인 졸업생의 영농 경영성과에 따른 상사업비 지원(졸업생의 상위 10%)으로 졸업생의 사기 진작

○ 연차별 투자계획 ('05~'09)

(단위 : 억원)

구 분	'04까지 (A)	5개년('05~'09) 계획					소계(B)
		'05	'06	'07	'08	'09	
□□ 사업량	1	1	1	1	1	1	1
□□ 단 가	528	62	64	68	71	79	343
□□ 사업비	528	62	64	68	71	78	343
○ 국비	528	62	64	68	71	78	343
- 보조	528	62	64	68	71	78	343
- 용자	-	-	-	-	-	-	-

4. 성과목표 달성도

- 당초 제시한 성과목표치 95.0%를 달성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운영	졸업생 영농정착율	매년 졸업생들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한 보고서	%	95	95	100

II. 총 평

-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운영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68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 인력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 이 사업은 현재 3년제 농업전문학교를 4년제 한국농업대학으로 전환하면서 학제개편을 시도하고, 국내외 장기현장실습 교육을 내실화하며, 졸업 이후 사업비를 지급하여 우수한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2006년도 재원은 농특세 64억원, 기금 등 6억원 합계 70억원을 국고로 확보하여 추진하였음. 2009년도까지 대체로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 성공적 사업추진이 예상됨
- 졸업생의 영농 정착률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으며, 2006년도에 당초 제시한 성과목표치 95%을 달성하였고 성과지표도 적합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력 양성, 농촌사회 리더 육성, 차세대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개편하고, 각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목표는 명확하고 적절함
- 사업목표는 상위목표에 부합되며, 한국농업전문학교 설치령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2006년 9월 27일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을 제정한 바 있음
- 수업료, 입학금 및 숙식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실제 영농인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2학년 정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교육실습을 위한 숙식 경비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업인턴십제 수준으로 증액 지원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시험·연구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음. 한국농업전문학교 발전 T/F를 구성, 운영하여 문제점 진단과 대책 마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직업훈련과정은 교육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졸업생영농정착률로 정하고 성과달성을 위하여 영농종사의무제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됨.
- 2006년에는 영농종사의무가 해제되어 영농 정착률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적극적인 추수지도를 통해서 당초 성과목표치 95%를 달성한 것은 성공적인 사업 운영 결과라고 판단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함

Ⅲ. 주요 결정사항

-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운영 사업은 본래 계획대로 충실하게 추진되고 있음
- 졸업생의 교육만족도, 영농정착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소규모학교를 인근학교와 학교군(school complex)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협력 운영 및 시설 공동이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20조(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 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사업규모 및 지원대상 : 20개 학교군, 농산어촌 초·중학교
- 지원액 : 30억원(20개 학교군×3억원×50%),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학교군내 중심학교의 기본시설 현대화 및 공동 활용시설 구비
 - 다양한 협동학습 프로그램운영(외국어 및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 등)
 - 이동수업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제공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50	30	30	30	30	30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사업대비 실적

구 분	계획	실적
▪ 학교군 구성·운영	20	20

○ 만족도 향상

- '06년 학교군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375명을 표집하여 만족도 조사결과 중심학교에서는 77.6%, 협력학교에서는 57.5%의 만족도를 보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학교군 구성·운영	지원학교수	총 지원학교수	%	20	20	100

II. 총 평

- 농산어촌의 학생수가 감소되어 중대규모 집단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근학교와 공동으로 학교군을 구성하여 시설을 공유하고, 학생을 모아 함께 교육활동을 하게 하는 사업임.
- 농산어촌의 지역적 여건상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고, 중대 규모의 교육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근 학교간 시설, 교육활동을 공유하여 교육효과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사업은 필요함.
- 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 5년 동안 계속되어 매년 20개의 학교군을 선정하여 학교군별로 국고 1억 5천만원, 지방비 1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06년도에 20개 학교군에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됨.

- 지원대상은 농산어촌 초·중학교의 학교군이며, 지원된 경비는 학교군내 중심학교의 기본시설 현대화, 공동 활용시설 구비, 외국어 및 특기 적성교육 등 다양한 협동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동수업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2006년도에 20개 학교군이 선정되어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이 지원되어 학교군별로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됨. 지원된 후 학교군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중심학교에서는 77.6%, 협력학교에서는 57.5%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학교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음으로써 지역의 여건에 맞는 학교군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선정된 학교군도 중심학교와 협력학교가 밀접히 연계를 맺어 시설 투자와 교육과정 운영 등에 적절히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그러나 2006년 예산이 하반기에 배정되어 예산을 집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학교군 운영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는 만족도에 한정되어 있으나 제주도 신산초, 온천초, 풍천초의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의 사례도 제시됨. 신산초 학교군의 경우 시설투자 보다 지원된 예산을 각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 투자하고 있음. 세 학교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단위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영어 I, II, III, 플루트교실, 바이올린 교실, 컴퓨터 교실, 국어 수학의 특별교실, 제주 역사·문화 기행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개 학교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더 의미있는 성과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 신산초 학교군의 사례를 보면 학교군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한 우수한 사례로 여겨지고 앞으로 이런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학교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2006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목표가 분명하고 농산어촌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임. 늦은 감이 있으나 농산어촌 학교가 소규모화 되어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사업으로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상위목표와 잘 부합됨.
-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 지가 분명함. 학교군을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명확하여 일을 추진하기가 용이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군으로 선정된 학교들이 어떻게 협조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가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 일을 추진하기가 용이함. 아울러 재정지원이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되면서 이런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항상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의견수렴의 내용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음.

- 지원된 재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분석하여 효과와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추가된다면 이 사업이 보다 더 적절히 수행 될 것으로 여겨짐.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학교군 사업은 인근 학교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시설과 인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 학생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심학교의 만족도가 77%, 협력학교의 만족도가 57% 정도 수준을 보임. 만족도로 보면 아주 높다고 할 수 없으나 신산초의 사례를 보면 단위 학교에서는 개설하기 불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생의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활동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됨.
- 20개 학교군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적인 요소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처한다면 더욱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Ⅲ. 주요 결정사항

- 20개 학교군에 대한 성과와 문제 분석이 필요함.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격이나 농산어촌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학교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역과 예산을 확대하여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 겪는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함.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지도하는 교원들에게도 절실히 요청되는 문제임.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대다수 학교가 지나치게 과소규모화 되어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실시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
- 농산어촌 지역 과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함으로써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호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 제공

2. 사업내용

- 전남곡성군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발전 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 ('05~'09)
 - 학습력 제고를 위한 교과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냉난방비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전라남도교육감·곡성교육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추진계획수립(도교육청) →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운영(지역교육청·단위학교)

3. 연차별 추진계획

- 지원조건
 - 학교재배치 : 15원, 26교, 2분교장 → 8원, 14교

- 규모 : 전남곡성 관내 초·중·고등학교 14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특별교부금

(단위 :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금액	6.14	5	4	3	2

- 교육청 자체 재원과 지자체재정을 점진적으로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정부 지원 축소

4. 성과목표 달성도

- 타지역 출신 중학교 졸업자중 곡성지역 고교 입학 지원자 급증
-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감소, 복식학급 완전해소
- 통폐합에 따른 예산절감 (연간 63억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만족도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설문조사	%			측정 불가

II. 총 평

- 농산어촌의 과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화 하여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 그동안 추진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달리 군지역의 전체 학교를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군지역 차원에서 학교를 재배치하여 적정규모화 함으로써 부분적인 재배치나 통폐합의 문제를 극복하고 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교육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적정규모화 사업은 2003-2004 년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이 마련되었음.

- 이 사업은 2005년도에 6.14억원, 2006년도에 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 3년간에 걸쳐 9억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지원된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학습력 제고를 위한 교과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냉난방비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임. 지원된 사업의 내용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의 시범 지원의 성격에 잘 부합되지 않음.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의 사업이라면 적정규모화를 위한 방안 연구나, 적정규모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과 같은 사업 내용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런 내용 보다는 일상적인 학교 운영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도 곡성군 지역 이외의 학생이 많이 지원한 것과 지역의 우수 학교가 되었다는 점인데 지역의 학교가 우수 학교가 되었다는 점은 좋은 성과라 여겨지지만 곡성군 이외의 학생이 많이 진학하여 우수고가 되었다면 곡성군 교육을 위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곡성군에서 2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곡성군 이외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곡성군의 교육을 위한 지원책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사업의 목적에도 맞지 않음.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은 타 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적으며, 특정 지역의 교육활동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음. 시범지역의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하고 가능하다면 이런 사업이 타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의 목표가 적정규모화한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통합 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의 일부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임. 이는 학교가 축소되면서 절감되는 예산을 시혜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 적정규모화 후 적정규모 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사업지원으로 사업계획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수행된 사업의 내용도 적정규모화한 학교의 특성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일상적인 학교의 교육활동과 다르지 않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은 곡성교육청과 군청이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학교가 적정규모화 된 후 우수한 교육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군청의 지원이 매우 적극적임. 군청이 2005년에 24억원, 2006년에 26억원의 지원을 하였음.
- 지원된 예산은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과 대학입학을 위한 교육 활동에 주로 지출되었으며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은 저조한 실정임.
- 군민의 지원 속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곡성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에 대해 주민의 동의를 얻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화 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경비를 절약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점에서 적정 규모화 사업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걱정규모화 하면서 절감된 예산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걱정규모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 사업은 가치 있다고 여겨짐. 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도 높고 지역의 학교가 좋은 학교, 우수 학교로 성장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함.
- 그렇지만 걱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사업 성격도 걱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의 성격과 잘 부합되지 않아 문제가 됨. 걱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시범지역의 지원이라면 일반화 가능성, 타 지역에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지원된 사업이 지역의 걱정규모화된 학교의 효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역에 확산 가능성이 적을 경우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곡성지역의 학교 감축으로 절감된 비용은 곡성의 발전을 위해 지출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전체 예산을 곡성을 위해 배정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일부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배려는 필요함. 이런 배려가 있어야 걱정규모 사업이 타 지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이런 재정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정한 사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절감된 비용의 일정액을 교육청의 예산에 자동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교육청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교육발전을 추진할 수 있음.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정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 복식학급의 수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
- 개발된 교재의 적용 프로그램 개발
-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적 삶의 질 제고
 - ※ 복식수업 : 상학년, 하학년의 2개 학년 또는, 그 이상의 학년이 한 학급으로 편성되어서 교육을 영위하는 복식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09년
- 총사업비 : 10억원 ('05년까지 기투자액 : 없음)
- 사업규모(단위 : 억원) : 2억원 ('06년 투자액)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 추진 내용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2006. 2)
 - 사업추진 도교육청과 연구학교 선정 (2006. 2)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년도	사업비	추진 계획
2006년	200	-복식수업교재 개발 : 37.5×4과목 = 150 -복식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 : 10×2과정 = 20 -연구학교 운영 : 10 × 3개교 = 30
2007년	200	-복식수업교재 개발 : 20×6과목 = 120 -복식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 : 40×2과정 = 80
2008년	300	-복식수업교재 개발 : 20×7과목 = 140 -복식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 : 40×2과정 = 80 -연구학교 운영 : 20×4개교 = 80
2009년	300	-복식수업교재 개발 : 0.2×7과목 = 140 -복식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 : 40×2과정 = 80 -연구학교 운영 : 20×4개교 = 80

4. 성과목표 달성도

○ 복식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2억

- 복식수업교재개발(6종), 기총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2과제), 연구학교 운영 (3개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복식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개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수	종	8	8	100

II. 총 평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복식수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높은 교재 개발은 필요한 일임.

- 그러나 교재 개발과 개발된 교재의 활용은 별개로 진행된다면 교재 개발의 의의를 찾기 어려움으로 계획 단계부터 교재 개발과 교재의 활용 계획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개발된 교재 개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많은 현장 교사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2006년도에는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정보원에서 개발하였음. 이것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종래 경험에 비추어 복식수업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 및 학력 향상을 추구한다고 하였으나, 연구학교는 연구학교 기간 이후에도 해당 모델이 지속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음.
 - 연구학교 방식 이외에 복식학급 담당 교사들의 자생적 교재개발 및 현장의 경험 공유를 위한 동아리 모임 지원 등, 동아리들 사이의 워크숍 지원 등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당초 계획한 대응투자가 미흡하였으나 사업의 성과는 달성한 것으로 진단하였으나 대응투자가 미흡한 사유 등에 관하여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역의 예산 규모가 적을 경우 중앙의 여러 정책 사업들에 대하여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이 무리일 수 있음.
 - 그렇지 않다면 계획과 달리 대응투자를 유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전라남도 한 도에서 개발하고, 연구학교 3학교에서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소규모학교의 교육의 질 개선'을 성과로 내세우기(59쪽)에는 무리가 있음.
 - 복식수업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산어촌의 학습여건이 개선되어 도농간의 학력격차가 완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60쪽)은 무리임
- 성과를 개발한 교재의 중, 건수로 파악하는 것은 개발된 교재의 질이나 활용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과지표가 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음.

Ⅲ. 주요 결정사항

- 복식수업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중앙에서 예컨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력하여 국가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모델을 개발하고 각 지역에서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 개발된 교재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교재 개발보다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 동아리 활동 지원, 온라인 지원 등이 필요함. 시도, 혹은 일부 군 단위에서 복식수업을 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온라인 상에서 묶어 서로의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 지도의 경험을 공유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정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본 사업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산어촌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중기(‘05~’09)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됨
- 특성화된 전문계열의 교과 내용을 원격 콘텐츠로 개발하여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공동 이용함으로써 농산어촌 교육의 다양성을 꾀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교육적 삶의 질을 제고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종결)
- 총사업비 : 3억원 (‘05년까지 기투자액 : 없음)
- 사업규모 : 3억원 (‘06년 투자액)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 추진 내용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06.2), 사업추진 도교육청 선정 (‘06.2)
 - 연구학교 선정 (‘06.2)
 - 세부사업 추진 협의회 실시 (‘06.4, ‘06.8, ‘06.12, ‘07.1)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년도	사업비	추진 계획
2006년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용 e-러닝 콘텐츠 3개 교과 5종 개발 ○ 실업계 고교 계열별 원격교육 콘텐츠 5개 계열 5개 교과 개발 ○ 원격교육 콘텐츠 적용 기초연구 ○ 실업계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연구 ○ 실업계 특성화 프로그램 연구학교 운영

4. 성과목표 달성도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3억
 - 원격교육콘텐츠개발 (10종),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2과제), 연구학교 운영 (3개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콘텐츠 개발	콘텐츠개발 및 프로그램개발수	종	10	10	100

II. 총 평

- 학습 과정에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의 의의가 있음. 종래 교사 중심의 텍스트형 교수-학습 자료보다 멀티형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의의가 있음.
- 개발될 콘텐츠의 활용 방안과 함께 계획되지 않은 콘텐츠 개발은 그 효용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개발된 콘텐츠의 활용을 위하여서는 수요가 많은 영역과 내용이어야 할 것임. 수요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자체에 목적이 있기보다 그 활용까지를 고려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적용 기초 연구, 프로그램 연구, 교재 개발이 모두 한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짐. 관련 사업의 통합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일 수 있으나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체계적 수요 조사가 필요함. 자체평가보고서에서는 지방비 투자 계획과 관련한 조사를 하였다고 함.
 - 그러나 어떤 내용을 우선시하여야 할지, 수요가 많은지에 대하여서는 더 체계적인 조사에 근거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체육에 관한 콘텐츠로 골프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수요 조사에 기초한 것인지, 활용도가 높을지 검토가 필요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은 2006년에 종료되는 사업임. 원격교육콘텐츠가 충분히 개발되었는지, 그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대응투자가 미흡하여도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함. 농산어촌 지역 교육을 위한 투자 사업의 경우 대응투자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2006년도 사업에 대한 발표회 등이 모두 2007년 2월로 계획되어 있어 발표회에서 제기된 문제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알기 어려움
- 성과를 개발한 콘텐츠의 건수로 파악하는 것은 개발된 교재의 질이나 활용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과지표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농산어촌 지역의 실업계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이 농산어촌지역의 교사 확보 어려움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텍스트 위주의 것보다 멀티형으로 개발한다고 하였으나, 향후 이의 활용 및 보급,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계획이 요구됨.
- 원격교육을 위하여서는 콘텐츠 개발에 머물 것이 아니라 향후 사이버 학습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라인 상에서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교육인적자원부 / 영어교육혁신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확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영어교육 수준 제고
 - 농산어촌 원어민 배치를 통하여 도시와의 원어민 접근도 격차 해소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사업비 : 340억 (지방비 100%)
- 사업규모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680명 초청·활용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 사업 주요 내용
 - 초청 인원의 확대 : 시·도 자체 계획에 의거
 -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에서 계획한 인원을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중학교 및 농·산·어촌(도서벽지) 등 교육여건 낙후 지역 우선 배치

3. 연차별 추진계획

- 재원 : 지방비 100%
 - ※ 2010년까지 전 중학교에 원어민 1인 배치 목표
 -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예산 : 연간 5,000만원 소요

4. 성과목표 달성도

- 중학생 응답자(1272명)의 66.9%가 만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학생만족도	목표 만족도	점	60	67	112

II. 총 평

- 초중등학생 및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및 영어교육 수준 제고를 위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임.
- 농산어촌의 접근성의 어려움 때문에 수준 높은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확보가 어려움으로 우리 나라 영어교사가 보조교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임.
- 2010년까지 전 중학교에 원어민 1인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지방비로 전환하고 있는 바, 지방비의 예산 확보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원어민 교사의 활용이 가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어민 교사 활용 못지 않은 효과를 지닌 영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농어촌 지역 영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원어민 교사의 확보가 어려워 자칫 검증되지 않은 교사가 선발될 수 있으므로 원어민 교사에 대한 관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의 구체성

- 원어민 보조 교사의 모집, 관리, 배치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각 시도별로 배치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 순회 교사로 활용하는 방식 등에 관한 계획이 연차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임.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의 어려움 타개 방안 모색 필요

- 농산어촌 지역에 배치될 수 있는 원어민 교사 확보는 어려움이 예상됨. 원어민 교사도 장기간 같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학생특성 파악이 되며 전문성이 신장될 것이나 장기간 근무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원어민 교사에 대한 평가, 담당 프로그램 등에 관한 관리가 필요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2006년도 중학생 응답자 중 66.9%의 만족도를 보임. 해마다 2%씩 만족도를 높이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계적인 만족도 제고 계획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

○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교사이며, 학부모, 학생 순서임.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가 있음. 고등학생의 만족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족도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만족도의 높고 낮음의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이 사업 관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야 함.

Ⅲ. 주요 결정사항

- 영어 보조교사 활용 - 문화적 교류의 일환으로 접근 검토
 - 영어보조교사를 수업시간의 보조교사로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보다 다른 나라와의 문화 교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영어보조 교사의 이직율, 한 지역 근무 지속 기간 등을 점검하고 원어민 교사에 대한 관리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어보조 교사 확보 자체가 문제가 되다보니 영어보조교사의 애로 사항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교사들이 영어보조교사를 어떻게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느냐의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 방과후학교기획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소질·적성 개발 등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
 - 방과 후 보육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부모의 근로활동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 ~
- 사업비 : 16,950백만원 (지방비 100%)
- 사업규모 : 농산어촌 19개군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 사업 주요내용
 - 농산어촌 학생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
 - 지자체와 협력하여 초등보육 시설,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비, 이동수단 등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사업비 : '07년 994억원, '08년 1,429억원, '09년 1,348억원, '10년 1,348억원, '11년 1,348억원 (지방비포함)

○ 사업규모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 88개시·군('07) → 51개 도농복합시
추가, 총 139개 시·군 ('08~)

4. 성과목표 달성도

○ 방과후학교 만족도 68.6% (목표치 : 65%)

* 리서치앤리서치, 전국 학부모 7,465명 대상, '06.11)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학부모 만족도	목표 만족도	%	65	69	106

II. 총 평

- 인적자원의 부족 등으로 교육여건이 낙후한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학습, 문화적 소외의 극복, 교과 학습 보충 등의 의의를 지니는 중요한 사업임.
- 지자체, 대학, 기업체 등이 농산어촌지역의 방과후학교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적, 물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의 핵심적인 관건은 수준 높은 강사를 확보하는 것임.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우수 강사를 농산어촌지역 학교로 유인할만한 전향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공모제는 나름의 의의가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응투자를 할 경우 더 열악한 지역이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요구됨.

- 방과후학교 사업이 정치 변화에 따라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방과후 교육활동의 성과는 다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수요자의 만족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농산어촌에 적합한 모델이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될만한 토대를 갖추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다음 사항에 있어 세부추진 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망됨.
-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확대 계획, 예산 투자 확대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전년도에 평가보고서에 지적되었으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우수 강사의 확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이 결여되어 있음.
- 우수 강사가 농산어촌의 방과후 활동 강사로 올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유인가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강사의 이동 거리,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의 강사비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군 단위의 지원 확대 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88개 시군('07년도) →139개 시군('08년도)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즉, 지속적으로 공모제를 통하여 확대할 것인지, 혹은 공모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등에 관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예산 확보 방안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건의 사항에 제시되어 있듯이 향후 지방비부담 비율을 축소하고 국가의 지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예산 확보 계획에서 단지 '시·도교육청의 투자 독려' 이상의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함.
- 계획 수립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가 필요함. 주민여론 수렴, 관계부처 협의, 사전 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주요한 내용이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어떠한 문제가 남아 있는지 등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방과후학교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청소년위원회의 방과후아카데미,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 등과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명백히 제시하여야 할 것임.
- 계획 단계에서 청소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유관 사업과의 연계 협력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부처간 협의 뿐만 아니라 교육부 내 멘토링 사업, 도농복합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들 사이의 연계 협력 내용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서는 지역의 열악성, 저소득층 학생의 규모 등 객관적인 지표를 지역 단위로 산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은 바람직하나 모니터링 결과와 결과에 대한 추후 반영 과정이 드러나야 할 것임. 모니터링 실시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중요함.

- 모니터링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였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정책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파악과 대안 모색에 적극적인 지닌 사람들로 구성하여 협의를 통하여 방식을 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추진과정에서 컨설팅단, 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의 내용과 향후 대처 방안을 공개화하여 정책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단의 활동이 모니터링 활동과 구분된다면, 현장에서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조언의 내용, 그것을 정책 방안에 반영하는 과정 등을 밝힐 필요가 있음.
- 2006년도에는 5월에 공모제 공고를 시작하여 사실상 2학기부터 사업을 실시하였음. 2007년도 사업은 새 학년도가 시작하는 1학기부터 추진 되어야 할 것임. 사업 추진이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前) 학년도 겨울 방학에 공모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지방과의 대응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여건상 대응투자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대응투자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컨설팅단 운영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 수요자 만족도, 지속적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지 조사 자료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 지표가 제시 되어 있지 않음. 교육격차 해소, 학습 능력 향상 등은 단기간의 성과 지표로 활용되기 어려운 것들임.

- 방과후 교육활동 만족도 조사를 장기적으로 정교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 단지 만족하냐의 여부를 단도직입적으로 조사하기보다 방과후 학교의 효과를 다차원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자체평가보고서 89쪽 내에 46.2%과 68.6%로 다르게 보고되고 있어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움).
- 만족도 조사 결과 목표치를 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보통이나 불만족도도 적은 편이 아니므로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농산어촌 모델 정착을 위한 지표 개발이 요망됨. 예산 확보, 프로그램 개발, 강사 활용 등에서 농산어촌 자구적 모델 제시가 필요함. 또한 요구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확보 정도, 프로그램의 안정적 개설 유지 등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Ⅲ. 주요 결정사항

- 농산어촌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어촌형 모델이 더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근거하여 도교육청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한 안내, 방향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대응투자를 지속할 경우 대응투자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하여 대응투자 비율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우수 강사가 농산어촌의 방과후 활동 강사로 올 수 있을 정도로 강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타부처의 유관사업, 즉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위원회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등과의 연계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임.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폭력대책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 및 내실화로 교육 복지 증진
-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의 도시문화체험학습으로 문화적 지체 현상 완화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대통령 공약사항 :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제정,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 보고 (‘04.2.23)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4 ~ 2007. 1
- 사업규모
 - 사업 시행대상 : 면지역이하(도서벽지) 초등학교
 - 사업규모 : 초등학교 2,070개교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학생)의 도시체험학습 운영 및 예산 지원
 - 총사업비 : 국고 10.35억원, 지방비 10.35억원, 총 20.70억원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 2009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운영

○ 사업추진실적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1,669개교/119,356명 실시
- 시·도교육청별 도시체험학습 우수 사례 조사 및 홍보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문화체험학습 실시로 교육효과를 높임
- 도시문화체험학습 장소 : 문화유적(사찰, 성터, 궁궐 등 유적지 및 문화재), 공공기관(시청, 소방서, 교육청 등), 문화시설(각종 전시회, 영화관, 도서관), 산업시설(산업체, 공장, 백화점 등), 체육시설(운동장, 경기관람 등)

○ 사업 추진방법

- 지원형태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 신청을 받아 추진
- 사업수행주체 : 시·도교육감
- 사업집행절차 : 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예산지원(교육인적자원부→시·도교육청)→세부계획수립(시·도교육청)→도시문화체험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해당학교)→계획 검토 및 선정·지원(시·도교육청)→도시체험학습 운영(해당학교)

3.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기간 및 일정

- 추진기간 : 2005년 ~ 2008년
- 추진일정

주요업무	5개년('05~'09) 계획					비고
	'05	'06	'07	'08	'09	
○ 도시문화 체험학습 (방학캠프) 운영	10.35	10.35	11.00	10.00	-	'09이후 시도 이양

○ 연도별 사업비

(단위: 억원)

연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비	10.35	10.35	11.00	10.00	-
향후추진계획	2009년 이후는 시·도이양 사업으로 지방비로 추진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성과 목표	달성도	비고
만족도 85%	만족도 90%	목표 초과 달성

○ 방학캠프 운영의 성과 목표 달성도는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설문지를 통해 분석 평가하였으며 설문지 분석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방학캠프 운영 지원	만족도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설문조사	%	85	90	106

II. 총 평

- 면지역의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임.
- 도시문화체험이 교과 학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역사, 산업, 문화 체험 학습의 맥락 속에서 의의를 가지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일회적으로 도시체험학습보다 도시와 농촌 교류 체험 학습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학생, 학부모, 학교의 도시 체험 학습 수요를 반영은 긍정적임. 학교별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체험학습 세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람직함.
- 도시문화 체험을 위한 방학캠프로 학생의 문화적 지체 현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임.
 - 농산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문화적으로 지체되어 있다는 전제는 문화적 편견일 수 있으므로 교육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 도시 체험 자체의 의미를 지니기보다 도시와 농촌의 관계, 상호 의존성을 이해, 비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도시와의 교류 체험활동 확대를 위하여 도시 지역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도시 지역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시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긍정적임.
- 전년도에도 지적된 교사의 업무 과중과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학교안전공제회 활용 방안 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 지역의 자원 봉사자 활용 등을 통하여 교사의 학생 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총사업비 10.35억원을 면소재지 초등학교 1,669학교에 지원할 때 학교당 지원액은 약 62만원 정도에 불과함. 이러한 예산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통비, 숙박비, 체험학습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사업임.
- 다양한 역사, 문화 체험학습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거나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학생, 학부모 만족도 85%가 목표였으나 90%이므로 목표 초과 달성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대변할 수 있는지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성과 관리를 만족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쾌적한 학습 과정에 대한 점검 문항이 필요함. 단순한 만족도 제시로 성과를 대변하기보다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됨.
- 교사들의 업무부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것에 대한 교사들의 모니터링도 성과 관리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일회적인 견학이 오히려 문화적 괴리감을 심화시킬 수 있음.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따라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아닌 일방적 도시문화 체험(견학)위주의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미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예산 확보의 다각화: 예산지원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도시지역 지자체의 지원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07년도에는 지방비로 대응투자 50%를 확보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 있는 바, 이것은 기존 예산을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된 예산은 중앙에서 제공하고 지방비를 더해주는 방식이어야 할 것임.
- 체험학습 과정에서의 교육적 의의, 안전성, 쾌적성, 내실성 등이 담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도시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용 등이 요망됨.

(교육인적자원부 / 유아교육지원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유치원 부족지역 중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 교실 개·보수비 지원을 통하여 공립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유아들에게 유아교육 기회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06년도 150학급
 - 지원대상 : 농산어촌 지역 공립 병설유치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Matching Fund (보조를 50%)
 - 사업시행 주체 :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
- 시행방법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교육인적자원부) → 예산 교부(교육인적자원부) → 예산 배정 및 집행(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 결산 보고 및 정산(시·도교육청)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07	'08	'09	'10	'11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30학급	30학급	30학급	30학급	30학급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달성비율 (4분기까지) : 목표 150학급수, 실적 121학급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신증설학급수	신증설학급수	학급	150	121	81

II. 총 평

- 과거 정부의 농산어촌 교육지원정책은 주로 교육비 및 학자금, 장학금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소득 보전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있었음. 이에따라 교육비 지원에 비해 교육의 질 및 질 높은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농산어촌 학부모의 요구는 정책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임.
- 특히 유아교육의 특성상 접근성이 좋고 농어업인의 요구에 맞는 질높은 유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의 확충 등이 절실퟈었음. 실제 적합한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유아교육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 것이 사실임.
- 이같은 평가를 고려할 때 200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된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및 종일제 운영 환경개선 사업은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는 2005년 삶의 질 평가에서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평가에서 주요하게 언급했던 사항이 반영된 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이후에도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참고> 2005년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평가 중 일부내용

- 농산어촌에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우수한 유아교육기관이 충분히 존재하는가 등이 또 다른 문제로 남을 수 있음.
- 특히 만 3, 4세아의 차등교육비 경우 농산어촌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하여 실제 이용하고 싶은 농어업인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따라 단순히 유아교육비 지원이라는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인 학부모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만 3, 4세 아의 보육기능을 확충하여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적인 조치가 함께 있을 때에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목적이 이뤄질 것이라고 봄.

- 다만 2006년도 계획 대비 실적이 81%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비 지원이 국비와 지방비 50:50,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지방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의 경우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의 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농산어촌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지방재정 자립도의 수준에 따라 매칭펀드 비율을 다양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조치가 필요함.
-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현장의 신청에만 근거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전국 농산어촌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의 관점에서 사업 필요지역을 사전조사하여 연차별로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대로 시도 및 시군 지방재정 자립도 수준에 따라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임.

-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0학급으로 지원 폭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수요를 재점검하고 매칭펀드 비율을 조정하는 등 사업내용을 개선하여 농산어촌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적극 반영, 사업량을 재조정하는 등 조치가 강구돼야 할 필요성이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정책사업에서 접근성이 좋고, 적절한 유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아교육기관 설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제돼야 하는 조건임.
- 즉, 아무리 정부가 자금지원을 해도 농어업인과 자녀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없을 경우 그 자금지원은 생색내기용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및 종일제 운영 환경개선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현장지향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유아교육비 지원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 질 향상 등 앞으로 농산어촌 유아교육사업의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 국비와 지방비가 50:50으로 매칭돼 사업비를 조달함으로써 지방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체계를 이용하였으며, 지역의 신청을 근거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반적으로 집행체계와 방식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시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지방비 지원비율을 낮추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바 지방재정 자립도의 수준에 따라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등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추진지침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현장의 신청에만 근거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전국 농산어촌 유아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의 관점에서 사업 필요지역을 사전조사하여 연차별로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대로 시도 및 시군 지방재정 자립도 수준에 따라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산어촌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와 유아교육비 지원 및 프로그램 질 향상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 정책사업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150학급, 37억5천만원 지원을 계획했는데 비해 실적은 121학급 (신증설 55학급, 환경개선 66학급), 35억원으로 학급수에서는 81%, 지원액 측면에서는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단위학급당 실집행액이 추가 투자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계획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집행액이 충분히 반영돼 현실적인 예산 확보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Ⅲ. 주요 결정사항

- 정부의 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농산어촌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지방재정 자립도의 수준에 따라 매칭펀드 비율을 다양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조치가 필요함.
-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신청에만 근거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전국 농산어촌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의 관점에서 사업 필요지역을 사전조사하여 연차별로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대로 시도 및 시군 지방재정 자립도 수준에 따라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임.
-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0학급으로 지원 폭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수요를 재점검하고 매칭펀드 비율을 조정하는 등 사업내용을 개선하여 농산어촌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적극 반영, 사업량을 재조정하는 등 조치가 강구돼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유치원 시설측면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우수한 유치원교사를 확보하고 질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절실함.

(교육인적자원부 / 유아교육지원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저소득층의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 구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3. ~ 2007. 2. (1년간)
- 지원인원 : 307,734명 (도시지역 포함)
 - 만5세아(142,476명), 만3·4세아 차등교육비 (155,258명)
 - 두자녀 이상 교육비 : 10,000명
- 소요예산 : 197,195백만원 (도시지역 포함)
 - 만5세아 무상교육비(116,835백만원), 두자녀 이상 교육비 : 2,820백만원
 - 만3·4세아 차등 교육비 : 77,540백만원
- 시행방법
 - 매년초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수립
 - 사업비는 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지원
 - 사업시행주체는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

3. 연차별 추진계획

- 중장기 계획 ('07~'11)

구 분		'07	'08	'09	'10	'11
지원계층		평균소득 100%이하	평균소득 100%이하	평균소득 130%이하	평균소득 130%이하	평균소득 130%이하
전 체 아 동수	만5세아	512	476	475	472	472
	만3,4세아	954	949	942	933	933
지 원 아 동 수	만5세아	152	183	209	208	208
	만3,4세아	168	262	314	326	326
지 원 비 율	만5세아	29.7%	38.5%	44%	44%	44%
	만3,4세아	17.6%	27.6%	33.3%	34.9%	34.9%
소 여 예 산 (지 방 비 포 함)	만5세	1,282 (2,564)	- (3,316)	- (3,874)	- (3,956)	- (3,956)
	만3,4세아	751 (2,564)	- (2,350)	- (2,614)	- (2,714)	- (2,714)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달성비율 (4분기까지)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만5세아 중 무상교육비 지원율	신청인원 대비 지원인원(95% 이상)	118천명 신청, 전원 지원	100%
만3·4세아 중 차등교육비 지원율	신청인원 대비 지원인원(95% 이상)	74천명 신청, 전원 지원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 위	'06목 표 (A)	실 적 (B)	B/A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수혜율(만5세아)	(지원인원/만5세아수) ×100	%	95	100	105
	수혜율(만3,4세아)	(지원인원/만3,4세아수) ×100	%	95	100	

II. 총 평

- 농산어촌 학부모, 특히 농어업인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충 중의 하나가 교육비 부담과 도시와의 교육 격차라는 것을 감안할 때 농산어촌 유아교육비 지원은 매우 중요한 농어업인 교육복지 정책 중임.

- 또한 농산어촌 유아들에게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기능을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봄.
- 하지만 현재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평가형식은 도시와 농어촌만을 구분함으로써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현황과 개선점 등이 파악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지난해 삶의 질 평가에서 사업평가 틀을 도시와 농어촌 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으로 세분화하여 정밀하게 진단하고 평가,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
- 또한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 유아교육비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35%의 응답자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사항 도출에 더욱 철저한 이행이 이뤄지기를 바랍.
- 아울러 현재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농림부의 영유아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지원 사업 등으로 주관기관과 사업비가 분산 지원됨으로써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부서별 협조체계와 현장 확인이 중요함.
- 또한 경제 불안 및 사회양극화 등으로 조손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노령농어업인의 경우 정보력 부족으로 정책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를 위한 정책 홍보 및 특별한 배려와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임.
- 농산어촌에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우수한 유아교육기관이 충분히 존재하는가 등이 또 다른 문제로 남을 수 있음.

- 특히 만 3, 4세아의 차등교육비 경우 농산어촌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하여 실제 이용하고 싶은 농어업인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따라 단순히 유아교육비 지원이라는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인 학부모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만 3, 4세아의 보육기능을 확충하여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적인 조치가 함께 있을 때에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목적이 이뤄질 것이라고 봄.
- 현재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대부분 농산어촌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음. 농어업인의 경우 법정저소득층을 판단할 때 소득인정액에서 재산상황을 평가할 때 농업용도인 농업용 차량, 토지 등이 포함돼 재산이 과다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보고 있음. 이에 관한 보완조치도 함께 이뤄져 실효성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산어촌 학부모, 특히 농어업인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충 중의 하나가 교육비 부담과 도시와의 교육 격차라는 것을 감안할 때 농산어촌 유아교육비 지원은 매우 중요한 농어업인 교육복지 정책 중의 하나임.
- 농산어촌 유아들에게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기능을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봄.
- 현재 농업과 농촌의 보육 및 유아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사업 목표와 계획이 이뤄졌으며 합리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계획 및 설계시 농어업인 자녀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파악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평가들을 마련하는 보완책이 필요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2005년의 경우 농어촌지역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총 55,633명, 327억여원이었던 것에 비해 2006년 40,899명, 247억여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음.
- 농어촌지역의 유아 감소폭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감소 수치로서 어린이집으로의 이동, 홍보 부족에 따른 정책 소외, 저소득층 유아 감소 등 이에 대한 타당한 분석이 필요함. 아울러 분석결과에 따라 정책적인 요인이 나타날 경우 철저한 사업 보완 및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또한 지난해 당초계획 인원보다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특별교부금을 통하여 추가지원했던 바 2006년 올해에는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즉, 총 지원계획에 비해 지원 실적이 대폭 감소하여 더욱 세밀한 사업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바람.
- 또한 농산어촌 전체적인 지원에 대한 평가는 물론 FTA, DDA 등으로 특히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결과와 사업성과 등이 개별적으로 평가되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가시화하고 문제점 등이 평가됐으면 하는 바람임.

- 아울러 현재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농림부의 영유아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지원 사업 등으로 주관기관과 사업비가 분산 지원됨으로써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부서별 협조체계와 현장 확인이 중요함.
- 또한 경제 불안 및 사회양극화 등으로 조손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노령농어업인의 경우 정보력 부족으로 정책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를 위한 정책 홍보 및 특별한 배려와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충분한 유아 교육기회 부여와 농어업인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특히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 기회 박탈, 위화감 조성 등을 막고 농어촌 통합을 위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단순한 균등한 기회 제공 차원보다 교육은 질적인 문제가 고려돼야 함. 즉, 유치원 등은 특히 집 가까운 근처에 있어 학부모와 유아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과 유치원별로 교사, 시설, 프로그램, 식사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짐. 농산어촌의 경우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우수한 유아교육기관이 충분히 존재하는가 등이 자금 지원과는 또다른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남을 수 있음.
- 특히 만 3, 4세아의 차등교육비 경우 농산어촌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하여 실제 이용하고 싶은 농어업인 학부모들이 이용하지 못하여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따라 단순히 유아교육비 지원이라는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인 학부모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만 3, 4세아의 보육기능을 확충하여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적인 조치가 함께 있을 때에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목적이 이뤄질 것이라고 봄.

Ⅲ. 주요 결정사항

- 만 3, 4세아의 차등교육비 경우 농산어촌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하여 실제 이용하고 싶은 농어업인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따라 단순히 유아교육비 지원이라는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인 학부모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만 3, 4세아의 보육기능을 확충하여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적인 조치가 함께 있을 때에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목적이 이뤄질 것이라고 봄.
- 현재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대부분 농산어촌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음. 농어업인의 경우 법정저소득층을 판단할 때 소득인정액에서 재산상황을 평가할 때 농업용도인 농업용 차량, 토지 등이 포함돼 재산이 과다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보고 있음. 이에 관한 보완조치도 함께 이뤄져 실효성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2005년 사업 실시 중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이 당초계획 인원보다 증가하여 특별교부금을 통해 추가지원한 바 2006년부터는 보다 정밀한 사업수요를 예측하여 충분한 예산지원이 사전에 이뤄져 정책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정책서비스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앞으로 평가 작업에서 농산어촌 전체적인 지원에 대한 평가는 물론 FTA, DDA 등으로 특히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결과와 사업성과 등이 개별적으로 평가되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가시화하고 문제점 등이 평가됐으면 하는 바람임.
- 현재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농림부의 영유아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지원 사업 등으로 주관기관과 사업비가 분산 지원됨으로써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부서별 협조체계와 현장 확인이 중요함.
- 또한 경제 불안 및 사회양극화 등으로 조손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노령농어업인의 경우 정보력 부족으로 정책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를 위한 정책 홍보 및 특별한 배려와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임.

(농림부 / 농촌사회과, 지방자치단체)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리적·경제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농간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계속
- 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금액 : 당해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사업규모('06) : 864억원, 100천명
- 사업비 : 교부세(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 (지자체에서 사업시행)
- 2005년부터 지원대상 확대 : 소유경지 면적 1.5ha → 전 농어가
 - 개발제한구역해제 등으로 학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을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졸업시까지 지원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6)에 의거 '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임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명, 억원)

연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 원	98	100	99	84	77
금 액	828	864	920	700	663

* '05~'06 : 실적, '07~'09 :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인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농업인 고교생자녀 전원에게 지원되고 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874	864	100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98	100	

II. 총 평

- 농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의 전농어가 확대가 2005년부터 현실화되면서 많은 농어업인들이 학자금 부담과 교육비 부담 경감차원에서 도움을 받고 있음.
- 그러나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정책대상이 전농어가로 확대되어 늘어난 학자금지원사업 정책자금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돌아가게 됨.

- 이에 2005년 지방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사업 부실화 우려를 지적하면서 분권교부세 증액과 목적을 지정한 교부세 지급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지방재정 부담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1인당 연평균 86만6천원 정도가 지원돼, 실질 농어업인 부담 경감과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써 사업 내실화를 위한 국가 재정 확충이 절실함.
- 아울러 장기적으로 고교생 자녀학자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사업으로 다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임.
- 지난해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것은 삶의 질 평가가 형식적인 평가에서 끝날 뿐 실제 사업의 개선과 발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평가가 피드백되어 사업의 변화와 개혁의 기반이 돼야 할 것임.
- 다시 한번 심각한 사업부실화가 우려됨을 강조함. 지방이양사업에 지원되는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를 증액하고, 또한 분권교부세의 사용항목을 지정하는 등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아울러 지방재정 부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현재 지원 학생에게만 국한하고 있는데, 해제지역이라도 소득증가가 없고 농사를 유지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정책의 본 뜻을 살려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과 지침 변경 유도를 병행해야 할 것임.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의 전농어가 확대가 2005년부터 현실화되면서 많은 농어업인들이 학자금 부담과 교육비 부담 경감차원에서 도움을 받고 있음.
- 그러나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정책대상이 전농어가로 확대되어, 늘어난 학자금지원사업 정책자금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돌아가게 됨.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1인당 연평균 86만6천원 정도가 지원돼, 실질 농어업인 부담 경감과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써 사업 내실화를 위한 국가 재정 확충이 절실함.
-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현행 지원대상에만 지원이 국한돼 설계됨으로써 해제지역이라도 소득이 늘지않고 농사를 유지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하는 등 정책의 의의를 살린 계획 수립이 필요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2005년 98,236명을 대상으로 828억원 중 국비는 94억여원, 11% 정도가 지원됐으나, 2006년에는 99,708명 대상, 총 사업비 863억원 중 국비는 단지 30억원, 3%만이 지원되어 지난해의 평가에 따른 개선은 없고 오히려 국고 재정 부담분이 형편없이 줄어들어 지방비 부담이 극도로 심화됐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의 대도시는 교부세가 지원되는데 비해 재정자립도가 도시에 비해 낮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에는 교부세가 전혀 투자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높은 상태임.

- 더욱이 재정비율 중 시군구비의 부담이 가장 높아 가뜩이나 어려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 70%를 훌쩍 넘는 비율의 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있었으며, 심지어 경남의 경우에는 도비를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고 모든 부담을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었음.
- ‘복지’라는 개념 자체에 넉넉한 부분의 예산을 부족한 측면에 보완한다는 뜻이 포함됐다고 볼 때 국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재정만으로는 현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재정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현재 사업지침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농업인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는데, 거주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도 농경지에 둘러싸여 소득증가가 없고 농업을 계속 유지하는 실질적인 농업인이라면 학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 추진 당시부터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됐던 사업으로서 특히 올해 전농어가로 대상이 확대되어 고교생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큼.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1인당 연평균 86만6천원 정도가 지원돼, 실질 농어업인 부담 경감과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

- 성과목표 대비 달성 수준도 높은 편이나 앞으로 지방재정 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실화 우려가 존재함. 이에 대한 대책이 사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임.

Ⅲ. 주요 결정사항

- 지방이양사업에 지원되는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를 대폭 증액하고, 또한 분권교부세의 사용항목을 지정하는 등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한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사업으로 재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임.
- 현재 사업지침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농업인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는데, 거주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도 농경지에 둘러싸여 소득증가가 없고 농업을 계속 유지하는 실질적인 농업인이라면 학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소외되는 정책소비자가 없도록 '규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본 뜻을 살린 정책운용이 필요함. 이는 결국 재정압박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지자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함.
- 분권교부세를 증액하는 것은 물론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른 시군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조절하고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을 내실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2-2-2-1(계속)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

(농림부 / 농촌사회과)

I.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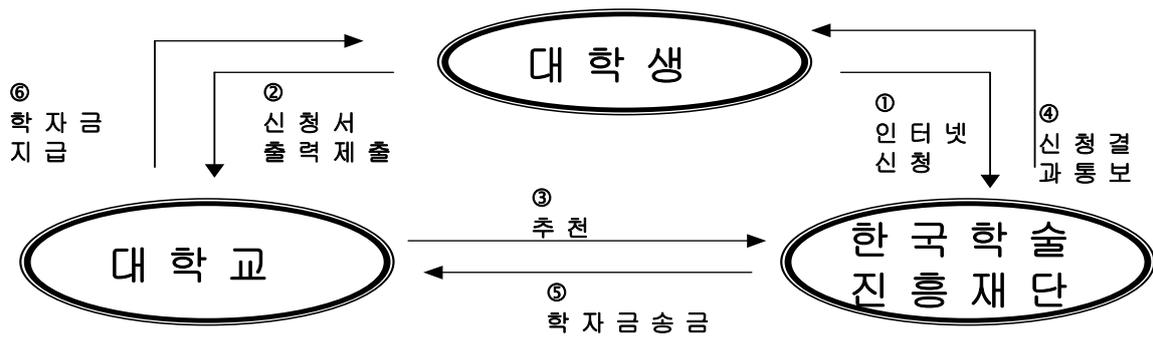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산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산어촌출신 학생의 대학진학기회 확대 등 교육기회 균등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 ~ 계속
- 총사업비 : 6,840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2,326억원)
- 사업규모('06) : 677억원, 25천명
- 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학술진흥재단
- 지원형태 : 정부 출연
- 지원조건 :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융자금을 1년 단위로 상환
-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 사업추진절차



3. 연차별 추진계획

	'05	'06	'07	'08	'09
용자금액(억원)	637	677	747	857	979
지원인원(천명)	25	25	26	28	3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인 지원금액은 출연금 및 회수금 등으로 조성되며 수혜자 전원의 매학기별 등록금등 신청금액 전액이 지원되고 있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700	677	97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26	25	

II. 총 평

○ 대학등록금 부담이 농어업인의 큰 어려움이었던 점을 볼 때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교육기회 확대의 교육비 부담경감 차원에서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대체 효과까지 있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임.

- 또한 농산어촌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농산어촌의 농어업인 자녀를 1순위로 우대함으로써 현재 지원자 증가에 따른 우선순위 배정에서 농어업인 학부모와 자녀들이 혜택을 입고 있어 정책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1%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전체 농어촌출신 대학생 중 수혜자는 10% 미만에 머물고 있어, 예산의 대폭 확충이 필요함.
- 최근 대학생 등록금 마련을 위한 민간 대출 이용 급증으로 대학 졸업 이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무이자이지만 거치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아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학자금 상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음. 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정도의 거치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수요가 높은만큼 기금 출연 확대와 학자금 상환 등을 통해 많은 농촌출신 대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농어촌출신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되 FTA, DDA,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있는가 등 실제 이행현황과 사업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밀한 평가틀이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대학등록금 부담이 농어업인의 큰 어려움이었던 점을 볼 때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교육기회 확대의 교육비 부담경감 차원에서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대체 효과까지 있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임.

- 또한 농산어촌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농산어촌의 농어업인 자녀를 1순위로 우대함으로써 현재 지원자 증가에 따른 우선순위 배정에서 농어업인 학부모와 자녀들이 혜택을 입고 있어 정책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책수요가 높은만큼 기금 출연 확대와 학자금 상환 등을 통해 많은 농촌출신 대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농어촌출신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되 FTA, DDA,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있는가 등 실제 이행현황과 사업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밀한 계획과 평가들이 필요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최근 농어업인 및 농산어촌 출신 대학 입학자가 늘어나면서 대학생 학자금 용자신청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출연한 기금 부족과 학자금 미상환으로 인해 수요를 고려한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농어촌출신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지만 FTA, DDA,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되는가 등 실제 이행현황과 사업 성과 등을 점검해야 함.
- 현재 1, 2 순위를 매겨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증과 평가, 보완이 필요함. 즉, 전체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10% 수혜율과 정책수요로 볼 때 대부분 1순위인 농어업인 출신 대학생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실제 정책현장의 이행 현황에 대해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녀 농가포함 지침에 따라 1 순위가 늘어나 실제 자금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돌아가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따라 정부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고, 융자금 회수를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1년에 600여억원이 넘는 큰 규모의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농산어촌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이 실시되고 있어 정책홍보측면에서나 정부사업 추진 측면에서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이에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진흥재단 비상임이사에 진출하거나 또는 농촌희망재단 등 농림부 내의 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 등의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환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무이자 학자금이지만 거치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아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학자금 상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상환가능한 3년 정도를 거치기간으로 정하여 무리한 상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를 통해 상환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대학등록금 부담이 농어업인의 큰 어려움이었던 점을 볼 때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비 부담경감 차원에서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대체 효과까지 있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임.
- 또한 농산어촌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농산어촌의 농어업인 자녀를 1순위로 우대함으로써 현재 지원자 증가에 따른 우선순위 배정에서 농어업인 학부모와 자녀들이 혜택을 입고 있어 정책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1%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농어촌출신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지만 FTA, DDA,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되는가 등 실제 이행현황과 사업성과 등을 점검해야 함.
- 대통령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녀 농가포함 지침에 따라 1순위가 늘어나 실제 자금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돌아가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따라 정부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고, 융자금 회수를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이에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진흥재단 비상임이사에 진출하거나 또는 농촌희망재단 등 농림부 내의 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 등의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환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무이자 학자금이지만 거치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아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학자금 상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상환가능한 3년 정도를 거치기간으로 정하여 무리한 상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를 통해 상환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농림부 / 여성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후계 농업인 양성과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

2. 사업내용(제도개편 내용)

- 사업기간 : 2004. 8월 ~ 계속
- 사업비 : 60억 ('06)
- 사업규모 : 6,000명
- 시행방법 : 매년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지침 마련
- 지원재원 :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시행기관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 추진내용
 - 영농희망장학금 : 농과계대 2학년 이상 자 중 영농희망자에게 매 학기마다 장학금 지원(연 240만원/1인), 영농희망장학금은 수혜기간 만큼 영농종사 의무
 - 성적우수장학금 : 전국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중인 농어업인의 자녀 중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 선발 지원 (연 200만원/1인)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6,000명 장학금 지속 지원

사업명	5개년 계획					비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학생 장학금 지원						
-지원인원(명)	6,000	6,000	6,000	6,000	6,000	
-지원금액(억원)	60	60	60	60	60	

4. 성과목표 달성도

- 지원인원은 95.1%, 지원액은 92.3% 달성
 - 인 원 : 95.1% (계획 6,000명 대비 실적 5,706명)
 - 지원액 : 92.3% (계획 6,000백만원 대비 실적 5,537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명	6,000	5,706	95

II. 총 평

- 2004~2005년 정책 추진의 혼란으로 농어업인들에게 불만을 샀던 대학생 보조금 지원이 후계인력 육성(영농희망 장학금)과 우수대학생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이원화된 후 2006년은 그 이행 첫 해임.
- 이에따라 2006년 사업은 우수 영농후계인력 양성과 교육비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재편된 상태로서 초기 홍보와 신뢰 구축에 주력하여 정책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그러나 계획 대비 실적이 100%에 못 미쳐 일반적인 장학사업의 범주에서 판단할 때 추진실적이 미비함. 이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홍보 등이 필요함.
- 당초 농과계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에서 영농희망 장학금과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이원화하여 개편한 것은 후계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추진실적은 영농희망 35%, 성적우수 65%로 정책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후계인력 육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영농희망장학금은 연 240만원, 성적우수 장학생 200만원의 현재 등록금 수준을 고려할 때 정책목적에 비해 적은 수준임. 특히 영농희망장학금의 경우 수혜기간만큼 영농종사 의무를 부여하는만큼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고, 지침이 변경돼야 우수한 후계농업인력 육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농림부의 인력육성정책인 창업트랙제, 창업농 지원 등과 연계하여 많은 우수하고 젊은 후계농업인력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함.
- 시행 1년차로서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중간평가가 없는 부분은 아쉬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더욱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 설계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함.
- 아울러 영농희망장학금 수혜자들의 졸업 이후 영농기간 종사시 관리 및 육성 등에 대한 주체 및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임.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2004~2005년 정책 추진의 혼란으로 농어업인들에게 불만을 샀던 대학생 보조금 지원이 후계인력 육성(영농희망 장학금)과 우수대학생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이원화된 후 2006년은 그 이행 첫 해임.
- 이에따라 2006년 사업은 우수 영농후계인력 양성과 교육비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재편된 상태로서 초기 홍보와 신뢰 구축에 주력하여 정책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그러나 2005년 5개년 계획에서 매년 100억원을 투입하여, 4천명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2006년 이후 매년 6천명을 대상으로 60억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수혜자는 늘어나고 예산은 대폭 감축한 상태임.
- 이에따라 수혜자들의 실질적인 혜택 감소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2006년 예산집행실적이 92.3%에 그쳐 이해가 어려움. 물론 다른 사업일 경우 92%는 결코 낮은 이행율은 아니지만 장학사업의 경우 정책수요와 호응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계획 대비 실적이 100%가 안되는 것은 정책추진과정상 충분한 홍보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우려됨.
- 즉, 지원인원으로는 계획 대비 95.1%, 지원액으로는 92.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보완이 요구됨.

- 또한 성적우수장학금과 영농희망장학금의 배분없이 6천명, 총 60억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바, 현재 영농희망장학금은 1,997명 19억원, 성적우수장학금은 3,708명, 36억7천만원으로 35:65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영농희망장학생의 비율이 매우 적은 상태임.
- 단편적인 장학금 지원보다는 창업농, 창업트랙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여 성적우수장학금의 비중보다는 되도록 영농희망장학금 지원의 비중을 높여 많은 우수한 후계인력이 농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함께 실시되어 우수농업인력 확보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영농희망장학금의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연 240만원에 그치는 영농희망장학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농림부 인력육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예산을 다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5,706명의 농가에 평균 1백만원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큼. 다만 이는 2005년 평균 2백30만원이 4,500여농가에 지원됐던 것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된 것인만큼 정책의 효과를 얻기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확충돼야 함.
- 목표대비 달성 측면에서 지원인원 면에서 95.1% 지원액에서 92.3%를 달성함. 2005년 지원인원 111%, 지원액은 102%로서 목표 대비 초과 달성했던 바에 비해 역시 감소한 것임. 되도록 많은 사업대상 대학생들에게 실질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계획 달성 부진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함.

Ⅲ. 주요 결정사항

- 성적우수장학금과 영농희망장학금의 배분없이 연 6천명 총 60억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바, 성적우수장학금의 비중보다는 되도록 영농희망장학금 지원의 비중을 높여 많은 우수한 후계인력이 농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함께 실시되어 우수농업인력 확보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당초 이 사업이 농과계 대학생에만 국한돼 실시되었던 사업인만큼 2년차 사업내용이 바뀌어 비농과계 성적우수학생에게 혜택이 확대됐다는 점을 모르는 농업인이 많을 수 밖에 없음. 이같은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려 해당이 되는 농업인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영농희망장학금의 경우 농림부의 '트랙제' 우수인력 확보방안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확보하는 등 재단 출연금 외에 인력육성과 관련된 일반예산을 포함하는 등 재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영농희망장학금의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연 240만원에 그치는 영농희망장학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농림부 인력육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예산을 다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단편적인 장학금 지원보다는 창업농, 창업트랙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여 성적우수 장학금의 비중보다 되도록 영농희망장학금 지원의 비중을 높여 많은 우수한 후계인력이 농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함께 실시되어 우수농업인력 확보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영농희망장학금의 경우 농림부의 '트랙제' 우수인력 확보방안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확보하는 등 재단 출연금 외에 인력육성과 관련된 일반예산을 포함하는 등 재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체육보건급식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생건강 증진과 학부모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1~계속
- 사업비 : 737억원, 지방비 100%
- 사업규모 : 779천명에게 급식비 일부 및 전액지원
- 추진내용 : 학기중 연간 180일 지원
 - 지원형태
 - 도서벽지 : 전액 지원 (850~1,700원 정도)
 - 농촌형 : 일부 지원 (50~770원 정도)
- ※ 시·도교육청 재정여건 등에 따라 학교별 지원액이 다르나, 일부 시도에서는 무상급식 실시, 또한 저소득층 학생은 급식비 전액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08년도부터 농특세 재원으로 중·고등학교 까지 점차 확대

- ('05) 466억원 → ('06) 626억원 → ('07) 660억원 → ('08) 660억원 → ('09) 660억원

○ 연차별 투자 사업비

(단위 : 명, 억원)

주요업무	5개년 계획				
	'05	'06	'07	'08	'09
□ 사업량	750,537	783,000	724,497	724,497	724,497
□ 단 가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 사업비	466	626	660	660	660
□ 국 비					
□ 지방비	466	626	660	660	660

※ 시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비)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626억원) 대비 737억원 지원 (목표대비 118% 달성)

○ 시·도교육청의 사업추진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성과지표
보다 118% 향상된 성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초·중·고학생 급식비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626	737	118

II. 총 평

-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은 198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학생의 건강발달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사업의 취지와 사업 목표가 분명함. 2006년에 성과지표 626억원 대비 737억원을 지원하여 목표대비 118%를 달성하였음
- 사업의 성격은 매우 단순하지만, 교육청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 급식 단가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농어촌의 발전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목표가 분명하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의 상위목표와도 잘 부합되는 사업임
- 급식비 지원이 교육청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데, 이는 적절하지 않음
- 단순한 급식비 지원을 탈피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은 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을 밟고 있음.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교육행정 조직을 통해 사업추진이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행정조직 내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해결하고 있음
- 급식비 단가의 경직성에 따른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예산조달과 배분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 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청별 여건이 달라 차등적으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교육청의 사업추진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지원금액 차원에서 목표대비 118% 초과 달성하였음
- 교육청별 공평한 지원 정도, 급식에 대한 만족도 등이 성과지표로 설정,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우수 농산물 사용 확대에 따른 농산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함

Ⅲ. 주요 결정사항

-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에 기여하는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됨
- 급식비 현실화를 통한 급식의 질 개선, 교육청별 공평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점검 및 모니터링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2-3-2(계속)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사업
--------------------	------------------------

(농림부 / 농촌사회과, 지방자치단체)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영세농업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농업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여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6 ~ 계속
- 사 업 비 : 교부세(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 (지자체에서 사업시행)
- 추진내용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사업규모('06) : 1,844백만원, 2,474명
- 지원대상 :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6)에 의거 '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임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억원)

연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 원	2,466	2,474	2,610	2,600	2,600
금 액	15	18	21	17	19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성과지표인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자영농과생 전원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자영농과계고 급식비	농과계고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18	18	100
	농과계고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24	24	

II. 총 평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1986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영세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임
- 지원대상은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이며, 2006년도 사업규모는 18.4억원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2,774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음
- 급식 단가의 현실화,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급식의 질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농림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되어야 할 사업임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목표, 지원대상이 분명하고 구체적임. 국정지표 등 상위 목표와 부합됨

-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따라 수요 판단 등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하므로 사업추진 상 어려움은 없음. 행정기관과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은 대상자가 선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행정 조직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집행하고 있음
-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급식대상자의 의견 수렴 및 요구 반영 등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예산조달과 배분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음. 지자체의 예산상황에 따라 배분되고 있음
- 이 사업을 알리려는 노력도 언론이나 설명회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없음
- 07년도 사업은 2,610명을 대상으로 21억원을 확대 지원할 예정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됨
- 지원액 차원에서 자영농과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급식의 질 차원에서 성과지표가 개발·점검되어야 함

Ⅲ. 주요 결정사항

- 자영농과생의 급식비 지원은 영세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평가됨
- 급식비 단가 현실화, 급식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조사 등을 실시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해양수산부 / 수산경영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자영수산과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계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젊고 유능한 어촌 후계인력 육성 및 어촌정착을 유도
-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
 - 대통령 지시사항('84.11.3) 및 수산계학교 육성방안('86. 교육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6년 ~ 계속
- 사업비
 - 지원금액 : '05년까지 2,080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 도비(교부세 포함) 50%, 자담(교육인적자원부 포함) 50%
 - * '05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임
- 사업규모('06) : 220백만원 (432명)
- 지원대상 : 수산계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수산과(4개교) 재학생
 - 충남해양과학고, 완도수산고 · 신안압해종합고, 포항해양과학고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5까지	'06실적	'07계획	'08	'09	'10
사업량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사 업 비	계	1,860	220	228	228	228
	국비	452				
	도비	478	110	114	114	114
	자담	930	110	114	114	114

4. 성과목표 달성도

○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06년 실적치	목표달성도
지원학생수(명)	432	432	100%
지원금액(백만원)	249	220	88%

* 지원금액의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88%인 것은 3학년 학생의 현장실습 등으로 29백만원이 미집행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수산계고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명	432	432	100

II. 총 평

-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교육부의 수산계 학교 육성방안에 근거하여 1986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영세 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어업 전문 인력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된 사업임

- 2006년도에는 수산계고등학교에 설치된 4개교 자영수산과 재학생 432명에게 2.1억원을 지원하였음
- 급식 단가 현실화 노력을 추구하고 있으나 아직 미진한 상태임
- 어촌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목표는 분명하고, 국가균형발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상위목표와 부합됨
- 시·도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교육청과 해당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단가 협의 등 절차적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행정 조직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사업 추진 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급식비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미진한 실정임
- 예산조달과 배분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음. 교육청별로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지원단가가 차이가 발생.
- 사업추진 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청, 학교에 시행 협조를 구하고 있음. 추진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은 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으나 삶의 만족도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판단하기는 곤란함. 자영수산과 자원자가 적고, 어촌에 정착하려는 요구가 낮은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음
- 자영수산과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은 지원학생수 차원에서는 100% 달성하였으나 지원금액 차원에서는 3학년 학생의 현장 실습 등으로 88% 달성에 그침

Ⅲ. 주요 결정사항

- 자영수산과생의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업인의 교육비 경감, 학생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 급식비 지원액 현실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교육청에서 여건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였음
- 급식 만족도 조사, 급식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을 통한 급식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함

2-2-4-2(계속)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	---------------------------

(교육인적자원부 / 특수교육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의 장애아에 대한 순회교육 제공, 특수교육 관련 상담, 홍보 및 진단·평가 지원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 지원 확대
-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대책 수립·실시
 -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특수교육 내용, 방법 개선,
 -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순회교육) :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3. ~ 2007. 2.
- 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규모 : 11개 시·도의 농산어촌 지역교육청에 설치한 특수교육 지원센터 60개소 운영 지원 (센터당 1억원 지원)
 - ※ 산출내역 : 담당강사 인건비 2인, 특수교육용 교재·교구비, 운영비
- 시행방법 : 시도교육감이 지정·운영
- 추진내용
 - 농산어촌 지역교육청에 설치한 60개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장애아 순회교육 전담 담당강사 120명(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특수교육 지원센터 배치
- 담당자의 업무 및 센터 운영 내용
 - 가정과 시설,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순회지도
 - 장애학생 가족 및 지역 장애인 교육상담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지원
 - 일반교원 특수교육 이해 및 연수지원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 도	'05	'06	'07	'08	'09	'10
운영 지원 센터수	18	60	60	90	90	90
담당강사 배치수	36	120	120	180	180	180
예 산	900	3,000	3,000	4,500	4,500	4,500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 100% (120명 배치)

○ 전체 성과 목표의 67% 달성

(단위 : 개소, 명)

연도	'05 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비고
지원 센터수	18	60	60	90	90	
배치인원	36	120	120	180	180	
예산(국고)	900	3,000	3,000	4,500	4,500	보조율50%
성과목표(%)	20	67	67	100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순회강사 확보수	총 순회강사확보수	명	120	120	100

II. 총 평

-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은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의 장애아에 대한 순회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상담하고 진단하며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
-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실시되었으며 1차년도인 2005년도에는 18개 운영지원센터에 36명의 전담 강사를 배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이를 확대하여 60개 센터에 120명의 전담 강사를 배치하였음. 지원비는 국고 50%, 지방비 50%이며, 2006년도에 100% 추진되었음.
- 추진과정은 전국 60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20명의 특수교육 및 치료 전담 강사를 배치하여 가정과 시설, 일반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순회지도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진단 및 평가, 상담을 실시하였음.
-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군청 담당과, 지역의 특수교육 단체, 장애인 복지관, 병·의원 등과 밀접히 연계하여 교육활동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중간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음. 이 결과 현장에 부합되는 다양한 제도적 운영을 가능케 하였음. 이로 인해 현장에 적합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
- 2006년도 사업이 2005년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목표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음. 2008년도까지 90개 센터에 180명의 전담강사를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2006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학생은 90.0%, 학부모 89.5%, 교사 81.7%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농산어촌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별도의 지도가 필요한데 이런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된 사업은 교육적 혜택이 적은 농산어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사업이라고 평가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계획은 교육시설과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에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장애나 특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농산어촌에 있는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 하겠다는 계획과 방법도 적절하다고 여겨짐.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과 방법도 타당함. 그러나 순회교육은 단기적인 교육에 그치기 때문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함께 교육하는 프로그램 도입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안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05년도에 비해 지원센터가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군교육청, 지역의 특수교육관련 단체, 장애인 복지관, 병·의원과 협력도 잘 이루어짐.

-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의회와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 시·군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하도록 하는 건의와 지원센터의 운영모델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수용하여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보급한 것이 이런 사례임.
- 예산조달과 배분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 국가가 50%, 지방이 50%를 분담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계획한 예산의 100%가 집행되었고, 2006년도에도 계획한 예산이 100% 확보됨.
- 이 사업을 알리려는 노력은 사업계획서, 설명회, 기관지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 하기도 하였음. 사업은 일정된 계획대로 추진되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산어촌에 있는 장애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에 사는 학부모나 지역민의 교육적 열망을 충족시키려고 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정책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만족도에서 학생 90.0%, 학부모 89.5%, 교사 81.7%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농산어촌에서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기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교육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국가적 목표와도 부합되는 사업임. 또한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아들의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전담강사를 배치하는 목표는 100% 달성하였음. 그러나 보다 발전시켜야 할 사항은 전담 강사들이 장애아들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차후의 교육활동에 지침이 되도록 추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농산어촌의 장애아에 대한 교육지원은 필요한 사업임. 예산 때문에 2005년에 18개 교육청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농산어촌의 교육청 모두가 직면한 문제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까지 계획한 사업이 모두 추진되도록 정책이 실현되어야 함. 2009년까지는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 순회교육은 사업기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교육활동과 같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 장애아 교육지원이 단지 순회강사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아 진단 및 평가, 장애문제극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아 교육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차후 교육활동을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함. 현재는 중간 점검과 평가를 통해 행정과정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내용과 성과임. 보다 장애아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 제기되는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임.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양성연수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를 확대하여 부족한 농어촌 지역 초등교사의 안정적 확보기반 마련
- 농어촌지역의 초등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2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입학·편입학), 제31조 (학생의 선발), 제33조 (대학입학전형계획의 수립 등) 및 제34조제2항 (특별전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 사 업 비 : 선발된 학생 1인당 연간 100만원~200만원 지급 (지방비 100%)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도 단위 시·도교육청과 관내 교육대학
 - 사업추진절차 : 교육감과 교대총장간 협약 체결 → 교육감 시·군별로 일정 인원 추천 → 교대 신입생 선발 → 합격자에게 장학금 지급 → 졸업후 의무복무 부과

○ 사업 내용

-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당해 지역 교육대학에서 별도전형으로 선발하여, 졸업후 당해 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 임용 후 당해 지역에서 일정기간(2~4년) 의무 복무 추진
- 임용시험 응시 제한 및 복무 의무
 - 교육감 추천 신(편)입생은 졸업 후 반드시 당해 교육청의 임용 시험에 응시
 - 임용 후 2~4년간 의무복무 (추천대상자 선발 및 입학모집요강에 명시)
- 위반 시 제재 : 장학금 환수, 타 지역 임용시험 응시기회 제한 (2~4년간)
 - 추천자와 피추천자의 사적계약(각서 등)에 의해 실효성 확보
 - 시·도 초등교사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한 응시기회 제한

3. 연차별 추진계획

- 동 과제는 부족한 농어촌지역 초등교사의 안정적 확보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초등교원 지원자가 넘쳐나고 있어 '08학년도부터 사업 중단 예정
- 농어촌지역 초등교원 임용시험 충원율
 - '01년 41.7% → '02년 84.5% → '03년 74.4% → '04년 93.4% → '05년 97.3% → '06년 100% → '07년 100%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어촌지역 초등교원 임용시험 충원율 : '06년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확대	임용시험충원율	당해연도 임용시험충원율	%	100	100	100

II. 총 평

- 초등교원양성수가 임용교원수와 거의 비슷하여 사실상 초등교원 경쟁이 없는 상태였고, 초등교원들이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고 도시 지역을 선호함으로 인해 농어촌 교원확보가 어려움을 겪어 초등교원이 미달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또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교원부족이 크게 늘어났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를 실시하여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유학하려는 경향을 완화시켜 농어촌지역의 학교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 최근 초등교원양성수가 늘어나고 필요한 교원수는 줄어들어 초등교원임용경쟁률이 높아지게 되어 농어촌지역에서 초등교원을 100%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도서벽지와 같이 교육여건이 대단히 열악할 뿐 아니라 적은 인구 및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이러한 사업으로 인하여, 이 지역 학생들의 도시유학 충동을 억제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
- 따라서 이 사업을 중단하기 전에 도서벽지와 같이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초등교원양성기관은 전국적으로 부족한 교원의 수에 맞추어 졸업자를 양성하였으나 초등교원임용경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초등교원들이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을 선호하여 도시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려 하였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음.
-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를 실시하여, 교대 입학시부터 농어촌 지역에 의무복무할 학생들을 선발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초등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교육감과 교대총장간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감이 시·군별로 일정 인원을 추천하여 교대신입생을 선발하였음. 재학중에는 장학금을 지불하고 졸업후에는 2-4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였음.
-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하여 의무복무제도를 강력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실제로 농어촌 초등교원 임용시험 충원율이 2001년 41.7%였던 것이 갈수록 늘어나 2006년에는 100%를 달성하였음.
- 교육감 추천제를 실시하여 농어촌 초등교원의 부족현상을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교대입학의 기회로 인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학하는 경향을 완화시켜 농어촌 지역의 학교교육을 살리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최근 1-2년간 농어촌에서 초등교원을 100%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필요교원에 비해 초등교원양성수가 훨씬 증가할 예정이어서, 농어촌의 초등교원 부족문제를 위해 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짐. 따라서, 향후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도서벽지의 경우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도는 초등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효과 이외에도 도서지역학생의 도시유학 경향을 완화시켜 도서벽지의 학교교육을 살리는 효과를 가져왔음. 만약 도서벽지에서 이 사업을 갑자기 중단한다면 중·고등학교가 다시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도서벽지의 경우에 한하여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정책혁신추진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유능한 교장을 농어촌 학교에 초빙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교육의 내실화 도모
- 사업 추진 방향
 - 초빙교장 임용비율의 점진적 확대 및 임용추천 심사 강화 등 초빙 교장제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 농어촌 1군 1우수고 등 혁신의 필요성이 시급한 학교에 유능한 교장을 영입하기 위해 '06년 9월부터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실시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 사업내용(기존 사업)
 - 시·도 내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초빙교장제 실시 확대
 - 시·도교육감은 지역실정,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 실시학교를 지정
 - 시·도교육감이 농산어촌 학교를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로 지정하여 해당 학교에 유능한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초빙교장제 제도 개선 추진
 - '교원정책혁신기획팀'을 구성하여 교원승진임용제도 개선방안(시안)을 마련, '초빙교장제 점진적 확대와 제도 개선' 추진

- 우리부 시안을 교육혁신위원회에 송부하여 최종안 수립을 요청, 최종 개선안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06.9~)
 -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특성화학교 등 150여개를 대상으로 단계적('06년 50개교)인 시범 운영
 - 특성화중·고 약 20개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CEO) 등에게 공모기회 부여
 - 학교 및 교육청 단위의 교장 임용추천 심사 강화 및 2년 주기의 정기적인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 담보

○ 예산 : 비예산사업

3. 연차별 추진계획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실시

구분	'06.9 ~ '08.8	'07.3 ~ '09.2	'07.9 ~ '09.8	합계
시범학교 수	48개	52개	50개	150개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구분	'04	'05	'06	'07	'08	'09
성과지표(목표)	-	5%	6%	7%	8%	9%
성과지표(결과)	3.94%	3.96%	4.2%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교원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초빙교장제 실시율	(초빙교장제 실시 학교수/전체 학교수)×100	%	6	4.2	70

II. 총 평

- 농어촌 지역 학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하여 각 학교에 적합한 유능한 교장을 초빙·공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임.
- 기존의 초빙교장제가 갖고 있던 문제점, 예를 들어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되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실시하였음.
-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학교경영에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교장으로 공모하는 제도도 병행 실시하여 보다 폭넓은 곳에서 우수한 인재를 교장으로 모시려는 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있음.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심사과정에서 전체 학부모·교원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2년 및 4년 이후 있게될 평가제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교원정년 연장의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학교경영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원들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도록 개선하여야 함
- 도서벽지 지역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사를 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강화나 근무수당의 대폭 상향조정 등의 실제적인 유인가가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최근 교육개혁의 방향은 이전에 정부의 지시 하에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학교교육의 관행에서 학교단위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장임용 시부터 학교단위의 교육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교장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1군 1 우수고의 경우 단위 학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우수한 학교로 혁신할 유능한 교장을 절실히 필요로 함.
- 또한, 자율학교의 경우 기존의 교육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새로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새로운 학교경영을 이루어야 하므로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사를 교장으로 영입할 필요가 있음.
-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의 협의 및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을 계획하였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교장초빙·공모제에 대한 시범운영계획을 교육부에서 수립한 후, 시도교육청은 지역실정 및 교육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모색함.
- 승진제도 및 교장임용방법에 대한 교원 및 교직원단체간 이견이 있었으나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사, 교원단체, 교장단,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원정책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임용에 대한 현장 및 교직원단체의 반대가 있었으나 기존 교장자격증 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임용은 설립목적이 특수한 특성화 중·고로 제한하여 정책이해를 제고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촌 1군1우수고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특성화학교 등 150여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을 수립함.
- '06년부터 시작하여 '06.9~'08.8에는 48개, '07.3~'09.2에는 52개, '07.9~'09.8에는 50개를 실시할 계획을 세워, "06년 에는 차질없이 실시함. 이 중 교장공모제는 특성화학교 등을 중심으로 '06.9 ~ '08.8에 4개 '07.3~'09.2에 8개교가 실시하게 되었음.
- 교장초빙·공모제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학교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서 1차로 후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교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분명치 않음.
- 초빙·공모교장 후보들의 경우 대부분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인사들로서, 초빙·공모교장 이후 승진제에서 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연임이 되지 않더라도 초빙·공모교장으로 4년간 재직한 이후 승진제에서 8년간 교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초빙·공모교장 연임하고자 하는 동기가 적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교장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응모하는 현상을 완전히 막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수를 늘리고 일반 교원들이 교장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야 함.
- 도서벽지에서는 이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유능한 인사가 지원할 만한 유인가가 없는 실정임. 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Ⅲ. 주요 결정사항

- 교장초빙·공모제를 실시하는 단위학교의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후보에 대해 전체 학부모 및 교원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의무화하고 심사과정에서도 전체 학부모·교원들 앞에서 공개발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초빙·공모교장 재직 2년 이후에 있을 평가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초빙교장제가 갖고 있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음. 이를 위해 전체 학부모 및 교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초빙·공모교장 후보들이 학교경영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승진 제하의 교장으로 쉽게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적절히 차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장 후보자들간에 실제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후보자 수를 늘려야 하며, 일반교원들도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열리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 도서벽지의 경우 단지 우수한 교장을 끌어들이 수 있는 유인가가 없음. 도서벽지에서 이 제도가 가능하려면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나 근무수당을 충분히 인상하여 유능한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함.

2-3-2-1(계속)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단체지원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및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농산어촌 학교 교원의 수당)에 의거 농산어촌 소속 교원 중에서도 특히 업무가 가중되는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담당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농산어촌 교육의 질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14
- 사업규모 : 54,722명 (2006년도 연인원)
- 지원 금액 및 형태 : 2,409백만원, 교사 1인당 월 50천원지급(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30천원)
- 지원조건 (지원 대상)
 - 순회교사수당 :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겸임근무를 명받아 2개(교육청 소속은 1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사
 - 복식수업수당 :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소규모 학교에서 학년별 학급편성이 곤란하여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복식학급 담당교사 (복식수업이 아닌 수업도 담당하는 교과전담교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2007년도 추가지급대상 교원 : 근무처 구분 없이 겸임근무를 명받아
 농산어촌에서 실제로 순회근무를 하거나 복식수업을 하는 교원
 (예 : 소속 학교가 도시지역인 교원의 순회근무, 교육청 소속 교원의
 순회근무, 교감의 복식수업 등)

○ 사업 주요내용

- 시·도별 농산어촌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소속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담당교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시·도교육청에 분기별로
 예산 교부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연말에 정산 후 잔액 반납

3. 연차별 추진계획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액(억원)	30.83	30.83	30.83	30.83	30.83

4. 성과목표 달성도

- 대상교원 54,722명(연인원) / 지원한 교원 54,722명(연인원)으로
 대상교원에 대해 100% 지원함으로써 교원 사기 진작에 기여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원교원수	총 지원교원수	천명	55	55	100

II. 총 평

- 농촌인구 감소 및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와 함께 교원수도 줄어들어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가르치는 교사나 복식수업을 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업무부담이 늘어나 열악한 농어촌 학교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사기가 더욱 떨어지고 있는 형편임.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교원들이나 복식수업 담당교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은 적절한 것임.
- 이러한 수당이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산어촌의 학생수 경감으로 인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교원수를 축소 조정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교원수를 줄임으로써 교원수가 부족하여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교원이나 복식수업을 하는 교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로 말미암아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복식수업 담당 교사와 순회교사들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분기별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보조금을 시·도교육청이 지급함.
- 교사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복식수업을 담당하는 교감 등에게 수당지급이 되지 않던 문제와 도시지역 소속학교에서 농산어촌으로 순회하는 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던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분기별로 시·도교육청에 보조금을 지급교부하고 있고, 월별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여 분기별로 정산함.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담당 교원들에게 늘어난 업무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월 1인당 5만원을 지급하여 떨어진 사기를 진작하는 데 최소한의 도움을 줌.
- 다만,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수당간 서로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3만원으로 차등지급하였음.
- 하지만 도서벽지 수당 이외에도 다수의 수당이 있으나 유독 도서벽지수당 여부에 따라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특히 도서벽지수당은 급지에 따라 3~6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교통비조차 마련할 수 없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데, 도서벽지수당의 지급을 근거로 차등지급한다면 도서벽지 근무 교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을 현행과 같이 지급하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서벽지 근무교원들에게 차등지급되는 제도를 개선하여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함.
- ※ 정책 제언 : 이 사업 외에도,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상이었던 가산점 제도가 축소조정되고, 승진점수 평정기간이 길어져 근무여건이 훨씬 열악해졌음을 고려하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함. 도서벽지에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서벽지수당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함. 수당을 일정액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연봉의 일정한 비율로 지급해야 하며, 연봉의 최소 10%이상이어야 할 것임.

2-3-2-2(계속)	교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도서벽지 교직원 사택 신축 및 개·보수비 지원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교직원에게 주거 편의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시행 및 사업비 : 시·도교육청, 60억원
- 사업규모 : 182개동의 사택 신축 및 개보수
- 지원대상 : 농산어촌 초, 중, 고등학교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 기본계획 수립(교육인적자원부)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학교 선정(시·도교육청)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300	60	60	60	60	60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사택신축 및 개보수 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교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사택 신축,보수	총 사택 신축,개보수	개소	182	255	140

II. 총 평

- 농어촌 도서벽지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사택을 신축하거나 개축·보수하도록 지원함.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둠.
- 2006년 사택신축 신청량 504호중 78호, 사택개보수 신청량 742호중 177호를 지원하여 도서벽지의 경우 주택보급률을 평균 88%까지 끌어올렸음.
- 주택보급이 양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임. 도서지역의 사택은 기후나 습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함.
- 동일한 기관인 지역교육청에서 발주를 할 뿐 아니라 감리까지 담당하고 있어 공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양질의 사택건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발주기관과 감리기관을 분리시켜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상수도 공급과 같이 생활필수조건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며 생활 필수기구들은 정부가 제공하거나 공공관리하여 순환근무로 인해 이동할 때도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에 근무하고자 하는 교원도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이 지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음. 교원들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크게 대두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원들의 사택을 신축하고 개·보수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사업임.
-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택집행상황 보고자료를 받아 차기 연도 계획 수립 시 활용하였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필요한 곳에 사택지원을 하기 위해 사택 신청 물량을 파악하여 도서벽지 지역은 신청물량을 전액 반영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학생 수용전망을 고려해서 예산을 지원하였음.
- 시·도 교육청 사택 담당 팀을 통해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였고, 도서벽지의 경우 신청건 모두 신청 물량을 전액 반영하였다 하나, 실제 도서벽지의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예산을 하반기에 교부로 동절기에 공사하거나 공기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예산을 상반기에 교부하기로 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산어촌 도서벽지의 교원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근무기피현상이 일어났으나 교원의 사택을 확충함으로써 최소한의 근무여건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여성 교원의 경우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사택이 없을 경우 이 지역 근무가 더욱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사택문제의 해결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 중임.
- 도서벽지의 경우 사택 보급률을 '가'급지의 경우 98% 등 평균 88%까지 높여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상수도가 제공되지 않거나, 습기로 인한 곰팡이 혹은 지네와 같은 벌레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현재 사택신축 및 개보수시 발주와 감리를 모두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 및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기 쉬움. 최소한 감리기관을 교육청 밖의 독립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회사가 건축 및 이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건축 및 개축 이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위학교 담당자가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하자보수 등 불만사항을 요청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순환근무로 자주 이동하는 교원들이 사택내의 주거 필수제품(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을 직접 구입해야 하므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신축 및 개보수 발주기관과는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청 이외의 기관이 감리를 맡도록 하여 사택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신축 및 개보수 이후 하자가 생겼을 경우 어려움 없이 불만사항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도서벽지의 시설은 기후조건으로 인해 빨리 손상되기가 쉬워 보다 자주 개보수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습기를 막고 단열이 잘 될 수 있도록 설계·건축하여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지네와 같은 곤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최소한의 필수 가전제품은 정부 혹은 학교가 제공하여 관리하거나 공동운영 세탁기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 지식정보기반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적 및 기대효과
 - 교육·문화시설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학교도서관의 기본환경 개선
 - 자료·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케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및 방과 후 문화공간으로도 활용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지역에 적합한 학교도서관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 학교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역량을 갖추고 추진
- 사업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05.4.)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13년 (총8년)
- 사 업 비 : 126억원 (국고 63억원, 지방비 63억원)
- 사업규모 : 252개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 사업지원대상
 - 학생수 30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100명 이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제외 (군지역, 도·농 복합시의 읍·면 이하 지역)

- 지원금액 및 형태 : 학교당 5천만원, 국고 50% : 지방비 50%
- 사업 지원조건 : 학교기본운영비의 3%이상을 자료구입비로 확보
- 사업 내용
 - 교육·문화시설이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설치·리모델링 사업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확충 지원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청, 단위학교
 - 사업절차 : 기본계획수립(교육부) → 세부계획수립·공모(도교육청) → 신청(학교) → 심사·선정(도교육청) → 사업 준비(해당학교) → 예산지원(교육부, 도(지역)교육청) → 사업시행(해당학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학교수)	국 비					지방비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252	6,300	-	-	-	6,300	6,300	12,600
2007	248	6,200				6,200	6,200	12,400
2008	248	6,200				6,200	6,200	12,400
2009	248	6,200				6,200	6,200	12,400
계	996	24,900	-	-	-	24,900	24,900	49,80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 목표를 달성함

-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수 110% 달성 (목표 252개교, 실적 277개교)
- 학생 1인당 장서수 100% 달성 (1인당 목표 9.5권, 실적 9.5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학교 도서관 및 장서확충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수	개교	252	277	110
		학생 1인당 장서수	권	9.5	9.5	100

II. 총 평

- 교육문화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도서벽지에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및 장서를 확충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사업임.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을 설치·리모델링하고, 도서관 장서 확충, 도서관운영을 위한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
- 학교기본운영비의 3%를 장서구입에 쓰게 하여 도서관 시설 확보뿐만 아니라 장서를 구입할 수 있게 함.
- 다른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도서벽지의 경우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필요로 함. 각 학교마다 도서관을 설치하기 보다는 몇 개 학교가 공동으로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훨씬 많은 장서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관리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것임.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학생수 300명 이하의 학교에 학교당 5천만원씩 지급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하고, 학교도서관 기본장서를 확충지원하며,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함.
- 매년 국고 63억원과 지방비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사업을 시행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공모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교육부·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민간협력업체 관계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해당 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자 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함.
- 2006년도 상반기에 학교도서관 사업 추진방향 및 모델에 대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집행은 2006년 8월에 시행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도서관 이용자 수가 '02년 전체 학생의 8%가 도서관을 이용하였던 것에서 '06년 27.3%로 증가하였고, '02년 전체 학생의 5%가 도서 대출을 받았으나 '06년에는 25%로 증가하였음.
- 학교기본운영비의 3%를 도서구입비로 책정하도록 권장하여 단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장서를 확충하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 특히 도서벽지의 경우 책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학교도서관인데 도서관이 일정규모 이상이 될 수 없어 한계를 갖고 있음. 학교기본운영비의 3%를 장서구입으로 사용하지만 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장서수가 한정되어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입한 도서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됨. 보다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몇 개 학교의 예산을 모아 집행할 필요가 있음.
- 학교수업이외의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이후 특히 저녁시간에는 도서관을 활용할 수 없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사서교사를 확보하거나 학부모의 자원봉사를 통해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Ⅲ. 주요 결정사항

-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도서관 모델을 개발하여 실제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해야 함.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몇 개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마련하면 훨씬 많은 수의 장서를 확보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각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 및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확보하여 수업 이외의 시간에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 지식정보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정보화)
 - 정보통신기술교육운영지침(모든 교과교육에서 10%이상 ICT 활용)
- 교육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지속 추진
 - PC 1대당 학생 5명 수준으로 고도화
 - 모든 학교의 인터넷 통신 속도를 2Mbps 이상으로 증속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7. ~ 계속
- 사업비(연평균) 및 규모 : 18,305백만원, 1만여개 초·중등학교
- 시행방법 : 전액 지방비 추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에 의해 예산 확보 및 추진
- 추진내용 : PC 보급 및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05(실적)	'06	'07-'08	'09-'10
PC 1대당 학생 수	6.3명	5명	5명	5명
인터넷속도 (Mbps)	2M이상 (96.3%)	2M이상 (100%)	5M이상 (100%)	10M이상 (100%)

4. 성과목표 달성도

○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 속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PC 1대당 학생수	PC 1대당 학생수	명	5	5.6	107
	인터넷 통신속도	인터넷 통신속도 2Mbps이상	%	100	96.4	

II. 총 평

- 교육정보 인프라 보급 사업은 농산어촌 학교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전체 학교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전되어 지방의 재정여건이나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지방의 재정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교육청의 경우 이를 계획대로 수행하기 힘들.
- PC보급은 PC 1대당 5.6명으로 목표치 5명의 96.4%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2006년부터는 노후화된 컴퓨터를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노후화 컴퓨터 교체를 위해 발행된 지방채의 이자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음. 이런 노력이 전국적으로 컴퓨터 교체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별도의 노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농산어촌은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문화적 혜택도 적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다른 어느 곳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임. 이들의 교육격차,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에 우선적으로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적 우선이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 이 사업에 농산어촌의 학교와 학생도 대상으로 포함됨. 학교의 정보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은 국가에서 추진하되 지방에 사업이 이양됨에 따라 교육청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청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농산어촌이 많은 교육청의 경우 재정이 열악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산어촌의 학생들에 교육정보 인프라를 보급하려면 현재의 인프라 정책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던가 아니면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임.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이 사업이 농산어촌 학교와 일반학교가 동일한 차원에서 시행하다 보니 학교 규모가 적고 폐교 가능성이 높은 농산어촌 지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점을 고려한다면 농산어촌 정보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관여가 많지 않음. 만족도 조사 등 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해 노력한 면이 적음. 연평균 2,000억원 가량 집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와 문제를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노력도 보이지 않음.
-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에서 정보화 기기가 수행하는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이런 노력이 나타나지 않음.

Ⅲ. 주요 결정사항

- 농산어촌에서 정보화 인프라가 갖는 기능과 효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사업은 지방사업으로 추진 하되 정책적 방향과 간접적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산어촌에서 정보화 인프라의 중요성이 시지역보다 크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전국적으로 학교 정보인프라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홍보와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필요함.

(농림부 / 농촌사회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시·군지역내 주민교육관련 기관·단체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종합 관리하여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회교육 기회를 제공
- 교육·문화·복지를 결합한 평생학습 기회제공 등으로 농산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조성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사업비 : 비 예산사업
- 추진내용 : 『농산어촌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방안』 연구용역
- 사업규모 : 24,895천원 ('06 연구용역비)
- 지원대상 : 연구결과 각시·도 및 시·군에 배포
- 사업추진절차 : 사회교육관련 실태조사(시·도) → 운영계획수립(농림부) → 운영계획 통보(시·도) → 운영계획 통보(시·군)

3. 성과목표 달성도

- 2006년 연구용역 기간으로 사업 미실시

II. 총 평

- 농산어촌학교의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Community Center를 운영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받은 상태임.
- 이 사업은 Community Center가 필요하여 이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사업으로 아직 추진되지 않음. 단순히 용역 결과에 의해 실행 계획과 집행,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Community Center운영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임.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런 Center가 필요하며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도입될 필요가 큼. 그러나 현재는 이런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을 평가하기 어려움.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영역도 평가하기 어려움.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계획과 집행이 없기 때문에 성과도 없음.

III. 주요 결정사항

-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과 문화, 복지 등을 연계하는 Community Center의 기구가 필요함. 기능별로 산재되어 있는 여러 활동을 통합하여 조정함으로써 효과를 높이고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제3절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I. 총 평

- 2006년의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시행계획」 지역개발분야 사업들은 2005년에 비해 정책개선을 위한 연구 수행, 다양한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 거버넌스체제 구축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부처별 유사·중복사업 추진에 따른 복잡다기성과 통합조정 매카니즘의 부재,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 추진, 하향식 추진구조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임
- 개선된 사항으로는 첫째,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활력지원사업,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 유사·중복사업의 부처간 이관·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 둘째, 많은 사업에 있어서 자체적인 평가·환류체계가 개선되었으며,
 - 셋째, 수요자의 정책사업 참여가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확대된 점 등을 들 수 있음
- 문제점으로는 첫째,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부처간 할거주의의 지속과 함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과지표를 성과(outcome 또는 output) 중심이 아니라 투입(input)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하며,
- 셋째, 사회적으로 필요성과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음.
- 넷째, 오랜 기간 추진된 사업 중에는 초기 도입 당시의 개념·목적·사업내용·추진방식 등을 거의 변화·개선시키지 않고 추진(오지 종합개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등)함에 따라 시대의 수요와 여건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유사사업 통폐합 및 추진체계의 개선

- 단기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여러 부처의 유사한 사업들을 지역의 입장에서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하며, 특히 기초지자체가 어느 정도 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수정·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중앙 정책 및 사업내용의 유연화, 권한의 지방이양 등).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관련 부처간의 협조체제 구축, 통합실시요령 작성, 그리고 중복도가 심한 사업의 통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실질적인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거나, 총괄부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을 도입할 경우에는 면소재지 활력증진 사업에서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조사·연구→정책 실험→확대적용」의 단계를 거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2005년의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할 수 없는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사업이 있는 반면에, 평가내용과 무관하게 자체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나아가서 사업관련자의 의견수렴, 자체평가, 외부평가를 통해 사업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이 정부의 보조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 역량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지역주민(공무원) 역량 강화, 지역의 민간 전문가그룹 육성

II. 평가결과

1. 분야별 평가결과표(과제번호 순)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3-1-1-0	농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주요	93.0	97.6	2/1	우수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요	90.0	94.5	7/5	우수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주요	80.0	84.0	26/19	보통
3-2-1-3	산촌종합개발사업	기타	82.0	82.0	21/23	보통
3-2-2-1	소도읍육성사업	주요	92.0	96.6	3/2	우수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주요	86.0	90.3	13/9	보통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주요	83.0	87.2	20/15	보통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기타	95.0	95.0	1/4	우수
3-3-2-1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주요	86.0	90.3	13/9	보통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주요	86.0	90.3	13/9	보통
3-3-2-3	면단위 하수도사업	주요	84.0	88.2	16/14	보통
3-3-2-4	소하천 정비사업	주요	92.0	96.6	3/2	우수
3-3-2-5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주요	81.0	85.0	24/18	보통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기타	79.0	79.0	28/30	부진
3-3-3-2	교통서비스 강화	기타	82.0	82.0	21/23	보통
3-3-3-3	국고여객선 건조	기타	82.0	82.0	21/23	보통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주요	76.0	79.8	31/29	보통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주요	77.0	80.8	30/27	보통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주요	71.0	74.5	32/32	부진
3-3-5-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기타	92.0	92.0	3/6	보통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건립	기타	91.0	91.0	6/8	보통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기타	79.0	79.0	28/30	부진
3-3-5-5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타	87.0	87.0	10/16	보통
3-3-5-6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	기타	81.0	81.0	24/26	보통
3-3-5-7	산림박물관 건립	기타	90.0	90.0	7/12	보통
3-3-6-1	정보화마을 조성	기타	84.0	84.0	16/19	보통
3-3-6-2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주요	87.0	91.4	10/7	보통
3-3-6-3	정보화인프라 구축	기타	84.0	84.0	18/19	보통
3-3-6-4	디지털 어촌 구축사업	기타	80.0	80.0	26/28	보통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	기타	87.0	87.0	10/16	보통
3-3-7-2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선정	기타	84.0	84.0	16/19	보통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기타	89.0	89.0	9/13	보통
평 균	32개 사업		84.75	86.72		

1-1. 분야별 평가결과표(환산점수 순)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3-1-1-0	농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주요	93.0	97.6	2/1	우수
3-3-2-4	소하천 정비사업	주요	92.0	96.6	3/2	우수
3-2-2-1	소도읍육성사업	주요	92.0	96.6	3/2	우수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기타	95.0	95.0	1/4	우수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요	90.0	94.5	7/5	우수
3-3-5-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기타	92.0	92.0	3/6	보통
3-3-6-2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주요	87.0	91.4	10/7	보통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건립	기타	91.0	91.0	6/8	보통
3-3-2-1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주요	86.0	90.3	13/9	보통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주요	86.0	90.3	13/9	보통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주요	86.0	90.3	13/9	보통
3-3-5-7	산림박물관 건립	기타	90.0	90.0	7/12	보통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기타	89.0	89.0	9/13	보통
3-3-2-3	면단위 하수도사업	주요	84.0	88.2	16/14	보통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주요	83.0	87.2	20/15	보통
3-3-5-5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타	87.0	87.0	10/16	보통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	기타	87.0	87.0	10/16	보통
3-3-2-5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주요	81.0	85.0	24/18	보통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주요	80.0	84.0	26/19	보통
3-3-6-1	정보화마을 조성	기타	84.0	84.0	16/19	보통
3-3-7-2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선정	기타	84.0	84.0	16/19	보통
3-3-6-3	정보화인프라 구축	기타	84.0	84.0	16/19	보통
3-2-1-3	산촌종합개발사업	기타	82.0	82.0	21/23	보통
3-3-3-2	교통서비스 강화	기타	82.0	82.0	21/23	보통
3-3-3-3	국고여객선 건조	기타	82.0	82.0	21/23	보통
3-3-5-6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	기타	81.0	81.0	24/26	보통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주요	77.0	80.8	30/27	보통
3-3-6-4	디지털 어촌 구축사업	기타	80.0	80.0	26/28	보통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주요	76.0	79.8	31/29	보통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기타	79.0	79.0	28/30	부진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기타	79.0	79.0	28/30	부진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주요	71.0	74.5	32/32	부진
평 균	32개 사업		84.75	86.72		

2. 우수사업

○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 주민 역량이 지역 활성화 주요 요인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육성되어 질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높으며, 주민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개발 전문 능력을 배양하겠다는 정책목표도 매우 합당한 편임
-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리더십 육성과정, 특화과정, 동기화과정, 특별과정 등 구체적이며 그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수립되었으며, 2006년도 사업실적이 당초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하는 등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측면에서도 양호한 사업임

○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 농촌관광 확대를 위해서는 농촌문화의 유지·보전과 이를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설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지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양식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가 숙박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이 높으며 사업목표도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개별 농가에게 직접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고지원 공동사업이 안고 있는 책임소재의 불명확, 방만한 운영 등의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비교적 적으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개별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모니터링이 요구됨

○ 소하천 정비사업

-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를 통하여 산전 재해예방 및 농어촌 소득기반조성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하천 생태계보전 및 친수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임
- 치수·이수 및 자연환경이 조화된 소하천정비를 위하여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업무연찬회 개최 등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사업을 정착시키고 있음
- 지자체의 재정상황, 과년도 집행실적, 재난관리평가 등 제반항목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한 것은 잘 된 점임. 또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정성·객관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코자 하는 방안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판단됨

○ 소도읍육성사업

- 소도읍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지역 개발거점으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소도읍육성정책의 추진은 소도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소도읍육성정책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향식공모제”, “선택과 집중” 방식, “육성협약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관행적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최근 각종 농어촌·낙후지역 개발사업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음

- 사업초기에는 실시설계, 도시계획결정, 토지보상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고, 현재도 민자유치사업의 추진,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주민참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도읍이 있으나, 사업추진 4년차인 2006년부터는 2003년에 선정된 14개 소도읍의 39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다양한 수범·미담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이 사업은 농촌공간의 가장 기초단위인 수개의 마을을 사업권역으로 하는 것으로써 메뉴방식에 의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조성, 농촌경관 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계획에 기초하기 때문에 주민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대상지 선정과정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선정된 대상지에 대한 기본 계획도 충실하게 수립되고 있는 편임. 특히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가의 참여도 활발한 편임
- 특히 이 사업은 주민교육, 마을개발위원회 운영비 지원, 마을사무장 지원 등의 소프트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의 인재 육성과 농촌지역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3. 부진사업

○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폐비닐의 상당량이 수거되지 못하여 토양오염, 경관훼손 등을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수거비 지원대상 물량이 '05년도 기준 폐비닐 발생량의 31%수준이며, 지원단가 30원/kg가 낮아 지원효과 제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거단가 인상과 사업물량 확대하여 수거율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 도서종합개발사업

- 이 사업은 지리적으로 가장 낙후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를 개선하고 접안시설을 정비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한 사업으로 평가됨
- 하지만 이 사업이 출발한 당시에 비해 도서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정주여건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사업 대상지 및 사업내용면에서 유사하여 두 사업간의 관계설정도 요구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98-'07)」이 끝나는 시점을 계기로 어촌과 도서지역 정주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 후에 차후의 사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 이 사업은 농어촌의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적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임
- 그러나 사업이 문화관광부, 전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중앙주도로 추진됨으로써 지역의 문화실정을 잘 알고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지자체나 지방 문화원은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06년 예산규모가 15억원으로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편이며, 문화공간시설 조성을 비교적 원활한데 반해서 개관이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Ⅲ. 평가소감

- 부처의 자체 보고서만으로 모든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부처별 자체평가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이 요구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내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중장기계획), 평가 및 개선대책, 추진 실적 증빙자료(현장사진, 교육시행 사진 등), 조사연구실적(보고서) 등을 들 수 있음

- 필요할 경우 주요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사가 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가 초기단계이며 자료와 시간 부족 등으로 정확한 평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부진으로 강제 배분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오히려 평가결과가 해당부처 또는 사업 부서의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상향식 개발방식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하향식인 경우가 많으며, 단위사업별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곤란함.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사업의 추진 절차상에서 상향적 의사결정과 사업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3-1-1-0(계속)	농촌지역개발 전문인재 육성 및 저변확대
-------------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지역개발리더, 참여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사업추진능력 배양 등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역량 강화
 -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년 ~
- 사업비('06) : 830백만원 (국고)
- 사업규모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시행 및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림부) → 시행계획 수립(한국농촌공사 등) 및 승인(농림부) → 세부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한국농촌공사 등) → 사업비 정산(농림부)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7조 및 제38조,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및 제38조
- 사업주요내용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자원 유형별 역량을 배양하도록 체계적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동기화 과정(순회교육), 특별과정 등

- 체계적인 교육 관리·지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 사후관리방안 마련, 농촌지역개발 학적 관리 및 인재뱅크시스템개발,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재 개발,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컨테스트 개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추진내용	1단계(2005)	2단계(2006~2008)	3단계(2009)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시행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시범운영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운영	○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지원시스템 마련	○교육수료자 사후관리 방안 마련 ○농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DB 구축 ○인력육성과 지역개발 사업 연계 방안 마련 등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학적관리 시스템 개발·운영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재 개발·보급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컨테스트 개최 ○농촌지역개발 현장전문가(농촌마을CEO) 제도 시행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등	

○ 연차별 투융자계획(국고)

(단위 : 억원)

구 분	5개년('06~'10) 계획				
	'06	'07	'08	'09	'10
합 계	15	17	20	20	21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시행	4	4	5	5	6
○지원시스템 마련	11	13	15	15	15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인원은 '06년에 2,000명을 목표로 하여 '06.12월까지 2,258명 교육을 실시, 당초 목표의 112.9%를 달성 (목표 대비 12.9%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지역개발전문인력육성 및 저변 확대	전문교육인원수	총 수료인원수	명	2,000	2,258	113

II. 총 평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 관련 공무원, 기타 관련자들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은 높으며 사업 목표도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리더쉽육성과정, 특화과정, 동기화과정, 특별과정 등으로 구체적이며 그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수요자중심으로 다양하게 계획되었음
- 2006년도 21개 세부과정을 통해 2,258명을 교육시키는 등 사업추진 실적인 매우 양호한 편임
- 단, 이 사업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며,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보다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각 종 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여부가 역량있는 지역인재의 육성에 달려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육 훈련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사업 목표가 명확한 편임. 또한 농산어촌 개발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상위 정책 목표와도 부합함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농촌지역개발 리더쉽육성과정, 사업 주체별 특화과정, 동기화 과정, 마을종합개발특별과정, 사무장 과정 등으로 세분화되어 작성되어 있으며, 교육수료자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되는 등 사업계획이 구체적임
- 사업계획수립과정에서 수요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다고 판단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

- 사업 추진이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세부사업추진 및 결과 보고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 추진시 관련기관의 연계 및 협조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교육후 교육생들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재, 강사, 교육방법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됨. 특히 연구 용역등을 통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돋보임.
- '06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양호하며, 계획한 교육을 기한내에 완료하는 등 일정관리도 양호한 편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교육과정 수강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임. 또한 교육인원으로 지표를 삼는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는 매우 양호한 편임('06년 2,000명 목표, 2,258명 달성, 당초 목표 112.9%달성).
- 그러나 교육 결과가 지역개발사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평가 지표 개발은 미흡한 편임

Ⅲ. 주요 결정사항

- 농촌지역개발 교육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이의 보완이 요구됨
- 교육 결과가 실제 지역개발역량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성과 지표 개발이 요구됨

3-2-1-1(계속)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사업추진 기본방향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이 같은 1개 법정리 이상의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농촌지역을 전원생활·여가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원적 기능을 확충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지역별 특성을 살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2017
- 총사업비 : 57,918억원 (국고 48,819, 지방비 9,099)
 -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역할을 할 1,000개 권역을 우선 추진
 - 권역당 5년간 40~70억원 범위내 지원 (국고80%, 지방비20%)
 - ※ 권역의 크기, 가구수 등 권역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현황 : '06까지 56개 권역 착수, 40개 권역 기본계획 완료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서작성(주민)→사업신청신청(주민, 시·군, 시·도)→타당성조사(농림부)→기본계획안 작성(시·군, 농촌공사)→기본계획수립(시·군, 시·도)→시행계획수립(시·군, 시·도)→사업시행(시·군)→ 준공(시·도)
-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정비시설 지원과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지원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 S/W관련사업 : 컨설팅, 마케팅,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당초 '13년까지 1,000개 권역을 착수하고, '05~'09기간중에는 276개 권역을 착수할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주민참여형 상향식 종합개발사업 이어서 현재로서는 연간 40개 권역이 적정 수준으로, 현재의 사업 추진속도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 중장기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확대 추진할 경우, 사업 자체가 부실화 될 우려가 있어 1,000개 권역 착수 목표를 '17년으로 4년 연장하고, '05~'09기간 중에는 176개 권역을 착수할 목표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조정

- '05년도에 착수한 36개 권역의 1단계 사업('05-'07) 완료 후 '08년도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당 초> : 삶의질향상 5개년('05~'09) 계획

(단위 : 억원)

	계	'05	'06	'07	'08	'09
사업량(권역)	276	36	20	50	70	100
사업비	10,896	752	1,119	1,819	2,877	4,329
-국 고	9,176	645	949	1,517	2,442	3,617
· 보조(80%)	7,416	489	755	1,283	1,892	2,997
· 용 자	1,754	156	194	234	550	620
-지방비(20%)	1,726	107	170	302	435	712

<조 정> : 농업·농촌종합대책 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계	'05	'06	'07	'08	'09
사업량(권역)	160	36	20	40	40	40
사업비	6,813	752	726	898	1,669	2,768
-국 고(80%)	5,630	645	617	731	1,349	2,288
-지방비(20%)	1,183	107	109	167	320	480

* 농촌주택정비 용자금은 '06이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까지 56개 권역('05 : 36, '06 : 20)을 착수하여 목표를 100% 달성
- 산출근거 : $56/1,000 \times 100 = 5.6$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업착수율	$(\text{누계 착수권역수} / 1,000(\text{목표권역수})) \times 100$	%	5.6	5.6	100

II. 총 평

- 이 사업은 농촌공간의 가장 기초단위인 마을을 사업권역으로 하는 것으로써 주민 수요에 기초하여 농촌공간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높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상위 정책 목표와도 부합함
- 또한 메뉴방식으로서 농촌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조성, 농촌경관 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계획에 기초하기 때문에 주민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대상지 선정과정이 다른 사업에 비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선정된 대상지에 대한 기본 계획도 충실하게 수립되고 있는 편임. 특히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가의 참여도 활발한 편임
- 이 사업은 사업내용에 주민교육, 마을개발위원회 운영비 지원, 마을 사무장지원 등을 포함함으로써 인재 육성 및 마을단위 개발역량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여전히 주민의 추진 역량이 미흡하거나, 지역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이 일부 선정되거나, 타당성이 높지 않는 공동 사업이 계획에 반영되며, 마을공동수익사업의 운영방안이 명확치 못하는 점 등이 있음
- 가급적 중심성이 큰 마을 위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며, 수익성이 낮거나 운영방안이 불투명한 사업은 사업에서 제외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상위 정책 목표와도 부합한 편임
- 당초 '13년까지 1,000개 권역을 착수하겠다는 계획은 사업의 성격, 현재의 추진방식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는 판단아래 1,000개 권역 착수 목표를 '17년까지 4년 연장하였으며, '05~'09년도의 착수 목표도 당초의 276개 권역에서 160개 권역으로 조정된 것은 일단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함
- '17년까지 1,000개 권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10~'13기간중 80개/년, '14~'16기간중 130개/년 의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측면도 있어 재검토가 요구됨
 - 사업량을 확대하는 '10년부터 지자체에 업무 대폭 이양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남아 있는 사업대상 권역의 적정성 및 사업 필요성 등이 검토되고 난 후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됨.
- '05년도에 착수한 36개 권역의 1단계 사업('05-'07)완료 후 '08년도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이 사업은 예비계획서 작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 선정,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람직한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사업대상지 선정이 지역에서 작성한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예비 타당성 검토,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의 현장 실사를 통해 선정되는 매우 합리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음

-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과정에서 평가과정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계획수립자, 행정기관간의 파트너쉽에 의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음.
- 특히 '05년 시작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추진 주체의 역량강화, 권역설정의 탄력성 확보, 나눠먹기식 사업 추진 방지, 주요시설의 용지 확보)들이 제기되고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정책에 반영되는 일련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비교적 신속하고 잘 작동되고 있다고 판단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이 사업은 2005년 말부터 사업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가 빠른 편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중간 단계에서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있고, 사업성과에 기초하여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로 사업착수율(당초 계획한 착수권역 대비 실제 착수 권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외에 각 권역별 사업진행정도, 사업을 통한 권역의 개발 효과 등이 성과지표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Ⅲ. 주요 결정사항

- 가급적 중심성이 큰 마을 위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며, 수익성이 낮거나 운영방안이 불투명한 사업은 사업에서 제외하는 노력이 요구됨
- 이 사업이 권역에 미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성과 지표 개발이 요구됨

3-2-1-2(계속)	어촌종합개발사업
--------------------	-----------------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낙후어촌의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수산업 생산·소득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추진근거 : 어촌어항법 제9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 ~ 2013년
- 총사업비 : 8,795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5,265억원)
- 사업규모 : 225개 권역 (1단계 : 160개 권역, 2단계 : 65개 권역)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80%, 지방비 15%, 자담 5%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까지	'06실적	'07계획	'08년	'09년	'10년	'11이후	
사업량(권역수)	225	152	(17)	24	(24)	11(16)	12(11)	26(12)	
사업비	계	879,531	487,885	38,646	35,750	48,250	51,500	57,500	160,000
	국 비	568,254	254,937	30,917	28,600	38,600	41,200	46,000	128,000
	지방비	268,648	209,901	7,315	6,718	7,238	7,725	8,625	21,126
	자부담	42,629	23,047	414	432	2,412	2,575	2,875	10,874

4. 성과목표 달성도

- 1단계('04~08) 160개 권역중 152권역 완공(권역당 35억원 규모)
- '06년 계속사업 17개 권역('05~'06) 중 17개 권역 완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어촌종합개발사업(군특회계)	사업권역수	누계 사업권역수	권역	152	152	100

II. 총 평

- 이 사업은 낙후어촌의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9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임. 사업의 목표는 낙후 지역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위 정책 목표에 부합하며, 그 성과도 많은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어촌주민의 개발수요가 높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마땅하지 않았던 소규모 어항정비와 어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가 이 사업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은 낙후 어촌 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됨
- 어촌계를 기준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권역에 포괄보조금을 주어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계획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 하는 방식은 매우 적절함.
- 계획수립단계에서 권역 주민들의 분산 투자 수요를 적절하게 통제 하지 못하여 1개 권역에 15 ~ 20개 정도의 소규모 사업이 분산 투자됨으로써 전략적 개발이 어려움

- 이 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사업대상지 및 사업내용이 유사함. 도서·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두 사업 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낙후 어촌의 정주생활을 개선하고 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어촌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사업 목표는 비교적 적절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위 정책목표와도 부합한 사업임
- 전체사업의 연차별 추진 계획은 명확한 편임. 선정된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수립과정 및 계획 내용에서 여건 변화를 수용하는 혁신성이 떨어진 편임.

2. 사업추진의 효율성

- 해양수산부 중심의 사업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은 가능하지만 사업추진에서 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 및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폭이 제한되어 있는 편임
- 사업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는 미흡한 편임. 평가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세부사업의 타당성과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이 사업으로 인하여 연안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해수욕장이 위치하는 일부 어촌마을은 과밀 개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시 친환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주민들의 개발 수요에 기초하여 수익사업이 추진되어, 결과적으로 시설물의 유희화되고 사업운영이 부실하며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함
-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권역 목표치 대비 사업착수 권역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실제 사업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성과 지표 개발이 요구됨

Ⅲ. 주요 결정사항

- 어촌의 정주기반 형성에 나름대로의 기여를 한 사업으로 평가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며 특히 유사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과의 관계 설정이 요구됨
 - 사업 대상지 선정 절차의 합리성 제고, 계획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추진 주체 참여, 평가/환류체계의 개선 등
- 실제 사업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요구됨

(산림청 / 산촌소득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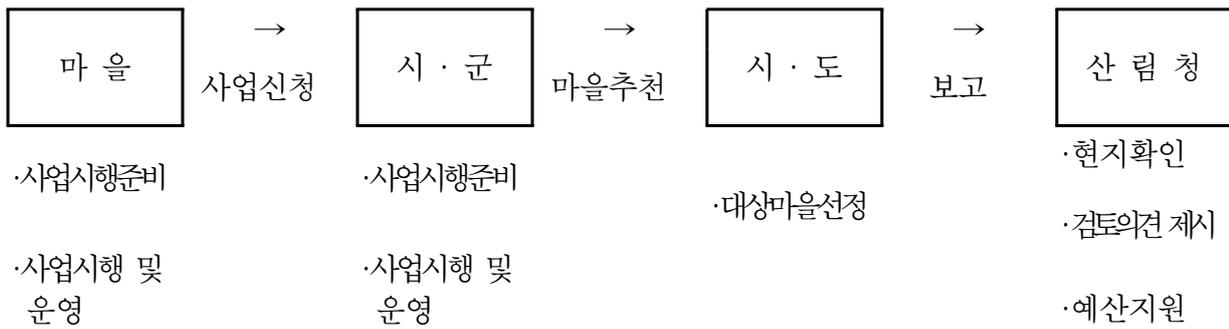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전국토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의 진흥과 활성화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조성
-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사업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제29조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3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년, 마을조성 2년)
- 사업비 : 25,629백만원
- 사업규모 : 53개소 마을 (신규마을 18개소, 조성마을 35개소)
- 시행방법



○ 추진내용

- 소득기반조성 (지역특산물 소득사업)
- 생활환경개선 (취락구조개선,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 임산소득원 개발, 산촌휴양기반조성 사업, 기타 S/W 관련사업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5	53	66	71	73	60
신 규	15	18	33	20	20	20
조 성	30	35	33	51	53	40

4. 성과목표 달성도

- 2000(2005)년도 완료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81%로 성과목표를 달성함 (외부기관 용역 의뢰 결과)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산촌종합개발사업	산촌주민 만족도	$\{\sum \text{취득점수} / (100 \times \text{설문대상자수})\} \times 100$	%	76	81	107

II. 총 평

- 이 사업은 농·임업 생산조건 및 생활환경조건에서 불리한 산촌지역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 필요성이 인정되며,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산기반 조성, 산촌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는 타당하며 국가 균형개발이라는 상위 정책 목표에도 부합함.
- 이 사업을 통해 산촌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산촌의 소득원 발굴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산림청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군 산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라인 중심의 사업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체제는 제한되어 있는 편임
- 특히 행정기관중심의 평가/환류 체계로 외부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는 미흡한 편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세부사업의 타당성과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산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타 부서 사업(예를 들면 농림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중복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산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사업 목표는 비교적 적절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위 정책목표와도 부합한 사업임

- 각 대상권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계획수립이 중요하지만, 소수 관계자 중심으로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참여도 활발하지 못하여 지역별로 특성있는 사업추진이 장애가 되고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

- 행정라인 중심의 사업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은 가능하지만 사업추진에서 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 및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폭이 제한되어 있는 편임
- 행정기관중심의 평가/환류 체계로 외부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는 미흡한 편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세부사업의 타당성과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이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산촌의 기초적인 생활여건이 꾸준히 개선되었으며 일부 산촌지역에서는 관광사업, 산촌자원 가공 사업을 통한 지역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 바가 있음
- 그러나 산촌주민의 소득증대효과는 당초의 정책 목표에 비해 낮다고 판단됨. 또한 이 사업으로 추진한 공동수익사업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개발위주로 추진됨으로서 산촌지역의 생태적 건전성이 훼손되거나 위협을 받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음

- 성과지표로서 산촌주민 만족도를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 지표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됨. 그렇지만 주관성에 치우칠 염려가 높은 만족도 외에 산촌생활환경개선, 소득기반 조성 효과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요구됨

Ⅲ. 주요 결정사항

-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에 나름대로의 기여를 한 사업으로 평가됨
-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며, 계획수립-사업추진-평가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 수익성이 높지 않은 공동수익사업 추진을 지양하며 이 사업으로 인해 산림생태계가 훼손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3-2-2-1(계속)	소 도 읍 육 성 사 업
--------------------	----------------------

(행정자치부 / 지역발전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사람을 모으게 하는 우수지로서의 도심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읍지역 육성
 -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
 -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읍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어촌지역 거점지역으로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원근거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1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 ~ 2012년 (10년간)
- 총사업비 : 12조원 (국비 2조, 지방비 2조, 타부처 국비·민자 등 8조)
- 대상지역 : 전국 194개 읍지역 ('01. 11. 9 지정·고시)

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4	1	2	1	4	23	24	13	22	14	30	34	19	7

3. 연차별 추진계획

- '03년도 : 14개소도읍, 962억원 투자 ('03. 14개)
 - 재원 : 증액교부금 150, 특별교부세 150, 지방비 453, 기타209

- '04년도 : 36개 소도읍, 2,976억원 투자 ('03.14개+'04.22개)
 - 재원 : 증액교부금 300, 특별교부세 300, 지방비 1,237, 기타1,139
- '05년도 : 43개 소도읍, 3,245억원 투자 ('03.14개+'04.22개+'05.7개)
 - 재원 : 균특회계 437, 보통교부세 437, 지방비 1,303, 기타1,068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선정추진 66읍 4,012억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소도읍육성사업	사업소도읍수	총 사업 소도읍수(누계)	%	66	66	100

II. 총 평

- 소도읍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지역 개발거점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소도읍육성정책의 추진은 소도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소도읍육성정책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향식공모제”, “선택과 집중” 방식, “육성협약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관행적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으며, 최근 각종 농어촌·낙후 지역개발사업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음

- 사업초기에는 실시설계, 도시계획결정, 토지보상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고, 현재도 민자유치사업의 추진,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주민참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도읍이 있으나, 사업추진 4년차인 2006년부터는 '03년에 선정된 14개 소도읍의 39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다양한 수범·미담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중앙부처의 소도읍육성사업 지원 재정이 매년도 증가해 왔으나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07년 들어 중앙정부 지원 재정 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있어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따라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하여 승인 고시된 전국 194개 소도읍육성사업이 계획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매년 20여개 소도읍 대상지역을 선정,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현재 추진중인 66개읍에 대하여 차질없이 계획대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소도읍에 잠재된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개발거점이자 국토정주체계의 중심축으로 복원코자 하는 정책목표는 적절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목표와도 부합함
- 소도읍육성사업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이 높음

- 지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계획을 공모하는 『상향식 공모제』 방식 채택함으로써, 매년 공모하는 계획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내용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개발잠재력이 높은 소도읍을 선정하여 전략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투자효과 지역개발 선도 효과 제고 가능성이 큼
- 『육성협약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장의 책임성과 중앙지원을 연계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있음
- 철저적인 측면에서도 소도읍육성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시·군의회 의결,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는, “사업계획수립(시·군) → 대상지 자체선정(시·도) → 대상지 결정(중앙 소도읍육성정책심의회) → 협약체결(행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시행(변경시: 의회의결, 주민공청회, 정책심의회 의결) → 성과평가”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수하고 실천력이 담보된 소도읍계획을 선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매년 시장·군수가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은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원이 끝난 소도읍에 대해서도 사후평가와, 사업추진 중인 소도읍에 대한 중간평가 또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소도읍육성사업 전담부서, 추진기획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사례가 있고, 소도읍 전담팀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간 연계·조정기능이 미흡함
 - ⇒ 소도읍육성 전담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10년간 중장기사업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운영과정에서 상시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소도읍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국가재원은 '03년도 962억원(14개 소도읍), '04년도 2,976억원(36개 소도읍), '05년도 3,245억원(43개 소도읍), '06년도 4,012억원(66개 소도읍)으로 매년 증가하여 왔으나 '07년도는 1,584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 소도읍육성사업계획에 따른 계획적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안정적인 국가재원의 동원이 전제되어야 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행정자치부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1) 투입 면의 성과지표를 “매년 선정된 소도읍지원대상소도읍에 4년간 분할지원, (2) 과정상의 성과 지표로서 ① 소도읍육성계획 수립시 지자체와 주민간 합의, ② 소도읍 선정시 객관성, 투명성 확보, ③ 지원사업 범위, 지원비율, 사업기간 등 협의, (3) 산출 면에서 소도읍 테마별 세부사업별 추진 상황, (4) 성과 면에서 도시화 효과, 인구증가효과, 소득증대효과 등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달성도를 100%로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소도읍년도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추진 중에 있는 소도읍에 대해서는 연도별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성과지표로 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읍지역의 발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인구증가율, 사업체 고용인구,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을 비교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서 그러나 사업완료 후는 물론이고 사업추진 중에도 성과 목표 달성도, 주민의 만족도, 해당 소도읍에의 파급효과를 분석·평가 할 수 있어야 함

Ⅲ. 주요 결정사항

- 2003년에 선정되어 2006년까지 국비 지원이 끝난 소도읍에 대한 심층적인 사후평가를 시행하여 소도읍 육성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사업추진 중인 소도읍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하고 있는 능력있는 “자문관 또는 자문단” 위촉을 통해 실질적인 모니터링·컨설팅을 행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모니터링·평가체계를 보다 체계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국비를 지원하는 초기 4개년 이후에도 소도읍육성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정부가 10개년 종합계획상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앙부처에 요청하면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각 관련 부처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거버넌스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소도읍육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매년 20여개 대상 소도읍을 선정하여 균특회계에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면소재지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기능의 충족과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도모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색을 살린 발전 추구
 -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 테마 발굴로 명소화 추진
 - 면소재지 발전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 조기 구현
 - 타 부문에서 지원되는 관련 연관사업을 발굴하여 연계추진
 - 지자체의 능동적 조정을 통해 분산 추진되는 각 부처 사업·시책을 종합적·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컨설팅 기능을 수행
 -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의 협력적 파트너쉽 중시
 - 지역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공모를 통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확산할 수 있는 지역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 ~ 2017
- 총사업비 : 14,200억원 (국고 11,400, 지방비 2,800)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200개권역 우선 추진 (투자계획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
- 권역당 3년간 70억원 범위내 지원 (국고80%, 지방비 20%)
- 추진현황 : 06년도 '07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침 결정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서작성→ 사업신청(시·군, 시·도)→ 타당성조사(농림부)→ 사업대상지 선정(농림부)→ 기본계획안작성(시·군, 농촌공사)→ 기본계획수립(시·군, 시·도)→ 시행계획수립(시·군, 시·도)→ 시행시행(시·군)→ 준공(시·도)
- 사업내용
 - 생활편익, 문화·복지, 경관개선, 상권활성화 등 거점지역으로 면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위주로 지원
 - 생활편익시설 : 가로정비, 공동주차시설, 승강장시설, 공공화장실정비 등
 - 문화·복지시설 : 다목적 복지회관, 건강관리시설, 보육시설, 운동·휴양시설 등
 - 경관개선시설 : 마을숲 및 녹지정비, 가로경관정비, 경관저해시설정비, 불량간판정비, 경관조형물 등
 - 지역상권시설 : 재래시장정비, 특산품홍보, 지역축제활성화 등
 - 기획운영S/W : 주민문화활동, 지역홍보, 시설물운영프로그램개발, 추진위원회 및 마을개발협의회 활성화지원 등
 - 신규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리모델링 등 주민편익증진에 역점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개발 사업으로 '07~'17까지 200개소 착수 계획
 - 우선 사업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07~'10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량을 확대

구 분	계	'05	'06	'07	'08	'09	
사업량(권역)	200	0	0	0	4	4	192
사업비	14,200	0	0	4	19	150	14,031
-국 고(80%)	11,400	0	0	4	16	120	11,264
-지방비(20%)	2,800	0	0	0	3	30	2,767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도에는 '07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계로 '06 년도에 기획을 완료하고 '07년부터 기본계획수립, '08년도부터 사업 시행 등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비예산과제에 해당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측정 불가

II. 총 평

- 동 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거점면소재지 의 생활 편의, 문화복지, 상권정비, 경관정비, 지역혁신을 위한 S/W사업 등을 종합적·집중적으로 개발하여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보강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함

- 공모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역량이 있는 지자체에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전문가가 파트너가 되어 추진하는 협력적 사업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적절함
- 우선 '07~'11년까지 시범사업(8개 권역)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개선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성과목표치의 설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 만족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의 추가 설정이 필요하고, 시범사업추진 대상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면소재지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정책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군 또는 통합시 지역에 있어서 1~3개의 면소재지는 현재까지도 배후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 만큼 이들 면소재지의 교육, 사회,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의 확충과 사업기능의 정비, 환경정비 등이 이루어질 경우 면소재지와 배후농촌의 활성화와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함
- 현재 지역 거점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사업시행을 통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면소재지 중심마을을 1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되, 인구 3천~1만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면의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1개 법정리 이상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되,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된 면(1만명/면 이상)과 인구과소지역(3천명/면 미만)을 제외토록 한 것은 적절함

- 또한, 개발목표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역과 재래시장, 오일장, 중·고등학교, 대학 등 지역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자원이 입지하고 있는 면으로서 거점기능 수행을 할 수 있는 200개 면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한 것 역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과소지역의 경우는 기능보완에 한계가 있고, 도시화가 상당 수준 진전된 면은 이미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시범 모델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을 한다는 점과, 사업시행 초기단계부터 시행과정에 대한 단계별 관찰·평가 등을 통하여 개선과제 도출 및 효율적 사업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시책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접근방법으로서 매우 바람직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은 사업준비단계에서는 예비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사업시행 단계는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준공 등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함
-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은 지역주민, 시·군, 시·도, 전문기관, 농림부가 파트너로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어 주민참여형 상향식 개발사업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이 시책의 형성과정에서 정책연구, 지자체·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침으로써 그 완성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농촌정주체계상 면소재지의 위상, 기능과 역할, 면소재지 환경, 개발수요, 개발전략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연구를 시행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면소재지 중심마을개발사업의 성과목표치는 '08년 4개소, '09년 4개소, '10년 이후 192개소로서 삶의질 향상 5개년 계획의 신규착수 물량(누계) 대비 목표권역수를 나타내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목표치는 투입 중심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 또는 효과 등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보다 복합적인 목표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임

Ⅲ. 주요 결정사항

- 면소재지의 실태(기능, 역할, 정주환경 등), 개발수요, 개발전략 등에 관한 정책연구의 추진이 필요함
- 시범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 모니터링시 종합성을 가진 지역(도시) 계획가 1인, 대상지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이 필요함
- 도시개발 수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 전문가의 계획수립 참여도 장려되어야 함

3-3-1-1(계속)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	---------------------

(행정자치부 / 지역발전정책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쾌적한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생동하는 농어촌마을 조성
-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 ※ 1976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불량주택개량사업이 '95.12.29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정으로 농어촌마을의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기반을 조성되어 본격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76 ~ 2014 (농특세 지원기한까지)
-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1976~2005 실적			2006 계획		비고 (지원기준)
	사업량	/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366,216		345,842	
주택개량	386,203	동	4,158,029	4,519	180,000	세대당 4천만원 융자
마을정비	6,664	마을	1,186,942	127	161,932	마을당 14억원 지원
빈집정비	59,128	동	21,245	6,617	3,910	동당 50~100만원 지원

○ 시행방법(사업지구 지정 및 추진절차)

농어촌주거환경개선대상지구 선정 - 시장·군수

- ↓
- 대상마을(시행령 제3조)
 - ① 수도법 제5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
 - ② 자연공원법 제16조에 의해 결정된 취락지구에 위치한 마을
 - ③ 수해·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 ④ 관광지·사적지, 주요도로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 ⑤ 노후·불량한 주택이 주택총수의 3분의 1이상이고 세대주 3분의 2이상 이 지구지정을 희망하는 마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 - 시장·군수

↓ - 시·도지사에게 제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 - 시·도지사

↓ - 관련기관 사전 협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 - 시장·군수

↓ - 시·군 관계 행정기관 사전심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 행정자치부장관

↓ - 관련부처 사전협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시장, 군수

-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의 해당자 시행가능
 - 농촌공사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
 - 농어촌주택조합 · 농어촌주택의 소유자

○ 사 업 비 : 13조 3,43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주택개량	520,393 동	9,524,869	
마을정비	8,498 마을	3,780,674	
빈집경비	78,808 동	38,218	

○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1976~2005 실적		2006 계획		비 고 (지원기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366,216		345,842	
주택개량	386,203	동 4,158,029	4,519	180,000	세대당 4천만원 용자
마을정비	6,664	마을 1,186,942	127	161,932	마을당 14억원 지원
빈집정비	59,128	동 21,245	6,617	3,910	동당 50~100만원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0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50,308		512,000		512,000		512,000		5,745,395
주택개량	4,500	180,000	6,000	300,000	6,000	300,000	6,000	300,000	107,152	4,106,840
마을정비	315	165,461	150	210,000	150	210,000	150	210,000	942	1,636,339
빈집정비	6,596	4,847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467	2,216

4. 성과목표 달성도

- 5년 단위의 중기계획 및 2014년까지 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주거환경개선						
○ 농어촌 주택개량 (농특세 10%)	주택개량수	총 주택개량수	천동	4.5	4.5	100
○ 농어촌 마을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정비마을수	총 정비마을수	마을	127	127	
○ 농어촌 빈집정비	빈집정비수	총 빈집정비수	천동	6.6	6.6	

II. 총 평

- 이 사업은 1976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된 이후 1995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정으로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이 조성되어 농어촌지역의 불량주택 개량 및 낙후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 2006년 3,458억원이 투자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융자금이 4천만원, 마을정비 지원이 14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와 주민의 사업수요가 높아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지방비를 확보하여 연말기준 평균 90%의 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었음
 - 그러나,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융자금액 상향조정(4천만원) 및 금리인하(3.4%) 등 보다 나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 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 소하천 등의 수질이 개선되고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 하수처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유지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와 농어촌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재원의 확충과 더불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가 필요함
- 마을당 14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 하는 것에 비해 마을 주민들의 참여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기본 계획도 행정계획에 그치고 있어 마을의 장기비전 아래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현재의 사업 추진체계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의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한다는 사업목표가 명확하며, 낙후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개량, 마을하수도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국정목표에 부합됨
-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개량 및 마을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충하여 농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을 구비하고 있음
 - 특히, 기초마을 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오·폐수를 초기단계에서 처리하여 하천·상수원 등의 오염 방지와, 방치된 폐가를 정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이 사업은 농림부의 주택개량, 농진청의 부엌·목욕실 개량, 친환경 화장실 개량,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지원사업, 건교부의 농촌지역 임대주택 건설·공급사업 등과 함께 관련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정책방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사업임. 특히, 이 사업은 주관부서가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여타의 지역개발사업들과의 관계도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근거하여 오랜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참여가 미흡한 행정 위주의 사업추진 체계임

- 매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사업추진 실태 전반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수범사례,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사업추진 방법 등을 보완 개선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된 전국 사업수요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포된 농어촌지역(시군수)에 비례하여 사업물량 및 재원을 배분하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목표는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또는 개량수요)가 아닌 매년 확보 가능한 사업비를 근거로 정함으로써 투입중심의 성과목표가 되고 있음
 - 개량대상 농어촌 주택수와 비교한 성과달성도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마을의 경우는 하수처리대상 마을수와 비교한 성과 달성도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Ⅲ. 주요 결정사항

- 본 사업을 비롯한 농어촌주택 및 주거환경사업들이 통합·연계되어 주택·마을을 연계한 종합적 주거환경개선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주택개량과 마을기반정비, 농촌 커뮤니티시설 강화, 농촌관광, 소득기반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주거환경개선정책 도입

3-3-1-2(계속)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	-----------------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자연친화적인 설계요소를 도입하여 농촌고유의 전통성과 주거공간의 합리성 및 쾌적성을 살린 농촌주택모델을 제시·보급함
- 농촌주민의 주생활수준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관광 증가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촌 복합 생활공간 조성방안(농특위 대통령 보고자료. 2005. 12)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2020년 (총 17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5마을(마을당 5농가 이상), 35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추진내용
 -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민박 가능 농가 또는 공동활용 체험장, 도·농교류가 활발한 일반마을 민박가능 농가 대상

-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 구성요소를 적용한 농촌주택 리모델링
 - 도배, 장판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주택 내부 개선
 - 텃밭, 화단, 장독대, 정원, 생울타리, 건물외벽 녹화 등 옥외 공간 조성
- 최적의 평면형태, 벽체, 단열, 채광, 통풍 방법 및 기술 등 환경에 적합한 신기술 도입
- 부엌·방의 연결, 다용도 공간 설치 등 편리한 수납공간 배치
- 문화생활, 휴식공간, 손님맞이공간 설치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4~2006 : 농촌전통테마마을 민박 농가 중심으로 추진
- 2007~ : 농산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에 의거하여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민박가능 농가까지 확대 적용
- 연차별 투자계획 ('05 ~ '09)

(단위 : 백만원)

구 분	5개년(□□05 ~ □□09) 계획					
	'05	'06	'07	'08	'09	소계
사업량	5	5	10	10	20	50
사업비	350	350	700	700	1,400	3,500
- 국 비	175	175	350	350	700	1,750
- 지방비	175	175	350	350	700	1,75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 달성정도
 - 사업보급 목표치 100% 달성 (5개 마을 사업 완료)
 - 사업 전 대비 마을당 민박소득 증가율이 669%로 169% 초과 달성됨

- 사업 시행부 반기별 민박소득 증가율

(단위 : 천원)

민박 수입	사업 전('05)	사업 후('06)		
		상반기	하반기	전 체
총 수입	19,960	41,020	112,374	153,394
마을당 평균	3,992	8,204	22,475	30,629
사업 전 대비 마을당 민박소득 증가율		106%	463%	669%

※ 산출근거 : {(사업 후 민박수입/사업 전 민박수입)×100} - 100

※ 순수민박농가(28호)만 대상으로 함(영농조합, 체험관은 제외)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민박 소득 증가율	{(사업 후 민박수입/사업 전 민박수입)×100} - 100	%	500	669	134

II. 총 평

- 전통적 농촌주거문화의 유지·보전과 현대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성 확보를 통해 농촌의 주거가치를 향상하고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농가 숙박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목표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업대상지역을 농촌전통테마마을이나 일반 마을의 민박가능 농가에 우선함으로써 주거정비와 농가부업소득을 연계하고 있는 점은 매우 현실적인 조치라고 판단됨

- 농가를 개조하여 민박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 '07년부터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에 의거하여 농촌관광이 발생하는 일반 마을의 민박가능 농가까지 그 사업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일반적으로 정부지원에 의한 공동운영수익사업이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효과가 높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민박 농가의 주거환경정비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현실성이 인정됨
- 환경친화적인 주거 공간 구성요소를 적용한 주택내부 개선과 이를 바탕으로 소득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타당하며 농촌의 어메니티 창출이라는 농촌정책의 기본 목표에도 부합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이 사업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대상 농가 선정이 행정예 의한 대상마을 선정 →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대상 농가 선정 등 비교적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편임
-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평가/환류체계가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특히 삶의 질과 관련한 상당수의 지역개발사업에서 성과지표로 진척도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업에서는 민박소득증가율이라는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높게 평가할 만한 노력이라고 판단함
- 사업보급 목표치 100%달성, 사업전 대비 마을당 소득증가율 669% 달성으로 사업성과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Ⅲ. 주요 결정사항

-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대상 농가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바 선정기준과 선정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며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모니터링이 요구됨

3-3-2-1(계속)	면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	---------------------

(환경부 / 수도권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수도법 제56조, 농어촌특별세사업 통합지침
- 사업목표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04년 35.2%에서 2007년 48.0%로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 ~ 2014
- 사업비 : 25,834억원 (국고 22,008억원), 국고 80% 지원
- 사업규모 : 면단위 농어촌지방상수도 553개소
- 추진내용 : 197개 시·군 면단위에 지방상수도 공급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까지	2006	2007	2006이후
사업량	553	197	29(113)	22(111)	305
총사업비	2,583,448	809,461	167,182	172,558	1,434,247
국고보조	2,200,818	781,628	133,586	138,038	1,147,566
지방비	382,630	27,833	33,596	34,520	286,681

4. 성과목표 달성도

- '05년도 면단위 계획 상수도 보급률 37.7%을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면단위생활용수개발	상수도보급률	(당해연도 누계 수혜인원/면인구)×100	%	38	38	100

II. 총 평

- 농어촌 면단위 지역의 상수도보급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공동우물이나 자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생활상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수인성전염병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어 주민 건강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본 사업 시행으로 농어촌 면단위 상수도보급률을 '94년 16.1%에서 2005년 37.7%로 제고하였으며, 2014년까지 목표 보급률을 75%로 제고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 ('06.10~'07.4)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주민만족도 조사를 도모코자 한 것은 바람직함.
- 시행중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사업조정기능 보강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시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사업목표는 면단위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을 '97년 20.8%에서 2014년 75%로 제고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년차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적절함

- 개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인 수도사업자가 주민여론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지역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시행중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계획 및 시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균특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중앙관서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전국을 통괄하는 사업계획의 적정한 수행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
- 매분기에 지자체의 예산집행 실태점검 및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06년도 국고지원액 133,586백만원 중 6,000백만원이 이월되고, 국고지원액(127,686백만원) 중 지자체 집행률이 67%로 낮은 수준임
- '06.10~'07.4까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사업추진상의 개선점 도출과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기대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상수도보급으로 인해 위생적 생활환경과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음
- 성과지표는 거주인구 대비 상수도급수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상수도 보급률을 지표로 선정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적절함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는 '05년도 기준으로 달성하였으며, '06년도의 경우 현시점에서 통계자료 미취합으로 제시하지 못했으나 목표치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Ⅲ. 주요 결정사항

- 시행중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사업조정기능 보강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시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농림부 / 농촌진흥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인구가 적고 분산되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수원공(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이용시설(물탱크, 송·배수관로 등)을 설치하여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
-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
-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호 라목 및 사목에 근거하여 '94부터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 2014 (21년간)
- 사업비 : 총 12,951억원 (국고 8,230, 지방비 4,721)
- 사업규모 : 전국 7,751개소 ('06까지 5,364개소 추진)
- 시행방법
 - 지원대상 : 면지역 자연마을중 자연수에 식수를 의존하거나, 간이(마을)상수도 시설지역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식수원으로 부적정 하거나 식수가 부족한 마을
 - 지원조건 : 1개소당 170백만원 (균특,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 희망마을→ 면→ 시·군 → 시·도(확정)
 - 주요사업내용 : 수원공(암반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정수시설, 물탱크, 송·배수관로, 계량기, 소화전 등) 설치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 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

- 제1차('93~'04) : 수혜가구 50호 이상의 마을 5,0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4,751개소 완료)

- 제2차('05~14) : 제1차 잔여사업량 및 제1차 사업대상에서 소외된 수혜가구 20~49호의 소규모 마을 3,000개소를 주대상으로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

구 분	목 표 ('94~'14)	'04 까지	5개년계획('05~'09)					'10~'14
			'05	'06	'07	'08	'09	
○ 사 업 량	7,751개소	4,751	346	267	252	300	300	1,535
(급수인구)	1,330천명	1,032	47	34	27	27	27	136
○ 사 업 비 (억원)	12,651	7,851	589	441	428	510	510	2,322
- 국 비	8,230	4,150	471	353	342	408	408	2,098
- 지방비	4,721	3,701	118	88	86	102	102	524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촌 농업·생활용수공급 대책마을에 대한 용수공급율을 69.0%로 설정하였으며, 사업추진결과 용수공급율이 69.2%로 목표를 달성

- 사업추진 마을수 : 5,364개소 (사업대상 마을수 : 7,751개소)

- 용수공급율 = 사업추진 마을수/사업대상마을 수

$$= 5,364(\text{개소})/7,751(\text{개소}) \times 100(\%) = 69.2\%$$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사업수혜인원수	당해연도 사업수혜인원수	%	69	69	100

II. 총 평

- 본 사업은 수도공급이 어려운 면지역 농촌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임
- 시설관리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와 합동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종전 상수도보급률을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과 중복 적용이 되고 있으며 사업성과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대상 마을수 대비 사업추진 마을수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한 것은 잘된 점임
- 지자체의 우수사례, 애로사항, 문제점, 운영관리방안, 기술개선 사항 등 제반분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예를 들면 교육, 사례집 편찬, 연찬회, 워크숍 개최 등)

1.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사업목표를 전국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용수공급대책이 필요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목표와 연차별 추진계획이 명확함
- 사업추진은 제2차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절차적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관계기관의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용수공급계획이 중복되는 지역은 제외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있음
- 사업추진중 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점검과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완료시 준공검사와 정기적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
- 시설관리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와 합동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한 농촌지역 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축산, 농업용수 등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성과지표는 종전 상수도보급율을 주요지표로 설정하였으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중복 적용이 되고 있으며, 사업성과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대상 마을수 대비 사업추진 마을수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음
- 346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등 사업성과관리에 노력하고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연찬회, 워크샵 개최, 사례집발간, 교육등을 통하여 지자체의 우수사례, 애로사항, 문제점, 운영관리방안, 기술개선 사항 등 제반분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3-3-2-3(계속)	면단위 하수도사업
-------------	-----------

(환경부 / 생활하수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면 지역에 하수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농어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사업비 : '06년까지 3,722억원 (국고기준)
- 사업규모 : '05년까지 58개 처리장 건설지원 (완공 18개소)
- 시행방법 :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국고 70%, 지방비 30%)
 - '95년부터 농특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전입시켜 사업 추진
 -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05년부터 농특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 추진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설치

3. 연차별 추진계획

- '06~'1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예산액(국고)	66,667	79,518	95,114	109,486	126,032

4. 성과목표 달성도

- '02년 : 목표/달성(24.5%/24.5%), 03년 : 목표/달성 (27.4%/27.4%),
'04년 : 목표/달성(30.4%/31.9%), '05년 : 목표/달성 (34.5%/35.8%)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면단위 하수도	하수도보급률	(당해 누계 수혜인원 /면단위 인구수)×100	%	34.5	35.8	104

II. 총 평

-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보급은 전국평균(83.5%)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35.8%)으로 생활환경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도 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2005년도의 경우 예산 667억원을 전액 집행완료하여 사업추진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지선관거 설치등의 소요재원에 대한 국고지원확대가 요망됨
- 본 사업추진에 따른 시군 관계자와 대상주민들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 삶의질 만족도조사 등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및 추진상의 개선점 도출과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어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목표가 적합함
- 성과지표를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보급률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계별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사업추진 과정에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예산집행 실태점검을 실시
- 주민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하수도보급으로 인해 생활환경개선과 쾌적한 정주기반조성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마을하수도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수질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지원범위에 지선관거 설치를 포함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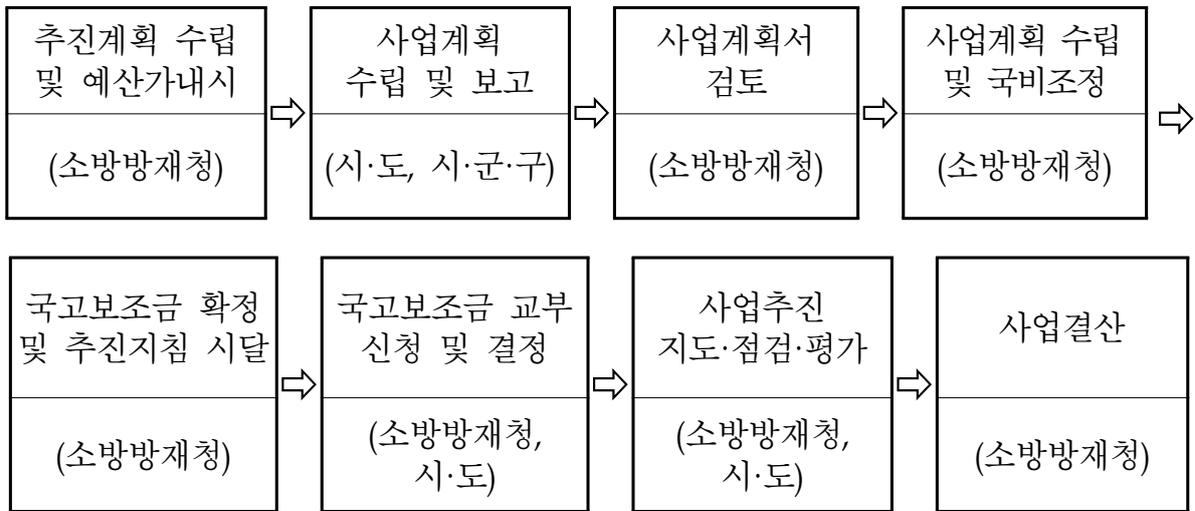
- 수해위험 소하천의 지속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
-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정비로 친수환경조성

○ 사업추진 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 정비시행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13조 (비용보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음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1조 (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5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사업추진 체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2016년
- 총사업비 : 11조 7,001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 15,286억원)
- 사업규모 : 25,528km ('06년까지 정비연장 : 2,979km)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Matching Fund)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소하천 대상
 - 소하천의 미정비 연장 비율에 따라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주요 추진내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제성(B/C) 및 재해위험도 분석 등에 의한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
- 호안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낮은 산과 접한 구간은 호안 미시공
- 소하천정비 구간내 수해원인이 되는 교량, 암거 등 시설물 정비
- 국가 정책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증·감액 조치 등의 인센티브제도 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하천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km)

구 분	계	2006까지	2007	2008	2009	2010	2011이후	비 고
계	117,001	15,286	1,186	1,418	1,632	1,878	95,601	
국비 및 양여금	57,262	6,405	593	709	816	939	47,800	
지방비	59,739	8,881	593	709	816	939	47,801	
정비량	35,815	13,266	237	283	326	375	21,328	

4. 성과목표 달성도

○ 소하천정비사업 계획 198km 정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소하천 정비사업	정비량	총 정비연장	km	198	311	157

II. 총 평

-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를 통하여 사전 재해예방 및 농어촌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하천생태계 보전 및 친수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임
- 치수·이수 및 자연환경이 조화된 소하천정비를 위하여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업무연찬회 개최 등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사업을 정착시키고 있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사례와 기술개선사례 등을 발굴하고, 담당공무원과 주민들의 현장견학, 사례집 발간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교육과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세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연계하는 Matching Fund 방식을 도입하여 당초계획보다 투자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의 재정상황, 과년도 집행실적, 재난관리평가 등 제반항목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조성한 것은 잘 된 점임. 또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정성·객관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코자 하는 방안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판단됨.
-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한 실정으로 국고보조금의 증액지원등 투자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소하천의 경우 하천피해가 크고,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비하여 정비율이 낮아 소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큼
- 사업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연계 투자하는 Matching Fund 방식을 도입하여 당초 계획(994억)보다 초과달성(2,077억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시군구별 재정력지수, 국비이월, 재난관리평가 등 제반항목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을 반영하여 '07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조성하였음
- 계획수립시 전문가 참여,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또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는 등 계획수립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 “재해예방사업의 효과성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기준 연구용역”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사업추진과정에서 소하천 담당자 교육 및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추진현황 및 사업지도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
- '06. 7 상반기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계획의 재조정과 사업독려 조치하는 등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사업시행후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하여 익년 사업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소하천정비로 인해 재해사전예방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계획대비 사업실적은 목표치(198km) 대비 157% 초과달성하였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한 실정으로 국고보조금의 증액지원등 투자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 우수사례와 기술개선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담당공무원과 주민들의 현장견학, 사례집 발간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육과 홍보효과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의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
- 지원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제3조) 및 폐기물관리법(제52조)
 - ※ '94. 2 농림부 '농업정책심의회 농어촌생활여건개선분과위'에서 농어촌의 공업화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구 등으로 '95년부터 사업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2014년 (20년)
- 총투자액 및 사업규모 : '06년까지 1,857억원 (130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郡)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군)
- 지원조건 : 15억원 정액보조
 - 시설부지가 확보되고 기본설계 등이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에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매립여유 용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지역을 선정·결정하고 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 매년 109억원씩 15개소에 지원 (신규사업 8, 계속사업 7개소)

4. 성과목표 달성도

-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1개소당 15억원씩 정액보조되며, 투입 예산에 대한 목표치 달성 (112개소 완공)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시설사업수	총 시설사업수(누계)	개소	112	112	100

II. 총 평

- 본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으로 쾌적하고 위생적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삶의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임
-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입지선정, 토지매입 등 주민반대로 집행률이 저조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은 적절하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사업 추진상의 애로점이 있음
- 매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추진지역을 선정·결정하고 있어 장기적인 사업추진계획이 결여되어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생활폐기물의 처리책무가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업집행의 효율성이 지자체 의지에 의존하고 있음
- 주민협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주민반대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상·하반기에 지자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음. 시설부지 선정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농어촌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생활환경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정액국고지원이 되고 있으며 '95년 이후 지원액이 인상되지 않아, 실제 사업당 국고지원비율이 20%정도에 불과함. 지원액이 적어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약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할 여지가 있음. 최소한 도시지역 지원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률보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추진 평가,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국고지원액의 상향조정 또는 정률보조방식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대책의 발굴이 가능할 것임

(농림부 / 친환경농업정책과)

I.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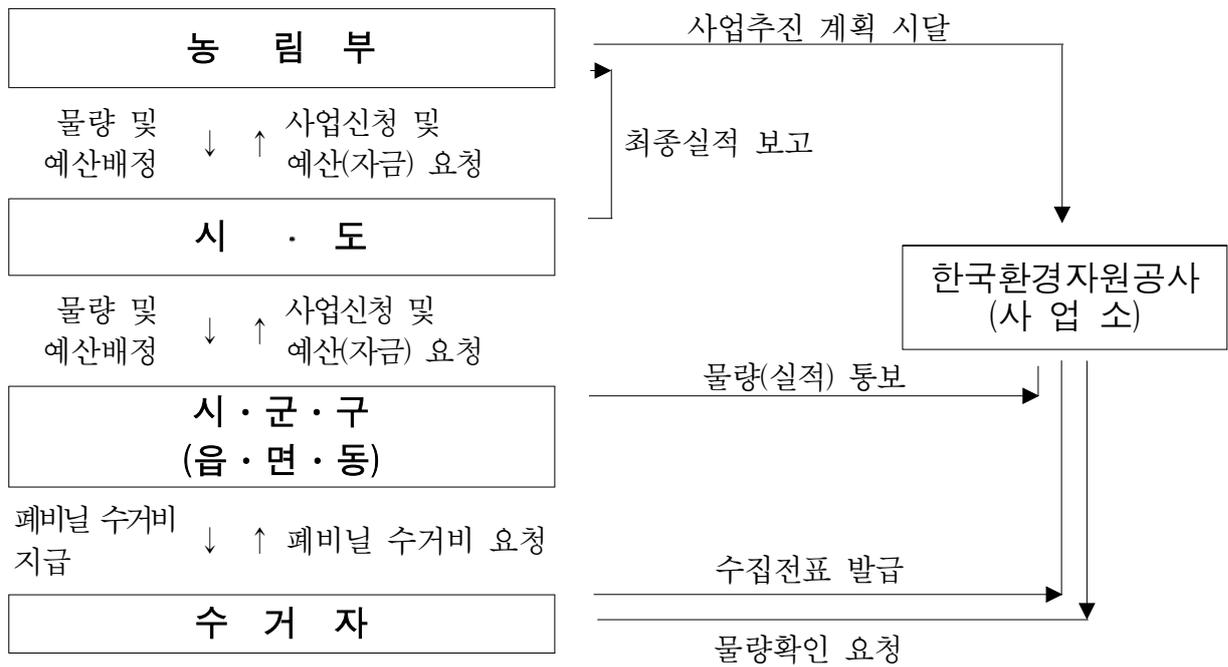
1. 사업목표

- 목표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환경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 개선
 - 폐비닐 발생량을 줄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폐비닐수거비 지원
- 지원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및 제39조
 - 제8조 : 국가 및 지자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제39조 :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 주요내용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수거비 지원
 -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 활성화 및 책임 강화 유도하기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폐비닐 수거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1년 단위사업)
- 총사업비 : '06년까지 기투자액 81억원 (270천톤)
 - '06 사업규모 : 100천톤, 3,000백만원 (30원/kg 정액지원, 국고 100%)

○ 수행체계



3. 연차별 추진계획

- 폐비닐수거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자발적 수거 유도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효과 제고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과 제	사업량 (톤)	사 업 비					
		계	'06	'07	'08	'09	'10
○ 폐비닐수거비 지원	670	20,100	300	300	420	480	51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 폐비닐 수거율 63%
- '06년 사업성과('05년 기준) : (폐비닐 발생량 323천톤/수거량 214)×100 = 66%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촌폐비닐수거비지원	폐비닐수거율	(폐비닐수거량/폐비닐 발생량)×100	%	63	66	105

II. 총 평

- 본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농촌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임
-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으로 수거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지원 단가가 낮아 지원효과 제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거단가 인상과 사업물량을 확대하여 수거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수거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서 수거물량 확인을 요청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수거물량을 확인후 수집전표를 발급, 지자체에서 수거비를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실적확인 및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취합하고 현지의견수렴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지원단가(30원/kg)가 낮아 지원효과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으로 수거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삶의질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수거단가와 사업물량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과지표는 폐비닐 수거율을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적절함

III. 주요 결정사항(검토사항)

- 폐비닐 수거단가 인상과 사업물량을 확대하여 수거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3-3-3-2(계속)	교통서비스 강화
-------------	----------

(건설교통부 / 대중교통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지역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비용 지원,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으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 제고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51조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에 재위임)
 - 사업절차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에 의한 분권교부세 교부
- 사업 내용
 - 사업 시행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의거 벽지노선 등의 운행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동법 제51조에의거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
 - 사업 규모 : 전국 1,570여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및 전국 1,423개 읍면 공영버스 구입 등 지원 (대당 1,800만원)
 - 사업기간
 - 벽지노선 손실보상 : '82년 ~ (국비지원은 '99년부터)
 - 공영버스 : '94년 ~

- 시·도별 배분내역 ('06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908	7	107	106	85	228	504	518	392	838	797	585	509	232
벽지보상	3,000	7	90	106	85	96	305	352	210	539	399	385	260	166
공영버스	1,908	-	17	-	-	132	199	166	182	299	398	200	249	66

3. 연차별 추진계획

- '04년 국비지원규모를 유지 ('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지방이양)
- 연차별 목표

(단위 : 백만원)

구분	'04	'05	'06	'07	'08	'09
성과지표(목표)	4,908	4,908	4,908	4,908	4,908	4,908
성과지표(결과)	4,908	4,908	4,908	-	-	-

4. 성과목표 달성도

- 목표대비 100% ('05년과 동일 수준 분권교부금 배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교통서비스 강화						
○ 농산어촌버스운행노선 운영비 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30	30	100
○ 농산어촌공영버스 구입 및 대체차비 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19	19	

II. 총 평

- 본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비용 지원, 공영 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를 지원하여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교통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사업임
- 사업주체는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재위임)로서 전국 1,570여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및 전국 1,23개 읍·면 공영버스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음 (대당 1,800만원)
-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가 지역의 실제적인 수요를 반영하기보다는 분권교부세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교통부문 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가 “벽지·오지 버스운행 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법령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농촌지역의 대중교통수단 운영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와 실험·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하여 벽·오지의 교통서비스를 유지함으로써 낙후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적절
- 본 사업은 분권교부세로 지방이양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을 고려 교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결정·시행하고, 행자부 지방재정평가시스템 및 지자체 감사과정에서 적법 추진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예산지원 확대를 요구하나 분권교부세 부족으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
- 벽지노선 손실지원사업이나 공영버스 구입지원사업 모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목표치를 '04년과 동일 수준 예산지원(지방교부금)으로 한 것은, 지방교부 수요 등으로 추가 확대가 곤란할 실정(행자부)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 농산어촌의 교통서비스 수요(소요액) 대비 공급(지원액) 즉, 충족도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수요가 증가함에도 국비는 고정시켜놓고, 증가분만큼 지방비로만 해결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기 때문임

Ⅲ. 주요 결정사항

- 전국적인 수요(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 지방교부세 확대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06년에 추진한 “벽지·오지 버스운행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외에도 농어촌교통 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선진 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지자체를 위한 다양한 적용모형의 제시가 필요함

3-3-3-3(계속)	국고여객선 건조
-------------	----------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낙도 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적기에 대체 투입하여 도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
- 추진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 ~ 2014
- 사업비 : '06년까지 29척 대체, 323억원 (국고 100%)
- 사업규모 : 매년 낙도보조항로에 취항중인 국고여객선 1~2척 대체
- 시행방법 : 국고건조(지방청 수행)후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에 위탁관리
- 추진내용 : 전국 27개의 낙도 보조항로에 28척의 여객선이 운항중이며, 매년 1~2척의 노후선 또는 항로에 부적합한 여객선 대체 · 건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78 ~ '85(새마을시리즈) : 총 21척 건조

- '86 ~ '94(수요발생시 수시건조) : 총 4척 건조
- '95 ~ 현재(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총 29척 건조

(단위 : 백만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예산	4,642	3,737	3,737	3,177	2,982	2,011	2,814	2,700	1,539	1,677	1,700	1,600
척수	5척	4척	3척	3척	3척	2척	2척	2척	1척	2척	1척	1척

<중기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7예산	'08계획	'09계획	'10계획	'11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국고여객선 건조 (요구기준)	1,600 (증가율)	1,800 (12.0)	1,800 (0.0)	2,000 (11.1)	2,000 (0.0)	(5.7)

4. 성과목표 달성도

- 국고여객선 건조 계획 1척 대비 신조 여객선 취항 1척으로 성과 지표의 목표치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국고여객선 건조	건조척수	당해연도 국고여객선 건조척수	척수	1	1	100

II. 총 평

-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은 낙도 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적기에 대체 투입하여 도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임

- '95년 이후 총 3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9척의 국고여객선을 건조하여 낙도보조항로에 취항시킴으로써 도서민의 안정적 해상 교통수단 확보뿐만 아니라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함
- 국고여객선 건조 계획에 의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서민의 교통편의 및 도시와 도서간 교류증진 도모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낙도 주민에게 생활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의 27개 낙도 보조항로 외에 새로운 항로 지정 필요성을 현지 수요에 근거하여 조사·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본 사업은 선령만료(20년) 도래, 항로 부적합 여객선 대체 및 도서 주민의 교통수요 욕구충족을 위하여 매년 1~2척의 낙도보조항로 취항여객선을 대체하는 사업으로서, 낙도 도서민의 안정된 해상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음
-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향상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생활여건 개선이라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의 사업목표와도 부합함
- '06년에는 통영⇔추도항로의 노후여객선 대체 건조(37톤급 일반선 ⇒90톤급 차도선, 16억원)하여 도서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여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음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을 실시 함으로써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였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국가(지방해양수산청)가 여객선을 국고 건조후 낙도보조항로 운영 선사에 여객선 관리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절차가 합리적임
- 동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 예산담당 부처와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목표인 도서민 기초생활여건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함 (연간 도서민 40만여명을 수송)
- “국고여객선 건조계획 대비 건조율”의 성과지표는 적절하고 만족도를 조사하여 일반항로와 비교한 것도 적절함
- 국고여객선 건조 계획 1척 대비 신조 여객선 취항 1척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 100% 달성

Ⅲ. 주요 결정사항

-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 요구액 반영 필요

3-3-4-1(계속)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지역(면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주택정비, 문화복지 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초생활시설을 종합 정비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이주의향을 가진 도시민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여 농촌활력증진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2013
- 사업비 : '05년 이후 19,000억원 (국고, '06년까지 기투자액 353,918)
 - ※ 지원조건 : 국고 100% ('07년 이후는 국고 80%, 지방비 20%로 추진)
- 사업규모
 - 정주권개발 대상 800개면(15개 자치구 포함)을 대상으로 매년 300개면(구)씩 추진
- 추진내용
 - '90~'04까지 1단계 770개면에 대한 지원을 완료 (지방양여금)
 - '05~'13까지 2단계 800개면을 대상으로 지원 (균특회계)
- 사업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장(제29조 내지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장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면, 억원)

구분	1단계	2단계			
		'05	'06	'07	'08~'13
기간	'09~'04				
사업량	(770)	338	300	300	(800)
사업비	23,350	1,639	1,900	1,921	13,540

4. 성과목표 달성도

- 본 사업의 주지표로 설정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주민만족도 모두 당초 목표치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사업시행수	총 사업시행 면수	면	300	300	100

II. 총 평

- 이 사업은 정주권개발 대상 800개면을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주택정비,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초생활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전원주거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복지·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한다는 사업목표는 비교적 명확함. 또한 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최근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상위 국정 목표와 부합하다고 판단됨.

-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오지개발사업과 사업대상지역만 다를 뿐 정책 목표, 사업내용, 사업추진방식에 유사한 것으로 일찍부터 두 사업의 통합건의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06년 정부 차원에서 두 사업의 통합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통합을 위해서는 이관사업 법령정비 등이 필요하며, 이를 기회로 여타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복지·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한다는 사업목표는 비교적 명확함. 또한 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최근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상위 국정 목표와 부합하다고 판단됨.
- 당초의 정책 목표대로 정주권개발사업의 1단계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정주기반확충사업의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면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전문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이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중앙정부는 당해 연도 예산을 법으로 정해진 면에 배분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비교적 단순한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은 높다고 판단되지만, 지역에서의 소액 분산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함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 및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서의 나눠먹기식 투자를 방지하기에는 미흡
- 행자부의 오지개발사업과의 통합으로 전국 농촌을 대상으로 통일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과의 역할 재조정이 용이해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주택정비 등 기초생활환경 및 마을회관 등 편의·복지시설을 종합·정비하는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로써 사업계획대 실적과 주민만족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예를 들면 도로포장율, 상하수도 정비율, 주택정비율 등으로 성과지표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이 사업의 대상인 정주권면의 상당수는 과소화가 점차 진행되어 정주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며, 행자부에서 이관 받은 오지개발사업과의 체계화방안이 마련이 필요함

(행정자치부 / 지역발전정책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오지개발촉진법 ('88.12. 31 제정)
- 사업목표
 -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2009 (5개년)
- 사 업 비 : 9,204억원 (국비 6,443, 지방비 2,761)
- 사업내용 : 3,382건
 -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영농단지 조성, 공동창고) : 1,461건
 - 생활환경개선 및 교통인프라(농로포장, 마을안길) : 1,611건
 - 문화복지시설(체육공원, 복지회관 등) : 310건
- 시행방법
 - 오지개발지구 지정고시 (시도지사 신청⇒행정자치부장관)
 - 사업계획수립(시도지사 수립 ⇒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 관계부처 협의 ⇒ 사업계획 확정)
 - 예산지원 (행정자치부)
 - 사업추진 (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사업 (2000~2004) 완료
-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 (2005~2009) 추진중

< 연도별 사업비 지원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 수	7,614	1,124	1,363	1,392	1,359	1,223	1,153
사업비	계	10,485	1,471	1,852	1,913	2,090	1,571
	국 비	1,100	-	-	-	-	1,100
	양여금	5,983	1,037	1,313	1,347	1,462	-
	지방비	3,402	434	539	566	628	471

- 2006년도에는 1,083억원(국비)을 지원 486건의 사업을 추진 (행자부 소관)

4. 성과목표 달성도

-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되는 예산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오지개발촉진사업	사업건수	총 사업건수	건	486	486	100

II. 총 평

- 이 사업은 오지면으로 지정된 면의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목표가 비교적 명확하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상위 국정목표에도 부합하는 사업임

- 사업대상지가 법률에 의해 선정되며 오랜 기간 동안 사업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효율성 위주의 사업추진체계 작동되고 있음
- 이 사업은 농림부의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사업대상지역이 다를 뿐 정책 목표, 사업내용, 사업추진방식에 유사한 것으로 일찍부터 두 사업의 통합건의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정부 차원에서 두 사업의 통합이 결정된바 있음
- 다만 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직제 개정, 이관사업 법령정비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낙후된 오지면의 기초생활환경, 복지·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한다는 사업목표는 비교적 명확함. 대상 지역이 법률에 의거 지정된 오지면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정책의 명료성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또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위 정책목표와도 부합한 사업임
- 5년 단위의 중장기 목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은 편임
- 그러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부 사업계획이 행정 자치부의 행정 지침에 의거하여 일선 행정기관에서 단 년도 사업 위주로 작성되기 때문에 주민 숙원 사업 위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

- 이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단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기본계획은 행정담당자가 수립하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파트너십에 의한 계획수립 절차가 요구됨
- 특히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 일선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단계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이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초생활환경이 꾸준히 개선되어 오지면의 정주여건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로써 제시하고 있는 오지면의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은 오지면 주민들의 기초생활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라고 판단되지만 실제 달성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성과 판단이 안되고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이 사업은 농림부의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의 통합할 예정으로 있는바 통합을 위한, 이관사업에 대한 법령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행정자치부 / 지역발전정책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지리적 여건으로 낙후된 도서지역에 대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소득증대 시설확충을 통한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 추진근거 : 도서개발촉진법 ('86.21.31 제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8~2007 (10개년)

○ 사 업 비 : 10,717억원 (국비7,472, 지방비3,207, 민용자38)

○ 사업내용 : 3,963건

- 생활기반시설(도로,급수,전기시설 등) : 1,819건
- 생산기반시설(소규모어항시설, 저장시설 등) : 1,879건
- 문화·복지시설 등(환경, 위생시설, 복지회관 등) : 265건

○ 시행방법

- 개발대상도서 지정고시 (시도지사 신청⇒행정자치부장관)
- 사업계획수립(시도지사 수립⇒행정자치부장관 제출⇒도서개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총리보고후 확정)
- 예산지원 (행정자치부)
- 사업추진 (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 '98~2006기간중 8,362억원 지원, 3,590건의 사업 추진

< 연도별 사업비 지원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업비	계	8,362	445	496	686	834	901	1,214	1,214	1,286	1,286
	국비	5,884	309	346	484	584	631	850	850	900	900
	지방비	2,508	136	150	202	250	270	364	364	386	386
사업량	3,590	332	345	392	434	442	463	487	396	299	

4. 성과목표 달성도

-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되는 예산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도서종합개발사업	사업건수	총 사업건수	건	299	299	100

II. 총 평

- 이 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기초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도서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시설확충을 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와 사업목적이 비교적 명확함. 또한 가장 낙후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에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상위 국정목표에도 매우 부합하는 사업임.

- 사업추진체계도 비교적 명쾌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는 편임
- 그러나 이 사업은 행정라인 중심의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등이 참여 여지가 매우 제한적임. 자칫 주민과 담당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 주민숙원성 사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도서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서 투자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지역임. 국토 공간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아래 도서지역에 대한 장기 비전이 제시되고 이에 입각하여 도서지역에 대한 정책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사업대상지 및 사업내용면에서 유사하므로 조정이 요구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서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사업 목표는 비교적 명확함. 사업대상지역도 법률에 의거 지정된 도서지역으로 한정함으로서 정책적으로 명확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위 정책목표와도 부합한 사업임
- 사업계획 수립시 도서 지역의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이 비교적 적절함. 다만 중앙단위의 도서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국토 이용의 전반적인 상황과 도서지역의 장기 비전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서 도서 지역에 대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도서지역의 추진기획단 구성시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사업타당성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이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선착장 등의 기초적인 생활 및 교통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어 도서 지역의 정주여건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 도서지역 선착장 연장실적(계획/실적)등은 적절한 지표라고 판단되지만 이의 달성도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도서 지역의 인구 과소화는 날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업 수혜자 대비 예산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아울러 요구됨

Ⅲ. 주요 결정사항

- 도서지역에 대한 일체 점검을 통하여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어촌종합개발사업과의 관계 설정이 요구됨

3-3-5-1(계속)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지원
--------------------	----------------------

(문화관광부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국민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농어촌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목표

- 2013년까지 농어촌공공도서관 총 260관 건립 목표

○ 추진근거 및 배경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등)
- '새문화관광정책사업'('98), 농어촌발전종합대책 ('94)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2.8 / 문화관광부)

○ 예산반영 추이

(단위 : 억원)

사업명	'02	'03	'04	'05	'06	'07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농어촌)	20	35	112	99	101	56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 ~ 2013년

○ 총사업비 : 1,240억원 ('06년까지 지원예산액 102관 586억원)

- 사업규모 : 2013년까지 260개관 확충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건립비의 80%, 최대 16억원)
- 지원조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본 방향 : 2013년까지 260개관 확충 ('06년말 현재 221개관 운영중)
- 매년 6개관, 96억원씩 국고 지원 계획
 - ※ 2005년도부터 균특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지자체 실링내에서 자율 편성에 의해 대상사업 및 사업비 확정

(단위 : 억원, 관수)

구 분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input type="checkbox"/> 도서관 확충 계획	221	227	233	239	245	251	257	260
<input type="checkbox"/> 국고 지원 계획								
지원 관수		11	6	6	6	6	3	
지원 액수		56	96	96	96	96	48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공공도서관건립지원	지원관 개소수	총 지원관개소수(누계)	개소	14	13	93

II. 총 평

-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며 문화시설도 충분치 못한 농촌지역에 양질의 도서관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필요성이 높으며 사업 목표도 비교적 명확한 편임. 또한 지식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위 정책 목표에도 부합한 편임
- 사업목적이 분명하며 사업에 대한 수요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반영하여 지원 조건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농간 지식 정보격차 해소로 지역균형발전 투자라는 점에서 현재 계획은 적절하다고 인정됨. 다만 사업 수요가 높기 때문에 사업 목표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 방식이 적절하고 관련기관과의 연계 협조도 비교적 원활한 편이며, 중간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부지확보난, 행정절차 이행, 지방비 부족 등의 원인으로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이월 및 공사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 인구 6만명당 1관은 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성과지표 달성도를 설립목표치 대비 설립치를 비율 계산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이용자 목표치 대비 이용자수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Ⅲ. 주요 결정사항

-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써 현재 계획하고 있는 6개소/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폐교를 활용한 부지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문화관광부 / 생활체육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전국 3,571 읍·면·동에 2개소씩 7,142개 조성
- 읍·면·동 소생활 단위에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전여가 선용과 건강을 증진하여 농어촌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 조건 : Matching Fund (기금 50%, 지방비 50%)
- 사업비 규모 : 개소당 40백만원 내외 (기금 50% 지원)
- 설치시설물 : 주민이 선호하는 간이 체육시설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예산범위 내 지속적 추진
- 추진일정 : 연도별 120 ~ 150개소 설치
- 사업비

(단위 : 억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개소	120	150	150	150	150	
금액	18	30	30	30	30	기금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 지원수	(당해연도 체육시설 지원수/최종목표연도 체육시설 지원수)×100	%	72	72	100

II. 총 평

- 읍·면·동 소생활 단위에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전여가 선용과 건강을 증진하여 농어촌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사업의 목표는 적절하며 사업의 필요성도 높다고 판단됨
-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지자체에 일임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 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등 사업추진 방식이 비교적 합리적임
-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생활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금배정시 농어촌에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 시설유지관리 우수사례(지역 우수기업과의 자매결연, 예산배정 등) 홍보 검토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 목표가 분명하며 시설물 설치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등 자율권을 부여한 점이 우수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설치를 주민자율성에 맡기되 객관성이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행정단위별 2개소로 한정되므로 성과지표를 목표대비 건립개소수와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별 목표대비 건립개소수를 추가하여 계산할 필요

Ⅲ. 주요 결정사항

- 예산배정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에 우선 배정하며 초기에 많은 수를 건립하고 년차별로 감소시키는 배정방식을 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시설 유지관리 우수사례 홍보 등이 필요

(문화관광부 / 지역문화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턱 낮은 생활공간을 조성해줌으로써 이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적 문화불균형 해소

○ 사업목표

- 도시저소득주민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소외된 지역의 문화향수 권을 제고하여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문화참여 유도
- 도농간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유휴공간을 재활용하여 주민 맞춤형, 생활문화체험공간을 제공
- 기존의 문화공간과는 차별화된 참여자가 주인되는 소비자적 공간 조성으로 소외지역 문화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호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시책과 권장)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1 ~ 2006. 12

○ 사 업 비 : 10억원 (복권기금)

- 사업규모 : 12개소 조성
- 사업형태 : 민간경상보조
- 사업수행주체 : 전국문화원연합회
- 사업 추진 내용
 - 유휴공간을 문화공간화로 리노베이션(90%)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간조성비(리모델링 및 장치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목표년도 기준 110여개 도달치

(단위 : 억원)

구분	'05년까지	'07년	'08년	'09년	계
개관공간수	28('04)+11('05)+12('06) =51개소	15개소	20개소	20개소	106개소
기금소요	50억+11억+10억=71억	20억	20억	20억	131억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	공간 개관수	총 공간개관수	개소	10	12	120

II. 총 평

- 유휴 공간을 재활용하여 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소외지역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 있어서 사업 필요성이 높으며 균형 발전이라는 상위 정책목표와도 부합함.

- 사업이 문화관광부, 전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중앙주도형의 추진체계로서 지역의 문화 실정을 잘 알고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지자체나 지방 문화원이 추진체계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06년 예산규모가 15억원으로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편이며, 문화공간시설 조성에 치중함으로써 개관이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시 저소득 주민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소외된 지역의 문화 향수권을 제고하여 도농간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유희 공간을 재활용하여 생활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소외지역 문화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목표는 적절함
- 10억원의 복권기금을 이용하여 유희공간을 리노베이션(90%)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간조성비(리모델링 및 장치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바,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수혜지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정책연구 및 문화예술 전문 평가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consulting 위원회 구성, 전문 회계법인 감수·감리 등의 실현 수단은 매우 적절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문화관광부는 사업주관부서인 전국문화원연합회 및 문화정책평가연구원, 한미회계법인, 문화공간조성TF, 기조성단체와의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발전적 아젠다를 구축하는 등 합리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추진체계는 사업의 수가 많아질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 문화단체를 객체화하는 중앙주도형의 추진체계라는 문제점도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 목표치로서 제시하고 있는 “개관수”는 사업 초년도에는 적합하나, 완공되어 1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활용정도 및 만족도를 측정하여 지표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Ⅲ. 주요 결정사항

-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지자체와 지방문화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소외지역의 수혜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규모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함

(문화관광부 / 지역문화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소외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적·가치지향적 실버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자아실현 성취
 -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거점센터로 정착
- 지역의 저소득층, 불우계층 등 문화소외 계층과 농어산촌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 개설 운영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우수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확대
-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공감대 확대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및 사회연착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주체 : 전국 224개 지방문화원 및 전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
- 주요 프로그램
 - 실버프로그램 : 짬뽕 공예교실, 실버인형극단, 폐백음식 만들기 등
 - 문화체험 프로그램 : 향토생활문화 체험(향토음식 만들기 등), 전통 문화체험(템플스테이, 한옥체험 등), 예술체험
 - 결혼이주여성 : 지역문화 체험 및 언어교육 등
 - 새터민 : 전통혼례, 북한음식 체험 및 공연 등

- 사업대상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 60세 이상 어르신
 - 향토문화체험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청소년, 복지시설 수용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
 -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 :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가족
 - 새터민 프로그램 : 새터민, 실향민, 지역민
- 사업비 : 12,096백만원 (04년 : 3,664백만원, 05년 : 3,432백만원, 06년 : 3,000백만원, 07년 : 2,000백만원)
- 시행절차 : 사업신청(문화관광부)→복권기금배정(문화예술위원회)→사업주관(전국문화원연합회)→사업시행 및 결과정산(지방문화원)→평가(복권위원회)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07	2,000	200여개 프로그램 × 50명 × 200,0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10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100개
2008	3,000	400여개 프로그램 × 40명 × 187,5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15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250개
2009	3,500	500여개 프로그램 × 40명 × 175,0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20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300개
2010	3,500	500여개 프로그램 × 40명 × 175,0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20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300개
2011	3,500	500여개 프로그램 × 40명 × 175,0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20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300개

4. 성과목표 달성도

- 총 155개 프로그램에 22,362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둠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기획의 방향 및 운영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지방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기획,실행,홍보, 네트워크					비계량 지표

II. 총 평

-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불우계층 등 문화소의 계층별로 대상자에 맞는 다양한 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문화활동 증진과 지역문화 질 향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다만 소외계층의 참여가 비자발적인 경우 형식적 행사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분야별 세부 성과지표를 제시함에 따라 세부지표 산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연구 및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지방문화원에서 실버프로그램, 향토문화체험 프로그램, 새터민 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향수권을 제고하고, 기존 지방문화원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결합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서도 지방문화원 관내 사회적 소외계층 현황 파악 → 프로그램 기획 → 심의, 선정 → 사업시행 방식으로 계획을 추진하여 현실 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원사업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사안 및 문제점 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프로그램 특성에 적합한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 프로그램별로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음
- 컨설턴트가 사업 시행 현장을 방문하여 중간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연구위원, 컨설턴트들이 현장 컨설팅 및 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상황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조언 및 발전방향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분야별 세부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조사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측정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기간 경과후 그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참여율과 시행횟수를 이용한 성과지표 개발 검토

Ⅲ. 주요 결정사항

- 사업대상을 사회적 취약 계층 전반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역 문화 전문가를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3-5-6(계속)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
-------------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문화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자체가 추진하는 과학관 설립 등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여 지방의 주민에게 과학문화 체험기회 확산
-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생활친화적인 과학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과학관육성법 제4조의 2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수립)
 - 과학관육성기본계획('03.12)에 의거 2012년까지 국·공·사립과학관 100개 육성 (지방테마과학관 26개 건립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및 사업비 : 71,500백만원, 지방테마과학관 26개 건립 지원
- 시행방법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지방과학관별 10억원 범위내에서 건립비용과 전시시설 비용의 50% 이내 지원
- 추진내용
 - 과학탐구관, 천체영상관, 생태체험관, 동식물 전시관 등 건립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지방 과학관이나 천문대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4~5개 신규 테마과학관을 선정하여 지원

(단위 : 억원, 개)

구 분	'06	'07	'08	'09	'10
예 산	60	54	57	40	30
테마과학관	10개소 (신규7, 계속3)	10개소 (신규5, 계속5)	10개소 (신규5, 계속5)	8개소 (신규4, 계속4)	6개소 (신규3, 계속3)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	건립수	건립지원	개소	5	5	100

II. 총 평

- 문화 활동 기회가 적은 지방 주민에게 과학문화체험 기회 제공하고,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시설과 연계 운영하여 지방과학문화 확산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지원방식과 지자체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 설립목표 재수립과 예산확보 노력 필요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추진 동기 및 필요성이 적절하고, 국정지표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며,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을 구비하고 있음
- 계획수립시 기초지자체 수요조사, 주민여론 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과기부가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테마과학관을 선정 후 지자체가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적합한 테마과학관 건립이 가능함
- 한국과학재단에서 협약체결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과학교육 연구소, 국립중앙과학관 등 과학교육 및 전시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테마과학관 건립을 자문하고 있어 충실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기초지자체 테마과학관 건립 지원수만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으나, 만족도 등 성과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목표 개소수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될 필요
- 건의사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부 과제명을 “지방과학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부처의 사업과 연계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예를 들면 전통테마 마을, 체험마을, 농촌지역 거점마을 개발, 과학관련 특색 사업지구 연관사업 등)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 및 학술연구의 장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사업비 : 518억원 ('06년까지 447억원)
- 사업규모 : 10개소 ('08년까지 수목원 내 부대시설로 11개소 조성)
- 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50%
- 추진내용
 - 산림사료·수목유전자원 표본 등 전시공간 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림박물관 건립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분	'06예산	'07예산	'08계획	'09계획	'10계획	'11계획
산림박물관	31	43	28	-	-	-

4. 성과목표 달성도

○ 목표 6개소 / 달성 6개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산림박물관 건립	건립 개소수	총 건립개소수	개소	6	6	100

II. 총 평

- 점차 훼손·멸실되어 가는 산림사료 및 생물표본의 체계적 보존 기반을 위하여 수목원내에 산림박물관을 지속적으로 건립 추진한 다는 정책목표는 적절함
- 산림사료와 산림생물표본의 체계적인 보존으로 자원화·산업화를 촉진하고 산림문화공간 확충으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수요 충족의 필요성도 큼
- 도별 최소 1개소 설립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사업이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 필요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추진 동기, 필요성과 사업목표가 분명하며 상위목표와 부합 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절차적인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자체가 주체가 되고 산림청은 국고보조예산 확정 및 교부하며, 산림관계자로 구성된 현지 점검단 구성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절차 등이 효율적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지표를 설립개소수로 하되 입장객수, 산림생물표본, 생물유전 자원 확보 노력 등 산림박물관 건립효과도 사업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Ⅲ. 주요 결정사항

- 부진사업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계획 수립에서 완성까지 시·도와 산림청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건립 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산림청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임업 전문가와 지역대학과 연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자치부 / 서비스정보화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등 정보이용환경 조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 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생활화 및 지역 공동체 형성
- 지역 특산물 상거래 판매 지원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2014년
- 총사업비 : 3,309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 1,169억원)
- 사업규모 : 800여개 정보화마을 조성
- 시행방법 : Matching Fund(50% 자본보조)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
- 조성현황 : 306개 정보화마을 조성
 - ※ 마을당 약 3억원 소요 (콘텐츠 구축 1억, 센터구축 1억, PC보급 1억)
- 사업 내용
 - 초고속인터넷망, 마을정보센터, 가구별 PC보급 등 정보이용환경 구축
 - 마을별 홈페이지 및 중앙 콘텐츠 구축·운영
 - 주민 정보화마인드 제고 및 정보화지도자 육성
 - 마을별 운영위원회 및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언론매체, 홍보영상물 등을 통한 정보화마을 브랜드 구축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정보화마을 조성 계획 : 2014년까지 787개 정보화마을 조성

년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마을수	25 (6)	78 (3)	88 (11)	70	(19)	26 (15)	32 (21)	68 (34)	68 (34)	68 (34)	68 (34)	68 (34)	68 (30)	59 (30)

※ ()안은 시도자체에서 조성한 마을개수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정보화마을 조성 실적 및 주민정보화교육 실적은 목표치 초과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정보화마을 조성	주민 정보화 교육실적	1년동안 전체교육시간/전체 PC보급 가구수	시간	6	6.5	108
	홈페이지 국민 참여도	정보화마을 전체 게시글수/전체마을수	건수	2,000	2,123	106

II. 총 평

- 농어촌 지역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마을을 단위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은 매우 적절하고 2001년부터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 하지만 이제 농어촌 지역에도 인터넷 이용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농가도 개인가구별로 PC를 갖추고 있으며 마을 홈페이지 구축도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운영이 미흡한 마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보완하고 있으나 정보화 마을을 선정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이나 마을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정보화 사업이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다른 부처의 마을단위 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나 사업 집행 후 연계하기 때문에 효율이 저하되고 있어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거나 사업을 패키지로 묶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운영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정보화를 통해 농촌과 도시간의 생활수준과 소득격차를 줄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는 뚜렷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때 지역에서 일정 수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종적인 사업의 목표는 정보화를 통해 마을의 활성화,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인데 정보화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는 부족함.
-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을 제고한 점은 바람직하나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아쉽게 생각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상향식 공모제, 정보화 마을 운영협의체 구성, 관련사업 연계 추진, 중간 모니터링, 운영이 미흡한 마을에 대한 컨설팅,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은 절차는 바람직하게 추진되었음.
- 시스템 구축, 정보화 마을 운영 위탁 등을 중앙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의 원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다양한 마을단위 개발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나 아직도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보화마을 사업으로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부처의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정보화마을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홍보와 행사, 이벤트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인터넷 보급률, PC 보급률, 정보화 교육, 소득증대, 게시물 수 등의 성과지표와 목표치에 따른 성과관리와 성과 달성은 충실하게 이루어졌음.
- 만족도의 경우 소득증가 항목이 정보화 격차 해소, 공동체 활성화 등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정보화 마을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평균판매액과 게시물 수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연차별 판매액의 증가나 게시물의 증가 등의 적절한 성과 지표 개발이 필요함

Ⅲ. 주요결정사항

- 사업의 적정 규모와 사업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정보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마을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필요
- 시군단위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 분담에 대한 사업방안 연구
- 정보화 마을 사업에 적합한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의 개발을 통한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부 / 정보문화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확대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2. 사업내용

-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07년까지 50가구 미만 농어촌 지역 11만여 가구에 대해 유선 및 위성방식으로 초고속망 구축
 - 재원은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1:1:2 비율로 분담하고, 마을 규모, 이용희망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구축
- 사업추진 근거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3. 연차별 추진계획

- '06년~'07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
 - '06년 총 354억원(정부예산 : 90억원)을 투입하여 유선망 구축
 - '07년 총 354억원(정부예산 : 90억원)을 투입하여 유선 및 위성망 구축

4. 성과목표 달성도

- 당초 '06년 53,000여 가구에 초고속망을 구축하여 홈 패스율 98%를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효율적 망 설계 및 장비 낙찰차액 활용등을 통해 75,990가구에 망을 구축하여 99%의 홈 패스율 달성

<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추진 경과 >

구 분	구축 대상	전체 가구수	이용가능가구수	구축율	미구축가구
2002	전국 읍면지역	377만	308만	82%	69만
2003	100가구 이상 지역		323만	86%	54만
2004	50가구 이상 지역		330만	88%	47만
2005	50가구 이상 지역		358만	95%	19만
2006	50가구 이상 및 이하 지역		373만	99%	4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초고속인터넷이용환경 조성	초고속 인터넷 보급 율	초고속인터넷이용가구/ 전국농어촌지역가구	%	98	99	101

II. 총 평

- 농어촌의 낙후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도 중앙, 지역, 통신사업자간의 역할분담이 잘 되어 있고 50 가구 미만의 정보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바람직함.
- 2007년까지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이 100%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민간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규모가 큰 마을이 아니라 50가구 미만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매우 적절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구축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위성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유선망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기 못하므로 다른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재정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음.
- 중간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절차의 변경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2007년에 농어촌 지역에 100%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되는 목표가 가시적이므로 매우 고무적임.
-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며 성과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등 추진성과가 뚜렷함.
- 지자체의 예산편성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2007년의 사업목표 달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건의사항 대로 농어촌 정보화 관련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통신망의 기술발전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품질저하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III. 주요결정사항

- 2007년 농어촌 초고속망이 100% 구축하게 되므로 계획대로 추진
- 신기술 추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농림부 / 정보화기획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업인의 홈페이지 운영능력 향상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 농업경영체가 농가·생산관리, 자재구매관리, 판매·정산관리 등의 업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 ~ 계속
- 사업비 : '06년 480백만원
- 사업규모 : (~'04) 1,706농가 홈페이지 구축,
('05~'06) 컨설팅 및 정보시스템구축(7개 법인), 컨설팅(14개 법인)
* 개별농가에서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등) 중심 지원으로 체계 전환
- 지원형태 및 시행기관
 - 농업인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지원(농림수산정보센터) : 국고 100%
 - 농업법인 정보시스템구축지원(시·군) : 국고40%, 지방비30%, 자부담30%
- 추진내용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개최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
 - 농업법인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컨설팅 및 시스템개발, 워크샵개최,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07	495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개발, 교육, 협의회 개최 등 210(15개소)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운영관리, 홍보 등 177, 위탁관리비 108
2008	620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개발, 교육, 협의회 개최 등 300(20개소)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운영관리, 홍보 등 212, 위탁관리비 108
2009	800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개발, 교육, 협의회 개최 등 480(30개소)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운영관리, 홍보 등 212, 위탁관리비 108
2010	960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개발, 교육, 협의회 개최 등 640(40개소)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운영관리, 홍보 등 212, 위탁관리비 108
2011	1,210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개발, 교육, 협의회 개최 등 890(45개소)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운영관리, 홍보 등 212, 위탁관리비 108

4. 성과목표 달성도

- '06 농업법인 정보시스템 활용만족도 조사결과 (자체설문)
 - 사업 참여법인 84.2%, 지자체공무원 70.5%
 -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 전자상거래로 100% 상품매출을 올리는 홈페이지 농가도 존재
 - 관련 교육 확대로 농가의 운영능력 향상이 소득창출로 연결
- ※ 농업연수원의 농업경영정보화 리더육성과정 이수자는 교육을 통해 습득한 농업경영과 정보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교육이수전보다 농가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효과창출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점	65	77	118

II. 총 평

- 농업경영체의 경영 효율을 증대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은 매우 적절하고 컨설팅, 교육, 민간 업체 참여 등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잘 조직 되어 운영되고 있음.
- 사업시행주체는 지자체로 하여 지역 자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보완 하기 위해 농림수산정보센터가 역할을 맡고 (사)한국사이버농업인 연합회를 통해 운영활성화를 고려하는 등 주체간의 역할 분담도 적절하고 명확함.
- 사전조사, 컨설팅 등으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있으며 경진대회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 있고 사업대상자들이 의견 수렴 등의 사업절차도 적절함.
- 성과를 사업대상자의 만족도를 통해 측정하고 있으나 보다 삶의 질 향상에 적합한 성과측정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현재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홍보, 마케팅, 상호 시너 지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마을단위 사업에 비해 경영체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설팅, 교육, 홍보 및 마케팅이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정보화 뿐 아니라 경영합리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됨.
-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고 수요조사, 경진대회, 홍보 등의 절차적으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있어 적절한 전문기관, 참여자 협의회 등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경진대회를 통해서 사업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 티브를 주는 등 동기부여를 고려하고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경영체의 선정·평가 등의 업무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홍보, 유지보수, 의견수렴 등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단 사업자의 계약을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지역의 자율성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작년에 이어 개인농가의 경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홈페이지 경진 대회 우수농가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평가지표가 활용만족도만 선정되어 있어 실제로 소득증가, 회원증대, 마케팅 등의 구체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만족도에 있어 참여법인이 84.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성과가 있으며 잘 활용하는 사례도 있어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홍보, 마케팅,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함.

Ⅲ. 주요결정사항

- 더 많은 시군단위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가 유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축된 홈페이지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해양수산부 / 수산경영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디지털 어촌구축 사업은 어촌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화 어업인을 육성하여 어촌 정보격차 해소 및 수산업 발전 도모
- 사업추진 근거
 -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총사업비 : 200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 106억원)
- 사업규모
 - 어업인 원격 영상교육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 31개소
 - 어업인 정보화 교육 : 100천명 ('10년까지)
 - 어촌 정보화 사랑방 개설·운영 : 50개소
 - 어업인 신기술 교육지원 시스템 개발 : 바다로21 구축
- 사업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청)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개소)

구 분	'06까지	'07	'08	'09	'10	'11
· 어업인 정보화 교육	81천명	7	7	5	5	
· 원격영상시스템유지보수	31개소	31	33	33	33	33
· 신지식공유시스템 구축운영	92개소	92	92	92	92	92
· 어촌정보사랑방 개설	493개소	-	-	-	-	-
· 어업인 단문자서비스 제공	7,738명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4. 성과목표 달성도

- 정보사랑방 이용자 수 : 4,925명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 위	'06목표 (A)	실적 (B)	B/A
디지털어촌구축사업	구축 개 소수	총 구축 개 소수	개소	50	50	100

II. 총 평

- 어촌특성에 맞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보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산청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나 지방청, 지자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어촌 현실에 맞는 사업추진을 모색하고 있음.
- 사업성과 지표의 선정이 적절치 않아 삶의 질,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자체 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일부지역에서 어업인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원인분석이나 대책수립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어업인과 어촌 특성에 맞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보화를 위해 교육기반, 교육, 사랑방 등의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방청, 지자체의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사업량 선정, 사업선정 등의 사업절차상에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내용과 물량을 정하는 등의 절차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절차를 보다 발전시켜 지방청, 지자체, 어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중간모니터링, 점검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나 모니터링의 결과, 점검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떠한 피드백이 일어나서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는지 알 수 없음.

- 대부분의 예산을 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으나 지역개발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을 지역 자원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방향이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목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본부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적절한 근거를 제시 할 필요성이 있음.
- 작년 평가에 있어 지자체의 참여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자체 평가서에 지자체 참여에 대한 언급이 충분치 않아 평가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자체 평가서에 본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언급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아쉽게 생각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정보화 교육 실적과 정보화 사랑방 개소 숫자를 성과목표로 삼은 것은 사업의 추진실적에 가깝기 때문에 본 사업으로 어업인의 삶의 향상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보다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일부지역에서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이유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

Ⅲ. 주요결정사항

-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시스템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언급하고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식에 대한 연구, 개발 노력 필요
- 적절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이에 따른 정확한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
-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농림부 / 정보화기획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정보화 취약계층인 농업인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도·농간, 산업간 정보화격차 조기 해소
- 영농과 생활에 농업정보활용 및 경영정보화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여 정보화를 통한 효과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8 ~ 계속
- 사업비 : '06년 2,501백만원
- 사업규모 : '06년까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50만명 실시
- 시행방법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대학 등 교육전문기관
 - 지원방법 및 형태 : 국고 100% (단, 농협은 50%)
- 추진내용 : 기초·중급·전문교육 등 5개 집합교육 과정의 운영과 함께 현장방문 및 온라인교육 실시
 - 집합교육 : 컴퓨터·인터넷활용(단기), 농업정보활용(단기/중기), 농업경영정보화(중기/장기)

- 방문교육 : 농업정보119요원, 이동버스
- 온라인교육 : 각 단계별 교육에 상응하는 온라인콘텐츠 53개 구비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07	3,085	농업인 정보화교육(28천명) : 2,150,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 485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등(34천회) : 450
2008	3,7256	농업인 정보화교육(28천명) : 2,550,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 500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등(50천회) : 675
2009	3,990	농업인 정보화교육(30천명) : 2,700,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 520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등(57천회) : 770
2010	4,191	농업인 정보화교육(30천명) : 2,800,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 540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등(63천회) : 851
2011	4,211	농업인 정보화교육(30천명) : 2,800,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 540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등(65천회) : 871

※ 2007년부터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사업예산이 통합 편성됨

4. 성과목표 달성도

- 만족도(5점 척도) : (계획) 4.00 → (조사결과) 4.06
- '06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56,882명 실시 (계획 대비 103.4%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업인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인원	총 교육인원	천명	55	56.8	103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점	4.0	4.06	

II. 총 평

- 농업인의 정보화 구축사업과 정보화 교육사업을 병행해야 농업인이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정한 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농촌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촌현장에서 농업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기관과 참여 주체를 참여하게 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였음.
- 분야별, 수준별 교육을 위해 더 다양한 교육기관의 참여와 수요자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정보화에 소외되어 있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지원은 적절하고 다양한 정보화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단체와 기관을 활용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분야별 수준별 교육을 위해 교육 수요자가 상시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일부 활용하는 것이 향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자체, 농협, 기술센터, 전문교육기관 등 지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어 농업인에게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작년에 이어 농업정보 119의 방문교육, 농림수산정보센터와의 원격지원 시스템도 바람직하고 온·오프 연계 교육을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함.
- 홍보책자, 동영상 등을 통한 정보화 마인드 고취 등은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우 적절한 아이디어라고 판단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만족도 평가에 있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으나 성과목표를 평균치가 아니라 작년에 비해 더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인원, 만족도 이외에 교육생의 정보화 기반사업 활용도, 소득 증대 활용도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함.

Ⅲ. 주요결정사항

- 다양한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고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의 도입
- 적절한 평가지표와 성과목표를 선정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건의사항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무관심한 농업인의 관심 고취 방안에 대한 연구개발

3-3-7-2(계속)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	-------------------------

(농림부 / 정보화기획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정보화선도자로서 역량을 갖춘 정보화 우수자를 읍면지역에서 최소 1인 이상 지속 발굴·선정 (1,500명)
-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정보화선도자로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인근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교육 실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 ~ 계속
- 사업비 : '06년 총 사업비 8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06년 농가방문교육 30,400회
- 지원금액 및 형태 : 방문교육 활동비(2만원/회), 교육훈련비, 운영비 등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각 도 및 시·군)
 - 정보화선도자 선정·관리·교육·홍보 등 사업추진 관리
- 사업수행 : 정보화선도자 (농업인)
 - 해당지역 농가방문 맞춤형교육 실시, 마을단위 정보화시설 운영담당 및 정보화리더 활동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내 역
2007	450	정보화선도자 312명, 농가방문교육 34,800회 (국비 50%)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2008	675	정보화선도자 350명, 농가방문교육 50,000회 (국비 50%)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2009	770	정보화선도자 385명, 농가방문교육 57,000회 (국비 50%)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2010	851	정보화선도자 420명, 농가방문교육 63,000회 (국비 50%)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2011	871	정보화선도자 440명, 농가방문교육 65,000회 (국비 50%)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 2007년부터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예산으로 통합편성

4. 성과목표 달성도

-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만족도 94.5%
- '06년 계획 : 정보화선도자 261명, 방문교육 30,400회
→ 정보화선도자 265명 (4명 증가), 방문교육 29,858회 (98.2%)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정보화선도자 선정	선정인원	명	261	265	101

II. 총 평

-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농업인 내에서 육성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함.
- 단순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자를 양성하거나 다른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선도자의 자율적 모임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좀 더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 정보화를 위해 정보화 선도자를 양성하고 이러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 정보화의 요구가 다양하니 만큼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선도자를 양성하거나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보화 선도자의 자질 향상이나 인증을 위한 강사 인증 시스템, 온라인 인증시험 등의 새로운 시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시행의 추진과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정보화 선도자가 하고 있어 중앙, 지역, 선도자의 역할분담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판단되고 지역 내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간모니터링,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교육사업의 연계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절차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정보화 선도자의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서 선도자의 지역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협의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 정보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교육대상자의 만족도는 높아 사업추진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나 선도자의 만족도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추진실적, 만족도 이외의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결정사항

-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개발하여 선도자를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보화 선도자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협의회 등을 구성
- 사업에 적절한 성과지표와 목표를 정하고 이를 평가 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농림부 / 정보화기획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분산된 농업·농촌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농업인이 영농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 농림정책·기술정보, 유통가격 등 농업정보와 건강관리, 농촌생활 등 농촌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소비자·학생 등의 이용률 제고
- 사업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28조(농업 및 농촌지역 정보화)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농어민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 사업자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 ~ 계속
- 사업비 : '06년 2,946백만원
- 사업규모 : 농업·농촌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생산·가공하여 제공
- 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추진내용
 - 농업정보서비스 및 농림지식검색시스템 구축·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예산	추진내용
2007	2,946	- 농업정보서비스 운영 및 농림 콘텐츠 개발 등 - 정보자원 노후화에 따른 아웃소싱 추진 - 농림지식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 시도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확대
2008	4,500	- 농업정보서비스 운영 및 농림 콘텐츠 개발 등 - 농림지식검색시스템(2단계) 구축 및 운영비 · 이용자 편의위주의 기능개선 및 홍보강화
2009	5,000	- 농업정보서비스 운영 및 농림 콘텐츠 개발 등 - 농림지식검색시스템(3단계) 구축 및 운영비 · 지식정보이용 확대 및 농림유관기관 연계 지속 확대
2010	5,000	- 농업정보서비스 운영 및 농림 콘텐츠 개발 등
2011	5,000	- 농림지식검색시스템 운영비 · 지식정보이용 확대 및 농림유관기관 연계 지속 확대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에서 목표대비 성과를 평균 15% 이상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어업 관련정보 제공 확대	아피스넷 일평균 이용자수	이용자수	명/일	8,800	11,364	129

※ 농림지식검색시스템은 1과 1혁신과제로 제출하여 우수사례로 선정

II. 총 평

-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됨.
- 공공, 민간에서 수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집적하여 손쉽게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함.
- 중간 모니터링,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건의사항 대로 향후 농업인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여 농업인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됨.
- 영농활동, 농업·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농업인에게 제공되어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농업인의 의견수렴, 유관기관과의 협의회의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공익성이 있는 민간기관에서 경상비로 지원하여 효율을 높이는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민간 참여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효율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작년 평가시 공급자 중심의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적임.
- 유관기관 30개 정도의 정보를 통합하여 농림지식 검색 시스템이 구축되어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아피스 신규회원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추진의 성과는 있다고 판단되고, 자발적인 동호회도 잘 운영되고 있으며, 동호회 숫자도 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함
- 성과지표는 작년 대비 이용률 증가율을 10%로 설정하였는데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성과대비 실적도 우수함

Ⅲ. 주요결정사항

- 농업인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
- 더 많은 유관기관, 민간의 정보를 집적하고 검색,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4절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I. 총 평

- 복합산업팀의 2007년도 평가 대상 사업수는 총 26개로 자체 평가 보고서의 질적 차이가 심하고 자체 평가보고서의 제출 시기도 상이하여 일관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범위 및 농산어촌 주민의 범위 등을 비롯해서 법률에서 취지로 삼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필요함.
 - 일부 부처에서는 마치 이 특별법의 대상이 농림어업인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지역적 범위도 농산어촌의 마을 정도로 국한하여 알고 있어 해당 부처의 사업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바 이는 기본적으로 법률과 사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26개 사업은 목표와 성과 측면에서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편의상 상대적으로 계량화된 평가 점수에 근거하면 1사1촌 운동, 경관보전 직불제와 조건불리 직불제, 향토 문화 관광축제 육성,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 등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도모하였고 사업 절차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우수하게 나타남.
-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는 예산의 미확보, 법률 미제정 등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6년도에 제시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조치 내지는 의견이 제시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거의 없음.

-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여 본 평가가 불필요한 사업도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평가보고서 기한내 미제출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
- 향후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예산사업도 소액사업과 사업비가 큰 사업, 매년 계속 사업과 격년도 계속 사업, 사업 내용에 따라 연구사업, 간접적 성격의 사업, 직접적 성격의 사업 등 평가 대상 사업의 중분류와 그에 따른 차별적 평가 틀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중복된 성격의 사업이 분절되어 있어서 평가보고서도 부실하고 평가 자체도 어려운 몇 가지 경우가 발견되었음.
- 향후 향토산업 시책, 경관 시책, 관광마을 시책, 주택 시책 등 중분류의 내용별 시책에 따라 사업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거나 적어도 평가자료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실적을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하는 등의 비효율 문제가 방지되기 어려움.
- 즉, 복합산업 분과 전체로서의 사업 및 평가의 체계화가 필요함. 이는 추가적인 평가체계 자체에 대한 연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평가 결과가 사업의 내실화를 촉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평가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 기한내 미제출 사업에 대한 대응 및 목표에 따른 자체 성과지표 설정 지침
- 서면 평가뿐 아니라 몇 개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1년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도입 운영
- 신규로 개발될 혹은 향후 강화가 필요한 사업 영역도 관찰되었음. 이러한 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획도 필요함.
- 경관보전 직불제를 넘어서는 농산어촌 경관 보전을 위한 신규 사업
-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직결되는 사업 등

II. 평가결과

1. 분야별 평가결과표(과제번호 순)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기타	79.0	79.0	18/20	보통
4-1-1-2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기타	75.0	75.0	25/25	부진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기타	84.0	84.0	13/13	보통
4-1-3-0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	기타	80.0	80.0	17/19	보통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기타	91.0	91.0	3/3	우수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기타	91.0	91.0	3/3	우수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기타	89.0	89.0	7/8	보통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기타	84.0	84.0	13/13	보통
4-2-1-5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기타	83.0	83.0	15/15	보통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주요	78.0	81.9	22/16	보통
4-2-1-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주요	77.0	80.9	23/18	보통
4-2-2-1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개최	기타	87.0	87.0	9/10	보통
4-2-2-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기타	85.0	85.0	10/11	보통
4-2-3-0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기타	88.0	88.0	8/9	보통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기타	92.0	92.0	1/1	우수
4-3-1-0	경관보전 직불제	기타	92.0	92.0	1/1	우수
4-3-2-2	농촌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기타	85.0	85.0	10/11	보통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기타	79.0	79.0	18/20	보통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기타	69.0	69.0	26/26	부진
4-3-5-0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기타	79.0	79.0	18/20	보통
4-3-6-1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타	90.0	90.0	6/6	보통
4-4-1-0	1사1촌 운동	기타	91.0	91.0	3/3	우수
4-4-2-0	전원마을 조성	주요	85.0	89.3	10/7	보통
4-4-3-1	도농교류 참여 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기타	81.0	81.0	16/17	보통
4-4-3-2	도농교류센터 운영	기타	79.0	79.0	18/20	보통
4-4-4-0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기타	77.0	77.0	23/24	부진
평 균	26개 사업		83.46	83.92		

1-1. 분야별 평가결과표(환산점수 순)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4-3-1-0	경관보전 직불제	기타	92.0	92.0	1/1	우수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기타	92.0	92.0	1/1	우수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기타	91.0	91.0	3/3	우수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기타	91.0	91.0	3/3	우수
4-4-1-0	1사1촌 운동	기타	91.0	91.0	3/3	우수
4-3-6-1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타	90.0	90.0	6/6	보통
4-4-2-0	전원마을 조성	주요	85.0	89.3	10/7	보통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기타	89.0	89.0	7/8	보통
4-2-3-0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기타	88.0	88.0	8/9	보통
4-2-2-1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개최	기타	87.0	87.0	9/10	보통
4-2-2-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기타	85.0	85.0	10/11	보통
4-3-2-2	농촌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기타	85.0	85.0	10/11	보통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기타	84.0	84.0	13/13	보통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기타	84.0	84.0	13/13	보통
4-2-1-5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기타	83.0	83.0	15/15	보통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주요	78.0	81.9	22/16	보통
4-4-3-1	도농교류 참여 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기타	81.0	81.0	16/17	보통
4-2-1-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주요	77.0	80.9	23/18	보통
4-1-3-0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	기타	80.0	80.0	17/19	보통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기타	79.0	79.0	18/20	보통
4-3-5-0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기타	79.0	79.0	18/20	보통
4-4-3-2	도농교류센터 운영	기타	79.0	79.0	18/20	보통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기타	79.0	79.0	18/20	보통
4-4-4-0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기타	77.0	77.0	23/24	부진
4-1-1-2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기타	75.0	75.0	25/25	부진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기타	69.0	69.0	26/26	부진
평균	26개 사업		83.46	83.92		

2. 우수사업

- 1사1촌 운동, 경관보전 직불제와 조건불리 직불제, 향토문화 관광 축제 육성,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 등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도모하였고 사업 절차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우수하게 나타남.
- 1사1촌 운동은 국민 전체적으로 홍보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자매 결연 실적도 매우 높음.
- 경관보전 직불제나 조건불리 직불제는 사업 계획 자체가 기존의 농정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획이라고 보았으며, 추진 실적 역시 큰 무리없이 진행됨.
-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은 지자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만족도도 높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조장하여 성과를 가시화한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이러한 우수사업들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일 뿐이며 사후관리 등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평가결과 보고서에 제시함.

3. 부진사업

-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도농교류 촉진법 제정 등은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 추진 목표와 절차, 성과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았음.

- 경미한 차이로 계량화된 점수에 의해 상대적 순위가 낮으므로 개선할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담당자의 실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님을 밝힘.

Ⅲ. 평가소감

○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확보가 필요함.

- 현재로서는 부처 자체 평가보고서의 부실함, 질적 차이 등으로 인해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필요하다면 부실한 평가보고서는 해당 부처에 '반려'시키고, '반려'가 세 차례 이상이면 별도의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함.
- 부처의 자체 평가보고서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보다 장기간의 평가가 요구됨. 일부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연계 평가가 불가피한 것도 있음.
- 전년도 평가의견에 대한 대응 의견 제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기한 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도 요청됨.
- 사업 목표에 따른 자체 성과지표 설정,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 등이 필요함.
- 서면 평가뿐 아니라 몇 개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1년간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평가사업의 예산, 내용 등에 따라 재분류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복합산업팀 평가 대상 사업들의 시책별 분류와 체계화가 필요함.
 - 일부 사업들 자체의 중복성도 있지만, 많은 사업들이 동일한 사업 성과를 해당 사업의 성과로 활용하고 있고 이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
 - 사업의 중복성이 심하거나 혹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장기적으로 기능 조정 및 통합 등이 필요함.
 -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별도 추진하였다더라도 평가에서는 통합 평가를 함으로써 보고서 작성 및 평가 등의 행정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조사·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 향토산업 육성에 활용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1조(고유한 특산품, 문화, 기술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지원) 및 시행령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09년 (4년간)
- 사업규모 및 사업비 : 매년 5개 시군, 11.3억 ('06년 3억원)
- 시행방법 : 시험연구비에 의한 자체 연구사업 수행
- 추진내용
 - 농어촌 지역별 향토자원 조사 : 매년 5개 시군
 - 지역 향토자원 중 산업화 유망자원 발굴 및 DB화
 - 지역적 여건에 정통한 향토·민속학자 등과 연계하여 향토자원 조사 및 평가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향토산업 지원체계 구축
 - 조사대상 지자체의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화 ('06~'09)
 - 지역 및 전통성이 강하고 부가가치성이 높은 자원 조사, 발굴

구 분	계	'06	'07	'08	'09	'10
사업량 (개소)	20	5	5	5	5	-
사업비 (단위:억원)	11.3	3	2.3	3	3	-

- 지역별 향토자원 우수사례 산업화·마케팅 전략 분석 ('06)
- 지역별 산업화 유망자원을 대상으로 산업화 지원모델 개발 ('07~'09)
 - 특성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테마 발굴 및 상품 개발, 마케팅, 홍보 등 산업화 지원 모델 개발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향토자원의 조사 발굴 및 DB구축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DB 구축수	농촌 어메니티 자원정보시스 템에 등록된 DB수*	건	175	245	140

-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화 : 6지역 / 계획 5지역
 - 조사대상 지역 : 화천, 진천, 서천, 순창, 진도, 청도군
 - DB 구축 건수 : 향토자원 목록화(2,262종), 향토자원 유래, 가치, 특성 등 기본조사 : 464건,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 자원 발굴 및 상세조사 : 245건

II. 총 평

-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 구축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그런 만큼 사업 자체의 중요성은 있음.
- 그러나 최종적으로 DB 활용도를 고려해볼 때, 누가 조사하고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발굴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의 자체점검·평가 결과 보고서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목표와 방법, 최종 성과물의 활용 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종합적인 전망이 필요함.
- 중앙 행정기관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국가 전체의 DB 틀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DB를 활용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 역할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 구축의 목적은 산업화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됨.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향토자원이 무엇인지 향토지적재산권이나 어메니티 자원과는 어떻게 다르고 산업화하기 위해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관점이나 장기적 대안 없이 조사를 위한 조사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중앙행정기관과 시·군의 역할에 대하여 분담 개념도는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시·군의 참여는 대단히 미약하며,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가지고 있지 못함.

- 중앙행정기관 자체에서도 농촌 어메니티 자원정보시스템과 향토 자원 DB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사업 추진체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못함.
- 기 구축된 향토자원 DB를 가지고 어떻게 산업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검토도 부족함. 물론 그 모델을 만드는 것이 향후 과제이기는 하겠으나 유사한 시도가 많았던 만큼 중앙 행정기관의 새로운 사업으로서 보다 확실한 대안이 필요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06년도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이 집행되었고, 목표하던 DB수가 175개였으나 실적은 245개 이므로 140%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음.
- 그러나 제대로 된 사업 성과는 구축된 DB를 지역 향토산업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하는 것임.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 성과는 전무한 상태임.

Ⅲ. 주요 결정사항

- 향토자원 DB와 어메니티 자원정보 시스템과의 연관 관계를 분명히 하여 제시함.
 - 오히려 차별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음.
- 향토자원 DB를 구축하고 나면 지역 향토산업에 그 DB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전면 실시함.
-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 방안을 모색함. 결국은 지자체가 그들의 자원을 가지고 산업화하는데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의 참여가 관건임.

(농림부 / 농촌사회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역사회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 ~ 2014년
- 사업비 : 1,000억원 (보조 1,000)
 - '07년 예산 미확보 사업추진이 안됨
- 사업규모 : 200개 향토자원 개발·연구
- 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 지원내용 : 향토자원 개발 및 육성 사업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3. 연차별 추진계획

- '07에는 19개 향토자원에 대한 향토산업육성(상품개발 및 연구), 그 이후 매년 30개씩 향토자원을 발굴 향토산업육성 추진

(단위 : 억원)

총사업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보조(균특)	19	30	30	30	30

○ 산출근거(보조금)

(단위 : 억원)

년 도	사업비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000	
'07년	43	향토자원 상품개발·연구(500백만원*19개)
'08년	150	향토자원 상품개발·연구(500백만원*30개)
'09년	150	향토자원 상품개발·연구(500백만원*30개)
'10년	150	향토자원 상품개발·연구(500백만원*30개)
'11년	150	향토자원 상품개발·연구(500백만원*30개)
'10년이후	357	향토자원 상품개발·연구(500백만원*61개)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목표달성도 : 2006년도 19개 향토자원 발굴 및 사업준비를 기본계획서 수립 완료 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향토 상품개발 및 연구	개발 연구된 총 향토 상품 수	개	19	19	100

II. 총 평

- 지역사회에 향토자원을 개발, 고부가가치화 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2005년도부터 추진 되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인해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 '06년에도 예산 미확보, '07년 이후 계획만 밝히고 있음.
- 왜 예산 확보가 이렇게 잘 안되고 있는 것인지 이유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가 필요함.
- 향토자원 조사, 발굴 및 향토자원 DB 구축사업 등을 비롯해 부처 간·사업 간의 차별성과 기존에 지자체들이 해 오던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정책 분석이 필요한 사업임.
- 이 사업 고유의 사업 목표, 추진 방식, 최종 성과 등이 보다 뚜렷이 제시되어질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은 농업활동의 범위를 확장하고, 농가경영 다각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다른 부처와의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등으로 추진이 원활치 못하였음.
- '07년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여전히 타 연관사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은 상태이며 기존에 지자체가 해 오던 일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뚜렷하지 않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2005년도, 2006년도 모두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예산 미확보로 해당사항 없음.
- 연구 용역 사업이나 자문위원제도 운영 등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 사업 추진 실적으로 보기 어려움

Ⅲ. 주요 결정사항

- 유사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농림부 내의 유사 사업들은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 구축 사업과의 관계 설정 필요함.
- 이 사업 고유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 필요함.
- 사업비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 실적은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의 수준으로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함.

4-1-2-0(계속)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	------------------------

(농림부 / 농촌사회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4 ~ 2014년
- 사업비 : 10,094억원 (보조 6,770, 용자 3,324)
 - '06까지 6,620억원 (보조 3,962, 용자 2,658)지원
- 사업규모 : 400개소 ('06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322개소)
- 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용자 (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등 지원
 - 지원조건 : 평당 정액지원

(단위 : 천원/평)

구 분	일 반 농어촌	추가지원 농 어 촌	우선지원 농 어 촌	전문단지 등	
				일 반 농어촌	추가·우선 농 어 촌
· 국비보조	15	50	70	30	70
· 국비용자	10	20	20	20	20
· 지방비보조	5	10	10	10	10
합 계	30	80	100	50	100

* 용자 : 연리 5.0%(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잔여사업비는 지방비로 충당

3. 연차별 추진계획

○ '06~'1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	'10년	'10이후
계	6,620	314	400	500	500	1,760
-보조(균특)	3,962	314	350	400	400	1,344
-용자(농특)	2,658	-	50	100	100	416

○ 산출근거(보조금)

(단위 : 억원)

년도	조정액	산출근거
총사업비	10,094	
'06년까지	3,962	
2007	314	신규 10지구, 계속 12지구, 준공 6지구 보조소요액 반영(28지구)
2008	400	평당정액지원에 따른 보조소요액 반영
2009	500	평당정액지원에 따른 보조소요액 반영
2010	500	평당정액지원에 따른 보조소요액 반영
2010이후	1,760	평당정액지원에 따른 보조소요액 반영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예산 100% 지원과 정부시책에 힘입어 사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 '06년 목표달성도 : 99%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사업 조성 수	총 사업 조성 수	개소	10	8	80

II. 총 평

- 본 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공장 유치사업을 1984년부터 발전적으로 승계한 사업으로 농촌공업화 방법을 통해 농촌산업구조의 복합화,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논리 측면에서, 그리고 일관적 정책기조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추진 과정의 충실성 측면에서 보기 드문 사업임.
-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의 차등화는 물론이고 기 조성단지의 사후지원에 있어서도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차등화함으로써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명칭과 취지에 합당하게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목적과 차별되는 지역밀착적인 단지조성 목적이 구현되어야 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은 접근성이 불량한 한계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율 및본 가동율 저조, 휴폐업소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꾸준한 입주수요의 유지 등에 의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음
- WTO, DDA는 물론이고 최근의 FTA 추진 등에 농업생산부문의 위축에 따른 농촌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농촌공업의 진흥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갖는 시의성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 '84-'14년의 30년에 걸쳐 총 400개소의 농공단지 조성을 목표로 '06년까지 목표의 81%인 324개소가 조성되고 분양율도 98%에 이르러 사업이 매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차후 본사업의 농촌공업화 부문에서의 위상과 수요를 점검하여 확대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계부처협의 및 사전조사,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지나치게 분양율 제고에만 치우쳐 해당지역의 제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의견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 있음
- 대도시 인근지역은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하청공장 또는 분공장의 역할에 의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으나 과소화지역의 경우는 제조업의 경우에도 지역자체의 잠재자원과 인적 및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농공단지조성계획의 지역화는 절실한 과제임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본 사업은 농림부,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업무분담을 분명히 하여 추진하고 있어 전문성 강화와 관련기관간 연계와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적인 관련부처는 농림부(조성) + 산자부(관리 및 운영지원)로서 사업추진시기에 따라 이원화되고 있어 일단 조성이 끝나면 해당 농공단지의 향토산업 또는 지역 부존자원의 활용 극대화로의 지향성을 담보하기 힘든 체제이므로 조성후 농공단지 활성화시책 결정에 농림부 또는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안이 검토되어야 함

- 최근 농촌관련시책들이 농림부로 통합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고려하여도 타당한 방향이라고 판단됨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의한 정기적인 중간 모니터링에 의해 문제점과 성과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일이나 중간모니터링의 주체 또는 파트너가 되어야 할 지자체 또는 농정당국,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의 NGO단체들이 배제되어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시각에서의 모니터링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 필요.
- ‘국고보조 및 용자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로 지원’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사업비의 어디까지 보조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지원을 보조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지 명쾌하지 않으며 전액 보조로 지원할 경우 타 부문(예를 들면, 농촌소득사업의 경우는 최소한 자부담 20%, 또는 용자)과의 형평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건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06년도까지 단지조성 목표 400개중 81%인 324개의 조성을 완료하고 분양율 98%, 유치업체수는 4,976개소에 이르러 목표달성도가 99%에 이른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사료됨.
- 조성단지수 및 분양률은 물론이고 총고용자수와 지역출신 고용자수 등을 성과지표로 추가하여야 할 것임.

Ⅲ. 주요 결정사항

- 지역 또는 향토산업 클러스터 형성계획을 마스터플랜으로 하고 본 사업을 이의 하부 또는 관련 사업으로 추진하는 체계 검토
- 조성 이후 농림부, 지자체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리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검토
- 낙후지역의 경우 사업비에 국비보조금액을 증액하여 직업훈련비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지역 향토자원 활용전문단지의 경우 기업경영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지정면적 하향조정 검토 및 동 단지에 대한 부지조성비 지원 확대 검토.

(노동부 / 능력개발지원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전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및 생활안정 도모
 -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경제위기 이후 구조적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에 대한 취업능력 제고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1. 1 ~ 12. 31
- 사업비 및 규모 : 13억원, 864명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국고보조율 100%)
- 지원조건 : 훈련실시 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을,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 훈련인원(명)	864	515	515	515	515
○ 예산(백만원)	1,344	1,190	1,300	1,300	1,30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2006.12월 현재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의 취업률은 40.6%(잠정치)로서 성과목표 35.7%를 4.9%p(13.7%) 초과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6개월간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 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됨.

※ 성과목표(취업률) : 35.7%

※ 사업실적(2006.12월 현재) : 40.6%(잠정치)로서 목표대비 113.7%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취업률	$\frac{(\text{조기취업자 수} + \text{수료 후 취업자 수})}{(\text{조기취업자 수} + \text{수료인원})} \times 100$	%	35.7	40.6	114

II. 총 평

- 농어업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취업능력 제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사업 추진 취지는 매우 적절함.
- 특히 경제위기 이후에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운용 성과에 따라 효과를 기대할만한 사업임.

- 사업 실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필요함. 현재로서는 실제적으로 새로운 취업 욕구가 있는 농어업인 등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가 불명확함.
- 직업 훈련 이후 고용과 연계되도록 하는 실질적 계획이 필요함. 계획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으나 계획량 설정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개설된 훈련과정이 훈련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확대함은 물론 직종을 다양화 하는 등 훈련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함.
- 국민 혹은 이해 당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 홍보가 요구됨. '05년도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 보다 적극성이 요구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업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취업능력 제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사업 추진 취지는 적절함.
- 하지만, 사업 실시 대상 선정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함. 농어업인 가운데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연령별 배분을 고려한다든지 등과 같은 구체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직업 훈련 이후 고용과 연계되도록 하는 사전 계획 수립도 필요함. 직업 훈련 과정 수료 후 고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교육 훈련 이후 업체에서 인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개설된 훈련과정이 훈련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확대 함은 물론 직종을 다양화 하는 등 훈련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본 사업이 농어업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실질적으로 농어업인 등 취약 계층에서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평가가 불명확함.
-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각 시도의 실업자 수에 따른 비례 배분 (20%) 및 2005, 2006년도 훈련인원 반영(20%), 2005년도 훈련실적 반영(40%), 2005년도 예산집행 실적 반영(20%) 등 다소 실질적이지 못한 기준들로 짜여져 있음.
- 국민 혹은 이해 당사자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 욕구가 있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자체 성과목표 달성도에 따르면 목표 취업률은 35.7%이고 사업실적은 40.6%로서 목표대비 114%를 초과 달성함.
- 그러나 목표 취업률 산정 방식을 들여다보면 중도 포기한 교육생들은 빠지게 됨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 성과 파악이 어려운 지표임.

Ⅲ. 주요 결정사항

- 훈련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 사업 성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성과가 우수할 경우 사업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가 등의 인센티브 조치가 필요함.
- 또한 직업 훈련 이후 고용 연계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고용 업체에서 인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혹은 이해 당사자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함.
- 성과 판단 지표를 합리적으로 제시함. 오히려 쉽게 총 목표 교육 인원 대비 실제 교육인원 / 중도탈락률 / 수료율 / 취업률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나서 무엇을 성과로 보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권장할 만함.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복원 등에 기여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2017년
- 총사업비(국고) : 1,276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 190억원)
- 사업규모 및 조건 : 850개, 마을당 2억원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35조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시장·군수 등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추천(시·군→시·도) → 대상마을 선정(시·도) → 예산지원(농림부→시·도→시·군) → 사업시행(시·군)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마을)
- 지원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 조성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재원	'05까지	5개년('06~'10) 계획					
		'06	'07	'08	'09	'10	소 계
사업량	123	67	84	75	75	66	367
단가		-	-	-	-	-	
사업비	123	67	84	75	75	66	367
국비	123	67	84	75	75	66	367
- 보조	123	67	84	75	75	66	367
- 용자		-	-	-	-	-	-
지방비							
자부담 등							

4. 성과목표 달성도

-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방문객수 및 농촌관광매출액 '06년 목표치 대비 증가 달성
 - 마을 방문객수 ('06)목표치 1,266천명 대비 실측치 1,343천명
: 목표치 대비 106.0% 증가
 - 농촌관광매출액 ('06)목표치 140억원 대비 실측치 183억원
: 목표치 대비 130.7% 증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방문객수	총 방문객수	천명	1,266	1,343	118
	매출액	총 매출액	억원	140	183	

II. 총 평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긍정적 이해를 높이고 농촌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하여 유사한 농산어촌 체험마을이 크게 증가하였는 바, 이제는 사후관리와 민간조직화 등 공공부문과 마을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함. 그야말로 정책사업 2단계의 질적 발전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통테마마을 등 유사사업과 중복 방지 및 공동 홍보 등을 위해 관계부처간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운영 등은 바람직하나, 실질적인 관계기관 연계 및 협조,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홍보 등의 측면에서 통합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 연계 필요성이 높음.
-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하고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가 뛰어난 점은 바람직하나, 성과지표의 질적 목표 설정이 필요한 단계임.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 목표 및 절차 등의 계획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함.
-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지침을 개정 운영하는 계획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자체 관계관과의 회의를 통해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방문객 수와 농촌관광매출액 증가 등 추진성과를 분기별로 행정조사를 통해 측정하고 있는 점은 매우 잘된 점이나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과정이 아닌 회의 및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여겨져 이는 잘 된 점이라고 생각함.
- 관계부처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운영 등도 잘된 점으로 판단함. 다만,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지자체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
- 정책만족도를 비롯해, 연찬회, 사무장제도 등 사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자료를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이제 사업 추진의 중간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질적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관점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예비선정제를 도입하고 사업기간을 2년 추진도 가능케 한 점은 잘된 점이지만, 사업기간의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고 사업완료 후의 사후관리방안 마련도 필요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지표의 설정이 타당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도 안정적임.

- 2006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방문객 106%, 매출액 130.7%인 바, 이는 2005년도에 비해서는 저조한 바 그 이유 분석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음. 더불어 성과도 측정 기준의 객관성 판단은 유보적임. 질적 측면에서의 성과 관리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유사한 농산어촌 체험마을이 크게 증가하였는 바, 이제는 공공부문의 계속 지원보다는 사업완료 후의 마을은 '홀로서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과 마을 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Ⅲ. 주요 결정사항

-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과 지표의 질적 목표치 설정 방법 마련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자체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및 발전방안 마련
-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연계 및 협조,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홍보 등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 필요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전통자원의 발굴 활용으로 도농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제35조(도시와농산어촌의교류확대)

2. 사업내용

- 연도별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02	9	9	4.5	4.5
'03	18	27	13.5	13.5
'04	18	36	18	18
'05	21	40	20	20
'06	31	50	25.2	24.8
계	97마을	162	81.2	80.8

※ 개소 당 2억원(1억원씩 2년 지원), 국·지방비 각 50%

- 마을 고유의 테마 및 마을별 7거리 자원의 체계적 발굴
- * 볼거리, 먹을거리, 쓸거리, 체험거리, 놀거리, 살거리, 알거리

- 하드웨어 측면 : 체험·학습시설, 편의시설, 마을환경 정비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마을 고유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 주민교육, 소득자원 개발, 홍보 및 마케팅

- 사업기간 : 2002 ~ 2009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160마을 320억 (국·지방비 각 50%)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2~'06) : 97마을 162억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시군(센터) 당 1개소씩 160개 마을을 2009년까지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중점

구 분	계	'06까지	'07예산	'08 이후
사업량	160	97	34	29
사업비	320	162	65	93

※ '07지원 : 65개소 ('06기존 31, '07신규 34개소) 65억원 (개소당 1억원)

- 지원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개발 및 연계('07~'10)
 -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농촌체험 교육농장 시범 등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농외소득 증가율	사업지원 3년후 농외소득을 조사하여 사업전과 비교	%	300	387	129

- '02년도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이 시작된 이후 3년차 운영된 마을의 농외소득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II. 총 평

- 본 사업은 사업대상 마을의 소득과 인구의 증가, 전통문화의 계승 활동 전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 다양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종합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고 있고, 하나의 테마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학의 연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만큼 160개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도 바람직함.
 - 국민 전체에게 농촌관광을 대표하는 브랜드의 하나로서 테마마을을 각인시키기 위한 계획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마을로 이어지는 협력적인 사업추진체계가 본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체계로 판단되며, 수차례의 마을주민 및 담당공무원 정보교류 연찬회 등 개최, 농촌관광·어메니티 관련 연구지원,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 등이 잘된 점으로 판단됨.
 - 그러나 유사한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양적 확대에 따른 사업지원 인력의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함으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전통자원을 발굴, 활용으로 도농 간의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가 명확함. 또한 농업만이 아니라 농촌이라는 공간으로서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은 상위 정책 목표와도 부합됨.
- 중앙-도-시군-마을로 구성된 행정계통과 다양한 전문가 의 투입 등 지원체계 역시 잘 디자인되었다고 판단됨.
- 국민 전체에게 농촌관광을 대표하는 브랜드의 하나로서 테마마을을 각인시키기 위한 계획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마을로 이어지는 협력적인 사업추진체계가 본사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판단되며, 정부, 도, 시군별 사업지원부서가 상시적인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외부에서 주어진 평가 이외에 스스로 평가를 통한 문제점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양적 확대에 따른 사업지원인력의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2009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실제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사업 조직 구성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 전 주민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나, 사업의 효과가 최대한 마을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마을 전체를 대변할 수 있고 경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민조직 구성이 필요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2004년 지원 18개 마을의 3년간 사업성과 자료에 기초할 때 소득과 방문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본 사업이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원 마을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며, 소득의 성과 목표치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측정 기준의 객관성 판단은 유보적임.
- 성과지표의 설정이 타당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가 뛰어나,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농촌전통테마마을과 유사한 농산어촌 체험마을이 크게 증가하였는 바, 이제는 공공부문의 계속 지원보다는 사업완료 후의 마을은 '홀로서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조직의 육성, 마을간 네트워크 등 공공부문과 마을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Ⅲ. 주요 결정사항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 보완 검토
 - 마을 주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문제
 - 농촌 지도조직의 지도사들은 마을 내 사업 분위기 조성 과 마을 내 갈등 해소 등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바, 사업과 관련한 지도사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에 관한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 개발 등 검토
- 2009년 사업 완료를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후관리 계획이 수립 될 필요가 있음.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 농촌관광 브랜드의 하나로서 국민 대상의 홍보
 - 지원 마을들의 홀로서기를 위한 주민조직 및 마을간 연계체계 확립 등

(문화관광부 / 공간문화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적 및 기대효과
 -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 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 증대 등 정주민족도 제고
- 추진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2009년 (1개 마을당 사업기간 : 2년)
- 사업비 : 총255억원 (관광기금 170억원, 지방비 85억원)
- 사업규모 : 총 12개 마을
- 시행방법 : 전국 9개도를 대상으로 각 도에 1개 마을 조성 원칙, 지자체 희망시도 단위 사업비(30억원)내에서 2개 마을 조성 허용
- 추진내용 : 12개 마을을 선정하여 문화역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
- 추진방법 : 민간보조사업
- 보조사업자 : 전국문화원연합회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문화원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지원 및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지원(마을)		12	1	6	3	2	-	-
사업비	계	25,500	1,500	4,500	5,250	3,375	9,075	1,800
	기 금	17,000	1,000	3,000	3,500	2,250	6,050	1,200
	지방비	8,500	500	1,500	1,750	1,125	3,025	600

○ 추진계획 및 일정

연 도	추진계획 및 일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 지원(1월) • 안동 군자마을 준공(6월), 서귀포 법환마을 준공(12월)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광 효동마을, 원주 회촌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 준공(6월) • 의령 입산마을,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준공(12월)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 준공(1월)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문화역사마을 조성	주민만족도	리커트 5점척도 설문조사	%	50	60	120

II. 총 평

-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농산어촌 가운데 역사 및 문화 자원을 비교적 잘 유지, 전승하고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 증대 등 정주민족도 향상에 목적이 있음
-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12개 마을을 대상(1도 1원칙)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정 마을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서 아직 사업성과가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면서 잘된 점은 중앙과 지방, 행정과 전문가 및 주민 상호간의 거버넌스(협력)에 바탕한 잘 짜여진 사업 추진체계 및 방식에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역사 및 문화, 마을 가꾸기, 관광 분야의 전문가들로 “문화역사마을가꾸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선정, 사업계획의 자문, 평가 및 모니터링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그리고 지방문화원은 주민대표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역사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의 여건에 적합한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전국문화원연합회(심의위원회)와 지방문화원(추진위원회)은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하여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사업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간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공동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문화역사마을은 일반 농산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 여건이 열악하고, 유무형의 문화·역사적 자원을 복원하고 활용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사업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까지는 주로 마을의 선정, 사업계획의 수립 등의 차원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산어촌 마을은 유·무형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유지, 전승하여 왔으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고령화, 공동체의 약화 등으로 마을에 소재한 역사문화자원의 세대간 전승이 단절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잠재력이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주민의 소득 창출과 정주민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높다고 판단됨
-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문화원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 교육·훈련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워크숍과 포럼 개최를 통한 마을간 정보공유 및 사업완성도 제고 등 사업추진의 절차적 합리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화관광부·전국문화원연합회(중앙)와 지방자치단체·지방문화원(지방), 행정과 전문가 및 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계를 토대로 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에 있음
- 전국문화원연합회는 마을 선정, 사업계획의 자문,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해 “문화역사마을가꾸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지방문화원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해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 효율적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추진위원회에 민간전문가 2~3인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진행상황 점검 및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심의위원회는 워크숍,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 도별 1개 마을 및 30억 원을 원칙으로 설정했으나, 지역의 현실 여건에 따라 2개 마을을 선정하고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한 점은 지역의 자율기획과 책임집행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현재 선정 마을이 대부분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 연구용역 중으로서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기는 곤란
- 2004년 최초 선정되어 사업완료 단계에 있는 안동 군자마을의 경우 방문객 수 증가 및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확산 등 일정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민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이것이 결과지표라는 점, 그리고 사업의 목적과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목표대비 실적이 120%로서 목표달성 정도가 우수함
- 사업추진이 중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성과지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사업성과관리 중심으로 사업추진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 또한, 유무형의 문화·역사적 자원을 복원하고 활용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사업성과가 가시화되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주민의 자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도입 검토 필요
- 사업추진 매뉴얼, 회계지침, 용역관리 권장기준 작성 등 효율적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운영관리 매뉴얼이나 지침 등의 사업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Ⅲ. 주요 결정사항

- 2007년 4월 사업완료 예정인 안동 군자마을 이외에도 사업추진 중간단계에 있는 대상마을에 대해 객관적 사업(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완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경위
 - WTO-DDA 출범 및 FTA협상 본격 개시 등 어업질서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독특한 생활환경을 관광 자원화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어업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
- 사업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사업비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 사업 목표
 - 어촌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어업외 소득 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시인들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1)년 ~ ('13)년
- 사 업 비 : 703억원 ('06년까지 기투자액 : 497억원)
- 사업규모 : 112개마을 ('06년까지 완료 : 76개마을)

- 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국비50%, 지방비45%, 자담5%)
- 지원규모 : 개소당 500백만원(국비+지방비+자담)을 기준으로 증·감하되, 기본계획에 의한 투자금액 이내
- 추진내용 : 총사업비 703억원 중 '01년부터 '06년말까지 497억원 (국고 249억원)을 투자하여 112개마을 중 76개마을 지원
* '06년말까지 56개 어촌체험마을 조성 완료(시범마을 9개 포함)
- 지원내용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관광 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지원(컨설팅, 실시설계비, 지도자교육훈련, 팸플릿 제작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어촌체험마을조성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9	1		2	1	1		1	1	1	1
2002	8	-	-	1	1	1	1	1	1	1	1
2003	11	1	1	1	1	-	1	2	1	2	1
2004	12	-	1	1	1	1	1	3	1	2	1
2005	18	-	1	2	1	3	1	5	2	2	1
2006	18		1	1	1	1		8	1	4	1
실적 소계	76	2	4	8	6	7	4	20	7	12	6
2007	11				1			6		4	
2008	12		1	1	1	2	1	2	1	1	2
2009	13			1	1	2	1	3	2	1	2
계획 소계	37	-	1	2	3	4	2	11	3	6	4
계	112	2	5	10	9	11	6	31	10	18	10

○ 년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추진실적							장래계획			
		'01시범 사업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6까지	'07	'08	'09	
사업량	112	9	8	11	12	18	18	76	11	12	13	
사업비	계	70,322	9,422	4,000	5,500	6,000	11,000	13,800	49,722	8,100	6,000	6,500
	보 조	35,161	4,711	2,000	2,750	3,000	5,500	6,900	24,861	4,050	3,000	3,250
	지방비	31,645	4,240	1,800	2,475	2,700	4,950	6,210	22,375	3,645	2,700	5,925
	자부담	3,516	471	200	275	300	550	690	2,486	405	300	325

4. 성과목표 달성도

- '05년 마을당 평균방문객수는 149,828명으로 목표(96,525명)대비 155%달성 ('04년 대비 71%증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어촌체험마을 조성	방문객수	방문객 총수/체험마을 수	천명	97	150	155

II. 총 평

- WTO-DDA재개, FTA협상 등 수산업을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변화와 어촌의 어업여건 악화로 수산물 생산에만 의존해서는 어촌에서의 정주가 쉽지 않음. 따라서 어촌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 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 조성으로 어민들의 어업외 소득증대 창출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은 충분히 높음.

-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삶의질 행복 추구 등으로 바닷가를 찾는 도시민의 어촌에 대한 체험과 여가수요의 증가 추세에 맞춰 전년에 비해 갯벌생태체험, 낚시체험, 전통어업인 개매기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어업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도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함.
-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한 실무협의회,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 및 정보화마을사업과 연계·추진 등 사업 추진체계의 합리화 및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한편 개발 계획 수립 후 예산을 확보하는 예비선정제 도입도 개선된 점으로 파악함.
 - 그러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고유의 정체성을 고려한 점들이 보다 보완되어야 할 것임.
- '05년 점검평가 결과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업주체의 역량강화, 관련 기관 연계협조,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민들에게 서비스 및 사업에 대한 컨설팅교육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여전히 보다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어업외 소득증대를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선정하고 코스별, 일정별 체험프로그램 구성 등 체험상품 개발을 위한 전문가를 통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국정목표의 하나인 균형발전 사회구현에 부합
 - 사업의 상대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목표, 내용, 추진방식, 기대효과 등 전반에 걸쳐 명료화할 필요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갯벌체험 이외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어촌 사회 고령화로 참여주체의 어촌관광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문제점을 마을별로 특화된 체험프로그램운영과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최근 체험객이 증가 추세에 있어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통한 어업외 소득증대 기여
- 근본적으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한 상태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어촌관광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는 물론 도시민에게 어업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봉사활동과 수산물 직거래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가치는 수백억원에 이르며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판단
- 직접적으로 마을당 성과 목표를 양적, 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관리가 필요

Ⅲ. 주요 결정사항

- 어촌종합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목표, 차별적 내용, 성과 등을 재기획
- 근본적으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직접적으로 마을당 성과 목표를 양적, 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관리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정상운영을 위한 초기단계로 질적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과 전문가의 현지 방문 컨설팅을 통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지원 필요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업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어촌관광 잠재력을 구비하고 있는 어촌에 대하여 환경을 재정비하여 도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촌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어촌관광 대중화 유도
- 생산기반 위주의 소규모 지원에서 탈피, 고품격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 지역별 풍습과 전통문화 등을 연계 특성화된 어촌관광모델 제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09년
- 총사업비 : 4,372억원
- 사업규모 : 전국 24개소 (Ⅰ모델 7개소, Ⅱ모델 6개소, Ⅲ모델 11개소)
- 지원형태 및 조건 : 직접수행 또는 지자체 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시·군·구)
- 사업내용 : 어촌어항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어촌관광 시설
 -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및 부대시설
 - 어촌관광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 지역특산품 판매장, 횃집 등 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소득시설
 -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 규모	연차별 투자계획(6개년)						비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473,176	835	14,296	26,600	63,705	151,461	207,863	24개소		
I 모델 (어촌어항 복합공간)	계	107,900	200	11,694	8,260	20,444	30,000	30,736	7개소		
	어항 (국가)	기본설계(국비) <어촌포함>	1,340	1 200	2 380	4 760				복합 공간	
		실시설계(국비) <어촌별도>	1,560	1	2 300	2 500	1 300			국가어 항(기본 설계 포함)	
		시 설 비 (국비)	70,000	1 -	(1) 11,014	2 6,000	1(2) 13,000	2(2) 20,000	(2) 19,986	국가어항	
	어촌 (지자체)	시 설 비	소계	35,000			1 1,000	3(1) 7,144	3(4) 16,106	(4) 10,750	
			국고	17,500			500	3,572	8,053	5,375	균특 회계
			지방비	17,500			500	3,572	8,053	5,375	
	계		295,691	500	2,000	11,500	25,500	100,000	153,691	6개소	
	II 모델 (다기능 종합어항)	어항 (국가)	기본설계(국비)	2,500	1 500	4 2,000					국가 어항
			실시설계(국비)	6,000			5 3,500				국가 어항
시설비(국비)			287,191			1 8,000	3(1) 25,500	(6) 100,000	(6) 153,691	국가 어항	
계		69,585	135	602	6,840	17,761	21,461	23,436	11개소		
III 모델 (어촌 관광단지)	어촌 (국가 + 지자체)	기본설계(국가)	1,035	2 135	2 200	4 400	3 300			관광 단지	
			홍보비(국가)	2,550		402	440	661	661	386	
		시 설 비 (지자 체)	소계	66,650			3 6,000	3(3) 16,800	5(4) 20,800	(5) 23,050	
			국고	33,325			3,000	8,400	10,400	11,525	균특회계
			지방비	33,325			3,000	8,400	10,400	11,525	

4. 성과목표 달성도

- 어촌관광통합모델 기본설계 7개소 완료
 - 제Ⅰ모델(어촌어항복합공간) : 3개소(안목항, 맥전포항, 모슬포항)
 - 제Ⅲ모델(어촌관광단지) : 4개소(초지항, 방축항, 학림항, 범환항)
- 시설사업 7개항 175억원 추진 완료
 - Ⅰ모델 3개항(마량,정자,양포), Ⅱ모델 1개항(대포항), Ⅲ모델 3개항(대진,대송,방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 위	'06목표 (A)	실적 (B)	B/A
어촌관광활성화사업	사업건수	총 사업건수	개소	7	7	100

II. 총 평

- 어촌을 도시민들이 자연경관 감상이나 먹거리를 위하여 일시 경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계절 휴식과 휴양을 겸 해 체류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업의 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고품격 어촌어항 복합공간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됨.
- 현행 소규모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고품격의 어촌관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여 집중 투자
- 주5일 근무제 실시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업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자연경관 등 관광여건이 구비된 어촌의 환경 재정비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어촌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어촌관광 대중화를 추진

- 어항리모델링, 해안산책로, 지역특산물매장, 해상공연장, 생태체험 시설, 레저, 숙박, 경관감상 등 어촌과 바다에서 이뤄지는 관광활동이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적합한 관광시설 지원 등으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등 어업외 소득증대로 도시와 어촌의 균형발전에 기여
- 어촌관광가이드 과정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어촌관광 정책홍보와 마케팅전략, 프로그램개발 등 적극적인 교육의 실시와 해안도로 진출입로 인프라구축 등 전년도 사업 추진에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개선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어업인이 주체가 되어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과 어업자원을 기존의 어항시설과 연계하여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 놀거리, 쉴거리 등을 제공하여 어가소득 증진을 목적으로 어촌관광 통합모델을 개발하여 도시민에게는 휴식과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관광어촌 기반조성 사업으로 국정 지표와 부합
- 어촌의 전통문화를 바다에 대한 환경보호 등의 체험교육으로 승화 되도록 학술적인 연구지원과 도시민들이 재충전을 통한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병행이 필요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여론 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고 세부사업 추진시 어촌·어항법, 공유수면 매립법, 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관건기관 연계 및 협조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체계적인 절차로 사업추진 체계 적절

- 사업초기단계로서 지자체에서 소득사업 위주의 시설배치를 선호하고 있어 지역별, 해역별 특색 있는 어촌관광 이미지 발굴에 애로가 있으나 지역어업인과 전문가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외 소득 증대 기대
- 사업추진을 위한 임해단지에 부지 확보시 국립해상공원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각종규제를 수산자원보호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운용하는 규제완화 방안 필요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어촌·어항지역에 대해 리모델링, 해양공원, 공연무대, 해안산책로, 전망대, 특산물판매장 등을 시설하여 어촌 체험 및 레저, 숙박, 경관감상 등 어촌과 바다에서 이뤄지는 관광 활동이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적합한 관광시설 지원 등 어촌관광통합모델 시범사업 본격 추진으로 어업외 소득 증대에 기여
- 도시민의 레저충족 수단으로만 전락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도시와 어촌간 교류촉진을 적극 지원하여 직거래를 통한 어업 외 소득창출 모색

Ⅲ. 주요 결정사항

- 지역민의 민박집에 대한 화장실 등의 시설현대화 적극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 기여

- 어민들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친절과 예절 등 서비스 교육 실시 및 추가적인 보수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
- 어촌과 어항이 수산물을 생산하는 공간 위주에서 바다를 체험하고 관광과 문화의 공간으로 전환되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자칫 지방자치단장의 포퓰리즘과 재정자립 등을 이유로 사업에 대한 축소 내지는 지연 등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안정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산림청 / 산림휴양정책팀,산림환경보호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사업목표

- '10년까지 자연휴양림 140개소 (국가 41, 지자체 79, 개인 20),
산림욕장 150개소(지자체) 조성

○ 추진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22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산림기본법」 제4조 및 제20조

〈 수목원 조성 〉

-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식물유전자원의 수집·보전·증식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공

2. 사업내용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사업기간 : 1988 ~ 2010
- 총사업비 : 5,656, 산림욕장 : 4억 (국가 50%, 지자체 50%)

〈 수목원 조성 〉

- 사업기간 : 1992년 ~ 계속

- 사업비 : 1,368억원 ('06년까지 686억원)
- 사업규모 : 22개소 (시·도별 1개소 이상 연차적으로 조성)
- 시행방법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 추진내용
 -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목원조성 확대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연차별 추진내용

산림휴양시설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	'10년
자연휴양림	107개소	115개소	124개소	133개소	140개소
국유 자연휴양림	34	2	2	2	1
공유 자연휴양림	55	6	6	6	6
사유 자연휴양림	18		1	1	-
산림욕장	108개소	14개소	10개소	9개소	9개소

- 사업비

(단위 : 억원)

산림휴양시설조성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책특)국유 자연휴양림조성	214	211	211	211	211
(균특)공유 자연휴양림조성	176	281	281	281	281

〈 수목원 조성 〉

구 분	'06예산	'07예산	'08계획	'09계획	'10계획	'11계획
· 공립수목원	125	122	140	140	140	140

4. 성과목표 달성도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자연휴양림 고객만족도 조사

- '04년 72점, '05년 75점 , '06년 88점 달성

〈 수목원 조성 〉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목표 20개소 / 달성 20개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산림휴양 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 산림휴양 공간 조성	휴양만족도	· 취득점수10-50 · $\{\sum \text{취득점수} / (70 \times \text{설문대상자수})\} \times 100$	점	75	88	111
○ 수목원 조성	조성수	총 조성수	개소	20	20	100

II. 총 평

<산림휴양공간조성>

○ 최근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들이 증가하고 휴양림의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율이 매우 높은 현상 등은 산림휴양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지속 또는 확대가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업부문에 있어 오랜 동안 지속되고 있는 배타성에 의해 지역 또는 농촌관광, 휴양부문과의 유기적 연계 등과 같은 지역밀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너지효과를 제대로 고양하지 못한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또한 산림부문에 대한 국민적 관광, 체험, 휴양 수요가 급증하고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요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공급량의 절대적인 확대와 함께 질적으로 다양한 요구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수목원 조성>

-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물유전자원확보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천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 수목원이라는 산림문화 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식물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전과 함께 국민들의 자연학습장으로서 활용하는 사업목적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산림관광 및 여가수요가 다른 관광부문과 마찬가지로 전문테마화 하고 있고 일정계층에서는 산림생태 전문가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수요의 질적 수준이 고급화 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산림매니아 들을 효과적으로 끌어안는 대안의 검토도 필요함
- 또한 식생지대별로 특성화, 유형화한 수목원을 조성함으로써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으로 수목원들끼리 협력, 보완하는 체계구축도 검토가 필요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산림휴양공간 조성>

- 산림지역은 해안 및 도서지역과 함께 국민휴양공간이므로 주5일 근무제의 전면적 실시와 국민소득의 증가, 고속간선 교통망의 확충과 자가용 보급률의 확대 등에 의해 국민적 휴양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임
-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을 공공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공급 및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 추진주체에 있어서도 국가(국유림), 지자체(공유림), 개인(사유림)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나 공급이 확대되면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고 경영혁신이 신속한 개인 또는 법인 등 민간위주의 사업추진이 타당할 것이므로 본 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검토되어야 함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수렴, 관계부처협의 및 사전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여론은 지역과 충분한 협의없이 사업이 추진,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므로 사업화 초기단계부터 지역의견을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수목원 조성>

- 식물유전자원의 수집보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 촉진, 그리고 생물자원의 과학적, 심미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를 여가 활동의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매니아들의 수요확대 등을 지속가능성 유지라는 시각에서 조화, 상생시키는 적절한 사업임 (참고로 영국에서는 Specific Areas for Natural Beauties and Scientific Interests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수목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우리의 자연을 알리고 접근케 한다는데 의미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식물 자원은 지리적 여건 또는 생태지대적 특성에 연원하여 그 가치가 발현되는 것이므로 지대별로 특화된 수목원 조성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산림휴양공간 조성>

-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고 환경부, 지자체, 방재관련부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들이 제도, 절차적 또는 실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기관 및 주민들의 이에 대한 평가는 여하한지에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자료보완이 요구됨
- 마찬가지로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홍보에 있어서도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조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에 애로사항이 많음
- 예산은 설계, 조성, 보완으로 구분하여 국비를 50-70% 차등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는 신규조성과 보완사업만 제시되어 있을 뿐 설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음

<수목원 조성>

- 유형별 수목원간의 워크숍, 해외연수, 추진상황 점검 등이 이루어진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성과 등에 대해서 취합된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불가능함

- 모니터링 평가단과 현지점검반을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평가 또는 점검반은 어떻게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 및 실적, 모니터링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함
- 또한 추진상황의 점검내용과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산림휴양공간 조성>

- 관리인력의 지역주민 고용, 저렴하고 안전한 휴양시설 제공에 따른 주민정신 및 건강함양, 지역관광의 거점역할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역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서의 통합성이 미흡하여 시너지효과가 고양되지 못하고 있음
- 성과지표로서 정성적 성격의 '고객만족도'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06년도 목표치인 79점은 상당히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88점이 달성되어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러한 종합목표치와 함께 시설 및 서비스, 접근용이성 등 개별 항목별로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수목원 조성>

- 식물유전자원 보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과학적 또는 심미적 여가 수요의 수용이라는 고급화된 조성목적은 갖고 있으므로 삶의 질 향상과는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성과 측정이 곤란하다고 해서 성과목표치를 단순하게 단지의 조성 계획 대비 실적으로 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또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평가 하거나 그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관련 전문가집단의 평가라도 거쳐야 함

Ⅲ. 주요 결정사항

- 본 사업은 지역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사업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므로 지역의 산업 또는 관광휴양종합 계획상에서의 위상과 역할정립을 사전에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휴양림의 경우 시설의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관리주체의 능력에 견주어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경영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사이의 역할과 기능을 차별화하고 이에 따라 운영관리방식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질적 수준이 결정되는 역할분담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수목원의 경우 식물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나서서 식물원(Botanical Garden)을 다수 조성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로 도시 인근 그린벨트 지역내에 수목원 조성을 활성화 하는 대안도 검토하여야 함

(문화관광부 / 관광자원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표('06년도)

- 문화관광 : 15개 시·도 문화관광자원개발 131개 사업 1,030억원 지원
- 생태녹색관광 : 7개 도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25개 사업 130억원 지원

○ 추진근거 및 배경

-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1조(재정지원)
- 관광진흥5개년계획('99.1) :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 발굴
- 관광진흥5개년계획('04.3) : 지역밀착형 특화 관광개발 및 지역간 연계 개발 추진
- 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 국민관광수요 급증과 관광시장 다변화에 따라 1999년부터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 생태·녹색관광이 새로운 형태의 관광 유형으로 대두되고 관광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2003년부터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과제('03.12) : 다양한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2. 사업내용('06년도)

- 사업지원대상 : 예산확정된 각 지자체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 사업기간 : 1999년(생태 2003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문화관광자원 : 15개 시·도 131개 사업 102,967백만원 지원
 - 생태녹색관광자원 : 7개 도 26개 사업 13,224백만원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50% 매칭 정율보조)
- 지원조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타당성 검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사업
- 사업주요내용 : 진입로, 주차장, 관광시설 등 관광인프라 조성지원

3. 연차별 예산반영

(단위 : 억원)

사업명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222	276	514	651	1,004	1,031
-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	50	63	102	130	133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비고	현재지표 (2006)	1차목표 (2007)	2차목표 (2008)	최종목표 (2009)
○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건수(개소)	129개 사업	120개 사업	132개 사업	138개 사업
○ 비율	98%	98%	98%	98%
○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건수(개소)	25개 사업	25개 사업	28개 사업	32개 사업
○ 비율	96%	96%	93%	91%

○ '06년 사업 추진실적

- 문화관광자원 : 15개 시·도 129개 사업 100,384백만원 지원
- 생태녹색관광자원 : 7개 도 25개 사업 12,995백만원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개발건수	총 개발건수	건수	157	154	98

II. 총 평

- 본 사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독특한 문화·생태 자원 등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균특회계 예산편성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통제 및 조정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의 점검 및 평가, 모범사례의 발굴 및 육성, 사업성과의 관리체계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모색이 필요
 - 평가 대상 사업들도 그 조건은 마찬가지이나 나름대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선정 및 계획수립,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과정 등에서의 지역주민 참여강화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관광자원화 등 사업추진체계를 대폭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목적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출(output) 또는 결과(outcome) 지표에 기초한 성과지표의 개발, 성과목표치의 설정, 성과목표치 모니터링체계 도입 등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필요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국민의 관광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나, 현행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 등은 국민의 관광수요 충족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두 가지 사업목표에 대한 균형적 접근 필요
- 2005년부터 균특회계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편성에 의해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사업비가 확정되어 중앙정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 조정 등 현실적인 통제수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사업추진지침 및 사업성과 관리지침 등을 제시하는 등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설정 필요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사업평가를 실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대상사업의 선정과 추진,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등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개선 필요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지자체의 개발사업 지원건수)는 투입(input) 지표로서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가 낮으며, 성과목표치 설정의 타당성이 낮음

- 산출(output) 또는 결과(outcome) 지표에 기반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성과목표치의 설정, 성과목표치 달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

Ⅲ. 주요 결정사항

- 지자체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교육훈련 강화, 지역사회 중심형 사업추진체계 마련,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등 사업추진체계의 개선 필요

4-2-2-1(계속)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관광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농촌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사회적인 붐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09년
- 지원조건 : 행사당 10억원 (국고 100%), 개최주기 격년
* '05년 695백만원 (마사회기금 100%)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 지원내용 : 전시기획, 농산어촌마을체험관 등 전시부스마련, 참가마을 및 기관·업체 모집, 홍보·마케팅 등 행사진행·총괄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회('05)	2회('06~'07)	3회('08~'09)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개최		3	1	1	1
사업비	계	2,405	695	710	1,000
	보 조	1,630	-	630	1,000
	기금 등	775	695	80	-

4. 성과목표 달성도

-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은 아직 미개최로 달성도는 평가할수 없음

II. 총 평

- 본 사업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수요를 창출하고, 참가자(농산어촌)와 관람객(도시민)의 정보교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가 적합하며,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구성, 참가자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사업추진절차도 합리적임
- 2006년 사업은 2007년 도농교류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행사를 준비한 내용으로서,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기 곤란함
- 개최계획 수립과 행사준비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사개최 이후 사후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수요를 창출하고, 참가자(농산어촌)와 관람객(도시민)의 정보교류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는 적합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구성, 참가자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사업추진절차도 합리적으로 판단됨

- 주관기관과 사무국의 적절성 평가, 사후평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재원은 충분한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사업계획 수립 130백만원, 홍보 및 실제 행사 개최 500백만원)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2006년 사업은 2007년 도농교류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행사를 준비한 내용으로서,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기 곤란함
- 성과지표는 참가자의 재참가 의향률, 방문객의 재방문 의향률로 설정하였음
- 그러나 참가자의 참가 유도를 위해 각 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참가 만족도로 변경하는 방안, 그리고 관람객의 박람회 재방문 의향률보다는 농산어촌체험 관광 참가 의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본 사업은 격년 단위로 개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목표치를 현행 목표치 외에 전회 대비 증가율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Ⅲ. 주요 결정사항

- 주관기관과 사무국의 적절성 평가, 사후평가의 강화 필요
- 재원의 충분성과 합리적 배분을 검토하고,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의 재검토 필요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의 지속적인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다양한 홍보·이벤트를 강화하여 농산어촌체험관광 수요 창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년 이후 (계속)
- 재원형태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도농교류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기본계획수립(농림부) →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도농교류센터, 농림부) → 사업시행 및 사후 보고(도농교류센터 → 농림부) → 사업비 검정(농림부)
- 사업내용
 - 신문,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농산어촌체험마을의 홍보·마케팅
 -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개최 및 1도1촌우수마을 지정
 - 그린맵 제작·배포,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 초등학교 교사·학생 농촌체험행사, 나의농촌문화체험기 등 공모전
 - 농촌관광포털사이트 운영,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 홍보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 등	소계		
2006	800	-	-	-	800	-	-
2007	1,090	-	-	-	1,090	-	-

4. 성과목표 달성도

-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방문객수 및 농촌관광매출액 '06년 목표치 600천명 대비 실측치 1,343천명 (목표치 대비 223.8% 증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체험관광 홍보	방문객수	녹색농촌체험마을 총 방문객수	만명	60	134	224

II. 총 평

- 다양한 채널을 통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를 전개하여 매년 체험마을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어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어촌 활력계기 제공
- 관계부처간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홍보방안 협의 등 협조체제 유지로 정책고객관리 및 설문·현지조사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분야별, 계층별, 현장의견 수렴 등 평가관리 및 해결에 적절히 대응
-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방송3사의 시청율이 높거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대에 집중 홍보와 연예인 또는 스포츠스타 등의 체험기회 방송 프로 확대·보완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다양한 홍보 전개를 위해 농산어촌체험마을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공동추진사항 협의 후 시행 및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 및 거리 캠페인 전개 등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 추진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산어촌관광 활성화에 따른 방문객 수 증가는 체험, 민박, 특산물판매 등을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로 이어져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에 기여
- 농어촌체험행사가 1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전년도 사업성과 분석 반영 및 사전홍보, 모니터링 등 문제점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강화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부가가치 증진 및 소득증대로 안정적인 농산어촌 생활을 영위하게끔 하는 정책 목표에 부합
- 농산어촌 체험 방문객 증가추세 및 농산어촌 봉사활동 등 민간 차원의 교류 지속으로 안정적인 농수산물 판로개척 및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어가 소득 향상에 기여

Ⅲ. 주요 결정사항

- 농산어촌 체험마을에 도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하여 휴양·체험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확대 지원 필요
- 주5일 수업제를 교과과정과 연계시키는 농산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필요

4-2-3-0(계속)	중앙·지방·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 구축
-------------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민간 부분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사후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부터
- 재원형태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 추진내용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실무협의회 운영,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그린포럼, 1인1촌전문가 지원시스템 운영,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평가회 및 사후지원·관리
- 추진체계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실무협의회 운영(비예산) : 부처합동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통합지침('04.11)'을 마련, 농림부가 주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 기타 : 사업기본계획수립(농림부) →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도농교류센터, 농림부)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도농교류센터 → 농림부) → 사업비 검정(농림부)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6	'07
그린포럼	18	20
1인1촌 전문가지원	160	197
사업 연찬회	20	20

* 관계부처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실무협의회 운영 : 비예산

4. 성과목표 달성도

- '전문가 컨설팅 횟수'는 '06년에 520회를 목표로 하여, '06.12월까지 540회를 실시하여 당초 목표의 103.8%를 달성 (3.8% 초과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중앙·지방·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 구축	민간전문가 컨설팅 횟수	1인1촌 전문가지원시스템에 참여하는 전문가컨설팅 횟수	회	520	540	104

II. 총 평

- 중앙, 지방, 민간전문가 그룹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사후평가관리 체계 구축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향상시키고, 체험마을 발전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는 계기가 됨.
- 1인1촌전문가지원시스템, 그린포럼 등을 통해 마을개발의 전문성 유입, 지자체의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확대 등은 잘 된 점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 체계로부터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쌍방향 정보교류가 미흡함.
- 1인1촌전문가지원시스템의 경우, 1인이 갖고 있는 마을개발 전문성의 제한. 다양한 전문성이 마을개발을 위해 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1팀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등으로 점진적 발전방안 추진
- 그린포럼도 중앙차원과 지역차원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추진. 마을 개발에 대한 광역정부의 관심 유도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
 - 체험마을 조성 수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조성부문보다는 사후평가 및 관리부문에 대해 예산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사업임.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시책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향후 체험마을 조성 후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발전을 전담할 수 있는 도 단위에서 운영되는 상설기구가 필요함
 - 농산어촌 체험마을조성 사업을 ‘마을’이라는 공간단위로 시행하는 현 단계에서 향후에는 농산어촌 공간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사업추진체계에 있어 지자체의 능동적 역할이 부족한 실정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비교적 저예산규모로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조성보다는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사업목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농산어촌체험마을 '조성'보다는 '사후관리' 측면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됨.
- 1인1촌 전문가 지원사업을 도 단위에서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풀을 이루어 1팀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문화관광부 / 관광산업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 향토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축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축제 집중 육성, 유망축제 발굴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8 ~ 계속
- 사업비 : 3,500백만원 (2006년도)
- 사업규모 : 문화관광축제 52개 선정, 지원
- 시행방법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율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50%, 지방비 50%)
 - 사업절차 : 문화관광축제 추진계획 수립 시달(문화부→시·도) → 사업계획수립(축제추진주체) → 사업신청(시·군·구) → 문화관광축제 추천(시·도→문화관광부) →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등급 결정(문화부) → 예산지원(문화부→시·도→시·군·구) → 사업시행 및 문화관광축제 개최(시·군·구) → 사업평가(문화부 등) → 평가결과 다음해 선정시 피드백

○ 추진내용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52개 축제, 3,5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5개축제, 각 300백만원
 - 우수축제 : 9개축제, 각 150백만원
 - 유망축제 : 13개축제, 각 50백만원
 - 예비축제 : 25개축제, 예산지원없이 행정지원
- 축제 테마 박람회 개최 지원 : 300백만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본방향 : 관광상품성이 뛰어난 축제에 대한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및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축제 10개 집중 육성 지원
- 연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07예산	'08요구	'09요구	'10요구	'11요구
4,000	6,350	8,600	8,600	8,60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 달성도 : 목표치 달성 (관광객 35.2백만명, 지역경제 파급 효과 1조 3천억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향토문화관광축제 육성	관람객수	1개축제당 관람객수×45개축제 (문화관광 축제)	백만명	35	35.2	101

II. 총 평

- 본 사업은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뛰어난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최우수, 우수, 유망, 예비 축제 등 등급별로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함으로써 지자체의 동기 부여, 대한민국축제박람회의 개최, 축제별 만족도의 평가, 종합평가계획의 수립 및 축제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 그리고 다음해 선정 시 평가결과의 피드백 등 사업추진 체계와 방식이 매우 효율적으로 판단됨
- 지자체의 축제별 설문조사와 평가보고서, 성과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목표대비 성과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우리의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위 목표와 부합됨
- 전국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최우수, 우수, 유망, 예비 등 등급별로 선정하고 차등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동기유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축제별 평가보고서 작성 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방법의 표준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고, 지역의 축제평가가 타당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문화관광축제의 선정 시 시·도의 추천을 받아 선정,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기간 중에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 문화관광축제의 선정 시 등급별로 선정하고 차등 지원, 축제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 평가결과를 다음해 축제 선정 시 피드백하는 점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그러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작성하는 축제별 설문조사 및 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 필요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3,500백만명에 달하는 축제관광객 증가 및 1조 3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 축제개최를 통한 농수산물 판매로 농어민 소득증대 등 사업효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방문인원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지자체에서 파악한 자료를 활용하므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산출(output)보다는 결과(outcome) 지향적인 성과지표의 개발 및 활용 필요
- 현재의 성과지표는 외래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 본래의 목표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는 적합하지만,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는 한계가 있음
-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제시(등급별로 차등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지역에서 문화관광축제 선정 신청 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Ⅲ. 주요 결정사항

- 지역에서 시행하고 작성하는 축제설문조사와 축제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방법의 표준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성과지표를 지자체에서 파악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현재의 성과 지표는 사업 본래의 목표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는 적합하지만,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
-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대비 성과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농림부 / 정주지원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소득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 적극적인 농촌경관 형성시책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거양)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2013
 - 2005~2007기간중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방안 보완
- 총사업비 : 481억원 (국고 337, 지방비 144)
 - 7,000ha, 170만원/ha (국고 70%, 지방비 30%) 지원
- 추진현황 : '06년 시범사업으로 470ha 신규 착수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농업인
- 사업추진절차 : 대상지역 신청(주민→시·군→시·도→농림부)→ 대상지역 선정(농림부→시·도→시·군)→경관보전협약 체결(지자체와 마을간)→이행상황점검 및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내용

- 대상지역 : 읍·면지역 및 자치구의 준농촌지역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1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
- 사업내용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 * 경관작물 :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은 원칙적으로 제외
 - 직 불 금 : 170천원/10a (국고 70%, 지방비 30%)

3. 연차별 추진계획

(금액 : 억원)

구 분		목 표	'05까지	'06	'07	'08~'13	비 고
사 업 량 (ha)		7,000	470	470	800	7,000	
사업비	계	481	8	8	14	451	
	국 고	337	6	6	10	315	
	지방비	144	2	2	4	135	

4. 성과목표 달성도

○ '06.11월 기간중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 외지인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은 효석문화제 기간('06.9.8~17)중 75만명 ('05 : 57만명) 방문, 축제기간 전후 1달간 100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어 1인당 1만원정도 소비했을 경우 100억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효석문화제와 연계하여 지역축제를 통한 도농교류 증대에 기여함

- 고창군 공음면은 메밀축제 기간중 20만명 방문, 부안면은 국화꽃 축제 기간중 15만명이 방문, 총 35억원의 지역소득효과 발생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천리는 11.6ha에 코스모스 및 메밀을 식재하여 꽃을 즐기러 온 방문객이 20만명에 달하고,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는 18ha에 메밀을 식재하여 전에는 방문객이 없었으나 '06년도에는 8,000명이 방문하는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 마을공동으로 지역축제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부활되는 등 긍정적인 점이 많음
- '06.12월~'07.1 기간중 실시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 소득효과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83%가, 농촌관광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96%가, 경관향상효과에 대하여는 94%가 만족도를 표시하여 전체적인 만족도는 91%로 추정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경관보전 직불제	농업인 및 도시민 만족도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	80	91	114

II. 총평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 가시화 될 수 있는 농촌경관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그린 투어리즘과 연계하여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사업임
- 농촌경관의 중요성 및 보전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본 사업시행 이전에 시범사업을 도입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 된 점이라고 보았음

- 그러나 경관작물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긴 하나 선호하는 작물이 편중되어 시범사업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지역적 차별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경관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데 대한 보상정책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경관보전협약의 내용과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

[개선방안]

- 경관작물 범위의 확대와 개발
 - 지자체별 자생식물, 특용작물 선정 등 지역적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작물을 재배 가능하도록 제도 전환 필요
 - 경관작물은 대규모 집단 재배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생리·생태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촌경관에 대한 주민의식 함양 및 내발적 필요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필요

II. 평가결과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하고 쇠약해짐으로써 유희농경지가 증가하여 농촌경관 훼손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농촌경관을 형성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한다는 데 있어서 적절한 사업임

-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며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을 도모함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지자체와 주민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식재, 재배관리, 농지정비, 경작지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 작업 등 경관관리에 관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사업추진체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부족한 실정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도농교류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Ⅲ. 주요 결정사항

-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작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경관가치 증진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주택, 길 등)과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침마련 필요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환경자원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의 생활권역 및 자원권역을 고려한 농촌지역종합개발 및 어메니티 자원을 농가소득과 연계한 자원화·소득화 기술 지원
 - 농촌어메니티 계획 모델 개발(9유형) 및 보급
- 사업추진 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14조 및 제 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4년간)
- 사업량 : 9개 계획모델 개발 ('06년 3유형)
- 사업비 : 19.8억원 ('06년 4억원)
- 시행방법 : 자체 수행
- 추진내용
 - 농촌권역별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 9유형
 - 농촌어메니티 자원 기반형 공간정비시스템 개발
 - 개발 모델의 현장보급을 위한 컨설팅 체계 개발
 - 대국민 홍보 및 현장지원을 위한 자원의 시각화 기법 개발

3.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내용	'06년	'07년	'08년	'09년
권역별 어메니티 계획모델개발				
개발 모델의 현장보급				
공간정비시스템 개발				
컨설팅체계 개발				
홍보 및 3D시각화 기법 개발				
사업비(19.8억원)	4	3.4	6.2	6.2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촌어메니티 계획 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모델 개발 실적	농촌진흥청 결과활용심의 결과 성과물로 채택된 건수	건	3	3	100

○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모델 개발 유형

- 공간계획, 경관계획, 자원활용프로그램 등 3유형

- 자연생태형 : 자연생태와 수려한 경관을 특성화 (화천군 동촌권역)
- 역사문화형 :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마케팅사업 전개 (강화 읍내권역)
- 농업문화형 : 농업문화의 가치(삶의 터전, 교육 등) 실현 (강화 외포권역)

II. 총 평

- 농업·농촌기능의 다원화 및 농업·농촌경영의 다각화가 농촌활성화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그린투어리즘이 이러한 변화의 첨병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추동요소인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활용모델개발은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에 의해 농촌어메니티자원 관련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과제별로 연구목적과 내용이 차별화 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연구결과의 활용방향에 대한 명쾌한 정립이 미흡한데서 유래되고 있으므로 성과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시뮬레이션 평가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성공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 본 연구는 4년에 걸친 다년 연구과제이므로 중간연도인 2007년말에 중간평가를 연말평가보다는 평가강도를 높여 실시하여 최초의 연구계획을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하는 중간모니터링 단계도입을 검토하여야 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국민적 관심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촌어메니티자원의 효율적 및 체계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보전, 활용에 대한 계획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시도하는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됨

- 제시된 모델의 현장적용을 위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도 활용 등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었거나 계획되고 있는데 문제는 전문가에 의한 모델 및 기법개발과 현장 실천가의 실무수요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기술적 격차(Technical Gap)을 어떻게 해소할 것 인가이므로 현장실무자가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 또는 매뉴얼을 작성하는 과업이 별도의 연구항목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연구수행과정에서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심의를 의무화하는 절차를 갖춘 것은 잘한 일이나 심의 및 평가는 자주 할 경우 형식에 흐르기 쉽고 연구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횟수는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이되 심의와 평가의 강도와 심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본 연구사업의 구성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외부전문가를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시키고 기 개발된 계획기술과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자문그룹의 기술지원을 받아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점은 연구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관련된 실적 및 운영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성과 확인이 가능
- 중간점검을 위하여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그룹의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평가결과와 도출된 문제점 및 미비점은 무엇이었으며 연구자에 의한 후속조치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함

- 본 연구사업 성과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일반의 관심을 유도하기 매우 힘든 특성을 갖고 있음에 유의하여 농촌어메니티 작품전시회 및 전원마을조성 페스티벌, 혁신박람회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 점은 적절한 조치임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본 연구사업은 그 자체가 단일 또는 별도의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필요한 기초계획기술을 지원하는 기본연구적인 성격이므로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사전 기초과정임
- 연구과제의 성격상 성과지표를 구체적 성과물로 연동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 (예를 들면 자원활용 모델에 대한 전문가집단 또는 현장 공무원, 지역주민의 평가 등)

Ⅲ. 주요 결정사항

- 본 연구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데는 개발된 모델을 실제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실제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모델사업 또는 파이롯트 사업 추진연구 추가를 검토
- 현장실무자 또는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과 지침서 또는 매뉴얼개발을 세부과제연구의 부차적 수준에서 격상하여 하나의 연구과제로 독립시키는 것을 검토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지역에 적합한 경관주택을 발굴·보급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주택이 농산어촌 경관의 유지·개선에 기여하도록 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사업비용 : 1,650백만원
- 사업근거 : 삶의질향상법 제30조, 삶의질향상법시행령 제12조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촌공사
- 사업내용
 - 농산어촌 경관주택(전원마을) 모델하우스 건립·전시를 통한 농산어촌 경관주택의 홍보·보급 추진
 - 농어촌연구원내 3천평 규모의 농산어촌 경관주택 모델하우스 조성
- 2006 한국농촌건축대전을 통하여 농산어촌 경관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은퇴도시민, 농산어촌지역 주민 등 수요자의 관심 제고
 - 국내외 건축가들의 지명초청전 및 작품설명회, 일반인대상 농산어촌 경관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농산어촌 경관주택관련 심포지움 실시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7 한국농촌건축대전

구 분	'07년도												'08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	2/4	3/4	4/4
○운영위원회 구성, 주제 및 설계지침 확정	■															
○일반공모 공고, 초청건축가 선정 및 작품 의뢰				■												
○일반공모 작품 심사 및 입상작 발표 및 전시회									■							
○대전결과와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					
○한국농촌건축대전 지속 시행													■			

○ 전원마을 모델하우스

구 분	'07년도												'08년도				'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	2/4	3/4	4/4	
○추가 주택2동 건축 및 공동화장실 설치	■																
○전원생활체험단 교육				■									■				■
○행사 및 유지관리	■												■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목표달성도 : 초청건축가 작품 5점, 일반공모 수상작 25점을 발굴하여 기본계획서 수립 완료 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측정 불가

II. 총 평

- 기성 유명건축가의 전문가적 식견과 기술이 돋보이는 초청건축가전과 일반응모자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일반공모전을 병행하여 농촌건축대전의 질적 수준을 높인 것은 적절한 조치임
- 또, 일반 국민들에게 전원주택의 다양한 유형과 형태를 실제의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농어촌연구원내에 전원주택모델 전시관을 개장하여 20,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것은 개발된 주택모델이 현장건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한 고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개발된 전원주택모델이 과거 개발된 농촌주택설계모델들이 거의 홍보수준에 그치고 사장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마을과 마을 지도자, 농촌지역 건축업자들에게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홍보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택전시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어 전국 각지에서 전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유발의 주요 동기가 전원경관과 쾌적한 주거생활인 점을 고려하면 전원주택을 건축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설계에 대한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전원주택 모델을 공공부문에서 개발, 제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시책임
- 본 사업은 농촌경관주택 모델개발 및 보급을 지향하고 있는데 경관주택과 일반전원주택과의 차별성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성과를 높이려면 전원주택 중에서도 경관주택으로 한정하여 사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 본 사업에서 개발된 모델의 보급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달성하는 방법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업 추진시 주택모델을 활용하여 신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을 검토하여야 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건축분야가 갖는 전문성과 사업시행부서, 연구지원부서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운영방식인데 발굴된 건축모델의 현장적응성을 높이려면 지자체, 현주민, 지역의 건축설계 및 시공업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중간모니터링 역시 건축전문가 및 사업시행부서의 참여도 필요하지만 농촌건축의 최종 구현자인 지역의 건축설계 및 시공자와 최종 수요자인 농촌주민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지역의 건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심을 증대시키고 일정부분 전원마을조성사업에의 참여 혜택을 주는 대안도 검토 가능
- 본 사업이 한국농촌공사의 자체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지방으로의 확산이나 관련사업으로의 연계확대를 위해서도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본 사업은 농촌주민 및 이주도시민의 의식주 요건중 주생활(住生活)과 관련된 핵심 편이를 제공하는 영역이므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는 직접적이라 평가됨

- 본 사업은 건축대전과 모델주택전시관 건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모전의 경우는 성과지표가 목표하는 초청 및 공모작품수 대비 실적작품수 일 수 있으나 개발된 모델의 활용성은 실제 현장에서의 본 모델 적용건수 또는 주택전시관의 경우, 전시관 방문객수 또는 상담건수 등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성과지표 조정을 사업의 진행에 발맞추어 검토하여야 함
- 주택 전시관의 경우 비교적 개장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것은 전원주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되어 전시혜택을 지방에서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Ⅲ. 주요 결정사항

- 본 사업이 농촌주민은 물론이고 이주도시민의 기본수요인 주생활 부문의 삶의 질 개선을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부문에서 사업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비도 지방으로의 확산을 위하여 확대되어야 함
- 개발된 농촌경관주택모델을 농촌지역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은 지역의 건축설계 및 시공자이므로 이들을 본 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 시켜야 함
- 농촌경관주택은 신축에 의해 조성되기도 하지만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경관과의 조화성을 높이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므로 리모델링 모델에 대한 연구 및 기술 개발도 적극 검토해야 함.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팀)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자생식물자원의 현지내 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숲 복원기법 개발 및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공간으로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사업비 : 1,280억원 ('06년까지 443억원)
- 사업규모 : 자생식물단지 조성 2개소, 생태숲 21개소
- 시행방법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 추진내용
 - 지역별 특색있는 향토 자생식물 식재 및 자연림의 원식생 복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결산	'07예산	'08예산	'09계획	'10계획	'11계획
·자생식물식재 및 생태숲 조성	128	147	150	175	180	185

4. 성과목표 달성도

- 자생식물단지 : 목표 2개소 / 달성 2개소
- 자생식물단지 : 목표 21개소 / 달성 21개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조성개소	총 조성개소수	개소	23	23	100

II. 총 평

- 토착 자생식물의 계획적 식재에 의해 유용한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생태적 가치를 고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숲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민의 자연생태에 관한 관심과 지식탐구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다양화 된 여가수요에도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선진국형 농촌진흥 사업으로 평가됨
- 그러나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수목원 조성사업과 차별화 되고 특성이 명확화되지 못한 채 유사하게 식물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전이라는 공통적 사업목적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본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보다 명쾌하게 본 사업의 목적이 제시되어야 함
- 전년도('05년도) 평가보고서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업부지 확보 및 각종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 부진개소 발생'의 문제점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도 이에 대한 개선노력의 여부는 제시하지 않은 채 미흡한 점이라고 반복 기술하고 있는 것은 해당부서의 성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생물자원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지역토착적인 자생식물을 계획적으로 식재하여 복원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숲을 조성하는 것은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됨
- 그러나 기본방침과 목표에서 세부목표 또는 전략으로, 그리고 집행 수단으로 논리성있게 연결되는 목표-성과구현의 위계적인 연계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며 이에 따라 정말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생태숲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하기 매우 힘들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의 실시 내용은 수목원의 기술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인데 이로 미루어 보아 본 사업은 수목원조성사업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업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본 사업의 고객은 식물자원 및 생태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주요고객은 지역주민일 것인데 계획수립시 해당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본 사업이 지역과 유리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 판단되므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만약 이러한 개선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본 사업은 농촌진흥 사업으로 포함되기 보다는 산림청 자체의 연구지도사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본 사업의 관련부처인 지자체-산림청-기획예산처 사이의 업무분담 내용 및 시행절차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시행 과정 및 사업수행 후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산림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함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협조가 수목원의 경우와 똑같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자의 성의부족이거나 본 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관심 부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발을 촉구함
- 중간 모니터링을 위한 현지점검단을 이해관계가 동일한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들로 한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임업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자기 잇속 챙기기' 관행을 계속할 경우 타 분야 또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함
- 중간 모니터링과정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기술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중간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제도개선방안은 무엇이 강구되고 반영되었는지는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음
-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충실히 알리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방송매체 또는 기타 일반국민에의 접근이 용이한 홍보수단을 통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음
 - 참고로 1사 1촌운동의 경우 KBS의 '싱싱일요일'에 방송되므로서 1사 1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생태숲 조성자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도 전혀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본 사업은 생물자원보전과 생태복원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토착적이고 주민에게 생태보전의 이익을 향유케 하는 목적이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만족도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본 사업의 근본 지향방향을 망각한 결과임
- 이에 따라 성과지표를 단순히 조성목표 대비 단지조성실적으로 단순화 한 것은 본 사업의 지역밀착적인 성공적 수행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만족도조사결과를 성과지표로 수정 채택 하여야 함

Ⅲ. 주요 결정사항

- 본 사업의 계획과 모니터링, 평가과정에 해당지역 주민의 참여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 사업시행 및 사후의 모니터링과 평가작업을 산림청 주도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절차를 보완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최종 책임부서가 지자체인지 아니면 산림청인지 명쾌하게 정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무책임성의 결과를 개선하기 어려운데 정부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은 관련 중앙부처가 지닌 것이 타당하므로 산림청의 정책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4-3-5-0(계속)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

(농림부 / 정주지원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정립 및 정책수단마련을 위한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 수립
 - 높은 국민적 관심, 농촌의 현황 및 국내외 정책동향 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필요
- 경관법 제정(건교부) 추진관련 관계부처합동 경관계획수립기준 제정
 -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사업비용 : 비 예산사업
- 사업근거 : 삶의질향상법 제30조, 삶의질향상법시행령 제12조
- 사업추진주체 :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경연, 농촌공사 등
- 사업내용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 종합대책 및 로드맵 마련
 - 농촌경관관련 관계기관과 공동작업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 이를 종합하여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시안)」 마련
 -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시안)’은 관계기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 세미나 등을 통해 보완 후 확정

- 경관법 제정(건교부) 추진관련 관계부처합동 경관계획수립기준 제정
 -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경관계획수립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우리부(안)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건교부 주관 연구용역에 적극 참여, 우리부 검토의견 반영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업무	5개년 계획('06~'10)					비고
	'06	'07	'08	'09	'10	
○종합대책 및 로드맵 마련		■				
○경관계획수립기준마련 연구 추진		■				
○건교부주관 경관계획수립기준마련 연구 공동 추진		■				
○선농촌경관계획 체계 구축			■	■		
○후농촌지역개발사업 시행				■	■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해 「농촌경관 종합대책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공동으로 공동작업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추진 체계, 추진일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회, 세미나 등을 거쳐 의견 수렴 후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건교부주관 관계부처합동 경관계획수립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중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측정 불가

II. 총 평

-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나, 개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광범위하거나 불분명하여 통합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농촌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라는 국가 차원의 개입토대 및 방식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주체 그룹간에 공동의식형성, 협력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및 협의기구 마련 등을 추진한 것은 잘된 점이라 파악됨.
- 그러나 농촌경관에 대한 농촌지역 행위그룹간의 구체적인 공동의식 형성 노력은 미흡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 :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사업계획의 구체성 : 경관지표, 경관맵, 경관보전협약,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임
- 절차적 합리성 : 아직 준비단계이나, 상향식 접근이 필요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함
-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반영 : 기관, 단체 등 공공부문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제도기반 구축을 통해 사업효과가 나타난다면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의 적절성 : 경관지표 등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한 지표개발이 필요함
- 성과목표 달성도 : 관계기관 간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나 로드맵 등이 아직 까지 준비되지 않고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필요
- 농촌경관이 다루는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관련 행정분야도 광범위하므로, 부문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농업생산 활동과 관련된 농업경관 분야 등을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여타 분야를 접목시키는 방안 실천 필요.

(농림부 / 농지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및 필요성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중산간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
 - 농촌지역 특히, 조건불리지역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 사업추진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5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0조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2. 사업내용

-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경지율 22%미만+경사도 14%이상 면적이 50%이상 지역 및 도서개발 촉진법상 도서)내의 농지 및 초지 경작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 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
 - 마을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사업비의 30% 이상)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지관리의무 등을 부과하고, 마을협약 및 기금조성 등 마을중심으로 운영

-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인 경지율(22%미만)과 경사도(14%이상 면적이 50%이상) 등을 적용하여 법정리를 선정
- 대상농지 : 밭, 과수원, 초지
- 지원단가 : 밭·과수원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요건 : 실경작자가 지급 대상지 해당 읍·면 및 연접 법정리에 거주
- 사업기간 : 2004년 ~
- 사업비('06) 및 규모 : 51,378백만원, 187천ha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2009
사 업 량		31천ha	187천ha	187천ha	187천ha	187천ha
합 계		15,984	74,325	74,325	74,325	74,325
	소 계	12,400	73,397	73,397	73,397	73,397
사업비	보조금	8,680	51,378	51,378	51,378	51,378
	지방비	3,720	22,019	22,019	22,019	22,019
행 정 비(국고)		3,584	928	928	928	928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가당 평균지원금액 : 236천원 (32,151,421천원/136천농가)
 - 마을공동기금 평균조성비율 : 30%이상 전망
 - 30% 조성 1,281개마을, 30~50% : 115개, 51~80% : 19, 81~100% : 8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농가당 평균지원액	농업인보조금지급실적/실지원농가수	천원	236	236	100
	마을공동기금 평균조성비율	평균조성비율	%	30	30	

II. 총 평

- WTO체제하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제한하는 시점에서 농업생산여건이 불리한 중산간 지역에 대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시의적절한 사업임
- 정책형성에서 시행단계까지 지속적인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이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한 점은 잘 된 점임.
- 그러나 낙후지역 지원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낙후지역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 향후 낙후지역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 후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대상 면적을 확대하여 지원대상의 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
 - 가격지지정책을 통한 농업에 대한 지원이 제세되는 추세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조 및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기적절한 사업임
 -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공동화를 막아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임
- 사업계획의 구체성

- 대상지는 농지로써의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 마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주민의 고령화와 인구부족으로 일회적인 지원으로는 실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기금의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절차적 합리성

- 정책형성, 시범사업수행, 본 사업수행 까지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으로 비교적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음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정책형성, 시범사업수행, 본 사업수행 까지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으로 비교적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한 홍보효과도 있었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평야지보다 정주여건 및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산간·도서 지역의 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지역의 농업인 소득 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를 평가 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대상마을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기준 연구 필요

Ⅲ. 주요 결정사항

- 마을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한 것은 본 사업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지역사회유지 기능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단임.
-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해서는 공동기금 설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함
- 공동기금이 도시민 유치 등 마을에 새로운 인적자원을 유입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음

4-4-1-0(계속)	1사1촌 운동
-------------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1사1촌운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정착유도
- 1사1촌 자매결연이 기업체를 중심으로 사회각계로 확대되어 농업·농촌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증진 및 도농간 교류 활성화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시행시기 : 2004년 ~ 계속
- 주요추진 사항
 - 민간주도로 내실있게 추진
 - 관계기관 합동으로 T/F를 운영하여 1사1촌운동 발전전략 마련
 - 실태점검 강화 등 1사1촌 자매결연 내실화 추진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통한 범국민적 운동 추진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사단법인화
- 홍보 및 마케팅, 유공자시상 등을 통한 도농상생 분위기 확산
 - 도농교류 활성화 및 참여를 위해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도농교류·우수마을 등 정부포상실시, 농촌체험행사·수기공모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우수사례집 제작·홍보로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 다양한 형태의 자매결연 추진
 - 1사다촌, 다사1촌, 1학교1촌 등 다양한 교류 추진

- 도농교류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확충
 - 농협주관으로 농촌마을 지도자 교육을 통한 지역역량강화
 - 농촌사랑지도자 교육원(농협대) 신설 운영
 - 농촌마을대표, 1사1촌 관련 기업·단체 및 도시소비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 (총 2만명, '06년도 1만명, '07년도 1만명)

3. 연차별 추진계획

- 1단계 : 교류성과 창출단계 (2006~2008)
 - 마을인프라구축, 교육 인적자원 육성, 농촌자원개발
- 2단계 : 교류성과 확산단계 (2008~2010)
 - 성공사례확산 및 농촌자생력 강화, 기업체 투자 유도
- 3단계 : 국민운동 정착단계 (2010년 이후)
 - 한국형 농촌발전모델정착, 운동혁신을 통한 범국민 지지와 참여 지속화

4. 성과목표 달성도

- 적극적인 홍보 및 사회적 동참분위기 조성으로 자매결연 실적 ('06.12월말 기준) 14,498건으로 목표 대비 31.8% 초과달성
 - 결연형태

구분	기업체	소비자 단체	사회·종 교단체	관공서	농협	기타	합계
자매결연	6,316	1,082	820	1,967	1,523	2,790	14,498
비율(%)	43.5%	7.5%	5.7%	13.6%	10.5%	19.2%	100

- 추진기간별

* ('04.12월까지) 2,404건 → ('05.12월) 8,677→ ('06.12월) 14,498

○ 시도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자매결연	14,498	3	297	186	390	206	309	351	1,498
비율(%)	100%	0.02%	2.05%	1.28%	2.69%	1.42%	2.13%	2.42%	10.3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매결연	963	1,050	1,890	1,219	1,725	2,233	1,923	255
비율(%)	6.64%	7.24%	13.04%	8.41%	11.90%	15.40%	13.27%	1.76%

○ '06년(12월기준) 인적·물적 교류실적 - 1,854억원

* 농수산물직거래 : 974억원, 일손돕기: 341억원, 농촌체험: 204억원 등

※ 중앙부처 1사1촌 자매결연 현황

-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30개 기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1사1촌 운동	자매결연체결 실적수	총 자매 결연체결수	건	11,000	14,498	132

II. 총 평

- 1사1촌 운동은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의 많은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여 범국민운동으로 부상하였으며, 농업·농촌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잘된 점]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의 법적 지위 확보 및 회원 수의 증가로 체계적인 범국민운동 추진 기반 구축 및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개원으로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이 구축되었음.

[미흡한 점]

- 민간주도((사)농촌사랑운동범국민운동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운동본부의 조직, 인력, 자금부족 등으로 그 역할이 미흡하였음. 참여기업·단체의 증가로 양적성장은 이룩하였으나, 도농교류의 형식적 측면을 극복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개선방안]

- 1사1촌 추진 주체로서의 농촌사랑운동범국민운동본부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운동본부의 조직, 인력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지속적인 교육, 홍보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으로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업 시장개방 확대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주도의 도농상생 모델을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임.
- 사업계획의 구체성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사단법인허가 및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등록 등 법적지위 확보 및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으로 민간주도형 범국민운동으로의 기틀을 마련

- 홍보 및 마케팅, 다양한 교류 추진 등과 같은 거시적인 양적성장 외에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질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됨

○ 절차적 합리성

- 자매결연 마을과 기업·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1사1촌 자매결연 희망 마을 및 기업·학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민간주도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지원, 제도적 뒷받침 마련 등

- 중앙의 민간단체 및 농협중앙회(단위조합 포함),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에 역할을 부여하여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비교적 짧은 기간에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도농교류 모델로 발전되고 있는 등 거시적인 성과는 높게 평가 할 수 있음.

- 사업의 성과 및 달성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매결연 실적이나 농수산물 직거래 증가량 외에 지속적인 교류와 실제적인 도농교류 활동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결정사항

- (사)농촌사랑운동범국민운동본부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농협, 전경련 등의 추가적인 자체 기금조성 노력을 촉구
-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농촌체험교육근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농촌지역에서도 교육체험활동을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교육체험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교육농장 육성 등)

4-4-2-0(계속)	전원마을 조성사업
-------------	-----------

(농림부 / 정주지원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촉진 등에 의한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
- '13년까지 도시민 2만명 유입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지원대상 :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면지역
- 지원내용 :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지원
- 지원규모 : 20~29호 10억원, 30~49호 15억원, 50~74호 20억원, 75~99호 25억원, 100호이상 30억원
- 재원 및 사업주체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주체 : 시·군, 농촌공사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05까지	'06	'07~'13
사업량(개소)	300	30	25	245
사업비(국고,억원)	2,304	277	260	1,767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의 도시민 입주비율은 84%로서 목표 50%를 초과달성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전원마을조성 사업	도시민 입주비율	총 도시민 입주비율	%	50	84	168

II. 총평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등을 통해 농촌 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임.
 - 하지만 기존 농촌 주민과 도시민과의 유대감 강화라든가 자칫 투기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없지 않은 사업임.
- 도시민이 주택을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산어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주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발전되어야 함.
-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외에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도시민 유치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인구의 유출로 인해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은퇴도시민 등 도시민과 도시자본을 유치하여 농촌지역 활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음.

- 그러나, 기존 주민과 도시민의 융화, 도시민의 지속적 정주지로서의 농촌의 역할 극대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사업 목표를 2013년까지 2만명으로 설정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2만명의 도시민 유입을 위해 2304억원의 국고를 쓴다는 것에 대한 논리도 확충되어야 함.
- 전원마을이 도시민만의 공간이 아니라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공동체 공간이며 농촌의 SOC 정비를 통해 전 국민의 삶의 질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함.
- 마을의 SOC 정비, 홍보 캠페인 이외에도 도시민이나 농촌주민이 거주하기에 만족할 만한 농촌지역 전체의 기본 인프라 확충이나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확충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되는 사업들과의 연계 수준을 분명히 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의 기본 체계가 지자체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추진 시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등이 비교적 적절하게 나타남.
- 전원마을 조성제도 개선방안과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조기에 제시한 것도 바람직함.
- 다만, 민간 토지소유자 등의 적극적 참여, 지원규모의 현실적 하향 조정 등과 같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 개선 사항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 형성이 필요함.

- 도시민 및 농촌주민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바, 텔레비전 및 신문, 지하철 광고, 순차 교육 프로그램 등 매체와 오프라인 등을 활용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실상 전원마을 조성의 수나 도시민 입주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만큼 많은 도시민이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성과 지표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하여 마을 단위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및 복지 관련 기반 확충이 요구됨.

Ⅲ. 주요 결정사항

-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외에 정주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마을 단위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및 복지 관련 기반 확충이 요구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 및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 민간 참여의 촉진, 지원규모 하향 조정, 선분양·미건축 규제, 농촌주민과의 공동체 형성 등
- 도시민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함.

4-4-3-1(계속)	도농교류 참여 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 및 사회적 붐 조성
- 도시민과 농촌 주민간 상호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년이후 (계속)
- 재원형태 : 국고 100%
- 사업내용 : 농림어업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 및 다양한 홍보 추진
 - 도농교류에 대한 사회적 붐 조성 및 새로운 여가·휴가 문화의 정착계기 마련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나의농촌문화체험기 공모전 개최
 - 농촌을 방문하고 이해하며, 농업·농촌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 「도농교류 농촌사랑 정부포상」의 정례화 및 홍보
 - 1사1촌 운동,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이 있는 기업·단체 및 개인을 선정·포상하여 자긍심 고취 및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
- 농촌마을 가꾸기 경지대회 개최로 도시민 유치의 기반조성

- 지자체 및 마을주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농업인과 도시민간 상호교류를 통해 이해증진과 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 추진
 - 소비자단체, 여성농업인단체 등 주관으로 도시소비자, 청소년 등의 농업·농촌현장체험 등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또는 자부담	기 타	합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6	1,200	-	-	-	1,200	-	-	1,200
2007	1,922	-	-	-	1,922	-	-	1,922
(증△감)	722	-	-	-	722	-	-	722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구 분	'06목표	'06실적	비고
-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천명)	1,266	1,343	6.0%초과
- 녹색농촌체험마을 매출액(억원)	140	183	30.7% "

* 다양한 계획홍보 및 합동캠페인을 통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고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을 통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	총 방문객수	천명	1,266	1,343	106

II. 총 평

- 본 사업의 목표는 도농교류의 범국민적 관심제고와 활성화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사업의 세부 내용이 캠페인 개최, 공모전 개최, 정부포상, 안내콜센터 운영, 홍보책자 제작 및 보급, 공모전 후원, 포럼 및 심포지움 개최, 경진대회 개최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사업의 성과관리가 어려우므로 사업명의 재정의, 사업내용의 통폐합 등이 필요
- 그리고 성과지표(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수, 녹색농촌체험마을 매출액)와 사업목적 및 내용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내용과 보다 적합한 지표개발 필요
- 본 사업의 집행기관이 농촌공사 도농교류센터이므로, 본 사업의 평가와 도농교류센터의 평가가 중복되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는 인정되지만, 사업의 세부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곤란
- 세부 사업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 및 통폐합 필요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의 홍보 및 일정관리는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세부사업별 중간점검/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업의 중요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음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세부사업이 매우 다양하여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함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수와 녹색농촌체험마을 매출액으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성과지표와 중복되고, 사업의 내용 및 목적과 인과관계가 낮으므로 성과지표의 재검토가 필요

Ⅲ. 주요 결정사항

- 세부사업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 및 통폐합 필요
- 세부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세부사업의 중요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
- 사업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한 성과지표의 개발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도시지역의 자원과 활력을 농촌에 유입시켜 농외소득의 증대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농촌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관광·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

*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도농교류센터」로 확대·개편('04.5월)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37조 (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년이후 (계속)

○ 사업비('06) : 855백만원 (도농교류센터 운영경비)

○ 추진경위

- '03. 1 : 「농촌투자유치센터」 개소 (한국농촌공사 운영)

- '04. 4 : 「농촌투자유치센터」에서 「도·농교류센터」로 확대·개편 운영
- '04. 5 : 「도·농교류센터」 개소식 및 자매결연식 개최

○ 사업 방향

-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
 - 농촌체험관광 홍보·마케팅,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교육·훈련, 도시자본 투자유치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 도농교류 및 농촌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도농교류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비 검정(농림부)

○ 주요 사업내용

-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 1인1촌 전문가 컨설팅 추진 등 마을 사후관리
-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 농촌체험행사, 그린투어 포럼,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농촌마을 가꾸기경진대회, 농촌휴가캠페인, 농산어촌체험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 추진
- 기업체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 등 1사1촌 운동 추진 지원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 투자유치 대상사업 발굴·지원, 정보제공 등 도시자본의 농촌투
자유치 촉진
-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투융자계획(국고)

(단위 : 억원)

구 분	5개년('05~'09) 계획					
	'05	'06	'07	'08	'09	소계
도농교류센터 운영(억원)	3	9	9	9	10	4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구 분	'06목표	'06실적	비고
-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개수(천명)	1,266	1,343	6.0%초과
- 녹색농촌체험마을 매출액(억원)	140	183	30.7% "
-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매출액(억원)	545	1,395	156% "

* 다양한 계획홍보 및 합동캠페인을 통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고,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설립 지원을 통한 1사1촌 자매결연 확대 및 우수사례홍보 등을 통하여 목표대비 실적이 크게 초과 달성되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도농교류센터 운영	자매결연 매출액	1사1촌자매결연 매출액	억원	545	1,395	156

II. 총 평

-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운영경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집행 효율성,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등이 도농교류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과 중복되고, 본 사업은 도농교류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 이므로 센터 운영의 적절성, 효율성,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수립, 성과지표의 개발, 평가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운영경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절차적 합리성 등의 내용이 본 센터에서 추진 하는 “도농교류 참여 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사업의 계획과 중복되며, 도농교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의 내용도 본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며, 도농교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

- 사업비 외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별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재검토 필요
- 홍보, 일정관리 등의 내용도 본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지표도 본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1사1촌운동 등의 타사업과 중복
- 기관의 성과와 사업의 성과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만, 별도 평가를 시행한다면, 도농교류센터 운영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

Ⅲ. 주요 결정사항

-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집행 효율성,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등이 도농교류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과 중복되고, 본 사업은 도농교류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 이므로 센터 운영의 적절성, 효율성,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수립, 성과지표의 개발 등이 필요

(농림부 / 농촌정책과)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1사1촌자매결연 및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도농교류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사항을 해소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도농교류활성화 지원가능

2. 사업내용

-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 도농교류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지정제 도입 및 식품위생법 등 타법에 대한 특례근거 마련 등
-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도농교류관련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 활동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초·중등 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활성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제도 마련, 농촌체험지도사·마을해설사 자격제도 도입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입법추진주체 : 농림부
- 입법계획 : 법안장관방침('06.12)→관계부처협의(06.12)→입법예고('07.2)→규제 및 법제처 심사('07.3~4)→국회제출('07.4)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과제는 정책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시 및 평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측정 불가

II. 총 평

- 다양한 측면에서 도농교류 활동을 촉진할 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도농교류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본 법안이 갖는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제정이 지연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므로 신속하게 제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워낙 다양한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영역이라 부처간 협의와 조정에 많이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 판단됨.
- 또한 그 과정에서 도농교류 활동 촉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사상되지 않고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후 시행령 작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1.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전국적으로 붐이라고 할 만큼 확산되고 있는 도농교류 활동에 대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1사1촌 자매결연 및 농산어촌체험관광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2회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법률자문가의 자문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과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함.
- 법안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본 법의 적용을 받을 대상은 농촌주민과 도시민이므로 이들의 교류촉진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특히 현재 도시민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에 대한 시안의 시험적용에 의해 문제점 또는 보완사항의 사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2.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법안 마련을 위한 실무위원회에서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였는지, 마련된 법안에 대한 형식적 공청회 이외에 실제 법을 활용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등이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움.
- 2005년 본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2006년에도 법안의 초안만 마련되었을 뿐 입법 예고도 되지 못한 상태임. 부처 간 협의 사항이 많은 사안이기는 하나 무려 2년 이상 지연된 데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움.

3.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법안 마련('06.12 현재 미 제정)

Ⅲ. 주요 결정사항

- 2007년도 2월 입법예고 추진후 4월에 국회 제출 예정이므로 계획된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행령 작업 등에서 도농교류 활동 촉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함.

분과별 세부사업 평가결과

< 참고 1 >

세부사업별 평가결과(복지분야)

1-1-1-0(계속)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8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8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6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8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2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3.60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00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8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8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8.20
합 계			100	90.6

1-1-2-0(계속)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8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4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6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4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8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4.20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00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0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4.0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2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8.20
합 계			100	91.6

1-1-3-0(계속)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6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4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4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2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8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3.80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00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0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8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7.60
합 계			100	89.6

1-1-4-0(계속)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2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0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6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4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0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3.40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60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8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4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8.00
합 계			100	88.4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8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9.2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9.0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3.6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00
	2.3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20
	2.4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10	9.4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 (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2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15	13.80
합 계			100	90.2

1-2-1-1(신규)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20	19.0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8.6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8.8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3.2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2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0	8.40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60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2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0	9.4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5	4.80
합 계			100	88.2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2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0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6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6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4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40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00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2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4.2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7.60
합 계			100	89.2

1-2-1-3(계속)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4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00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2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2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2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80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60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8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6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80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7.60
합 계			100	88.2

1-2-2-0(계속)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8.8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20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4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8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20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80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40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6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6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7.20
합 계			100	87

1-2-3-1(신규)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20	18.0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8.60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8.4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3.0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0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0	8.00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40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0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0	8.4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5	4.60
합 계			100	86.4

1-2-3-2(신규)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20	18.8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8.00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8.8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3.4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8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0	7.60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20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8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0	8.6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5	4.40
합 계			100	86.4

1-2-3-3(신규)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20	17.2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8.40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8.8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3.0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8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0	7.80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00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8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0	8.6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5	4.40
합 계			100	84.8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8.6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8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2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2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80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80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00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0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8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6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8.20
합 계			100	85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4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8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6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4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20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20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20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8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8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7.20
합 계			100	88.6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6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6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6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6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4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80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20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0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6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4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60
합 계			100	90.4

1-3-2-0(계속)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0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0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2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2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0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00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20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0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8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20
합 계			100	85.6

1-3-3-1(계속)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2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4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6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2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6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00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00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0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8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8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40
합 계			100	87

1-3-3-2(신규)	취약농가 인력지원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20	17.8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8.40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8.6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3.0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2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0	8.60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00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8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5	8.6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5	3.80
합 계			100	85.8

1-3-5-1(신규)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20	18.6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8.60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8.6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3.2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00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0	8.80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80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2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0	8.6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5	4.00
합 계			100	86.4

1-3-5-2(계속)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4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00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4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0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0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3.40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40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6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6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7.80
합 계			100	88.6

1-3-5-3(신규)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20	18.0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8.60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8.4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3.4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0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0	8.20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20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6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5	8.0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80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5	4.00
합 계			100	85.2

1-4-1-1(계속)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4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0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6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0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0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60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00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6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6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8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7.60
합 계			100	88.2

1-4-2-3(신규)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개발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20	18.2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8.40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8.6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3.2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40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0	8.60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40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6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0	8.8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20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5	4.20
합 계			100	87.6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6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2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6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6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4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20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40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0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8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8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7.80
합 계			100	90.4

1-4-3-0(계속)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8.6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00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2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4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20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3.40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40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0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2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00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80
합 계			100	87.2

< 참고 2 >

세부사업별 평가결과(교육분야)

2-1-1-1(계속)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 육성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5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96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84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5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95

2-1-2-1(신규)	학교군 구성 · 운영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20	2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10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1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5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0	8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0	1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5	4
합 계			100	96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8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산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80

2-1-3-1(계속)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3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5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88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5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91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8.5
합 계			100	90.5

2-1-3-4(계속)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92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3
2.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89

2-1-4-1(신규)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20	2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10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9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4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0	13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5	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5	4
합 계			100	93

2-1-4-2(계속)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8
합 계			100	85

2-2-1-0(계속)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사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3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5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0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8
합 계			100	79

2-2-2-1(계속)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4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9
합 계			100	91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3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4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9
합 계			100	84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92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90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87

2-2-4-2(계속)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5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산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94

2-3-1-1(계속)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확대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0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95

2-3-1-2(계속)	교원 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10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1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5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2
	2.3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4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10	1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15	10
합 계			100	86

2-3-2-1(계속)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3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2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83

2-3-2-2(계속)	교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3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7
합 계			100	83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2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5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3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5
합 계			100	85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1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산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9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74

2-3-6-0(신규)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 운영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20	14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6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5	6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6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2
	2.3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2
	2.4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10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0	6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2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5	2
합 계			100	50

세부사업별 평가결과(지역개발분야)

3-1-1-0(계속)	농촌지역개발 전문 인재 육성 및 저변확대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4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4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8
합 계			100	93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4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4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7
합 계			100	90

3-2-1-2 (계속)	어 촌 종 합 개 발 사 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8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7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80

3-2-1-3 (계속)	산 촌 종 합 개 발 사 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3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3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8
합 계			100	82

3-2-2-1(계속)	소도읍육성사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4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8
합 계			100	92

3-2-2-2(계속)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7
합 계			100	86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4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5
합 계			100	83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4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4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9
합 계			100	95

3-3-2-1(계속)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사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3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86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86

3-3-2-3(계속)	면단위 하수도사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84

3-3-2-4(계속)	소하천 정비사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92

3-3-2-5(계속)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9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3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81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9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79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7
합 계			100	82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82

3-3-4-1(계속)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8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2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6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3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76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7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2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6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3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8
합 계			100	77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8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3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6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3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2
합 계			100	71

3-3-5-1(계속)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92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91

3-3-5-4(계속)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8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6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79

3-3-5-5(계속)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8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87

3-3-5-6(계속)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8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9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81

3-3-5-7(계속)	산림박물관 건립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90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8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7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84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8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5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87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84

3-3-6-4(계속)	디지털 어촌 구축사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8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7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3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9
합 계			100	80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4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87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3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4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3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8
합 계			100	84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4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4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9
합 계			100	89

< 참고 4 >

세부사업별 평가결과(복합산업분야)

4-1-1-1(신규)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 구축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20	17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7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7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3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0	8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0	8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5	4
합 계			100	79

4-1-1-2(신규)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20	1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8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9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2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0	6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3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0	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5	3
합 계			100	75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3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7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4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20
합 계			100	84

4-1-3-0(계속)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사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80

4-2-1-1(계속)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년도 예산확보(정량) 	15	14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4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9
합 계			100	91

4-2-1-2(계속)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4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4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9
합 계			100	91

4-2-1-3(계속)	문화역사마을 조성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5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3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5
합 계			100	89

4-2-1-4(계속)	어촌체험마을 조성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
3.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84

4-2-1-5(계속)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83

4-2-1-6(계속)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8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3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9
합 계			100	78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3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3
3.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4
합 계			100	77

4-2-2-1(계속)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개최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4
합 계			100	87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4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5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85

4-2-3-0(계속)

중앙·지방·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 구축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8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1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2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4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10	8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 (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15	15
합 계			100	88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10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5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6
합 계			100	92

4-3-1-0(계속)	경관보전 직불제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5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9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4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9
합 계			100	92

4-3-2-2(계속)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개발 및 보급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9
합 계			100	85

4-3-3-0(신규)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 · 보급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20	1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8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7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3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0	8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5	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5	4
합 계			100	79

4-3-4-0(계속)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6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3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7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1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2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3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1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2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8
합 계			100	69

4-3-5-0(계속)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7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7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2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4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10	8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 (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15	14
합 계			100	79

4-2-3-0(계속)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5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8
합 계			100	90

4-4-1-0(계속)	1사1촌운동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9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9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3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4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10	10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 (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15	15
합 계			100	91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9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4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4
2.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5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4
3.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2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7
합 계			100	85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3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자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3
	2.4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5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5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4
합 계			100	81

4-4-3-2(계속)	도농교류센터 운영
--------------------	------------------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5	3
	1.3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5	3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0	8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3
	2.3 재원조달 및 배분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당해연도 예산집행 실적(정량) · 차기연도 예산확보(정량) 	15	12
	2.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5
	2.5 일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5	5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3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3
	3.3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20	14
합 계			100	79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1. 계획	1.1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상위 목표(국정지표 등)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근거	10	10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의 구비 · 세부추진계획의 현실 적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	10	8
	1.3 절차적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실시	10	10
2. 집행	2.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15	13
	2.2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 중간모니터링 실시여부와 방법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 해결	5	4
	2.3 홍보 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추진과정의 의견수렴 방법/내용 등	5	4
	2.4 일정관리 등	· 추진일정 준수	10	6
3. 성과	3.1 삶의 질 향상 기여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 (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연계)	15	10
	3.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 제시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의 적합성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5	4
	3.3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정량)	15	8
합 계			100	77